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양계민 · 권오영 · 이영신 · 장윤선 · 장인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 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 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저 자 양계민,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이영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
_장인숙(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_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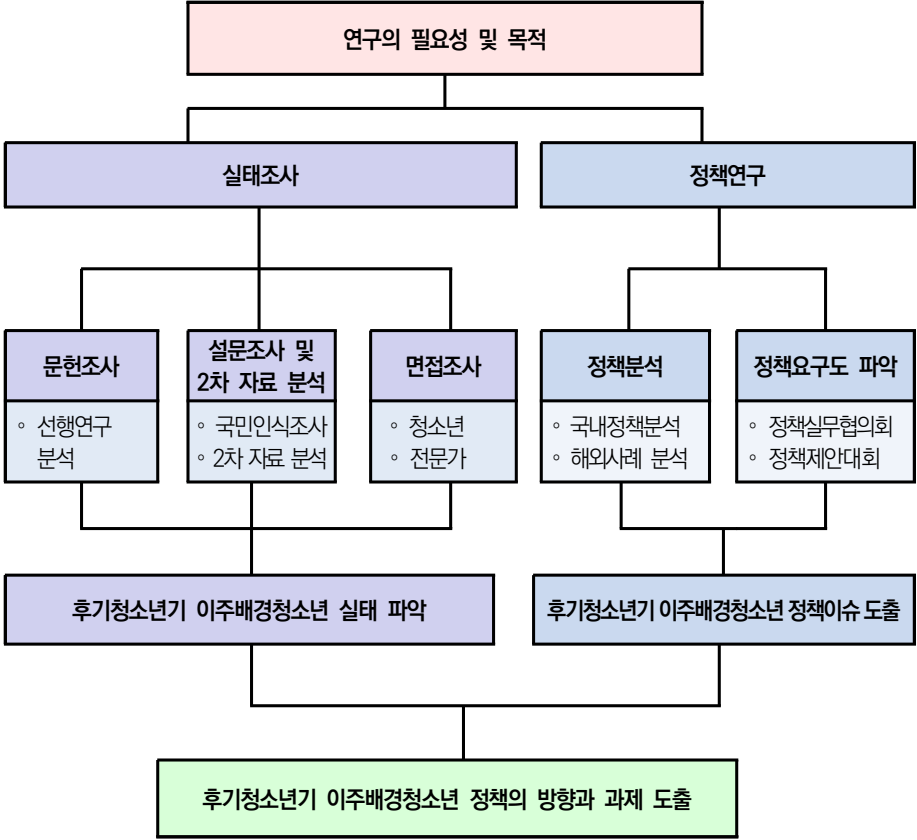
■ 연구목적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지원근거를 모색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관련 생활실태 파악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지원정책방안을 모색함

■ 연구내용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지원의 근거마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 실태 분석
-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및 관련법 분석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노동 및 자립실태 관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

■ 연구추진체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범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사회통합정책의 관점에서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 중 진로, 노동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이론 고찰
-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및 일반국민 대상 관련 정책현황 분석
-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정책현황 분석

● 전문가 자문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적응 및 생활실태와 현황에 대한 자문회의 실시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성 도출을 위한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면접조사 질문지 구성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정책과제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실시

● 양적 연구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2차자료 분석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질적 연구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면접조사 실시
- 5개 유형별(i)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i)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iv) 북한출생청소년, v)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에 대하여 3개 집단별(대학생, 취업자, NEET)로 총 15개 그룹 60명 대상 면접조사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8명과 북한배경청소년 전문가 8명 등 총 16명의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실시

● 해외사례연구

-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총 5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이민의 간략한 역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체류 정책 등 분석
- 해외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기타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 법무부 이민통합과 및 외국인정책과 등과 총 3회 실시함.
- 콜로키움은 후기청소년기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취업 실태에 대한 해외 정책현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회 실시함.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여 현장전문가, 학교교사, 자원봉사자 등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아이디어 수집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해 실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과제에 반영함.

● 보고서 구성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장	절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보고서 구성
II.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범주 2.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3. 사회통합정책과 이주배경청소년 4. 요약 및 소결
I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 실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 실태 2. 기존 실태조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3. 면접조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4. 요약 및 소결

장	절
IV. 국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	1. 분석 개요 2.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3.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4. 요약 및 소결
V.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	1. 분석 개요 2.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에 대한 국민인식 4. 요약 및 소결
V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연구요약 및 결론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 도출의 절차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4. 본 연구의 의의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선행연구 분석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하위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진로정보부족과 진로장벽인식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언어 등 이주배경의 장점을 활용하는 경우 진로 및 취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
- 국외출생자 중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진로를 장기적,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고, 취업의 제약으로 인하여 안정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며, 한국어 능력이 한국생활 적응, 취업, 향후 정착계획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진학에 대한 포부와 열망이 매우 높으나, 부모의 관심 부족, 남한 문화이해의 부족, 편견과 차별, 직업관련 지식의 부족, 직무 관련 한국어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음.
-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은 언어 및 사회적응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며, 불안정한 노동 및 고용상태에 있음. 이로 인하여 이주배경청소년 내 다른 하위집단에 비하여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확신이 낮고, 본국으로의 귀국 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높음.

● 2차자료 분석

-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수준에서 이주배경집단이 전국의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크게 낮고 진로의식 수준에서 일반집단청소년들에 비하여 이주배경집단이 낮음.
- 한국어 수준이 진로 및 취업 관련 차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며,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집단은 주로 국외출생자일 확률이 높음.
- 한국에서의 직업훈련경험은 별로 없으며 전반적으로 구직활동 경험도 높지 않음
- 일 경험자 중 대부분은 임금근로자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으나, 북한이탈청소년 집단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 월평균 소득수준은 외국배경청소년(107.9만원)에 비하여 북한배경청소년(143.9만원)집단이 높은 편이나 2021년 통계청의 20-24세 평균소득수준(180만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주요 연구결과

● 면접조사

- 가정환경과 부모특성, 정보접근성의 차이, 대학과 직장에서 쓰이는 실전 한국어 역량에 따라 진로와 취업 여부가 달라질 뿐 아니라, 진로와 취업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어 역량 및 이주배경을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 경우, 취업 및 한국사회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음.
-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나 취업 등 한국사회 정착을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함.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 유형별, 진로특성별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외국배경자와 북한배경자를 위한 차별화된 각각의 지원체계를 선호함. 특히 북한배경자의 경우 별도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선호가 강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보를 총괄하는 원스톱전문센터를 설치하여 출입국 문제, 체류자격 및 비자 문제, 지원기관, 교육정보, 진로 및 취업정보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인식조사

-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는 문항,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찬성 비율도 높음.
-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소,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인식도 동시에 존재함.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수용적인 편이지만, ‘지원’에 대해서는 체류방식, 연령, 지원의 종류에 따라 찬성비율이 다르게 나타남.
- 응답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아짐.
- 이주배경집단에 대한 지원의 찬성도에서 거주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국내정책 분석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연령 증가에 따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있으며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 기본계획에서 포괄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매우 협소한 영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거나, 구색 맞추기 수준의 기존 사업에 포함됨.
- 국내 정책의 대상자들은 외국국적자라 할지라도 동포와 그들의 가족만 대상이며,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나 안정적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진학 이외에 장기체류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해외정책 분석

- 프랑스는 입국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소년이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재결합제도를 통해 입국한 경우, 13세 이전에 입국한 경우,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 미성년 아동복지서비스기관의 보호하에 들어간 경우에 따라 체류자격이 달라짐.
- 독일은 부모와 함께 이주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외국인이 16세가 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독일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 획득이 가능함. 또한 이민자를 위한 직업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제공. 희망하는 훈련 직종에 대한 전문용어와 지식을 함께 제공함.
- 캐나다는 학생비자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일정기간 임시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이수하거나 노동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착을 유도함. 또한 청소년 고용 및 기술전략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교육, 기술 및 훈련제공, 취업 후 일자리 지속을 위한 경력관리 및 취업연계 등을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제공함.
- 스웨덴은 16-19세 이주배경청소년(장기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학업 보조금을 제공하고, 운전면허취득이나 가전제품 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고, 의무 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전문대학이나 직업학교 진학 시 학자금을 대출해 줌.
- 호주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임시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거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또한 외국국적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임시비자를 제공하여 전공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자립지원체계 구축
 -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의 기관 및 중앙부처의 담당부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별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전국 이주배경청소년 지원플랫폼 구축
 - 진로자립센터 설치 및 운영
 - 전국 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내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자립센터 설치 및 운영
 - 취업한국어, 각종 기술교육, 취업연계 및 현장 수퍼바이징을 통한 추수지도까지 연계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자립역량강화
 - 대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학과 학습활동 및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멘토링 활동
 - 각 대학 외국인대학생 관리부서와 연계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프로그램 (기업 설명회, 기업 취업교육 및 인턴십 등) 운영
 - 국민취업제도 확대
 -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중 제 II유형에 정주가능성이 높은 외국국적의 이주배경 청소년을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기반조성
 - 이주배경청소년 전담부서 신설
 - 전담 부서 신설로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추진 도모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체류지원
 - 일정 자격의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안정적 체류 및 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연구보고23-일반0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7
3.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11
5. 보고서 구성	22

II.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범주	25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29
3. 사회통합과 이주배경청소년	35

Ⅲ.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45
2. 기존 실태조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70
3.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161
4. 요약 및 소결	209

Ⅳ. 국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1. 분석 개요	215
2.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217
3.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243
4. 요약 및 소결	370

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377
2. 조사 결과	384
3. 요약 및 소결	414

Ⅵ.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 도출 절차	421
2.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424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430

참고문헌	443

부 록	469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현황	11
표 Ⅰ-2. 2차 자료 분석 데이터 목록	14
표 Ⅰ-3. 국민 인식조사 개요	15
표 Ⅰ-4. 면접조사 개요	16
표 Ⅰ-5. 해외사례 분석대상 국가 및 집필자 명단	17
표 Ⅰ-6. 정책실무협의회 개최실적	17
표 Ⅰ-7. 콜로키움 개최실적	18
표 Ⅰ-8. 정책제안대회 단계별 제안서 접수 및 수상작 선정절차	19
표 Ⅰ-9. 정책제안대회 제안과제 주제별 현황	20
표 Ⅰ-10. 정책제안대회 제안과제 최종 수상작 명단	21
표 Ⅰ-1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단	21
표 Ⅰ-12.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22
표 Ⅱ-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	25
표 Ⅱ-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하위범주별 포함대상 및 특성	28
표 Ⅱ-3. 2023년 현재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 규모추정	34
표 Ⅱ-4. 사회통합의 정의들	36
표 Ⅱ-5. MIPEX 8개 핵심지표별 정책지표	37
표 Ⅱ-6. MIPEX 8개 정책 영역별 순위(전체 56개국)	39
표 Ⅱ-7. MIPEX 8개 핵심지표별 한국의 순위	41
표 Ⅲ-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리스트 및 주요 내용	46
표 Ⅲ-2. 외국배경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요약	66
표 Ⅲ-3. 북한배경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요약	69
표 Ⅲ-4. 2차 자료 분석 데이터 목록 및 주요 특징	72
표 Ⅲ-5. 설문지 구성별 문항번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비교문항)	72
표 Ⅲ-6.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조사대상자 하위유형별 표본 수	88
표 Ⅲ-7. 유형별 분석대상자 수	88
표 Ⅲ-8.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89

표 Ⅲ-9.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89
표 Ⅲ-10. 유형별 성별 분포	89
표 Ⅲ-11.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90
표 Ⅲ-12. 하위 유형별 연령분포	91
표 Ⅲ-13. 하위유형별 거주 지역	92
표 Ⅲ-14. 유형별 재학 비율	93
표 Ⅲ-15. 유형별 현재 상태	93
표 Ⅲ-16.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지 여부	94
표 Ⅲ-17. 유형별 한국 내 가족 존재 여부	94
표 Ⅲ-18. 유형별 동거가족 현황(다중응답)	95
표 Ⅲ-19. 아버지 출신국	96
표 Ⅲ-20. 어머니 출신국	97
표 Ⅲ-21. 과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여부	98
표 Ⅲ-22. 한국 거주 기간	98
표 Ⅲ-23. 조사대상자 국적	99
표 Ⅲ-24. 유형별 귀화자 비율	99
표 Ⅲ-25. 조사대상자 유형별 국적 분포	100
표 Ⅲ-26. 유형별 국적 분포	101
표 Ⅲ-27. 외국국적 소지자의 향후 한국 거주 의지	102
표 Ⅲ-28. 한국 국적 취득 계획	102
표 Ⅲ-29. 유형별 주관적 가정 경제적 수준	103
표 Ⅲ-30. 일상생활의 차별경험	104
표 Ⅲ-31. 차별대상자	104
표 Ⅲ-32. 사회 가치관	105
표 Ⅲ-33. 희망 교육수준	107
표 Ⅲ-34. 장래 희망 직업 결정	107
표 Ⅲ-35. 진로의식	108
표 Ⅲ-36. 직업훈련 경험	109
표 Ⅲ-37. 직업훈련의 목적	110
표 Ⅲ-38.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111
표 Ⅲ-39. 향후 직업훈련 계획	112
표 Ⅲ-40.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112
표 Ⅲ-41. 현재 아르바이트 경험	113
표 Ⅲ-42. 지난주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113
표 Ⅲ-43.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115
표 Ⅲ-44. 월평균 소득	116

표 III-45.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이유	118
표 III-46. 고용주 혹은 직원으로부터 노동관련 부당행위 경험	119
표 III-47. 손님으로부터 노동관련 부당행위 경험	120
표 III-48. 노동관련 처우	122
표 III-49. 구직활동 경험	123
표 III-5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표본 수	124
표 III-51. 유형별 분석대상자 수	125
표 III-52. 유형별 연령 및 성별 분포	126
표 III-53. 유형별 국적취득 여부 및 현재국적 비율	127
표 III-54. 유형별 국적 분포(이중국적 포함)	128
표 III-55. 현재 외국 국적자의 체류 자격(이중국적 제외)	129
표 III-56. 현재 외국 국적 소지자의 한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계획 (이중국적 제외)	129
표 III-57. 거주,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외국생활 경험 여부 및 기간	130
표 III-58. 한국에서의 학교급별 학교 재학 여부	131
표 III-59. 한국에서의 학교 재학 여부	132
표 III-60.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여부	133
표 III-61. 차별 대상자(중복응답)	133
표 III-62. 희망 교육수준	134
표 III-63. 진로 정보 필요성	135
표 III-64. 직업훈련 경험	135
표 III-65. 지난주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136
표 III-66. 종사상 지위	137
표 III-67. 일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중복응답)	138
표 III-68. 구직활동 경험	139
표 III-69. 구직의 어려움(중복응답)	139
표 III-70. 비재학 또는 비취업 이주배경청소년의 현재 상태	140
표 III-71. 비재학 또는 비취업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계획 (향후 3년 이내)	141
표 III-72. 후기청소년기 북한이탈청소년 남녀 비율(%)	142
표 III-73.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142
표 III-74. 전체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남녀 비율(%)	143
표 III-75.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143
표 III-76. 경제활동 상태	144
표 III-77. 재학생 및 비재학 사유	144
표 III-78. 한국 학교 졸업 여부	144

표 III-79. 남한에서 졸업한 최종 학교	145
표 III-80. 현재 동거 가족 존재 여부	145
표 III-8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146
표 III-82. 한국 거주 기간	146
표 III-83. 남한사회의 생활수준(사회경제적 지위)(정착실태 13번)	147
표 III-84. 남한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만족도	147
표 III-85. 남한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147
표 III-86. 일상에서의 차별 경험	148
표 III-87.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	148
표 III-88. 희망 교육수준	149
표 III-89. 대학 이상 교육 희망 이유	149
표 III-90. 대학 휴학 중퇴 경험	149
표 III-91. 대학 휴학 중퇴 이유	150
표 III-92. 직업교육훈련 경험	150
표 III-93. 직업훈련 교육 분야	151
표 III-94. 직업교육훈련 수료 분야 일한 경험	151
표 III-95. 직업교육훈련 수료 분야에서 일하지 못한 이유	151
표 III-96. 일하고 싶은 직장 혹은 업종	152
표 III-97. 직업 선택 시 고려 요인	152
표 III-98. 지난 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152
표 III-9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153
표 III-100.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근로형태	153
표 III-101. 경제활동 상태	153
표 III-102. 월평균 소득수준	154
표 III-103. 현재 직업 유형	154
표 III-104. 현재 일하는 곳의 업종	155
표 III-105. 현재 일하는 곳의 종사자 수 규모	155
표 III-106. (현재 직장) 구직에 소요된 기간	155
표 III-107. 주요 분석결과 비교 내용	159
표 III-108.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	163
표 III-109. 면접조사 개요	164
표 III-110. 면접조사 참여 청소년 배경특성	165
표 III-111. 면접조사 참여 전문가 배경특성	167
표 III-112. 면접조사 내용	168
표 III-113.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	172

표 III-114. 내용분석의 범주와 주제	174
표 III-115.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생활 및 적응실태 요약	211
표 IV-1.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분석 대상	216
표 IV-2.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221
표 IV-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가능 체류자격 종류와 특성	238
표 IV-4.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정책현황 요약	240
표 IV-5. 프랑스 내 이주민 출신국별 분류	246
표 IV-6. 프랑스 내 이주배경청소년 중 후기 청소년(15-34세) 연령 해당 비율	247
표 IV-7. 이주배경청소년(1세대) 연령별/출신국별 인구	248
표 IV-8. 연령별 프랑스 전체 인구	248
표 IV-9. 이주배경청소년 (1세대) 비율	249
표 IV-10. 2019-2020학년도 르망(Le mans) 지역 고등학교 프랑스어 학급 학생 진로 현황	254
표 IV-11. 무연고 청소년 연령별 현황	255
표 IV-12. 무연고 청소년 출신국 현황	256
표 IV-13. 지역별 17세에 아동 보호 정책 관리를 받기 시작한 청소년의 해당 제도 혜택 종료 시점	259
표 IV-14. 아동 보호 정책 수혜 종료에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260
표 IV-15. 프랑스 미성년 입국자의 유형별 체류정책	262
표 IV-16. 이주배경 및 연령 기준 고등 교육 학위 취득자 비율	264
표 IV-17. 영주권 신청 대기 시간 단축 및 더 유리한 사전 조건 제공 집단	273
표 IV-18. 이주배경청소년 직업 및 진로정책 담당부처 및 프로그램	277
표 IV-19. 청소년이 제공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조치	280
표 IV-20. 스웨덴 전체 인구 대비 후기청소년기 비율 (최근 5년 기준)	284
표 IV-21. 전체 후기청소년기 대비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최근 5년 기준)	286
표 IV-22. 스웨덴배경 및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비교 (최근 5년 기준)	287
표 IV-23. 후기청소년기 국가지역별 비교(최근 5년 비교)	288
표 IV-24. 노동 시장 재진입을 위한 학업 보조금	301

표 IV-25. 캐나다 이민자 주요 출생지	309
표 IV-26. 캐나다 체류 신분 구분	313
표 IV-27. 캐나다 직업분류(NOC2021버전)	315
표 IV-28.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비자) 유형 및 내용	333
표 IV-29. 호주의 이민유형별 영주 이민자 수 현황 (2010/11~2020/21년)	336
표 IV-30. 호주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둔 청소년(15~34세)의 비중	338
표 IV-31. 호주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둔 청소년(15~34세) 비중의 변화 (2012~2021년)	340
표 IV-32. 호주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둔 청소년(15~34세)의 부친의 출생지역(2020~2021년)	341
표 IV-33. 호주의 연도별 이주배경청소년 수 현황(2012~2017년)	342
표 IV-34. 호주의 연령별 이주배경청소년 수 현황(2016/17년)	343
표 IV-35. 호주의 출신 국가별 이주배경청소년 수 현황(2016/17년)	344
표 IV-36. 호주의 주별 YTS 서비스 제공업체	355
표 IV-37. YTS 서비스 제공업체에 할당된 전체 예산 규모 (2015/16~2019/20년)	355
표 III-38. YTS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고객, 세션, 케이스 현황	356
표 IV-39.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요약	363
표 V-1. 총화기준 및 결과	378
표 V-2. 총별 모집단 집계구 현황	379
표 V-3. 총별 표본배분 결과	380
표 V-4. 국민인식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382
표 V-5.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385
표 V-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387
표 V-7.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과 배경특성의 상관관계	389
표 V-8.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성별 차이	390
표 V-9.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연령별 차이	391
표 V-10.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학력수준별 차이	392
표 V-11.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거주지 규모별 차이	394
표 V-12.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외국출신자 접촉수준별 차이	395

표 V-13.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삶의 만족도별 차이	396
표 V-14.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차이	398
표 V-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차이	399
표 V-16.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대상별 찬성비율	401
표 V-17.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성별 차이	402
표 V-18.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연령별 차이	403
표 V-19.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지역 차이	406
표 V-20.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거주지 규모별 차이	407
표 V-21.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교육수준별 차이	409
표 V-22.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월평균 소득수준별 차이	410
표 V-23.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외국출신자 접촉정도별 차이	412
표 V-24.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삶의 만족도 수준별 차이	412
표 V-2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차이	414
표 VI-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과제의 개요	433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7
그림 I-2. 본 연구의 연차별 주요 내용 및 방법	8
그림 I-3. 정책제안공모전 포스터	19
그림 I-4. 정책제안대회 포스터	19
그림 II-1. 외국인주민자녀 규모(행정안전부, 2011-2021)	29
그림 II-2. 2021년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규모 (행정안전부, 2022)	30
그림 II-3. 다문화학생의 규모(교육부, 2012-2022)	31
그림 II-4. 다문화학생의 하위유형별 규모(교육부, 2018-2022)	32
그림 II-5.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통일부, 2022.12기준)	33
그림 IV-1.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과제	218
그림 IV-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비전 및 주요과제	222
그림 IV-3.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225
그림 IV-4. 제 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228
그림 IV-5. 진로교육 활성화방안(2023-2027)의 비전 및 추진과제	230
그림 IV-6. 5차 평생교육진흥 활성화방안(2023-2027)의 비전 및 추진과제	232
그림 IV-7. 제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 및 추진과제	235
그림 IV-8. 제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 및 추진과제	236
그림 IV-9. 독일 연방통계청의 이주배경에 대한 세부 범주	270
그림 IV-10. 독일 이주배경 청년 규모	271
그림 IV-11. 스웨덴 전체 인구 대비 후기청소년기 규모(15-24세)	285
그림 IV-12. 스웨덴 후기청소년 및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비교	286
그림 IV-13. 스웨덴배경 및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비교	287
그림 IV-14. 후기청소년기 국가지역별 규모 비교	289
그림 IV-15. 캐나다 이민자 수 및 비율	307
그림 IV-16. 연령에 따른 캐나다 이민자 수	308
그림 IV-17. 연령에 따른 캐나다 비영주권자 비율	310
그림 V-1. 조사 실사 절차 및 내용	381
그림 V-2.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대상별 찬성비율	401
그림 VI-1. 본 연구의 정책과제 도출 절차	423
그림 VI-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체계도	43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5. 보고서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여기서 ‘이주’란 국경을 넘는 이주를 의미하며, 따라서 외국출신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온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양계민 외, 2020: 21). 우리 사회에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273,722명으로(행정안전부, 2022.10.31.), 약 10년 전인 2012년 1월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 수인 168,583명(행정안전부, 2012.08.09.)에 비하여 약 62.4%나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수는 2021년 4월 기준 160,058명(교육부, 2022.08.30.)으로 이 역시 10년 전인 2011년 11월 기준 다문화학생 수(교육부, 2012)인 38,678명에 비하여 무려 313.9%이나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북한배경의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교육부의 탈북학생 수가 2022년 4월 기준 2,061명으로, 2012년 4월 기준 1,992명에 비하여 69명 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2018년에 2,538명까지 매년 증가했다가 2019년부터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탈북학생의 경우는 다문화학생 만큼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또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치로, 사실상 19세부터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에 나타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통계추이를 통하여 과거 초·중·고등

1) 1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학교 재학생들의 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후기청소년들의 규모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후기청소년기 연령 범주의 이주배경청소년 역시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입장은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성장지원’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성장지원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의 사례로는 관계기관합동 추진 계획인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관계기관합동 추진 계획인 제 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2023년 현재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교육부의 경우는 2006년 「다문화학생 지원계획」²⁾을 추진한 이래로 지금까지 매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발표 및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8년 「제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개선 및 수립하였고, 2023년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립 및 추진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정부정책 및 기본계획들은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기본적 원칙이나 합의된 방향성을 근거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단계별로 요구되는 현실에 맞추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책들이 수립되었던 초기 시기에는 입학 전 미취학 연령대 아동들의 증가에 따른 지원이 주요 관심이었다면, 이들이 점차 초·중·고·대학 단계로 성장함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습 및 학교적응에 관한 지원으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들이 성장하여 중고등학교 연령층이 증가하게 되면서는 청소년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어왔다.

최근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및 취업 시기의 연령으로 발달함에 따라 19세 이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 해당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제는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해당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현실상황을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등 사회진출에 따른 문제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본격적으로 계획 및 추진된 바 없고, 이들의 지원에 대한 근거 역시 명확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해당 연령 범위에 속하는

2) 2006년 첫 계획 당시는 「다문화가족자녀 지원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다문화학생지원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 등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8세 미만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경우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또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교육과 복지 등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기 연령대의 이주배경청소년은 UN아동권리협약과 교육부 다문화학생지원계획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다. 또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은 주민등록법상 또는 아동기본법상 성인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근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기 연령대는 이주노동자들도 포함될 수 있어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의 원칙과 방향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미성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해당 연령의 범주에 속한 이주배경청소년 집단 전체를 큰 틀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 조망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큰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정립하면서 보다 고도화된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각자가 지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립능력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 과제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이슈인 진로, 직업 및 취업의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과 한국사회의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앞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추진되는 연속과제로, 연구 전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객관적 실태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이 두 가지 목적을 통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사회의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목적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파악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객관적 실태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사회의 상호이해 및 사회통합에 기여

이 중 2023년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3년 연구의 첫 단계로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정책목표 및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둘째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것, 셋째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실질적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023년 연구의 목적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정책목표 및 지원의 근거방안 도출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 실태에 대한 객관적 실태파악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진로, 노동 및 자립 실태분석에 근거한 지원정책방안 도출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그림 I-1]과 같이 크게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로 구분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2차자료 분석,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연구에서는 국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사례를 분석하였고, 관련 부처와의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부처의 요구도를 파악하였으며, 정책제안대회를 통하여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집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이슈를 도출하였다. 이 두 가치를 통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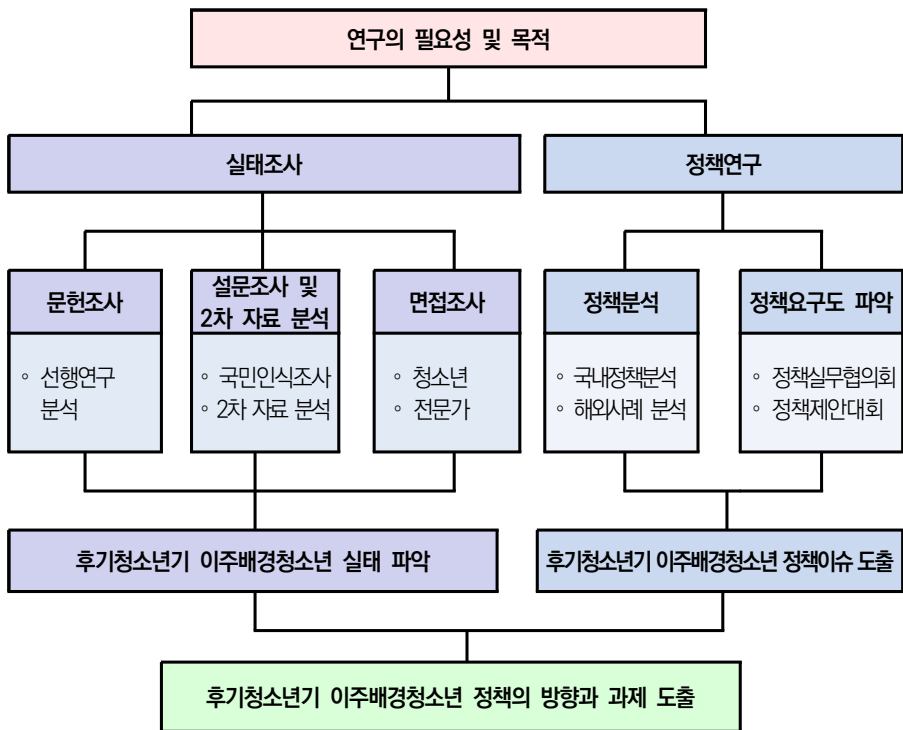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추진되는 다년연구로 연도별 주제는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2023년에는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을 주제로 다루었고, 2024년에는 학습 및 교육지원, 2025년에는 심리·사회적응 등과 관련된 심층주제를 각각 다룰 예정이다. 2023년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을 1년차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여러 주제 중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2023년은 본 연구의 첫 번째 해인만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지원의 근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2023년)	목적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지원근거 방안 모색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관련 생활실태 파악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지원정책방안 모색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사회의 상호이해 및 사회통합에 기여
	내용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지원의 근거 마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진로, 노동 및 자립지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국내외 정책 분석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노동, 자립지원 관련 지원정책방안 도출
	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실무협의회, 정책제안대회, 국내외 정책분석
▼		
2차년도 (2024년)	목적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 파악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방안 모색
	주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학습 및 교육지원
	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실무협의회, 정책 포럼, 정책제안대회, 해외사례연구 등
▼		
3차년도 (2025년)	목적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 파악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방안 모색
	주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심리·사회적응
	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실무협의회, 정책 포럼, 정책제안대회, 해외사례연구 등

그림 1-2. 본 연구의 연차별 주요 내용 및 방법

2023년 연구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지원의 근거마련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방안 연구의 첫 번째 해이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연도별 핵심주제와 더불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 실태 분석

두 번째로 2023년 연구의 주제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영역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실태는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형태로 추진하였다. 고졸 이후 대학진학자, 취업자, 니트 등 진로별 생활실태를 파악하되, 이주배경청소년의 하위 유형의 특성별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는데, 첫째로, 문헌분석에서는 기존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진로, 노동 및 취업, 체류, 한국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로, 2차 자료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가정경제수준, 교육 수준, 거주지역, 체류자격, 한국어 수준 등 배경변인과 희망교육수준, 장래희망직업, 진로의식, 직업훈련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근로시간형태, 노동의 부당행위 및 부당처우 경험, 구직활동 등 진로, 직업 및 자립과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로 면접조사에서는 유형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 지원정책 경험여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태도와 정책적 요구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및 자립의 장애요인 등을 함께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및 체류자격 분석

세 번째로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북한이탈주민지원계획 등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및 각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분석하였고, 일반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인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분석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진로교육활성화방안 등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계획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국적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안정적 삶과 진로계획의 필수요건인 체류자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네 번째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해외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정착사례에 포함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으로, 이 5개국을 선정한 이유는, 이민의 역사가 길고, 이민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MIPEX(이민자 통합지수)의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상위에 랭크된 국가들이라는 점이었다. 분석의 주제는 각국 이민의 역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취업 등과 관련된 지원정책현황,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자격 부여 및 노동허가 기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5)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노동 및 자립실태 관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

다섯 번째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분석,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면접조사결과 등에서 나타난 함의를 분석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통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일반국민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로 도출하였으며, 최종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청년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정책과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문헌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범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사회통합정책의 관점에서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고,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 중 진로, 노동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셋째,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및 일반국민 대상 관련 정책현황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 정책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추진되었다. 첫째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적응 및 생활실태와 현황, 그리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둘째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성 도출을 위한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과 관련하여 설문 문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질문방식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셋째는 면접조사 질문지 구성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넷째는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정책과제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횟수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면 자문을 포함하여 총 13 회였다.

표 I -1.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현황

회차	날짜	주제	이름(소속)
1	3/2(목) 오전 10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와 주요 이슈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신현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전경숙(평택대학교, 교수)
			허승연(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 단장)

회차	날짜	주제	이름(소속)
2	3/2(목) 오후 2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와 주요 이슈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승미(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장인숙(남북하나재단, 조사평가팀장)
3	4/5(수) 오후 2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정기선(서울대학교, 연구교수)
4	4/13(목) 오전 10시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에 북한배경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근거 및 후기청소년기 북한배경 청소년의 생활실태	윤동주(우리들학교, 교장)
			윤상석(공존플랜, 연구원)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장인숙(남북하나재단, 조사평가팀장)
5	4/26(수) 오후 2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년정책의 방향성모색 및 노동실태의 주요이슈	김부경(국민통합위원회, 사회적약자팀장)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6	5/3(수) 오후 4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사회진출 실태 (서울지역)	권민경(전, 이주민센터친구 레인보우스쿨 담당자)
			신혜영(이주배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투스프카 센터장) 조한비(화원종합사회복지관, 레인보우스쿨 담당자) 함지희(전,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레인보우스쿨 담당자)
7	5/16(화) 오전 10시	레인보우스쿨 현황 및 지역사회의 연계현황	박연옥(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사업운영부장)
			이지은(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개발협력부장)
8	5/16(화) 오후 2시	후기청소년기 생활 및 진로실태와 정책방안 (경상, 전라, 충청, 경기)	김소현(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손은숙(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 양대성(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임혜광(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교육진로팀, 과장)
9	6/5(월) -6/9(금)	면접조사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서면)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김지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희진(계명대학교, 교수) 윤상석(공존플랜, 연구원)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승미(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장인숙(남북하나재단, 조사연구팀장)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서리(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	6/8(목) -6월13(화)	설문조사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서면)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박경태(성공회대학교, 교수)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혜경(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임동진(순천향대학교, 교수)

회차	날짜	주제	이름(소속)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경숙(평택대학교, 교수)
			정기선(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정동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건수(강원대학교, 교수)
			황정미(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11	6/15(목) 오전 10시 반	후기청소년기 생활 및 진로실태와 정책방안 (경기지역)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이승미(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하승연(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 단장)
			한경은(군서미래초등학교, 교감)
12	6/15(목) 오후 5시 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유형별 진로지도	송래원(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함성민(안산 원곡고등학교, 교사)
13	10/20(금) -10/24(화)	최종 도출된 정책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서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김사강(이주와연대, 연구위원)
			신혜영(이주배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투스프카 센터장)
			윤상석(공존플랜, 연구원)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승미(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하승연(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 단장)

3) 양적 연구

본 연구에서 양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조사한 각종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2차 자료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2차 자료 분석

후기청소년기(1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은 현재 상태에서 모집단 정보가 없고, 대표성 있는 표집을 위해서는 대안적으로 최대한 다수의 인원을 조사에 포함시켜야 하나,

본 연구의 예산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하위유형을 모두 포함한 대표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존에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해당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포함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하위 유형을 모두 포함한 조사로는 2021년 여성가족부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발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 4,078명 중 19세에서 24세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이 487명에 불과하였고, 유형별로 나누면 각 유형별 표본수가 더 적어져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후기청소년기 하위 유형과 관련된 기존의 승인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2차 자료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21),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2022),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1) 등 총 4개의 데이터였다. 이 중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문항의 배경특성과 진로 및 노동, 자립지원과 관련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의 포함 연령은 19세에서 24세의 범주만을 선정하였고, 포함유형은 서로 다르나 조건을 일치시킨 후 각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I-2. 2차 자료 분석 데이터 목록

조사명	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2021)	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1)	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21)	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1)
조사 기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여성가족부	남북하나재단	여성가족부
표본수	487명	891명	152명	2,320명
포함연령	19-24세	19-24세	19-24세	19-24세
포함 유형	• 국제결혼가정청소년 • 외국인가정청소년 • 북한배경청소년	• 국내에서만 성장 • 외국거주 경험 • 외국주로 성장	• 북한배경청소년	• 일반청소년

* 주: 위에서 제시한 표본 수는 해당조사의 참여 인원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연령 및 배경에 해당하는 표본에 해당하는 수치임.

* 출처: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원자료.
 2) 여성가족부 (2021a).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3) 남북하나재단 (2022). 202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원자료.
 4) 여성가족부 (2021b). 202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2)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두 번째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과 달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연령이 성인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국적자의 장기거주 및 그에 따른 정책방안 등이 아동에 대한 인식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인식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체류자격 및 취업허용에 대한 태도를 연령집단(19세 미만, 19세~24세)과 체류상태(합법, 비합법)에 따라 각각 질문하고 비교분석하였다.

표 I -3. 국민 인식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2023년 7월 기준 제주를 제외한 전국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의 일반 국민	
표집틀	통계청 2021년 기준 집계구	
표본수	1,537명	
표집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	
조사시기	2023년 7월	

4) 질적 연구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과제인 만큼, 후기청소년기의 이주배경청소년과 현장전문가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7개 하위유형별로 섭외를 하여 각 청소년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과 남한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해당 연령에 달하는 대상자의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고 아래의 <표 I -4>에 제시한 5개 하위유형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연령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20대 후반까지도 면접조사에 포함함으로써 청년연령의 생활실태를 좀 더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연구 경력이 많은 연구자 및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지도경험이 풍부한 현장전문가, 학교교사 및 연구자들도 면접조사의 대상에 포함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 -4.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청소년: 지역별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 현장전문가, 교사, 연구자: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학교, 연구원 등				
면담참여자 수	○ 청소년: 60명 ○ 현장전문가, 교사, 연구자: 16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하위 유형별 성별, 진로 유형별 조사				
	하위유형	대학생	취업자	구직자 (NEET)	합계(명)
	1.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4	4	3	11
	2.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4	4	2	10
	3.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6	4	4	14
	4. 북한출생청소년	4	4	3	11
	5.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6	4	4	14
	합계	24	20	16	60
	○ 현장전문가 및 교사: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교사, 및 연구자				
	전문영역	인원수(명)			
1. 외국배경청소년	8				
2. 북한배경청소년	8				
합계	16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집단면담(FGI)				
면담 시간 및 횟수	1시간 30분~2시간				
면담 시기	2023년 7월 ~ 2023년 8월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취 후 분석				
면담자	내부 연구진				

5) 해외사례연구

해외사례연구는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총 5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이민의 간략한 역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정책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별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활용하였고, 집필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1 -5. 해외사례 분석대상 국가 및 집필자 명단

연번	국가	이름(소속 및 직위)
1	프랑스	김다솔(파리8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2	독일	최영미(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3	스웨덴	홍희정(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4	캐나다	강혜정(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5	호주	임동진(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6) 기타 연구방법

그 외 기타 연구방법으로 정책실무협의회, 콜로키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실무협의회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인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과 추진하였다. 각 부처별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주제관련 부처별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표 1 -6. 정책실무협의회 개최실적

차수	주요내용	협의부처 및 참석 공무원	개최시기
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관련 여성가족부의 정책실태 및 요구도 파악	• 송지은(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 • 조 린(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장) • 김지연(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 박효련(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 • 원철연(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주무관)	6.21(수)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관련 교육부의 정책실태 및 요구도 파악	• 정윤경(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 전강섭(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 김수정(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주무관)	6.22(목)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관련 법무부의 정책실태 및 요구도 파악	• 이승현(법무부 이민통합과, 과장) • 전강섭(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무관) • 이주호(법무부 이민통합과, 주무관) • 정정래(법무부 이민통합과, 주무관) • 박래식(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7.4(화)

(2) 콜로키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1차는 2023년 5월 10일 ‘대만 신주민 2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고, 2023년 8월 7일 ‘프랑스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2차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표 1-7. 콜로키움 개최실적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개최시기
1회	대만 신(新)주민 2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	문경연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5.10(수)
2회	프랑스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김다솔 (파리8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8.7(월)

(3) 정책제안대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담당공무원이나 연구자뿐 아니라 현장전문가, 학교교사, 자원봉사자 등이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자가 이를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책제안대회를 통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정책제안대회는 2023년 8월 11일(금) 개최하였다. 추진일정과 추진절차, 제안서 제출현황 및 최종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정책제안대회 추진일정

- 2023년 6월 1일(목) ~ 6월 30일(금) : 정책 제안서 접수
- 2023년 7월 3일(월) ~ 7월 14일(금) : 1차 심사(서면 심사)
- 2023년 7월 17일(월) ~ 7월 21일(금) : 2차 심사(전문가 심사)
- 2023년 7월 24일(월) ~ 7월 28일(금) : 최종 심사 및 선정 확정
- 2023년 7월 31일(월) : 최종 심사 및 선정 확정
- 2023년 8월 1일(화) : 최종 수상작 발표
- 2023년 8월 11일(금) : 정책제안대회 개최 및 시상식



그림 1-3. 정책제안공모전 포스터



그림 1-4. 정책제안대회 포스터

□ 정책제안대회 제안현황 및 수상작 선정절차

최초 정책제안서는 총 66개가 접수되었으나, 1차 서면심사를 통하여 정책제안대회의 기획 의도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간략하여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제안서를 제외하고 44개를 선정하였다. 2차 심사에서는 44개 제안서 중 우수제안서 10편을 선정하였고, 3차 심사에서는 2차에서 선정된 10편을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7편을 선정하였다.

표 1-8. 정책제안대회 단계별 제안서 접수 및 수상작 선정절차

절차	제안서 접수 현황 및 선정결과	비고
제안서 공모 및 접수	총 66개 제안서 접수	
1차 심사(서면심사)	총 66개 중 44개 선정	내부전문가 4명 심사
2차 심사(오프라인 심사)	44개 제안서 중 우수 제안서 10편 선정	외부전문가 5명 심사
3차 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우수제안서 10편 중 최종 수상작 선정	외부전문가 5명 심사
최종 선정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7편	

□ 정책제안대회 제안과제 주제별 현황

정책제안대회 제안과제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진로, 취업, 노동 및 자립지원방안과 관련된 주제가 48개, 사회통합방안이 18개였다. 진로, 취업, 노동 및 자립지원방안 중 외국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안서가 17개였고, 북한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2개, 두 집단 모두를 포함하는 제안서가 29개였다. 사회통합방안 중에서는 외국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5개, 북한배경청소년 대상이 2개, 둘 다 포함한 것이 11개였다.

표 1 - 9. 정책제안대회 제안과제 주제별 현황

주제	대상	제안서 수	소계
진로, 취업, 노동 및 자립지원방안	외국배경청소년	17개	48개
	북한배경청소년	2개	
	둘 다 포함	29개	
사회통합방안	외국배경청소년	5개	18개
	북한배경청소년	2개	
	둘 다 포함	11개	
계		66개	

□ 정책제안대회 제안과제 최종 수상작

최종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대상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자립센터 운영’이었고, 최우수상 ‘레인보우 케어’, 우수상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전문직 취업 장려프로그램’이 수상을 하였으며, 장려상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총 7개의 과제들이 수상하였다.

표 I -10. 정책제안대회 제안과제 최종 수상작 명단

수상	이름	제안서 제목
대상(1팀)	변경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PICI센터(진로자립센터) 운영
최우수상(1팀)	정윤서, 서정호	레인보우 케어 (RAINBOW CARE)
우수상(1팀)	김민구, 김세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전문직 취업 장려 프로그램
장려상(7팀)	김주의,	다문화, 비(非)다문화 후기청소년의 창업을 위한 공동 캠프 프로그램
	기영학, 이정설, 김철옥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사회통합 지원체계 구축
	김범년	이주배경청소년 전담 3+2 P-TECH 교육모델 구축
	손규태	다문화 후기청소년(성인) 특화 일학습 병행
	박소이, 오은정, 김소연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원스톱 멘토링 '같이'
	조용환, 김희진, 이영은	이주배경청소년 사회 진입 모델 "내꿈에 레벨업 & 더하는 인턴십"
	오유빈, 신가영, 이정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자립 역량 강화 '다원카드' 지원

(4)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모니터링단 구성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총 5명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최종 정책과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 -1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단

청년	성별	연령	이주배경유형	현재국적	한국거주기간	현재 하는 일
1	남	24	국제결혼가정	한국, 태국	24년	대학생
2	남	27	국제결혼가정	한국(귀화)	16년	법무법인 팀장
3	남	27	국제결혼가정	중국	9년	대학생
4	여	27	외국인가정	우즈벡	8년	이주민 자원기관 직원
5	여	26	북한출생	한국	7년	공공기관 계약직
6	남	22	북한출생	한국	4년	대학생

5. 보고서 구성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2.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장	절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보고서 구성
II.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범주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3. 사회통합정책과 이주배경청소년
I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 실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 실태 2. 기존 실태조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3. 면접조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4. 요약 및 소결
IV. 국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	1. 분석 개요 2.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3.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4. 요약 및 소결
V.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	1. 분석 개요 2. 조사결과 3. 요약 및 소결
V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 도출 절차 2.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범주
-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 3. 사회통합과 이주배경청소년

1.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범주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으로 여기서의 ‘이주’는 국경을 넘는 이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이주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양계민 외, 2020: 21). 따라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출신인 가정의 자녀와 북한출신 가정자녀를 모두 포함하며, 그들이 지닌 체류자격이나 국적, 출생지와 상관없이 다음의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양계민 외, 2020: 21).

표 II-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

본인출생지	국내출생	국외출생
부모배경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②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본인출생지	남한출생	남한 외 출생
부모배경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⑤ 남한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⑥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가정		⑦ 제3국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 출처: 양계민 외(2020: 22) <표 1-8> 수정

3) 2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여기에 제시한 7개 유형은 이론적 구분으로, 사실상 현실은 더 복잡한 유형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양계민 외(2020)는 청소년 자신의 출생과 부모의 배경에 따라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포함대상 및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출신인면서 본인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 한국국적적이고, 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매우 혼용되고 있는 용어로, 외국배경의 이주배경청소년, 즉 아래의 표에서 ①~④까지의 청소년들을 다문화청소년이라고 개념화하기도 한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이들을 다문화학생이라고 지칭하며 외국배경자를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이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대상으로 범주화되고 정책적 지원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됨에 따라 현장에서 이들을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국적을 지닌 한국인이기 때문에 법적지위나 국민대상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두 번째 범주인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출신이나 본인의 출생지가 외국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한국에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귀화를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외국의 국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도 하는데, 성장기에 입국했다는 의미로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지칭된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용어 역시 지역 현장에서는 외국인가정 자녀도 포함하여 지칭하기도 하여 역시 혼란이 있는 용어이다. 이들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을 한 이후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입국연령에 따라 한국사회 적응의 수준이 다르고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서 법적 지위와 지원 대상 포함 여부가 서로 다르게 나누어진다.

세 번째 범주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인 가정의 자녀로 본인의 국적 역시 외국인이며, 여기에는 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한국에서 출생하여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생활 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고, 외모에서 한국인과 차이 나지 않는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인과 구분되지 못하기도 한다.

네 번째 범주인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고 본인도 외국국적이며 외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집단으로 세 번째 범주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난민, 유학생, 유학생자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의 동포자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체류가 안정된 경우도 많으나

외국에서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입국했기 때문에 한국어나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네 가지 유형은 부모가 외국출신인 경우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 이외의 북한배경을 지닌 청소년도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한다.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는 본인의 출생지가 남한인 경우와 북한인 경우, 그리고 제3국인 경우로 나뉜다. 보통 우리가 흔히 북한배경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본인이 직접 탈북을 한 아동청소년으로 아래의 범주 중 ⑥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으로 탈북을 한 후 외국에서 결혼 후 자녀를 출생하여 데리고 온 ⑦에 해당되는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직접 탈북을 한 경우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입국을 하여 한국어가 서툴고 중국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등, 북한출생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학교 등 현장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남한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본인의 출생지가 남한인 경우로,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고 한국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 유형은 남한에서 출생한 한국인이지만 부모가 탈북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한출생 북한배경청소년 역시 다른 북한배경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에서 이주가정의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북한배경청소년 연구자들의 의견에 근거할 때 이주배경청소년의 큰 틀 내에서 이들의 성장 및 발달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생활 및 적응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다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위에서 제시한 정의와 하위유형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집단은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동반하여 미성년 시기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성장한 집단’으로서, 유학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단독 입국한 경우는 동일한 연령이라 할지라도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 II-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하위범주별 포함대상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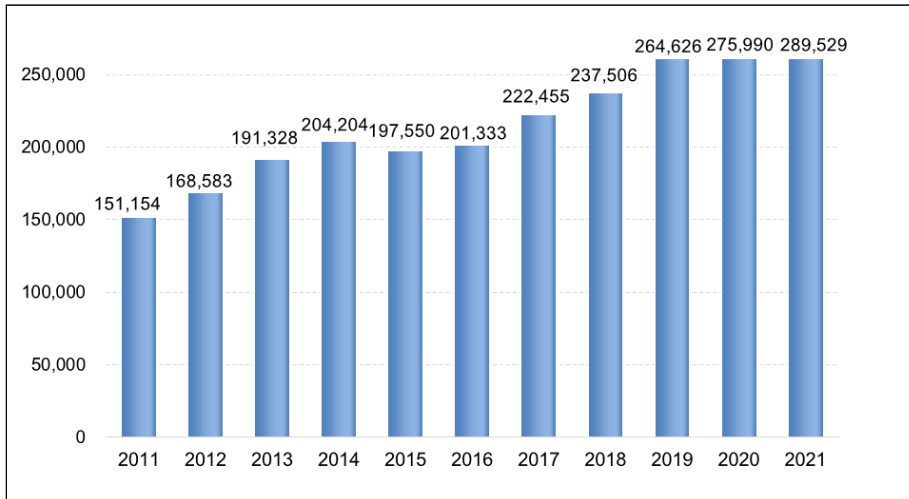
하위 범주		포함 대상 및 특성
외국 배경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 국내출생자이며 한국인 ■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②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 외국출생자로 어느 정도 성장 후 한국에 입국 ■ 귀화를 통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모두 존재 ■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가정 자녀 ■ 본인의 국적은 외국 ■ 동포자녀, 외국인노동자자녀, 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자녀 포함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가정 자녀 ■ 본인의 국적은 외국 ■ 동포자녀, 외국인노동자자녀, 미등록, 난민, 유학생, 유학생 자녀 포함.
북한 배경	⑤ 남한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가정의 남한출생 자녀
	⑥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 북한에서 출생한 후 탈북한 아동· 청소년
	⑦ 제3국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 ■ 남한,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 ■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함.

* 출처: 양계민 외(2020: 24) <표 1-9> 수정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1)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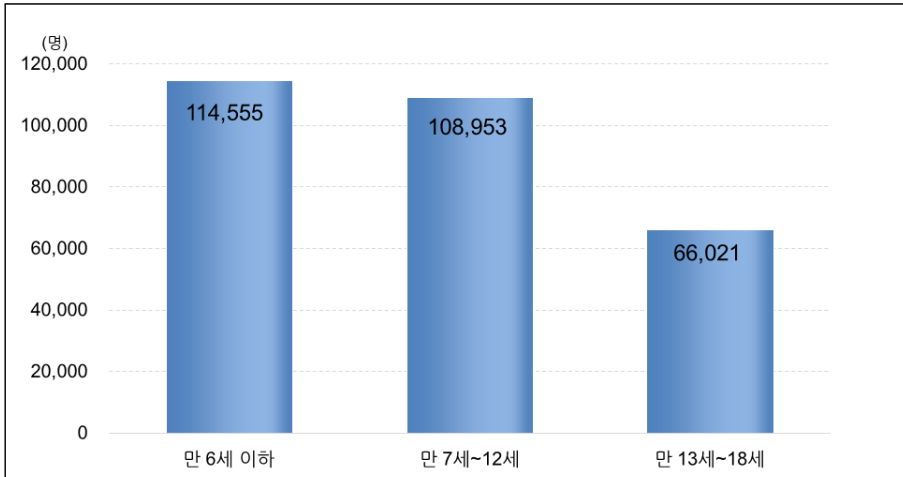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과 교육부의 다문화학생현황이 대표적인데, 두 통계의 조사특성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국 기준 289,529명으로, 아래 [그림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에 집계된 대상은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자인 국제결혼가정자녀들로 <표 II-2> 중 ①, ②번에 해당된다. ⑦의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 가정들의 경우, 이 범주에 포함되어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출처: 행정안전부 (2022.10.3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II-1. 외국인주민자녀 규모(행정안전부, 2011-2021)

이를 감안하고 보았을 때, 아래의 [그림 II-2]와 같이 여전히 취학 전 연령인 만 6세 이하가 114,555명으로 가장 많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도 108,953명으로 과거에 비하여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만 13세에서 18세는 중고등학교 연령의 인구로 66,021명인데, 이 역시 과거에 비하여 매우 많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다.



* 출처: 행정안전부 (2022.10.3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II-2. 2021년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규모(행정안전부, 2022)

교육부 통계에도 다문화학생의 수는 역시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부 통계에는 본 연구의 범주 중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하위 유형 기준의 범주로 보자면 행정안전부의 통계보다 더 넓은 범주의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통계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집계하는데 한계점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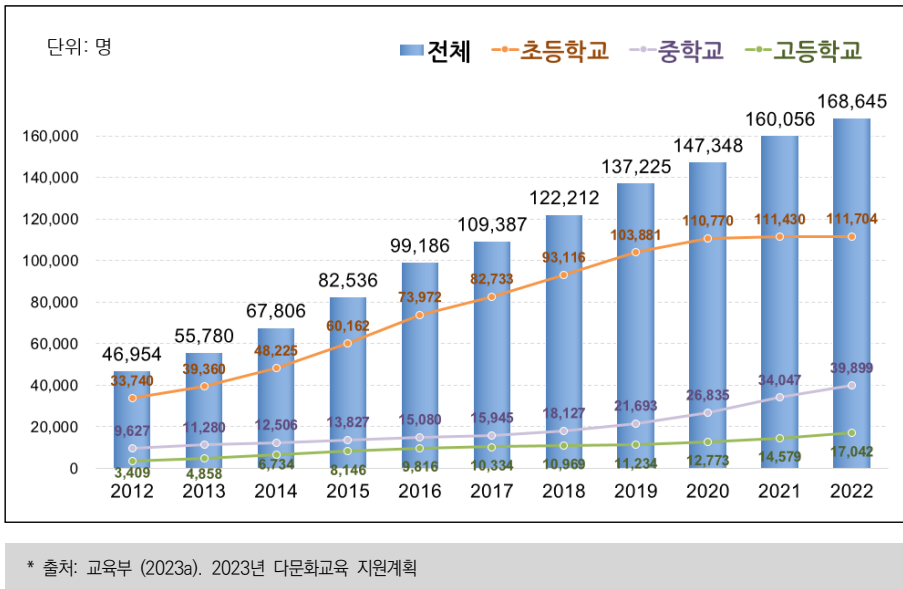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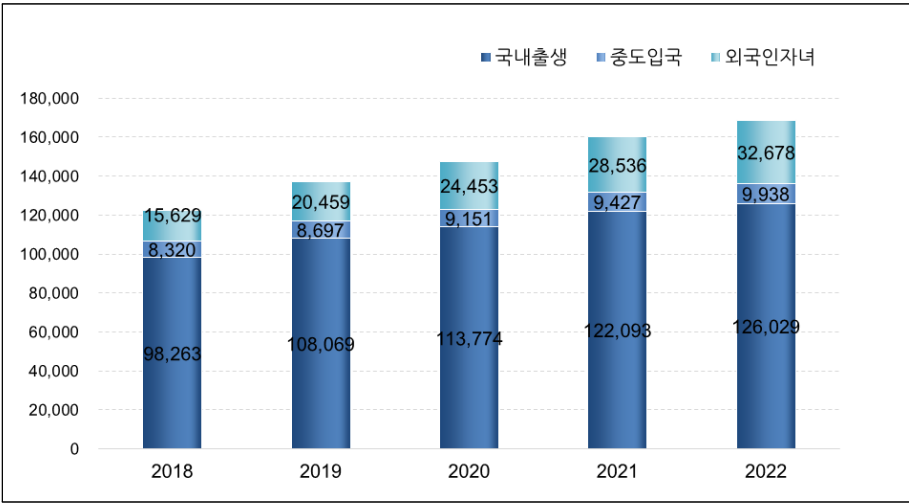


그림 II-3. 다문화학생의 규모(교육부,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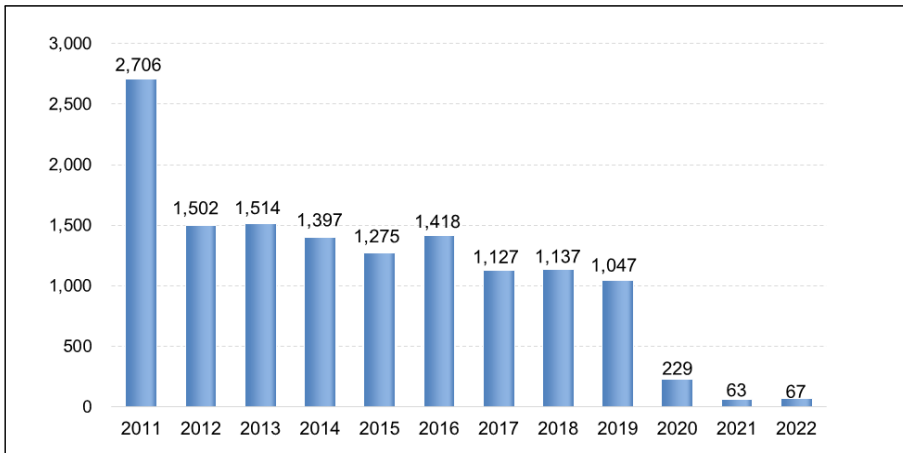
다문화학생의 하위유형별 규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가정자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에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외국국적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향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19세 이상이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체류의 문제 등 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출처: 교육부 (2023a). 2023년 다문화교육 자원계획

그림 II-4. 다문화학생의 하위유형별 규모(교육부, 2018-2022)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아래의 [그림 II-5]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2020년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폐쇄로 탈북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론되며, 당분간 이 숫자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출생자의 통계는 통일부가 생산하고 있고 연령별 자료도 통일부에 있지만, 공표 시에는 10세 단위로 묶어서 공개하기 때문에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정확한 연령별 인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계에 비하여 규모도 적고, 한국 입국 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데이터 자체는 비교적 정확하게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배경의 청소년들의 규모는 외국배경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출처: e-나라지표,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에서 2023.10.1. 인출

그림 II-5.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통일부, 2022.12기준)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개념화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통계는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후기청소년기 연령대인 19세에서 24세의 범주에 속하는 집단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집단은 18세 이하의 미성년 집단에 대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하여 부모의 배경에 따른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의 경우 역시 고등학교 재학생까지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 이후의 연령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의 연령이 아닌 교급별 인원수를 통계로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령별 인구수는 더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매년 연령별로 공표하기 때문에 연령별 인구수 파악이 조금 용이하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0세 단위로 공표하고 있어서 공표자료 만으로는 19세에서 24세 연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구수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은 해 볼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연령을 알 수 있는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으로, 2023년 현재 19세에서

24세의 연령에 달하는 인구는 2017년 기준 13세에서 18세에 속했던 집단이다. 그러므로 2017년 조사시점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의 자료를 기준으로 외국인주민자녀 중 13세에서 18세의 연령에 속한 인구수를 모두 합하면 총 31,013명이 된다(행정안전부, 2018). 이 숫자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응답한 북한배경청소년 중 19세-24세의 인구를 취합하면 1,160명이다(남북하나재단, 2022). 이 두 통계의 숫자를 합하면 32,173명인데,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가정자녀를 감안하면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32,173명이라는 수치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최소 수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국적자이기 때문에 원할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본국의 국적을 소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통계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 상황에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추정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표 II-3. 2023년 현재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 규모추정

배경	외국배경		북한배경		계
하위유형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북한출생	제3국출생	
인원수	31,013명	-	1,160명	-	32,173명

후기청소년기, 나아가 청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책방안 마련의 기초는 정책대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통계청의 이주배경청소년 집계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앞서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자녀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국내 아동·청소년들이 가구별로 집계되는 것과 달리 개인별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어서 미성년자의 경우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19세 이상의 경우는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노동자 등과 섞이기 때문에 역시 후기청소년기 연령대의 이주배경청소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종합하면, 향후 근거기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숫자와 규모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산출이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사회통합과 이주배경청소년

1)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의 개념은 연구자와 각 사회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통일된 하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가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민주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그 사회가 선택한 준거 틀(reference frame)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데(EU, 2004; 이재열 외, 2014: 120, 재인용),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준거 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해식, 2014: 김성근, 2018: 26 재인용).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한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I-4>와 같다. <표 II-4>는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정의로, 이재열 외(2014)의 연구와 김성근의 연구(2018)에 제시된 내용들이다. 각 정의들이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 평화로운 관계, 배제화와 주변화 극복, 상호 간의 호혜적 관계 등을 공통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통합이 결여된 상태를 ‘갈등과 배제’라고 할 수 있으며(이재열 외, 2014: 117),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과 배경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갈등과 배제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양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갈등은 한 국가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신과 더불어 인종적, 언어적 갈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Rodrik, 1998: 150; 이재열 외, 2014: 120 재인용). 따라서 우리 사회도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신의 차원뿐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종적, 언어적 갈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갈등은 국가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주민의 문제는 곧 선주민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4. 사회통합의 정의들

연구자 및 단체	사회통합의 정의
Lockwood(1964)	개인이나 집단 간에 갈등적이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Habermas(1987)	생활세계 수준에서 사회규범, 개인의 정체성, 문화적 의미 등에 대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
Giddens(1984)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상에서 행위자나 집단들 간에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EU(2004)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소속된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이나 기회를 보장하는 과정
OECD(2011)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배제와 주변화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소속감을 만들어 내고 구성원에게 사회적 상향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응집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상태
노대명 외(2009)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상태

* 출처: 이재열 외(2014: 117)의 [표 1]과 김성근(2018: 26-27)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인용 및 정리함.

2) 이민자와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개념은 이민의 상황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사회통합은 이주국 사회와 이민자가 개인과 집단으로 상호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 적응과정은 일방적 인정이나 관계형성이 아닌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쌍방향적 소통 및 적응과정이다(김현숙, 2021: 39). 즉, 이민정책에서의 사회통합은 이주민이 이주국에 일방적으로 동화 및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인정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정동재, 2019: 57). 이와 관련하여 김현숙(2021: 40)은 ‘이민자 사회통합의 정책은 참여, 공존, 쌍방향 의사소통, 인정 등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정책이 설계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 이민자통합지표(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이다. 이민자통합지표 작성은 2004년 처음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EU의 15개국만이 참여를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전 세계 56개국이 참여

하는 전 세계적인 지표로 확장되었다. 이민자통합지표는 8개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8개의 핵심지표는 노동시장 이동성(Labour market mobility), 가족 재결합(Family reunion),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영주거주(Permanent residence), 교육(Education), 보건(Health), 국적취득 접근성(Access to nationality), 그리고 반차별(Anti-discrimination)이다. 각 핵심지표가 지향하는 정책지표는 다음의 <표 II-5>와 같다.

표 II-5. MIPEX 8개 핵심지표별 정책지표

핵심지표	정책지표
노동시장 이동성 (Labor market mobility)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얻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가족 재결합 (Family reunion)	이민자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일이 얼마나 용이합니까?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이민자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부여됩니까?
영주거주 (Permanent residence)	이민자들이 얼마나 쉽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육 (Education)	교육 시스템이 이민자 자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보건 (Health)	의료 시스템이 이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국적취득 접근성 (Access to nationality)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합니까?
반차별 (Anti-discrimination)	모든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민족, 종교, 국적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 출처: MIPEX 2020 (n.d.). Anti-discrimination. <https://www.mipex.eu/anti-discrimination> (2023.10.27. 검색)

노동시장 이동성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지 여부’이고, 가족 재결합은 ‘이민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참여는 ‘이민자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부여되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영주거주는 ‘이민자들이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의 용이

성', 교육 지표는 '교육시스템이 이민자 자녀에게 적합하게 제공되는지', 보건 지표는 '의료시스템이 이민자들에게 맞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국적취득 접근성은 '이민자가 시민권을 얼마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지의 수준'이며, 마지막으로 반차별은 '모든 사람이 삶의 영역에서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정도'를 말한다.

2020년 조사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56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동시장 이동성 영역의 1위는 포르투갈, 2위 핀란드, 3위 스웨덴이었고, 한국은 13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둘째로 가족 재결합 영역은 1위가 브라질 2위가 캐나다, 3위가 포르투갈이었으며, 한국은 33위로 중간보다 낮은 순위였다. 셋째, 정치참여 영역은 1위가 핀란드, 2위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뉴질랜드 3개국 공동이었으며, 넷째, 영구거주 영역은 공동 1위가 브라질과 핀란드, 3위가 스웨덴, 멕시코, 우크라이나 3개국이었다. 다섯째는 교육영역으로 1위가 스웨덴, 2위가 핀란드, 3위가 캐나다였으며, 한국은 전체 56개국 중 8위로 높은 편이었다. 여섯 번째 보건 영역은 1위가 아일랜드, 2위가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3개국이었고, 한국은 3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일곱 번째로 국적취득 접근성의 경우는 1위가 뉴질랜드, 2위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4위가 캐나다와 미국이었으며 한국은 28위로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차별 영역은 1위가 남아프리카, 스웨덴, 벨기에, 포르투갈, 캐나다, 핀란드,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등 총 7개국 공동이었고, 8위가 미국이었으며, 한국은 43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표 II-6. MIPEX 8개 정책 영역별 순위(전체 56개국)

 노동시장 이동성 (Labour market mobility)	
순위	국가
1	 포르투갈
2	 핀란드
2	 스웨덴
4	 노르웨이
5	 독일
6	 캐나다
7	 미국
7	 에스토니아
9	 브라질
9	 스페인
9	 이탈리아
13	 한국

 가족 재결합 (Family reunion)	
순위	국가
1	 브라질
2	 캐나다
3	 포르투갈
4	 에스토니아
5	 인도네시아
5	 인도
7	 뉴질랜드
8	 슬로베니아
9	 스웨덴
10	 아르헨티나
10	 스페인
33	 한국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순위	국가
1	 핀란드
2	 룩셈부르크
2	 아일랜드
2	 뉴질랜드
5	 포르투갈
5	 스웨덴
5	 노르웨이
8	 덴마크
9	 한국
9	 아이슬란드
9	 호주
9	 벨기에

 영구거주 (Permanent residence)	
순위	국가
1	 브라질
1	 핀란드
3	 스웨덴
3	 멕시코
3	 우크라이나
6	 헝가리
6	 남아프리카
8	 칠레
9	 아이슬란드
9	 캐나다
9	 슬로베니아
27	 한국

 교육 (Education)	
순위	국가
1	 스웨덴
2	 핀란드
3	 캐나다
4	 미국
5	 호주
6	 뉴질랜드
7	 벨기에
8	 한국
9	 노르웨이
10	 포르투갈
10	 에스토니아

 보건 (Health)	
순위	국가
1	 아일랜드
2	 스위스
2	 스웨덴
2	 뉴질랜드
5	 스페인
5	 오스트리아
7	 호주
7	 이탈리아
7	 미국
10	 영국
10	 노르웨이
36	 한국

 국적취득 접근성 (Access to nationality)	
순위	국가
1	 뉴질랜드
2	 아르헨티나
2	 브라질
4	 캐나다
4	 미국
6	 포르투갈
7	 스웨덴
8	 룩셈부르크
8	 아일랜드
10	 호주
10	 알바니아
28	 한국

 반차별 (Anti-discrimination)	
순위	국가
1	 남아프리카
1	 스웨덴
1	 벨기에
1	 포르투갈
1	 캐나다
1	 핀란드
1	 북마케도니아
1	 불가리아
8	 미국
9	 루마니아
9	 헝가리
43	 한국

* 출처: <https://www.mipex.eu/> 에서 2023.3.9. 인출하여 재구성하여 제시함

표 II-7. MIPEX 8개 핵심지표별 한국의 순위

번호	핵심지표	한국의 순위
1	노동시장 이동성(Labour market mobility)	13위
2	가족 재결합(Family reunion)	33위
3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9위
4	영주거주(Permanent residence)	27위
5	교육(Education)	8위
6	보건(Health)	36위
7	국적취득 접근성(Access to nationality)	28위
8	반차별(Anti-discrimination)	43위

* 출처: <https://www.mipex.eu/> 에서 2023.3.9. 인출한 자료를 재구성함.

이상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의 경우 교육(8위)과 정치참여(9위)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 수준에서 봤을 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재결합과 보건, 반차별의 영역은 30위 이하이며, 특히 반차별 영역이 56개국 중 43위인 것은 우리의 이주배경정책이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OECD(2015)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를 단순히 경제나 노동시장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교육 및 공간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다차원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현숙, 2021: 39). 이는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서는 안되고,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응이나 교육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을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들을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하거나 소멸되는 지방을 살리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근간으로 한 평화로운 관계, 배제화와 주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호혜적 관계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 제3장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 1. 선행연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 2. 기존 실태조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 3. 면접조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 4. 요약 및 소결

본 연구의 핵심내용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를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하여 세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였고,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범주에 속하는 대상자들을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셋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내용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⁴⁾

1)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당초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19세-24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국내학술연구, 학위논문, 연구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했으나, 기존 선행연구들 중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연령인 19세-24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 한 연구에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과 연령범주를 포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연령 대상자들이 포함된 연구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북한 배경을 포함한 탈북청년, 탈북이주청소년, 제3국출생 등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 및 수집하였다. 분석에

4) 3장의 1절은 이영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포함된 자료의 목록은 <표 III-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분석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계민 외(2020: 22)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제시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으로 연구대상을 명세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실태이므로,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 지원 실태, 체류자격, 한국어 영역의 주제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체류자격과 한국어의 경우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정착에도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분석 결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 지원 실태, 체류자격, 한국어 영역을 다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리스트 및 주요 내용

제목	저자 (연도)	연구대상	주요 결과 및 실태 (진로, 취업, 자립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서덕희, 김은석 (2015)	· 국내출생 국제 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 결혼가정, 국내 출생 및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 중도입국청소년 중 국적을 취득한 경우 약 20%, 미취득 60%는 체류가 불안정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임 · 입국 목적은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온 경우'가 과반수가 넘었고 '취업 및 진학'의 경우 10% 정도임. ·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한국어 능력이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였으며 하고 있는 일의 거의 절반이 한국어 공부이고 소수만이 진학과 취업을 하고 있음 · 진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부모, 학원, 지인, 이주민커뮤니티를 활용 · 진로 관련 지원은 선배의 조언,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 현재 직업인의 조언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힘 · 진로요구로 직업 및 취업 정보, 진로상담, 직업 체험 등의 진로교육과 일상생활 한국어 외에도 직업 관련 전문 한국어와 모국어, 영어교육 등을 필요로 함.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성향과 그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탐색	서덕희, 조은혜 (2017)	· 국외출생 국제 결혼가정, 국외출생 외국 인가정자녀	· 진로성향을 자기주도 현재형, 자기주도 미래형, 타인주도 현재형, 타인주도 미래형으로 구분함. · 진로성향의 차이를 유발하는 생태학적 조건으로 부모의 관심과 지원, 학력, 또래와의 교류경험, 한국어 능력, 체류기간, 직업에 대한 이해정도 등이 나타남.

제목	저자 (연도)	연구대상	주요 결과 및 실태 (진로, 취업, 자립지원)
한국 내 후기 이주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연구	이수정 (2017)	· 국내출생 및 국외출생 국 제 결혼 가정, 국외출생 외 국인 가정 자녀 · 남한출생 북한 배경청소년	· 여성가족부의 후기 이주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으로 레 인보우스쿨,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꿈을 Job 아라,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 등 존재 · 교육부의 후기 이주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 대학 수시입학 전형 지원, 시도 교육청 위탁형 다문화 대안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다문화가정 중도 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책 계획에 관한 탐색 적 연구	전경숙 (2017)	· 국외출생국제결 혼 가정 자녀, 국 외출생 외국인 가정 자녀	· 진로 계획, 진로 준비와 선택에 대한 정보 부재, 불안정한 체류자격,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함. · 진로의식과 진로계획에 따라 한국 정착여부 결정 · 비자발적 선택에 의한 입국 후 심리·사회적응의 어려움 · 가족관계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존재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및 개선 방향 : 중도입국한 후기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중심 으로	노승인 (2018)	· 국외출생국제 결혼 가정 자녀	· 정체성의 확립기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문제(54.5%)와 목표의식 및 꿈의 부재(20.9%) ·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어려 움이 존재 · 불안정한 심리 및 정서적 문제는 사회와 학교생활의 질과 행태에 영향을 미침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황복선 (2019)	· 국외출생 국제 결혼 가정 자녀	·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이 낮아지며, 안정적인 체류유형을 가질수록 진로의사결정이 높음 · 사회정체성이 높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 는 진로의사결정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짐. · 진로장벽이 낮아지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 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 · 진로의사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어야 함.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강남 (2019)	· 국외출생 국제 결혼 가정 자녀, 국외출생외국 인 가정 자녀	· 자립과정에 나타난 어려움으로 이주배경이 고려되지 않는 입시위주 학교문화, 한국어 능력 부족, 학력·기술·자격증 부재로 인한 낮은 직업적 지위, 부모세대 노동의 대물림,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자립전략으로 정규학교 대신 대안학교로의 진학, 대학보다 취업, 한국어 능력 강화, 다문화 관련 기관 이용 · 안정된 체류자격은 취업을 넘어 한국사회 거주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적 요건임. · 관련 기관 및 대안학교를 통한 공적·사적 지지와 관심은 사회 정착의 자원으로 활용

제목	저자 (연도)	연구대상	주요 결과 및 실태 (진로, 취업, 자립지원)
중도입국 청소년 의 진로계획 경험 연구	유진아, 소하섭 (2019)	· 국외출생 국제 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외국 인가정자녀	· 이주 후 경험이 진로계획에 영향 · 진로계획 및 경험은 한국사회 정착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어 수준, 사회적응정도 및 부모와의 친밀도 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가족, 친구, 사회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진로 계획을 수립하며, 진로계획 후 스스로의 행동변화의 필요성 체감 · 취업과 진로계획을 위해 한국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진로와 취업을 위해 대학진학을 희망함. · 진로에 대한 욕구와 계획은 비자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거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함 ·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다문화관련 지원기관을 활용함.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 인식의 차이 연구	김소라 (2020)	· 다문화청소년	· 진로교육 기회 확대와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자원의 필요성이 비(非)다문화 구성원들보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청소년은 제도적 자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문제의 심각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 결혼 전 성인기 응답자들은 낮은 동의 수준을 나타냄 · 비(非)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다문화배경 청년 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김진희 외 (2020)	· 국내출생 국제 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 결혼가정자녀	· 다문화배경 청년 인구 중 상당수가 중도입국배경(국내출생: 58.2%, 중도입국: 41.8%)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 필요 ·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청년과의 차별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다문화배경청년들은 정체성 탐색, 소속감과 불안정성, 자기탐색의 과정에 높여있음 · 학습 요구도는 높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실천을 하지 않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향이 높음. · 궁극적인 관심사는 진로, 직업,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며, 경제적 여유와 안정적 직장을 원하지만, 학력 수준이 낮고, 남성보다 여성이 저임금 노동과 직장 차별에 노출 · 친밀한 네트워크도 협소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빈약함.
청년층 중국동포 한국사회 편입과정과 정책과제	이창원, 하설화, 조하영 (2020)	· 중국동포 청년 (국외출생국제 결혼가정자녀)	· 진로모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 학교 및 지원센터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진학 및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대학진학 의지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제시함. · 가정의 불안정, 불안정한 체류자격, 취약한 정보의 접근성, 한국어 능력 부족, 교육단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제목	저자 (연도)	연구대상	주요 결과 및 실태 (진로, 취업, 자립지원)
			자신의 진로를 유예 및 포기함 · 민간 및 위탁기관을 통해 진로 상담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 · 내국인(15세-29세)에 비해 동 연령대 중국동포의 경제활동 참여율 높음 ·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아르바이트), 임금근로자이며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에 집중 · 15세-29세는 임금근로, 30세-39세로 가면 자영업 종사의 비율이 높음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교육 및 상담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직업교육을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보다 업무능력 향상을 중요한 목적으로 꼽음
사회통합을 위한 탈북청년 사회교육 사례연구: [해솔직업사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최현숙 (2020)	· 북한출생, 제3국출생청소년	· 탈북청년들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별적, 장기적, 종합적으로 제공 지원체계로 설계함: 1단계 심리치유 및 건강회복, 2단계 기초학력교육, 3단계 기술교육, 4단계 취업 후 사후관리의 교육체계를 갖춘
이민 2세대 개념을 통해서 본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	엄한진 (2021)	· 국내 및 국외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 및 국외 외국인 가정자녀, 북한배경청소년	·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학생 신분인 경우가 고용보다 교육 측면에서 논의 · 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국적소지자 보다 학교 및 사회생활적응이 어려움 ·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역량 등 특성은 학교적응, 진학 구직 등의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함.
중국 출신 이주청소녀들이 경험한 초국적 불안정성-학력 중단 이후 교육 및 진로 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채소린 (2021)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이주 후 중단된 학력과 가족지원의 한계, 진로설계의 공백 · 학교 밖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시도의 한계와 안정적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 학력 취득 기회 상실 후 사회적 이동(이주노동자)의 좌절과 불안 · 부모 세대의 사회적 위치 재생산 · 양 국가에서 모두 정착하지 못한 채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된 상황 초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제3국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하영 (2022)	· 제3국출생 청소년	· 진로탐색프로그램 실행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 수준의 일부 요인(진로인식 및 진로환경 관리 요인)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산출함.

제목	저자 (연도)	연구대상	주요 결과 및 실태 (진로, 취업, 자립지원)
인천 연구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지원 방안 : 중앙아시아 및 아랍중동국가 출신자를 중심으로	박봉수, 오선영, 임지혜 (2022)	· 국외출생국제 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가족 및 친구를 통한 상담의 경험은 높은 반면, 전문 상담기관 이용경험 미흡 · 장래희망 직업은 정했지만, 직업훈련 경험 미흡 ·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의 이용 경험이 낮음. · 수준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 절실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방안	변숙영 외 (2022)	· 국내출생 국제 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 결혼가정자녀, 국내 출생 및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진로태도, 진로능력 영역이 취약 · 진로성숙도는 일반청소년>국내출생다문화>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순으로 나타남 · 국가정체성, 부모의 출신국가, 부모의 한국어 실력, 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높음. · 자립 기술 수준에서 자기보호기술이 가장 높고, 진로탐색 기술이 가장 취약함 · 자립 기술과 진로성숙도는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이 중도입국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주배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 가족 간 유대 및 지지 체계 부족, 진로에 대한 이해나 준비 미흡, 전문적인 진로상담 미비,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 치중된 진로 및 취업지원,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내용과 현장과의 괴리, 비자문제가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의 장애로 작용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 보고서	양계민 외 (2022)	· 국내출생 국제 결혼가정자녀	·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으로 고졸 이후 후기 청소년의 연령층 비율의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비율은 일반 청소년 고용비율에 비해 낮은 현상을 보임 · 대학생은 자격증취득과 졸업 후 진로의 문제, 취업자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의 문제, 니트(neet)는 정보부족, 인간관계 부재, 경제적 어려움이 분석됨 · 대학진학을 위한 부모의 관심 및 지지 양육 태도가 중요함. · 취업관련 정보취득 경로는 온라인 매체를 주로 이용 ·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지원정책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에 어려움을 느낌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진로지원 방안: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임선일 외 (2020)	· 국외출생 국제 결혼가정자녀, 국내 및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는 대학진학, 취업, 진학 및 취업준비, 본국 귀환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진학 관련 진로교육은 학교에서 진로담당 교사와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짐 · 이중언어의 활용, 직업선택공간의 확장, 견고한 자립심은 이들의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취약한 경제조건, 부족한 진로 정보, 문화의 부적응, 취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제목	저자 (연도)	연구대상	주요 결과 및 실태 (진로, 취업, 자립지원)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류성창, 김성기, 김재우 (2015)	· 다문화 및 탈북학생	· 다문화 및 탈북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적극성이 다소 부족함 · 기초적인 취업 지원 및 진로 탐색, 진로교육 부족(직업과 관련된 기술 지식, 한국어 학습 및 문화, 기초학력 부족) · 한국어 학습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수요 분야이며, 한국문화 이해 부족은 탈북학생에게 많이 필요성이 지적 · 다양한 취업 지원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 · 진학 서류 및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한국 정착의 어려움
북한이주청년들의 진로 모색 과정을 통해 본 생애 전략	박서연 (2008)	· 북한배경청년	· 정부가 제공하는 정착지원제도의 접근성 부족 · 대학 진학이 남한사회 성공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진학하지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자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움. ·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격증 취득(컴퓨터 등)을 위한 노력 · 가계 전략 및 문화 학습,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로 노동 활용 · 정착 수단으로서의 결혼 · 남한 또래 청년과 교류를 통해 자기 긍정의 정체성 형성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	박서민 (2011)	· 북한이탈주민 남·여 대학생	· 가족들의 걱정과 기대에 대한 부담감은 진로행동 장벽으로 작용 · 진로에 대한 준비(현실감, 자격증, 토익점수 등) 및 사회적 편견, 의사소통, 또래문화의 차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 대학 생활 및 직장 진출의 한계 · 대학 전형(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진학은 가능하나 기초학습 공백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경험. · 그 외 경제적 자립, 인간관계, 개인별 특성 차이는 진로장벽 요인을 제공
북한출신 대학생의 직업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최귀옥 (2012)	· 탈북 대학생	·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의 안정성’에 기반한 직업선호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현재 본인의 전공을 살린 취업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북한 출신대학생의 희망 직업은 공무원(18.4%), 경영·회계 및 사무직(14.9%), 자영업, 기타, 전문직이 각각 12.3%. · 취업 준비 능력,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파악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 청년의 취업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노은희, 오인수 (2016)	· 탈북청년	· 대학 생활을 통해 획득한 인적자본과 문화 자본은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며 직장생활에서도 적용함 · ‘최소한의 요건’으로 공인영어성적표의 활용 ·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획득한 중국어 능력이 취업을 위한 경쟁력으로 작용 · 북한이탈주민이기에 가능한 취업기관 공략

제목	저자 (연도)	연구대상	주요 결과 및 실태 (진로, 취업, 자립지원)
근로탈북청소년 의 남한에서의 근로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방진희 (2017)	· 탈북청소년	· 북한 및 제3국출신 청소년들은 부모 직업을 대물림하거나 한정된 구직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직장 동료와의 관 계를 구축함. · 남한에서 근로 경험은 생존과 책임감에서 적성에 맞는 직업 을 찾기 위한 근로 동기로 변화 · 직업 정보 부족, 사회적 편견과 학력 차별은 근로의 어려움 을 유발하나, 직장생활 속 친밀한 인간관계와 지지는 구직 활동의 성공요인이 되기도 함. · 남한에서의 근로 경험은 사회의 삶의 방식 비교 및 사회문 화를 익히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됨
북한이탈청년, 남한사회에서 성장하기 : 사회 적응과 문화변용을 중심으로	이상구 (2017)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이탈청년은 후기 청소년 연령층에 있는 집단으로 취업 등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자립과 결혼 등을 통한 사 회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대상(20대~30대 초반)을 일컫음 · 북한이탈청년의 남한사회 적응 다섯 유형인 영웅형(거시적 이고 민족적인 목표를 갖고 적극적 자기계발을 통해 미래 준비), 실속형(개인의 성장과 적응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미래준비), 활동형(자유의 가치를 선호하 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집중), 성취형(전문성 추구), 안정추 구형(안정된 삶을 최우선)으로 분류함
탈북 후기청소년의 대학적응	문화정 (2018)	· 탈북청소년	· 학업의 어려움과 진로결정의 어려움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됨 · 가정 환경적 배경이 진로의식발달에 영향 · 진로장벽 요인으로는 의미 있는 타자의 기대, 졸업장, 진로 결정과정에서 지불된 시간, 비용, 노력과 같은 매물비용, 진로 불안 등이 있음 ·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진로타협 · 제한적 경험과 부족한 정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한정된 대학 전공 선택 · 학업 중단과 남한에서의 문화 적응, 기초학력 부족, 학업부담 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진로 갈등 등을 경험함 · 이주 후 사회적 자원의 구성과 동원에 따라 다양한 삶의 여정과 결과들을 나타냄
남한 거주 탈북 후 기 청소년의 삶과 진로에 대한 내러티브	현순안 (2016)	· 탈북 청소년	· 교육의 부재, 발달의 문제, 기초역량 부족 등이 발생하고 교육과 실무의 괴리감 · 개인적 갈등 및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갖는 국가적 차원의 정체성의 문제 발견
북한이탈 대학생 의 학업 중단과 지 속 경험에 대한 탐구	김보미 (2020)	· 북한이탈대학생	· 대학 진학은 자유, 사회로 진출하기 전 준비과정, 성장의 장으로 의미 부여됨 · 진로탐색 기회와 진로교육 부족, 남한 교육 체계 대한 이해 와 정보 부족, 낯설음, 적응과 흥미 없는 대학 진학은 학업

제목	저자 (연도)	연구대상	주요 결과 및 실태 (진로, 취업, 자립지원)
			중단으로 이어짐. · 명확한 진로 목표와 꿈, 적성과 일치하는 학과 진학, 북한이탈 대학생 모임, 동아리, 커뮤니티 등 정서적 지지와 학업 성공 경험은 학업 지속 요인이 됨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 입국 경험과 진로 준비에 관한 연구	이은혜 (2020)	·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 입국 후 경험, 진로 수업, 유튜브를 통해 진로 포부 결정 · 진로포부로 대학진학, 취직, 돈을 많이 버는 일 등을 밝힘. · 언어(한국어)와 국적선택의 어려움 경험 · 부모가 자녀 진로 고민에 무관심하며 진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함. ·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사회의 진입을 준비하고 싶지만, 언어적 어려움으로 제3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기도 함 · 진로준비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국어 도움을 받았고, 한국어가 능숙한 참여자일수록 구체적인 진로를 준비하고, 부족할수록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함.

위 선행연구의 내용을 주제별로 외국배경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로

① 외국배경 청소년

외국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주로 국외출생자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많다. 예를 들면, 노승인의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확립기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즉,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진로문제(54.5%)와 목표의식 및 꿈의 부재(20.9%)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고(노승인, 2018: 6-7), 다른 연구에서는 진로계획 및 경험이 한국사회의 정착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진이, 소학섭, 2019). 또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에 비하여 가정의 불안정, 교육 단절 등의 경험을 지닌 경우가 많았으며, 진로 준비와 진로 선택에 대한 정보 부재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의 부족, 불안정한 체류 자격, 서류준비의 복잡성 등은 자신의 진로를 유예 및 포기하는 진로장벽 요인이 되고 있었다(이창원, 허설화, 조하영, 2020; 전경숙, 2017). 전경숙(2017)은 진로의식과 진로계획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한국 사회의 정착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가 한국사회의 정착계획 및 정착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입국 전 준비, 한국어 수준, 한국 사회의 적응도 및 호감도, 가족(부모)의 지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진로의식이나 진로계획의 직접적 영향이라기 보다는 체류자격이라는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류가 안정적일 때 한국에서의 진로계획이 가능하고 진로의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취약한 경제조건, 부족한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의 부적응, 신분의 불확실로 인한 한계 등이 외국출생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후기청소년기 발달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외출생자들의 경우 이주배경특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나타낸 연구결과들도 있다. 예를 들면, 임선일 외의 연구(2020: 44)를 보면, 중도입국청소년(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진로를 크게 대학진학, 생계를 위한 취업, 진학 및 취업 준비, 출신국 귀환이라는 4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학생보다 진로의 폭이 넓고, 부모 출신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범위 확장이 가능하며, 견고한 자립심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배경이라는 특성은 한국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지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긍정적 요인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와 관련하여 분석된 주제로 진로성숙도를 다룬 연구가 있는데, 외국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국내출생 또는 국외출생에 따라 진로성숙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숙영 외(2022)의 연구는 진로에 대한 태도, 능력, 행동을 나타내는 진로성숙도를 일반 청소년,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변숙영 외, 2022: 79). 이는 같은 이주배경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배경과 특성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인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보다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 변숙영 외(2022)의 연구에서 이러한 진로성숙도는 부모의 출신국가, 부모의 학력수

준,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출신 국가가 한국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조선족)인 경우 대부분의 진로성숙도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모의 출신국가가 러시아 등 아시아 외 출신인 경우 진로장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변숙영 외, 2022: 85). 또한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숙영 외, 2022: 88).

진로와 관련한 주제 중 또 다른 하나는 대학 진학과 관련한 연구로, 양계민 외(2022: 136-140)의 연구에서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자신의 장래희망을 정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부모의 관심 및 지지, 양육태도가 진학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배경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희망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및 아랍중동국가 출신의 외국배경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봉수 외(2022)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박봉수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외국배경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교육수준을 질문한 결과, 대학원 이상(43.5%), 4년제 대학(32.3%), 전문대(16.1%), 고등학교(8.1%)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박봉수 외, 2022: 124). 한편 류성창, 김성기, 김재우(2015)의 연구에서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대학 진학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처한 환경, 이주배경, 학업능력 등 한계를 인지하게 되면서 대학 진학보다 현실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류성창 외, 2015: 48). 한편, 대학진학과 관련된 진로교육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선생님 즉, 담임교사나 진로담당교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임선일 외, 2020: 85; 양계민 외, 2022).

마지막으로 진로계획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 한국이주 후 경험이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유진이, 소학섭, 2019: 90), 진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부모, 지인 이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서덕희, 김은석, 2015: 192; 이창원 외, 2020), 선배의 조언, 진로체험, 진로상담 등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조언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서덕희, 김은석, 2015). 아울러 이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직업 및 취업 정보 제공, 진로상담, 직업 체험과 같은 진로교육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과 모국어,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서덕희, 김은석, 2015).

② 북한배경청소년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입국 후 경험, 진로 수업, 유튜브를 통해 진로 포부를 결정하며 부모의 무관심,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한국어의 어려움이 진로장벽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이은혜, 2020). 이들의 진로 포부로는 대학 진학, 취업, 돈을 많이 버는 일, 제3국(중국) 거주 등으로 나타났고(이은혜, 2020: 42-45), 진로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언어적 어려움, 국적 선택에 대한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이은혜, 2020: 45-46). 박선민(2011)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배경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진로장벽을 도출하였는데, 첫째, 가족들이 대학에 진학한 북한배경청소년들에게 거는 기대가 자신의 실제 실력에 비하여 너무 높고, 나중에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둘째, 남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 언어의 차이, 또래문화의 이질성, 셋째,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취업을 위한 진로준비 부족, 진로정보 부족, 인맥의 부족, 넷째, 영어, 기초학습 등 학업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다섯째, 또래관계 등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여섯째, 경제적 어려움, 일곱째,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특례 입학과 학비 지원 정책 등으로 대학 진학에 대한 포부가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희정, 2018: 155). 대학진학이 자유와 사회로 진출하기 전의 준비과정, 성장의 장으로 의미 부여되면서(김보미, 2020) 진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명문대 진학만으로도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대학진학 열망은 매우 높다(박서연, 2008). 또한, 대학생활을 통해 얻은 인적자본과 문화자본을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여 직장생활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전공공부와 같은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습득한 것이 직장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노은희, 오인수, 2016: 249). 그러나 남한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대학 진학은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김보미, 2020).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북한출생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진로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북한출생청소년들보다 더 취약한 부분이 언어의 어려움이었다. 즉, 진로준비에 있어 한국어의 부족은 검정고시 준비의 어려움으로 귀결되고, 진로와 관련된 국적 선택의 어려움은 남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제시되는 등(이은혜, 2020), 북한출생자들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동, 취업 및 자립 지원

① 외국배경 청소년

노동은 진로, 취업과 연계되며 향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도 연결되는 주요한 영역이다. 외국배경을 갖고 있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경제적 여유를 갈망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진로는 단순한 노무직 혹은 육체노동과 같은 불안정 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이다. 이창원 외(2020: 87-88)의 연구를 보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등에 집중되어 있었고, 김진희 외(2020: 254, 269)의 연구에서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에 비하여 불안정한 노동형 경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임시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본인의 자질과 취업 관련 정보 부족,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제한 등이 주요 이유인데, 특히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가능한 직종이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창원 외, 2020: 87-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양계민 외(2022: 156-157)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 준비활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었고, 취업관련 정보는 주로 온라인 매체(인터넷, 모바일 앱, SNS)를 통하여 얻고 있었는데, 이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어려움으로 꼽은 것 중 하나는 정보 접근성이었다(양계민 외, 2022: 229-236).

다른 한편으로, 국외출생자들의 자립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다룬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김강남(2019)은 이주배경이 고려되지 않은 임시위주의 학교 문화와 대학과 취업과의 연계 불투명을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학력 및 기술과 자격증 부재로 인한 낮은 직업적 지위와 정보 부족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및 반복 노동과 불법 근로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노동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립전략으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및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청소년들은 정규학교 대신 대안학교로서의 진학을 선택하였고 대학보다 취업으로 전향하였으며,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기관을 활용하였다(김강남, 2019). 채소린(2021: 94)의 연구에서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을 경험한 후 학교 밖 직업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자립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을 경험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가 어려워 사회에서 완전한 자립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국외출생자들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은 생계 거주와 취업 및 자립에 깔린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에(김강남, 2019: 147-148),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국외출생자들의 이주배경특성은 자립과정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임선일 외(2020: 121)의 연구를 보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내 및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이중언어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의 출신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업 선택의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노동 및 취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북한배경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노동은 생계를 꾸리기 위한 경제적 수단인 경우가 많다, 박서연(2008: 69-72)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배경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는 것이 가족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의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는 등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하여 노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핵심 영역보다는 주변부 노동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나 실업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나 북한배경청소년들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고, 노동을 대물림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남한에서 일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전환으로 근로동기가 변화하기도 한다(방진희, 2017: 79-82, 93).

한편, 북한배경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귀옥(2012: 55)의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 기준을 적성과 흥미에 맞음(35.1%), 전문성을 가짐(20.2%), 월급(임금)이 많음(14.9%)의 순으로 인식하였고, 희망직업은 공무원(18.4%), 경영 및 회계, 사무직(14.9%), 자영업(12.3%), 기타 전문직 (12.3%)순으로 선택하였다(최귀옥, 2012: 37-38, 78).

또한 북한배경청소년들에게 노동은 사회적 자본 즉,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방진희(2017)의 연구에서는 직장 생활 속의 친밀한 인간관계와 지지는 이들의 구직활동의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류성창 외(2015: 106-107)의 연구에서도 취업의 계기로 친구나 선배의 소개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신문 방송 및 인터넷, 가족 및

인터넷 소개 등으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노동과 관련하여 분석된 주제로 북한배경청소년들은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취업자격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다룬 연구 결과도 있다. 노은희, 오인수(2016)와 박서연(2008)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취업을 위해 자격증(컴퓨터)취득과 공인영어성적표(토익 점수) 등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학생활과 북한배경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취업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자립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다룬 연구가 있다. 최귀옥(2012)과 방진희(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어려움으로 제시하였고, 류성창 외(2015)의 연구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기술 지식 및 교육 부족 등을 북한출생과 제3국출생 청소년들의 취업 및 자립 지원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북한배경청소년들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살다가 한국의 문화 이해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성창 외, 2015: 131). 그러나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획득한 중국어 능력과 북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취업 기관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도 하였다(노은희, 오인수, 2016).

(3) 체류자격

① 외국배경 청소년

체류자격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취업을 넘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요건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있다. 예를 들면, 전경숙(2017), 황복선(2019), 이창원 외(2020)의 연구에서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류자격의 문제는 한국어의 문제, 본국과의 학력 차이 등과 연계되면서 공교육 진입으로의 한계와 원만한 진로 선택과 준비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경숙, 2017: 446; 임선일 외, 2020: 17). 또한 체류기간의 제약으로 진학을 위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전경숙, 2017: 457). 따라서 체류자격은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본인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임선일 외, 2020: 76).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분석된 주제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불안정한 체류자격 문제는 생계, 취업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를 살펴보면 동포 방문(C-3-8), 방문 동거(F-1), 동반(F-3) 비자는 취업활동이 금지되고,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는 취직가능한 직종이 제한되어 있다(이창원 외, 2020: 88). 즉,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F-2(거주)이며, F-4(재외동포), C-4(단기 취업), H-2(방문 취업), E-9(비전문 취업)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임선일 외, 2020: 48). 따라서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할 경우 체류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취업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서덕희, 조은혜, 2017: 243). 취업은 대부분 사적 네트워크 또는 직업소개소,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하였는데, 고용주들은 비자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부는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인 것을 알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저숙련, 고강도의 단순노동이며 최저임금도 미달되는 일자리가 다수였기 때문에 상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고용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원 외, 2020: 88-91).

체류자격과 관련한 주제 중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연구로 국외출생자들의 경우 한국의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다(황복선, 2019: 165). 황복선(2019: 152)의 연구에서는 국외출생자들이 한국이 본국과는 다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자신의 진로 탐색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류성창 외(2015: 49-50)의 연구에서 외국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은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자신들의 미래에 고민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귀화, 영주, 등 안정적인 체류유형을 가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일수록 진로의사결정은 높게 나타났다(황복선, 2019: 165). 결국 진로에 대한 욕구와 계획은 체류자격인 비자와 관련되어 있고, 한국에서의 거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기도 한다(유진이, 소학섭, 2019). 그러나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한국 생활 적응, 생계와 취업, 공교육 진입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과 관련한 주제 또 다른 하나는 거주와 관한 연구로, 서덕희, 김은석, (2015: 46)의 연구에서는 외국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향후 한국 체류 계획과 관련하여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함, 일정기간 한국에서 지낸 후 출신국 귀환, 빠른 시일 내로 출신국 귀환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향후 체류계획은 진로의식, 한국어 능력과도 연계되어 있었는데, 전경숙

(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진로계획과 준비과정, 진로의지가 확고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는 본국으로 귀환하기 보다는 한국에서의 정착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래 한국 체류를 희망하거나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중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체류자격이 부모의 한국 체류 여부의 영향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체류여부에 따라 자녀들도 정착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홀로 한국에 남아 겪을 문화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으로 보여진다(전경숙, 2017: 461-464). 그러나 이창원 외(2020: 91-92)의 연구에서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정착의지는 부모의 결정이나 자신의 체류자격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부모의 본국 귀환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는 한국에 정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한국의 체류기간이 길수록 정주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체류자격은 전적으로 부모에 선택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모가 정주를 허락하지 않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변경이 어려울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동포 방문 비자를 통해 한국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창원 외, 2020: 94).

② 북한배경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체류자격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북한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 전략과 정착 유형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배경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대응 전략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노은희, 오인수(2016: 248)의 연구에서는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북한배경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였고 이는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공간이 되었다. 즉 대학생활에서 교우관계는 남한 사회의 적응과 정착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대학은 취업 장벽을 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 중 하나였다(노은희, 오인수, 2016: 256). 문희정(2018)의 연구에서도 탈북 후 초기 적응을 위해 대안학교에 진학하였고 이후 대학 진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정착 유형과 관련한 연구로 이상

구(2017)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성장하고 정착하는 유형을 5가지(영웅형, 실속형, 활동형, 성취형, 안정추구형)로 분류하였다. 영웅형(발전·주변화형)은 거시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유형이고, 실속형은 정착 초기에 자신을 낮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동, 언어 습관 및 가치관을 남한 사람처럼 변화시키는 유형이다(이상구, 2017: 83). 활동형(발전·통합형)은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 폭을 가진 유형이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소비적인 경제생활 패턴을 보인다. 성취형(극복·통합형)은 정착 초기에 무시, 편견 등의 차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행동을 보이며, 안정추구형(극복·고립형)은 남한에 정착하여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유형이다(이상구, 2017: 35-36). 따라서 북한배경청소년들은 개인의 성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 및 주변 시선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발휘하여(이상구, 2017: 87)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정착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배경청소년들의 남한 거주 기간과 진로 결정성과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가 있다(류성창 외, 2015: 101). 예를 들어 류성창 외(2015: 126)의 연구에서는 북한출생과 제3국출생의 북한배경청소년은 남한에 오래 거주할수록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빨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거주기간이 짧은 학생일 수록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학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진로진학진도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취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취업할 능력이 없고 한국어가 부족해서, 한국 문화가 싫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류성창 외, 2015: 96).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배경청소년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두려움과 한국어의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북한이라는 영토 외에도 중국과 같은 제3국을 거쳐 남한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영토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인 정체성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현순안, 2016: 24).

(4) 한국어

① 외국배경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들에게 모두 공통으로 발견되는 요구되는 사항은 한국어 학습이었다. 예를 들어 서덕희, 김은석(2015: 46-47)의 연구에서는 외국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입국 후 겪는 어려움으로 한국어를 제시하였다. 외국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체 응답자의 37.5%가 스스로 한국어를 못한다고 느끼고, 45.5%가 보통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0%에 불과하였다(서덕희, 김은석, 2015: 43).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의 실력이 보통이거나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수치를 합하면 약 83%가 된다. 즉 외국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소수만이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은 기초직업능력과 밀접한 관련있기 때문에 한국생활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서덕희, 김은석, 2015: 56-57). 류성창 외(2015: 44)의 연구에서는 외국배경을 갖고 있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한국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로 '취업이 잘 안될 것 같아서'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 부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직업과 진로에 대한 학습내용으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기본적인 한국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류성창 외, 2015: 61). 다른 한편으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을지라도 국외출생배경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 한국 생활이나 교육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수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노승인, 2018: 2).

한국어와 관련하여 분석된 주제로 취업의 어려움을 다룬 연구가 있다. 류성창 외(2015: 55-56)의 연구에서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은 언어 문제로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취업 후에도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어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어가 미숙할 경우 더욱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류성창 외, 2015: 72). 김진희 외(2020)의 연구에서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은 한국어 학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진학 및 사회진출 후에 학습과 직업훈련과정을 끝까지 마치기보다 경제적 욕구가 우선시되어 단순노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경숙(2017)의 연구에서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초기 적응에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은 한국어 문제였으며, 한국어 습득이 어려울 경우 적응에 더 많은 좌절과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전경숙, 2017: 457).

한국어와 관련한 또 다른 주제로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다룬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유진이와 소학섭(2019: 88)의 연구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이 진학 후에도 한국어 능력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한국어에 대한 불안과 이주 후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취업과 진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어가 중요하고 진로결정과 한국의 정착 의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었다(유진이, 소학섭, 2019).

이처럼 한국어 능력은 한국사회의 적응, 취업, 학교생활의 적응, 진로선택 및 자립준비뿐만 아니라 향후 정착 계획과도 연결되었다(김강남, 2019; 노승인, 2018; 전경숙, 2017). 따라서 외국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특히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게 한국어의 초급단계를 거쳐 한국어를 다소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유진이, 소학섭, 2019: 98; 전경숙, 2017: 467). 또한 자립기술, 진로성숙도가 한국어 능력과 관련 있음을 고려한다면 외국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 이주 전과 이주 초기에 한국어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공교육에 진입한 후에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요구된다(변숙영 외, 2022: 97).

② 북한배경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남한의 문화적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과 진로 선택,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김보미, 2020). 예를 들어 류성창 외(2015: 96)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한국의 정착 여부와 진로, 취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북한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로 ‘취업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서’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차별받을 것 같아서’, ‘취업할 능력이 없어서’와 ‘한국어가 부족해서’를 각각 응답으로 제시하였다(류성창 외, 2015: 96). 받고 싶은 취업 지원 분야로는 직업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는 태도와 한국 문화,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성창 외: 115). 이를 통해 북한배경청소년들은 직무를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을 습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진로 준비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언어적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언어적 어려움은 대학을 준비하는 참여자에게는 검정고시 공부의 어려움, 취업을 준비하는 참여자에게는 소통의 어려움이었다(이은혜, 2020: 45-46). 따라서 이들은 진로 준비에서 한국어 도움을 전형적인 요구사항으로 꼽았다(이은혜, 2020: 50).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사회 진입을 준비하고 싶지만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기도 하였다(이은혜, 2020: 54).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배경청소년들에게 한국어는 기본적인 삶의 전제가 되는 수단이자 취업과 진로, 한국사회의 정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지원 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외국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과 북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취업, 체류 자격, 한국어 등에 대해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III-2> 및 <표 III-3>과 같다.

먼저 외국배경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표 I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 영역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과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진로 정보는 주로 인터넷이나 부모님, 지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있었다. 진로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정보부재로 인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국외출생자들의 경우는 국제결혼가정이건 외국인가정이건 상관없이 개인의 진로의식과 진로계획의 수준이 한국사회의 정착 가능성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 영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었다. 외국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중언어 구사능력이나 부모의 출신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업선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였다. 취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낮은 학력과 낮은 직업적 지위, 문화차이, 정보 부재 등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단순노동이나 불법 근로를 반복적으로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유형별로 살펴 보았을 때,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하여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취업준비활동으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출생자들의 경우는 국내출생자들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취업에 제한이 있다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자립전략을 취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체류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체류자격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한국생활 적응과 생계, 취업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특히 국외출생자인 국제결혼가정자녀나 외국인가정 모두 불안정한 체류자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계획과 의지가 확고한 국외출생자들의 경우는 한국 정착 의지가 강하였고 이는 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기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는 한국 사회 적응이나 학교생활적응, 취업, 진로선택 및 자립준비, 향후 정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는 언어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외 집단에 비해 한국 적응이 수월한 편이었다. 특히 외국출생자들의 경우 한국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한국어능력으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있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외국배경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요약

	공통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진로	· 진로에 대한 고민 많음 · 진로 정보: 인터넷, 부모 및 지인, 커뮤니티 활용, 진학은 학교 선생님과 통해 습득 · 진로 장벽: 정보 부재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에 비해 진로성숙도 높음	· 진로인식과 진로계획(준비)이 한국사회의 정착가능성 결정 · 가정의 불안정, 교육 단절 가능성, 사회진출 욕구 높음 · 국내출생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진로성숙도 낮음 · 진로 장벽: 불안정한 체류, 한국어 능력 부족 등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에 비해 진로성숙도 높음 · 진로 장벽: 불안정한 체류, 한국어 능력 부족 등	· 진로인식과 진로계획(준비)이 한국사회의 정착가능성 결정 · 진로 장벽: 불안정한 체류, 한국어 능력 부족 등

	공통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노동 및 취업	· 경제적 여유 및 안정적 인 직장을 희망함 · 이중언어 구사 가능성 및 부모 출신국 네트 워크를 활용한 직업선 택 공간 확장 · 취업 및 자립지원 장애 요인: 낮은 학력과 낮 은 직업적 지위, 문화 차이, 정보 부재, 단순 노동 및 불법 근로의 반복	· 수입을 목적으로 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다수 · 취업준비활동으로 자격증 취득 등	· 국내출생 이주배 경청소년보다 불 안정 노동에 많 이 노출 · 체류자격으로 인 한 취업 제한 · 자립전략으로 대 안학교 진학, 대 학 보다 취업	· 수입을 목적으로 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다수 · 취업준비활동으로 자격증 취득 등	· 불안정한 노동 및 불법 근로 등 · 자립전략으로 대 안학교 진학, 대 학 보다 취업
체류			· 불안정한 체류자 격 노출 가능성 높음 · 진로계획과 의지 가 확고한 청소년 은 한국 정착 의지 강함 · 체류자격이 안정 적이지 못할 경우 한국 생활적응, 생계, 취업 등 전 반적 어려움	· 한국사회에 안정적 으로 정착하기 위 한 기본 요건 · 체류자격이 안정 적이지 못할 경우 한국 생활적응, 생계, 취업 등 전 반적 어려움	· 불안정한 체류자격 노출 가능성 높음 · 진로계획과 의지가 확고한 청소년은 한 국 정착 의지 강함 · 체류자격이 안정 적이지 못할 경우 한국 생활적응, 생계, 취업 등 전 반적 어려움
한국어	· 한국어는 한국생활 적 응, 학교생활 적응, 취 업, 진로선택 및 자립 준비, 향후 정착 계획 에도 연관 · 한국어 이외 영어 능력 필요	· 언어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라도 다른 유형 의 청소년에 비 해 한국 생활 및 교육측면에서 보 다 수월한 입장	·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취업 제한, 단순 노무직으로 전략 · 기초 한국어 및 개인차를 고려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필요	· 언어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라도 다른 유형 의 청소년에 비 해 한국 생활 및 교육측면에서 보 다 수월한 입장	·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취업 제한, 단순 노무직으로 전략 · 한국어 교육이 우 선시 되어야함

다음으로 북한배경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는 <표 III-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진로 영역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진로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 유튜브, 지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진로 수업이나 체험활동 등을 통해 얻고 있었다. 진로장벽요인으로는 부모님의 무관심과 정보 부족, 한국어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출생자들의 경우

진학에 대한 포부수준이 매우 높고, 대학생활을 통해 얻은 인적 자본 및 문화 자본을 취업에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제3국 출생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가 북한출생자들에 비하여 크고 이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의 영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북한배경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고용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배경자들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북한배경자들은 노동을 통해 남한 문화를 습득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으로 진입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취업 및 자립지원의 장애요인은 남한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 직업과 관련된 지식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출생자나 제3국출생자들 모두 불안정한 노동 및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출생청소년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에서 점차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한 근로동기로 변화하고 있었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체류와 관련하여 북한출생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제3국출생자들의 경우도 체류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남한의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대학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남한에 오래 거주할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빨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문제는 이주배경자와는 다른 양상인데, 북한출생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문화적 맥락에 따른 언어사용의 차이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학업이나 취업 상황에서의 한국어는 일상한국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직무를 위한 한국어, 한국에서 일할 때의 태도, 한국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제3국출생자들의 경우는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언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한국정착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시장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국으로의 귀국을 생각하게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북한배경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요약

	공동	북한출생	제3국출생
진로	• 진로 적극성 및 한국 문화 이해 부족, 진로 결정과 학업의 어려움이 연관 • 진로 정보: 인터넷, 유튜브, 지인, 진로 수업 및 체험 등 • 진로 장벽: 부모의 무관심, 정보 부족, 한국어의 어려움 등	• 진학에 대한 높은 포부와 열망 • 대학생활을 통해 얻은 인적 자본 및 문화자본을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 언어, 적응 등의 문제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음 • 검정고시 준비의 어려움
노동 및 취업	• 고용의 안정성 중점 • 가계 유지 위한 생계 수단, 남한의 문화 습득 및 사회적 자본 관계 형성의 장 기능 • 취업 및 자립지원 장애 요인: 문화 이해 부족, 편견과 차별, 직업과 관련된 지식 부족	• 불안정한 노동 및 고용상태 • 생계유지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한 근로동기로 변화 • 경쟁력 확보(자격증 등)를 위한 노력	• 주변부 노동으로 불안정한 노동 및 고용상태
체류	• 체류의 문제는 없음 • 남한에 오래 거주할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빨리 결정 • 남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진로정보 부족 및 대학선택 어려움 겪음	-	-
한국어	• 동일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적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로 어려움을 느낌 • 직업을 위한 한국어 필요	• 의사소통은 되지만 직무를 위한 한국어, 한국에서 일하는 태도, 한국문화 교육을 습득하기를 원함	• 언어적 어려움을 경험 • 언어적 어려움은 본국으로의 귀국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를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 체류, 한국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주배경청소년 전체 집단의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하위 유형별로 실제 처한 상황과 경험하는 어려움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진로관련 정보부족과 같은 문제도 있지만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나머지 유형의 예처럼 유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한국어나 체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로설계와 취업의 제한 등은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유형은 기본적인 진로설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외출생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 문제는 체류의 문제로 체류의 안정성에 따라 향후 진로 설계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를 위하여 현재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성인기 진입과 안정을 위한 진로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과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한 임시근로를 하는 등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국외출생자 이면서 한국국적을 소지하지 못한 집단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체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출생자들의 어려움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 정도의 한국어로는 취업 등 원하는 진로를 설계해나가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보다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 한국어 교육에서 나아가 직업별 직종별 전문 한국어교육자료 및 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본인의 이주배경 정체성이 진로와 취업에 있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중언어 등 자신에게 유리한 특성을 진로 및 취업과 연계할 경우 직업선택의 범위가 확장되는 등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언어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을 하는 경우는 모두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노력으로 성취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들의 장점을 활용한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기존 실태조사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⁵⁾

1) 분석 개요

이번 장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의 관련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관련 실태에 대한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함과 동시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5) 3장의 2절 중 1) 분석개요와 2)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1) 배경특성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2)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2)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따른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출 현황과 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이 집필하였으며, 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장인숙(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5) 결과요약은 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이 집필함.

현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의 예산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에 대한 대표성 있는 수준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전국 분포에 대한 모집단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인 기존의 여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 및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실태를 파악한 가장 최근의 대단위 연구인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2021)」 데이터 중 19세에서 24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태를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 비교하였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일반집단 전체 평균값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 활용한 조사는 아래의 〈표 III-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21),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2022),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1) 등 총 4개 조사의 데이터이다. 이 중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이나 전체 조사대상자 중 본 연구의 대상인 1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연령집단만을 분석할 경우 인원수가 487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21)의 자녀 조사결과 중 19세에서 24세 연령에 해당되고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유형과 가장 일치하는 대상을 비교분석 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이터 중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해당되고, 본 연구의 유형의 특성과 명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총 891명으로, 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2022)의 경우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승인통계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한 북한출생청소년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며, 2022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인원수는 총 15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을 주기로 조사되고 있는데, 역시 승인 통계이고, 전체 중 이주배경을 지닌 자를 제외한 청소년이 7,115명이며, 그 중 19세에서 24세의 연령은 2,320명이었다.

표 III-4. 2차 자료 분석 데이터 목록 및 주요 특징

조사명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202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2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1)
승인번호	-	제 117079호	제 437001호	제 154013호
조사 기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여성가족부	남북하나재단	여성가족부
분석가능 표본수	487명	891명	152명	2,320명
포함연령	19-24세	19-24세	19-24세	19-24세
포함 유형	- 국제결혼가정청소년 (국내·외 출생) - 외국인가정청소년 (국내·외출생) - 북한배경청소년 (북한출생, 제3국출생)	- 국내에서만 성장 - 외국거주 경험 - 외국주로 성장	북한배경청소년 (북한출생자)	일반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나머지 세 조사의 공통문항을 비교한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III-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각 조사의 배경특성과 더불어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출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III-5. 설문지 구성별 문항번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비교문항)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I. 배경 특성				
성별	■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D1●		정착실태- 인적정보1
생년월	■ 실제 생년월은 언제입니까?	D2●		정착실태- 인적정보2
가족현황	■ 현재 한국에 가족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3		
동거가족	■ 현재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가요?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할머니/ 할아버지 ⑤ 친척 ⑥ 친구/선후배 ⑦기타 ⑧없다	D4		사회통합 Ⅲ 21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487명 ● 2,320명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891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52명
가정경제 수준	■ 가정 형편(경제적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중간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산다	50		
현재교육 수준	■ 현재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5	Ⅱ 6	사회통합 Ⅱ 12
	■ (위에서 '예'인 경우) 현재 한국에서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 ③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 ④ 대안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D5-1		
	■ (초, 중, 고등학교 택한 경우) 몇 학년 입니까?	D5-2		
현재 상태	■ 현재 주요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대입 준비 ② 검정고시 준비 ③ 취업·창업 ④ 취업·창업 준비 ⑤ 아르바이트 ⑥ 쉬고 있음 ⑦ 기타(적어주세요:)	D7		
출생국	■ 본인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① 한국 ② 북한 ③ 그 외 외국	44		
	■ (외국의 경우) 태어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① 중국 ② 일본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캄보디아 ⑥ 태국 ⑦ 대만 ⑧ 우즈베키스탄 ⑨ 러시아 ⑩ 몽골 ⑪ 미국 ⑫ 캐나다 ⑬ 기타(구체적으로)	44-1		
해외 거주 경험	■ 과거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행이 아닌 거주 목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45		
	■ 몇 살부터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까? - 만 _____ 살	45-1		
	■ 비자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다른 나라에 여러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5-2		
한국어수준	■ 본인의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말하기 2) 쓰기 3) 읽기 4) 듣기	45-3		
국적	■ 현재 국적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소지한 국적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한국 → 한국으로 귀화하였습니까? ① 예(귀화하였음) ② 아니오(한국에서 태어남) 2) 외국 3) 국적이 없다	46	Ⅱ 12 (귀화의 현재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 (외국 국적인 경우)현재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중국 ② 일본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⑥ 태국 ⑦ 대만 ⑧ 우즈베키스탄 ⑨ 러시아 ⑪ 미국 ⑫ 캐나다 ⑬ 기타(구체적으로:)	46-2	Ⅱ 13 (귀하는 앞으로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부모 출생국	■ 부모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아래 보기에서 국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아버지 ① 한국(남한) ② 북한 ③ 외국(국가:) 2) 어머니 ① 한국(남한) ② 북한 ③ 외국(국가:) ① 중국 ② 일본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캄보디아 ⑥ 태국 ⑦ 대만 ⑧ 우즈베키스탄 ⑨ 러시아 ⑩ 몽골 ⑪ 미국 ⑫ 캐나다 ⑬ 기타(구체적으로:)	47		
부모 국적	■ 부모님의 현재 국적은 무엇입니까? 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아래 보기에서 국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아버지 ① 한국(남한) ② 북한 ③ 외국(국가:) 2) 어머니 ① 한국(남한) ② 북한 ③ 외국(국가:) ① 중국 ② 일본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캄보디아 ⑥ 태국 ⑦ 대만 ⑧ 우즈베키스탄 ⑨ 러시아 ⑩ 몽골 ⑪ 미국 ⑫ 캐나다 ⑬ 기타(구체적으로:)	48		
부모 학력	■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1) 아버지 2) 어머니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⑤ 모름	49		
Ⅲ. 사회인식 및 가치관				
한국 사회 인식	■ 다음은 한국 사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한국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2) 한국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15●		정착실태Ⅲ 15 (남한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487명 ● 2,320명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891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52명
	3)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4)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이다			적 지위가 높아 질 가능성은 어 느 정도라고 생 각하십니까?)
사회나 정치문제 관심 정도	■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없다 ----- 매우 관심있다	16●		
투표연령 인식 및 투표 의향	■ 한국은 만 18세부터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낮추어야 한다 ② 지금이 적당하다 ③ 높여야 한다	17●		
	■ 귀하는 투표권이 있거나 앞으로 주어진다면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및 도지사, 교육감 선거 등)에 투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투표할 것이다 ③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18●		
	■ 다음은 남북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 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한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남북한 간 교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9●		
다문화 수용성	■ 다음은 관계와 사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3)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4)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14●(1,2)	II 3 (귀하는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 국에서 태어났 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이 아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I 4 (귀하는 한국어 와 외국에서 태 어난 부모님 나 라의 말 중에 어 떤 언어를 더 잘 하십니까?)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한국생활	■ 다음은 한국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② 나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55		
V. 교육 및 청소년활동				
학업중단 경험	■ 과거에 한국에서 학교(정규학교, 학력 인정 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8		사회통합Ⅱ 12
	■ 한국에서 학교를 그만 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①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었음 ②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가지 않음 ③ 중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었음 ④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가지 않음 ⑤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었음 ⑥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대학교에 가지 않음 ⑦ 대학/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었음	D8-1		
	■ 한국에서 학교(정규학교, 학력 인정 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를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②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③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⑤ 본인 또는 부모님의 체류자격 때문에 ⑥ 부모님(또는 보호자)과의 갈등으로 인해 ⑦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⑧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폭력 때문에 ⑨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잦은 싸움 등 불화로 인해 ⑩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⑪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⑫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⑬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⑭ 공부하기 싫어서 ⑮ 내 특기를 살리려고 ⑯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⑰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⑱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D8-2	Ⅱ 6-1	사회통합Ⅱ 13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①9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②0 이성문제로 인해 ②1 학교를 그만 둔 친구의 영향으로 ②2 선생님의 차별 때문에 ②3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②4 선생님과 싸워서 ②5 학교의 규칙이 엄격해서 ②6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②7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②8 학교가 너무 멀어서 ②9 전학이 잘 안되어서 ③0 유해환경(유해업소, 폭력집단 등) 때문에 ③1 아르바이트로 피곤해서 ③2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③3 문화 및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③4 기타(구체적으로:)			
	■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D8-3		
학교미취학 이유	■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벌어야 해서 ②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지 못해서 ③ 한국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④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⑤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아서 ⑥ 집안일을 돕거나 동생을 돌봐야 해서 ⑦ 몸이 아파서 ⑧ 그냥 다니고 싶지 않아서 ⑨ 아직 입학 시기가 되지 않아서(입학이 예정 되어 있음) ⑩ 본국에서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⑪ 기타(구체적으로:)	D8-4		
	■ 향후 한국에서 학교에 입학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8-5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대학 입학 후 휴학경험	- 한국에서 대학 입학 이후 휴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현재 휴학 중이면 '① 예'로 응답) ① 예 ② 아니오	D6●		
	- 휴학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어학연수/해외여행 ② 아르바이트 ③ 편입학 및 재수준비 ④ 경제적인 이유로 ⑤ 자격증 및 고시준비 ⑥ 건강상의 이유로 ⑦ 대학원(유학) 준비 ⑧ 인턴 등 대외활동 ⑨ 취업 ⑩ 취업준비 ⑪ 군 입대 ⑫ 학업수행의 어려움 ⑬ 학교적응의 어려움 ⑭ 기타(구체적으로:)	D6-1●		
한국 외 국가에서 교육경험	- 과거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9		
	- 과거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6년 미만 ④ 6년 이상~9년 미만 ⑤ 9년 이상~12년 미만 ⑥ 12년 이상	D9-1		
학교생활 만족도	-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5)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	Ⅱ 8 (귀하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생활 어려운 점	-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점 ②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 ③ 학교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 ④ 학교 규칙을 지키는 일 ⑤ 선생님과의 관계 ⑥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숙제를 잘 해가지 못하는 점 ⑦ 기타(구체적으로:) ⑧ 어려운 점이 없다	-	Ⅱ 8-1 (귀하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학교 내 또래관계 어려운 점	■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② 나의 얼굴이나 생김새 등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③ 친한 친구가 없는 것 ④ 내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놀리는 것 ⑤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⑥ 다른 아이들과 대화할 때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⑦ 기타(구체적으로:) ⑧ 어려운 점이 없다	-		
주관적 학업성취	■ 현재 본인의 학업 성적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우수한 편이다 ⑤ 매우 우수하다	-	119	
자기주도 학습 경험	■ 최근 1년(2020. 3. 1. ~ 2021. 2. 28) 동안 학교 수업이나 학원/과외 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 공부한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 숙제를 한 시간도 포함하되, 1일 평균 시간으로 표기합니다) - 하루 _____ 시간 _____ 분	-		
사교육 경험	■ 최근 1년(2020. 3. 1. ~ 2021. 2. 28) 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있다) ② 아니오(없다)	-	1110	
	■ 학원 또는 과외 수업 등을 일주일에 총 몇 시간 받았습니까? - 일주일 총 _____ 시간	-		
선호하는 교육방식	■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 ② 일반 한국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방식 ③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한국어만 별도의 반에서 공부하는 방식 ④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탈북청소년들만 다니는 대안학교 다니기	-		
방과후 활동	■ 평일 방과후에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 정도입니까?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 평일 방과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을 때, 불안합니까?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매우 불안하다	-		
청소년 활동 경험	■ 최근 1년(2020. 3. 1. ~ 2021. 2. 28.)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2) 과학/정보 관련 활동(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3)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등반, 야영 등) 4) 자원봉사 활동(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5)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6) 국제 교류 활동 7) 간접/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8) 자기(인성)개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21●		
VI.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입				
희망교육 수준	■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① 고등학교 이하 ② 대학교(2~3년제) ③ 대학교(4년제 이상) ④ 대학원 이상(석·박사)	30●	Ⅲ 19	사회통합Ⅱ 14
장래희망 직업	■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였습니까? ① 예(정하였음) ② 아니오(정하지 않았음)	31●		
	■ 장래 희망 직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직접 기재)	31-1●		
진로의식	■ 다음은 진로와 직업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3) 나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5)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32●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직업훈련	■ 한국에서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3●	Ⅲ 24-1	정착실태Ⅲ 18
	1) 예 →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취·창업을 위해 ②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③ 경력개발을 위해 ④ 자격증 취득을 위해 ⑤ 체류자격 유지·변경을 위해 ⑥ 기타(구체적으로:)	33-1●		
	2) 아니오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 ②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 ③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④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⑤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받지 못했다 ⑥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 ⑦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받지 못했다 ⑧ 기타(구체적으로:)	33-2●		
	■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3-3●		
아르바이트 경험	■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있다) ② 아니오(없다)	34●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4-1●		
취업여부	■ 지난주에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5●	V25	정착실태Ⅲ 22
	■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5-1●	V25-1	정착실태Ⅲ 23
	■ 지난주에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5-2●	V25-2	정착실태Ⅲ 24
현재 직업	■ 현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36●	V26	정착실태Ⅲ 35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월평균 소득	■ 현재 하는 일을 통해 한 달에 얼마나 벌니까?	37●	V29 (50만원 단위 보기 제시)	정착실태Ⅲ39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형태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임금근로자 ② 비임금근로자	38●	V28	정착실태Ⅲ37
	■ 다음 중 근로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38-1●	V28	정착실태Ⅲ38
	■ 전일제(full-time), 시간제(part-time)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전일제 ② 시간제	38-2●	V28	
	■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고용원(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38-3●	V28	정착실태Ⅲ37
근로사유	■ 현재 그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해서 ②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⑦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⑧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 행하기 위해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⑩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⑪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⑫ 체류자격 유지·변경을 위해 ⑬ 흥미와 적성(전공)에 맞아서 ⑭ 기타(구체적으로:)	38-4●		
노동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 현재 일을 하면서 손님, 고용주, 혹은 다른 직 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 습니까? 1)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2)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3)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4) (성, 외모, 연령, 출신국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38-5●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 현재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2)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3)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4)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5)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6)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7)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8)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38-6●		
구직활동 여부 및 기간	■ 귀하는 현재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9●	V31	정착실태V43
	■ 귀하가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39-1●		정착실태V42
Ⅶ. 코로나의 영향				
학업 스트레스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는 등 여러 교육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① 매우 감소하였다 ② 약간 감소하였다 ③ 변화 없다 ④ 약간 증가하였다 ⑤ 매우 증가하였다	40●		
온라인 학습 및 활동 확대	■ 코로나19 발생 이후, 향후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나 활동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온라인 학교 수업 2) 온라인 청소년 활동(문화예술, 진로탐색 등)	41●		
가구 내 코로나 19 관련 기기 환경	■ 코로나19 이후 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가 있다 2)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이 된다 3)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 4) 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다	42●	Ⅱ 11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코로나 19 로 인한 삶의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1) 전반적인 생활 2) 가족관계 3) 친구관계 4) 학교생활 5) 사회에 대한 신뢰 6)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43●		
Ⅷ. 이주배경 특성				
한국 거주 및 국적 취득 계획	■ 앞으로 한국에 계속 살고 싶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46-3		
	■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② 한국의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③ 한국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서 ④ 한국에 오기 전에 살던 곳이 그리워서 ⑤ 다른 나라에서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⑥ 체류자격 유지 또는 국적 변경 및 획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⑦ 취업이 어려워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46-4		
	■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46-5	Ⅱ 13	
이중문화 수용태도	■ 다음은 자신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2) 나는 모국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3)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4)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5)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6) 나는 앞으로 모국에 가서 살고 싶다 7)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8) 나는 모국에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9) 나는 모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10) 나는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51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9) 견학 및 체험활동(놀이공원,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 10) 캠프 11)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12) 현금 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13)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14) 진로 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15) 검정고시 준비 지원 16) 기타(구체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 지금까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3	Ⅲ 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레인보우스쿨, 다문화 예비학급, 다문화 대안학교)	
	■ 어떤 지원을 이용해 보았습니까? 해당하는 지원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② 심리상담 프로그램 ③ 진로 프로그램 ④ 멘토링 프로그램 ⑤ 기타(구체적으로:)	53-1	Ⅲ 22-1 (귀하는 정규학교수업 이외에 학교 또는 그 외의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교육이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필요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 본인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한국어 교육 ② 한국 사회적응 프로그램 ③ 학습 지원(교과목 지도 등) ④ 취미, 특기적성 교육 ⑤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54	Ⅲ 22-2 (현재 정규학교수업 이외에 아래의 교육이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항목	문항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87명 ● 2,320명	891명	152명
	⑥ 진로 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정보 제공 등) ⑦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지원) ⑧ 현금 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⑨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⑩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 ⑪ 취업소개 ⑫ 기타(구체적으로:) ⑬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 출처 : 양계민 외(2021: 59) <표 III-11> 수정

2)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원자료로, 9세에서 24세까지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의 발달, 가치관 및 사회적응 실태를 조사한 연구이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를 비교하고, 특히 한국의 청소년 일반집단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전국 규모의 자료라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해당되는 19세에서 24세의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참여자 배경특성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 참여한 9세에서 24세까지의 유형별 조사대상자는 다음의 <표 III-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가 4,078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9~24세의 48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III-6> 중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해당되는 집단의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7명이고 북한배경 남한출생자의 경우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과 남한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하위 유형을 중심으로 설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항목

가운데 2020년에 실시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은 문항으로 자료가 수집된 경우, 동일한 연령대인 19~24세에 해당하는 일반집단 청소년의 응답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표 III -6.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조사대상자 하위유형별 표본 수

배경	하위 유형	만 9~12세	만 13~18세	19~24세	전체	소계
외국 배경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953(57.1)	808(42.1)	58(11.9)	1,819(44.6)	3,476 (85.2)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131(7.8)	190(9.9)	55(11.3)	376(9.2)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126(7.5)	57(3.0)	7(1.4)	190(4.7)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326(19.5)	585(30.5)	180(37.0)	1,091(26.8)	
북한 배경	남한출생 청소년	58(3.5)	16(0.8)	-	74(1.8)	602 (14.8)
	북한출생청소년	11(0.7)	58(3.0)	89(18.3)	158(3.9)	
	제3국출생 청소년	65(3.9)	207(10.8)	98(20.1)	370(9.1)	
	전체	1,670(100.0)	1,921(100.0)	487(100.0)	4,078(100.0)	

* 출처 : 양계민 외(2021: 81) <표 III -1> 수정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7명과 남한출생 청소년을 제외하고 본 분석에 활용된 분석대상자의 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이 58명(12.1%),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이 55명(11.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이 180명(37.5%)으로 외국배경자가 총 293명(61.0%)이었고, 북한출생청소년이 89명(18.5%),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이 98명(20.4%)으로 북한배경청소년은 총 187명(39.0%) 이었다. 따라서 분석대상자의 총 수는 480명이었다.

표 III -7. 유형별 분석대상자 수

단위: 명(%)

	외국배경			북한배경		합계
하위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빈도(%)	58(12.1)	55(11.5)	180(37.5)	89(18.5)	98(20.4)	
	293(61.0)			187(39.0)		480(100.0)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세가 170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20세가 110명(22.9%), 21세가 80명(16.7%), 22세가 53명(11.0%), 23세가 37명(7.7%), 24세가 30명(6.3%)이었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대 초반의 연령대가 가장 많고, 20대 중반으로 갈수록 숫자는 적어지는 분포였다.

표 Ⅲ-8.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단위: 명(%)

연령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합계
빈도(%)	170(35.4)	110(22.9)	80(16.7)	53(11.0)	37(7.7)	30(6.3)	480(100.0)

성별로는 남자가 231명으로 전체의 48.1%였고, 여자가 249명으로 51.9%였다. 따라서 남녀의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다.

표 Ⅲ-9.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빈도(%)	231(48.1)	249(51.9)	480(100.0)

이들을 하위유형별로 다시 살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는 남자가 63.8%, 여자가 36.2%로 남자 청소년이 더 많았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여자가 60.0%, 남자가 40.0%로 여자가 더 많았다. 그 외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청소년 집단과 북한출생청소년, 제 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간 많은 수준이었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Ⅲ-10. 유형별 성별 분포

단위: 명(%)

성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남자	37(63.8)	22(40.0)	86(47.8)	43(48.3)	43(43.9)	231(48.1)
여자	21(36.2)	33(60.0)	94(52.2)	46(51.7)	55(56.1)	249(51.9)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이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 거주자들이었는데, 서울 거주자가 178명(37.1%), 경기지역 거주자가 117명(24.4%)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인천으로 31명(6.5%)이었으며, 경남(23명, 4.8%), 충남(22명, 4.6%), 전남(18명, 3.8%)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거주비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로 3명(0.6%)이었다.

표 III-11.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빈도(%)	178 (37.1)	17 (3.5)	11 (2.3)	31 (6.5)	3 (0.6)	6 (1.3)	2 (0.4)	117 (24.4)	480 (100.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빈도(%)	10 (2.1)	13 (2.7)	22 (4.6)	12 (2.5)	18 (3.8)	12 (2.5)	23 (4.8)	5 (1.0)	

이들의 연령분포를 집단 내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I-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연령분포의 경향성이 하위유형 내 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연령층에서 19세 연령집단이 가장 많고, 다음이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등의 순이었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 24세 집단이 23세보다 약간 많고, 북한출생청소년 집단 역시 24세가 23세보다 약간 많으나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여 특정한 경향성을 언급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아울러 본 절에 제시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항목 가운데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자료가 수집된 경우,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동일 연령대의 이주배경청소년과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은 일반집단 청소년의 실태를 비교 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참여한 19~24세 해당하는 청소년은 2,320명이고, 20~22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각 연령별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III-12. 하위 유형별 연령분포

단위: 명(%)

연령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19세	23(39.7)	22(40.0)	69(38.3)	25(28.1)	31(31.6)	170(35.4)	383(16.5)
20세	17(29.3)	8(14.5)	36(20.0)	23(25.8)	26(26.5)	110(22.9)	476(20.5)
21세	9(15.5)	11(20.0)	26(14.4)	12(13.5)	22(22.4)	80(16.7)	412(17.8)
22세	3(5.2)	8(14.5)	19(10.6)	9(10.1)	14(14.3)	53(11.0)	443(19.1)
23세	1(1.7)	4(7.3)	19(10.6)	9(10.1)	4(4.1)	37(7.7)	356(15.3)
24세	5(8.6)	2(3.6)	11(6.1)	11(12.4)	1(1.0)	30(6.3)	250(10.8)
전체	58 (100.0)	55 (100.0)	180 (100.0)	89 (100.0)	98 (100.0)	480 (100.0)	2,320 (100.0)

다음으로 거주지별 하위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유형에 따른 거주지역은 확연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집단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25.9%), 다음이 경기(15.5%), 서울(13.8%), 경남(10.3%)의 순이었던 것에 비하여,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는 서울, 부산, 경기 등 주로 대도시 및 대도시 주변에 각각 12.7% 씩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은 서울지역에 42.2%, 경기지역에 32.8%가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전체의 75%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들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북한배경청소년들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북한출생청소년은 서울거주자가 50.6%, 경기지역 거주자가 22.5%로, 전체의 73.1%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였고,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역시 서울지역 거주자가 42.9%, 경기지역 거주자가 24.4%로 전체의 67.3%가 서울·경기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하위유형별 거주 지역

단위: 명(%)

하위 유형 지역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서울	8(13.8)	7(12.7)	76(42.2)	45(50.6)	42(42.9)	178(37.1)
부산	2(3.4)	7(12.7)	4(2.2)	-	4(4.1)	17(3.5)
대구	2(3.4)	5(9.1)	3(1.7)	-	1(1.0)	11(2.3)
인천	1(1.7)	5(9.1)	11(6.1)	9(10.1)	5(5.1)	31(6.5)
광주	1(1.7)	2(3.6)	-	-	-	3(0.6)
대전	-	-	-	3(3.4)	3(3.1)	6(1.3)
울산	-	-	-	1(1.1)	1(1.0)	2(0.4)
경기	9(15.5)	7(12.7)	59(32.8)	20(22.5)	22(22.4)	117(24.4)
강원	-	2(3.6)	-	2(2.2)	6(6.1)	10(2.1)
충북	4(6.9)	3(5.5)	3(1.7)	-	3(3.1)	13(2.7)
충남	5(8.6)	1(1.8)	7(3.9)	6(6.7)	3(3.1)	22(4.6)
전북	1(1.7)	6(10.9)	4(2.2)	1(1.1)	-	12(2.5)
전남	15(25.9)	3(5.5)	-	-	-	18(3.8)
경북	4(6.9)	4(7.3)	2(1.1)	-	2(2.0)	12(2.5)
경남	6(10.3)	2(3.6)	9(5.0)	1(1.1)	5(5.1)	23(4.8)
제주	-	1(1.8)	2(1.1)	1(1.1)	1(1.0)	5(1.0)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하위유형별 학교 재학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집단 청소년의 재학 비율인 83.0%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대부분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특히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경우 90% 이상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54.4%로 낮은 수준이었다. 앞의 <표 III-12>의 연령별 분포를 보았을 때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19세와 20세 연령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비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상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14. 유형별 재학 비율

단위: 명(%)

하위 유형 재학여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예	41(70.7)	37(67.3)	98(54.4)	82(92.1)	90(91.8)	348(72.5)	1,926(83.0)
아니오	17(29.3)	18(32.7)	82(45.6)	7(7.9)	8(8.2)	132(27.5)	394(17.0)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2,320(100.0)

이주배경청소년들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132명을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한 결과 ‘쉬고 있다’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아르바이트(22.0%)’, ‘대입준비(20.5%)’의 순이었으며, 기타 취업이나 창업, 검정고시 등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표 III-15. 유형별 현재 상태

단위: 명(%)

하위 유형 현재상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쉬고 있음	4(23.5)	2(11.1)	23(28.0)	1(14.3)	1(12.5)	31(23.5)
아르바이트	4(23.5)	-	21(25.6)	-	4(50.0)	29(22.0)
대입 준비	-	6(33.3)	151(8.3)	5(71.4)	1(12.5)	27(20.5)
검정고시 준비	1(5.9)	2(11.1)	9(11.0)	1(14.3)	2(25.0)	15(11.4)
취업·창업 준비	3(17.6)	4(22.2)	8(9.8)	-	-	15(11.4)
취업·창업	4(23.5)	4(22.2)	5(6.1)	-	-	13(9.8)
기타	1(5.9)	-	1(1.2)	-	-	2(1.5)
전체	17(100.0)	18(100.0)	82(100.0)	7(100.0)	8(100.0)	132(100.0)

이들 중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비율은 35.6%이고, 나머지 64.4%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청소년들이었는데, 특히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과 북한출생청

소년 및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응답을 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아마도 이들 집단의 경우 학령기 이후에 한국에 입국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16.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하위유형 학교재학 경험여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예	13(76.5)	9(50.0)	21(25.6)	2(28.6)	2(25.0)	47(35.6)
아니오	4(23.5)	9(50.0)	61(74.4)	5(71.4)	6(75.0)	85(64.4)
전체	17(100.0)	18(100.0)	82(100.0)	7(100.0)	8(100.0)	132(100.0)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가족이 한국 내 존재하는지 여부를 유형별로 파악한 결과 아래의 <표 III-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북한출생청소년, 즉, 북한에서 출생하여 직접 탈북한 경우 전체의 11.2%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경우 전체 180명 중 9명만이 국내에 가족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다.

표 III-17. 유형별 한국 내 가족 존재 여부

단위: 명(%)

하위 유형 가족존재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 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예	58(100.0)	55(100.0)	171(95.0)	79(88.8)	98(100.0)	461(96.0)
아니오	-	-	9(5.0)	10(11.2)	-	19(4.0)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거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국제 결혼가정청소년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높

았고, 북한출생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어머니와의 동거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동거 여부는 어머니에 비하여 낮은 경향성을 보였는데, 그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 집단의 경우, 아버지와의 동거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경우가 56.7%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북한배경의 청소년 집단의 경우 아버지와의 동거비율이 30% 내외로 낮은 편이었다. 그 외 특이할만한 점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나 북한출생청소년의 경우 친척과의 동거 비율이 약 20%가량으로 나타나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친척 동거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유형별 동거가족 현황(다중응답)

단위: 명(%)

가속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어머니		56(96.6)	52(94.5)	142(78.9)	66(74.2)	93(94.9)	409(85.2)
아버지		43(74.1)	41(74.5)	102(56.7)	27(30.3)	36(36.7)	249(51.9)
형제/자매		45(77.6)	26(43.3)	60(33.3)	34(38.2)	25(25.5)	190(39.6)
할머니/할아버지		12(20.7)	2(3.6)	25(13.9)	9(10.1)	2(2.0)	50(10.4)
친척		6(10.3)	8(14.5)	40(22.2)	20(22.5)	13(13.3)	87(18.1)
친구/선·후배		1(1.7)	-	7(3.9)	1(1.1)	3(3.1)	12(2.5)
기타		-	-	1(.6)	3(3.4)	-	4(.8)
없다(혼자 산다)		-	-	9(5.0)	8(9.0)	-	17(3.5)
전체		58	55	180	89	98	480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부모 출신국을 비교하였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의 국적이 대부분 한국이었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역시 아버지의 출신국은 대부분 한국이었으며 단 6명만 외국국적이었는데, 이 때 아버지 출신국은 중국이었다. 북한출생청소년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는 외국출신의 아버지 국적이 모두 중국이었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55.6%가 중국,

그 외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 비교적 많고, 그 외 다양한 국적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간에 차이는 있으나, 아버지가 외국출신자인 경우 대다수는 중국 출신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9. 아버지 출신국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중국	1(25.0)	6(100.0)	100(55.6)	2(100.0)	87(100.0)	196(70.3)
베트남	-	-	14(7.8)	-	-	14(5.0)
필리핀	-	-	2(1.1)	-	-	2(0.7)
캄보디아	-	-	2(1.1)	-	-	2(0.7)
태국	-	-	2(1.1)	-	-	2(0.7)
우즈베키스탄	-	-	21(11.7)	-	-	21(7.5)
러시아	-	-	10(5.6)	-	-	10(3.6)
몽골	-	-	13(7.2)	-	-	13(4.7)
미국	1(25.0)	-	-	-	-	1(0.4)
키르기스스탄	-	-	1(0.6)	-	-	1(0.4)
카자흐스탄	-	-	5(2.8)	-	-	5(1.8)
타지키스탄	-	-	1(0.6)	-	-	1(0.4)
앙골라	-	-	1(0.6)	-	-	1(0.4)
파키스탄	1(25.0)	-	1(0.6)	-	-	2(0.7)
우간다	-	-	2(1.1)	-	-	2(0.7)
이집트	-	-	2(1.1)	-	-	2(0.7)
예멘	-	-	2(1.1)	-	-	2(0.7)
아르헨티나	-	-	1(0.6)	-	-	1(0.4)
모름	1(25.0)	-	-	-	-	1(0.4)
전체	4(100.0)	6(100.0)	180(100.0)	2(100.0)	87(100.0)	279(100.0)

어머니의 경우 역시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45.6%로 가장 많고, 베트남, 일본 등의 순이었으나 이 역시 하위유형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의 경우는 일본 출신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필리핀(27.8%)이었으며, 다음이 중국(14.8%)이었다. 그에 비하여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어머니의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베트남(30.6%), 일본(12.2%) 등의 순이었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어머니의 경우, 중국이 55.6%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우즈베키스탄으로 11.7%였다.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는 어머니는 2명 모두 중국출신이었다.

표 III-20. 어머니 출신국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전체
중국	8(14.8)	20(40.8)	100(55.6)	2(100.0)	130(45.6)
베트남	1(1.9)	15(30.6)	14(7.8)	-	30(10.5)
일본	20(37.0)	6(12.2)	-	-	26(9.1)
우즈베키스탄	-	-	21(11.7)	-	21(7.4)
필리핀	15(27.8)	4(8.2)	2(1.1)	-	21(7.4)
몽골	1(1.9)	2(4.1)	13(7.2)	-	16(5.6)
러시아	1(1.9)	-	9(5.0)	-	10(3.5)
카자흐스탄	-	-	6(3.3)	-	6(2.1)
태국	3(5.6)	-	2(1.1)	-	5(1.8)
키르기스스탄	2(3.7)	-	1(0.6)	-	3(1.1)
우간다	-	-	2(1.1)	-	2(0.7)
이집트	-	-	2(1.1)	-	2(0.7)
예멘	-	-	2(1.1)	-	2(0.7)
캄보디아	-	-	2(1.1)	-	2(0.7)
페루	1(1.9)	-	-	-	1(0.4)
온두라스	-	1(2.0)	-	-	1(0.4)
아르헨티나	-	-	1(0.6)	-	1(0.4)
타지키스탄	-	-	1(0.6)	-	1(0.4)
인도네시아	1(1.9)	-	-	-	1(0.4)
미얀마	-	1(2.0)	-	-	1(0.4)
파키스탄	-	-	1(0.6)	-	1(0.4)
콩고	-	-	1(0.6)	-	1(0.4)
모름	1(1.9)	-	-	-	1(0.4)
전체	54(100.0)	49(100.0)	180(100.0)	2(100.0)	285(100.0)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과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 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국내에서 출생을 한 한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외 거주 경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머지 집단 모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표 Ⅲ-21. 과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하위유형 외국거주 경험여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예	18(31.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40(91.7)
아니오	40(69.0)	-	-	-	-	40(8.3)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을 질문하였는데, 5년 이하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고, 6년에서 10년이라는 응답이 15.5%, 11년에서 15년이 5.6%, 16년에서 20년이라는 응답 이 4.9%, 2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0.4%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반 정도는 한국의 거주기간 이 5년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2. 한국 거주 기간

단위: 명(%)

거주기간	5년 이하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 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	233(48.5)	74(15.5)	27(5.6)	24(4.9)	2(0.4)	120(25.0)	480(100.0)

전체 응답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전체의 55.4%는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었고, 외국국적 자는 43.8%였으며, 국적이 없다는 응답이 0.8%로 4명이 있었다.

표 III-23. 조사대상자 국적

단위: 명(%)

하위 유형	한국	외국	국적 없음	전체
빈도	282(55.4)	223(43.8)	4(0.8)	509(100.0)

이들의 귀화여부를 파악하였는데, 전체 중 귀화비율이 78.0%였는데, 하위 유형별로 보았을 때,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과 북한출생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등 세 집단은 전체가 모두 귀화를 하였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 76.9%가 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유형별 귀화자 비율

단위: 명(%)

귀화여부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예	3(5.4)	30(76.9)	16(100.0)	89(100.0)	82(100.0)	220(78.0)
아니오	53(94.6)	9(23.1)	-	-	-	62(22.0)
전체	56(100.0)	39(100.0)	16(100.0)	89(100.0)	82(100.0)	282(100.0)

조사대상자의 국적을 보면 각 집단별 전체 수보다 많다. 그 이유는 이중국적 소지자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III-25>을 살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한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동시에 지닌 청소년이 전체 58명 중 8명 있었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는 이중국적의 비율이 그보다 더 높았으며,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경우는 전체 180명 중 165명이 외국국적이었고,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16명이 있었다.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경우는 대부분 당연히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나,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경우는 외국국적을 지닌 경우도 25명이 있었다. 전체 중 국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는 총 4명으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이 각각 2명이었다.

표 III-25. 조사대상자 유형별 국적 분포

단위: 명

하위유형 국적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전체	58	55	180	89	98	480
한국	56	39	16	89	82	282
외국	8	23	165	2	25	223
국적 없음	-	-	2	-	2	4

* 이중국적자자가 포함되어 각 셀의 합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수보다 많음.

외국국적 소지자의 국적을 파악해 본 결과 중국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일본 국적을 소지한 경우가 7명,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소지한 경우가 1명이었던 반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은 중국이 3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베트남(30.2%), 일본(17.4%) 등의 순이었다. 북한출생청소년과 제3국출생 청소년의 외국국적은 100%가 중국이었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경우도 중국이 55.2%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이 10.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외 다양한 출신 국적을 나타내었다.

표 III-26. 유형별 국적 분포

단위: 명(%)

국적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중국	-	9(39.1)	91(55.2)	2(100.0)	25(100.0)	127(57.0)
우즈베키스탄	-	-	17(10.3)	-	-	17(7.6)
베트남	-	7(30.4)	8(4.8)	-	-	15(6.7)
몽골	-	1(4.3)	13(7.9)	-	-	14(6.3)
러시아	-	-	12(7.3)	-	-	12(5.4)
일본	7(87.5)	4(17.4)	-	-	-	11(4.9)
카자흐스탄	-	-	6(3.6)	-	-	6(2.7)
필리핀	-	2(8.7)	2(1.2)	-	-	4(1.8)
우간다	-	-	2(1.2)	-	-	2(0.9)
캄보디아	-	-	2(1.2)	-	-	2(0.9)
예멘	-	-	2(1.2)	-	-	2(0.9)
태국	-	-	2(1.2)	-	-	2(0.9)
이집트	-	-	2(1.2)	-	-	2(0.9)
타지키스탄	-	-	1(0.6)	-	-	1(0.4)
우크라이나	-	-	1(0.6)	-	-	1(0.4)
앙골라	-	-	1(0.6)	-	-	1(0.4)
파키스탄	-	-	1(0.6)	-	-	1(0.4)
미국	-	-	1(0.6)	-	-	1(0.4)
키르기스스탄	1(12.5)	-	-	-	-	1(0.4)
아르헨티나	-	-	1(0.6)	-	-	1(0.4)
전체	8(100.0)	23(100.0)	165(100.0)	2(100.0)	25(100.0)	223(100.0)

현재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향후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모두 50% 내외에서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나 지속적 거주에 대한 확신이 가장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수 자체가 지나치게 적어서,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조심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크게 벗어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7. 외국국적 소지자의 향후 한국 거주 의지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예	-	8(50.0)	87(53.0)	8(50.0)	103(52.0)
아니오	1(50.0)	2(12.5)	12(7.3)	-	15(7.6)
잘 모르겠다	1(50.0)	6(37.5)	65(39.6)	8(50.0)	80(40.4)
전체	2(100.0)	16(100.0)	164(100.0)	16(100.0)	198(100.0)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 68.8%가 국적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은 약 30%,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는 37.5%만이 국적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0.9%와 50%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이나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한국 내에서의 삶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

표 III-28. 한국 국적 취득 계획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예	-	11(68.8)	49(29.9)	6(37.5)	66(33.3)
아니오	-	1(6.3)	48(29.3)	2(12.5)	51(25.8)
잘 모르겠다	2(100.0)	4(25.0)	67(40.9)	8(50.0)	81(40.9)
전체	2(100.0)	16(100.0)	164(100.0)	16(100.0)	198(100.0)

다음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을 총 5점 척도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보다 명확한 집단 간 차이를 보고자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3.03으로 가장 높고, 북한출생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2.58로 가장 낮았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차이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과 나머지 집단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유형별 주관적 가정 경제적 수준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 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매우 어렵다	3(5.2)	5(9.1)	3(1.7)	6(6.7)	2(2.0)	19(4.0)
어려운 편이다	17(29.3)	8(14.5)	28(15.6)	31(34.8)	27(27.6)	111(23.1)
중간이다	32(55.2)	36(65.5)	113(62.8)	47(52.8)	60(61.2)	288(60.0)
잘사는 편이다	6(10.3)	5(9.1)	32(17.8)	4(4.5)	7(7.1)	54(11.3)
매우 잘 산다	-	1(1.8)	4(2.2)	1(1.1)	2(2.0)	8(1.7)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평균(표준편차)	2.71(.73)b	2.80(.80)b	3.03(.70)a	2.58(.74)b	2.80(.69)b	2.84(.74)

*주: $F=6.68^{***}$, Duncan: a)b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부모님이 또는 본인이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은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전체 집단 중 가장 많은 차별경험을 보고한 집단은 국외출생자들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은 41.8%,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은 40.6%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을 하였다. 외국출신자들이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은 아마도 한국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30. 일상생활의 차별경험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예	14(24.1)	23(41.8)	73(40.6)	20(22.5)	17(17.3)	147(30.6)
아니오	44(75.9)	32(58.2)	107(59.4)	69(77.5)	81(82.7)	333(69.4)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차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6.6%로 가장 많았고, ‘학교, 학원, 공부방 등의 다른 학생들’이라는 응답이 35.9%, ‘편의점, 식당, PC방 등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34.5%,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 직장의 다른 직원 또는 고용주’가 22.1%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친구나 학교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직장 사람들도 중요한 차별의 주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접촉하는 만큼 차별적 행동이 나타날 기회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31. 차별대상자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학교, 학원, 공부방 등의 다른 학생들	10(6.9)	10(6.9)	22(15.2)	8(5.5)	2(1.4)	52(35.9)
학교선생님/교수님	4(2.8)	21.4)	12(8.3)	2(1.4)	2(1.4)	22(15.2)
학원, 학습지, 과외 공부방 등의 선생님	-	-	2(1.4)	1(0.7)	1(0.7)	4(2.8)
친척들	3(2.1)	-	1(0.7)	1(0.7)	1(0.7)	6(4.1)
동네 사람들	2(1.4)	3(2.1)	7(4.8)	2(1.4)	2(1.4)	16(11.0)
편의점, 식당, PC방 등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3(2.1)	6(4.1)	26(17.9)	6(4.1)	9(6.2)	50(34.5)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4(2.8)	11(7.6)	28(19.3)	2(1.4)	8(5.5)	53(36.6)
직장의 다른 직원 또는 고용주	1(0.7)	7(4.8)	21(14.5)	3(2.1)		32(22.1)
전체	14(9.7)	22(15.2)	72(49.7)	20(13.8)	17(11.7)	145(100.0)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에 대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전체 모든 문항에서 이주배경집단이 일반청소년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은 일반집단 청소년과 함께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둘째로, 인권존중에 대해서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과 일반집단청소년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셋째로, 한국사회의 다양성 인정에 대해서는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집단이 가장 평균값이 높았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북한출생청소년 등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7개 집단 중 낮은 편이었고, 일반집단 청소년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라는 점에서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이나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한국사회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일반집단청소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집단이 북한출생청소년이었다는 점이 특이할만 하다. 이는 아마도 탈북이라는 경험이 한국사회의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Ⅲ-32. 사회 가치관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일반집단 청소년	전체	F
한국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2.53 (.71)c	2.91 (.73)ab	3.02 (.55)a	2.81 (.62)b	2.92 (.65)ab	2.42 (.63)c	2.50 (.66)	48.16***
한국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2.81 (.69)b	3.09 (.65)a	3.19 (.56)a	3.16 (.56)a	3.11 (.62)a	2.68 (.75)b	2.75 (.74)	31.27***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2.86 (.74)b	2.98 (.78)ab	3.06 (.61)ab	2.96 (.74)ab	3.12 (.54)a	2.63 (.73)c	2.70 (.73)	24.26***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 가 없는 사회이다	2.31 (.78)b	2.58 (.85)a	2.74 (.74)a	2.29 (.82)b	2.61 (.70)a	2.07 (.70)c	2.15 (.74)	44.19***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5.10 (2.84)b	4.98 (2.13)b	5.19 (2.48)b	6.31 (2.53)a	5.19 (2.22)b	5.33 (1.82)b	5.33 (1.95)	5.40***

*주: *** $p < .001$, Duncan: a)b)c

(2)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따른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출 현황

19세에서 24세 사이의 후기청소년기에는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진로 및 취업 관련 다양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현재 진로 및 향후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가운데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출 현황과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기대 포부 수준을 보여주는 희망 교육수준을 살펴 보았다.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주배경집단 전체의 응답률을 보았을 때, '4년제 이상 대학교'의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10.9%로 가장 낮았다. 일반집단 청소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4년제 이상 대학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희망교육수준이 '4년제 이상 대학교'인 비율이 79.9%로 이주배경청소년 전체 집단보다 크게 높으며, 반대로 고등학교 이하 비율은 4.2%로 매우 낮아 일반집단 청소년에 비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포부 수준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진로에 대한 기대 포부수준과 관련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하위유형별 응답을 비교하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이하와 2~3년제 대학교의 비율이 각각 13.8%, 29.3%로 전체 수준보다 높았고, 대학원 이상의 비율은 10.3%로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출생청소년이 4년제 이상 대학교(65.2%)와 대학원 이상(80.2%)을 희망 교육수준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수준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교 이하의 비율은 3.4%로 매우 낮았다. 즉, 북한출생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희망 교육수준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고등학교 이하	8(13.8)	5(9.3)	25(14.0)	3(3.4)	11(11.2)	52(10.9)	97(4.2)
대학교 (2-3년제)	17(29.3)	11(20.4)	47(26.3)	10(11.2)	28(28.6)	113(23.6)	219(9.4)
대학교 (4년제 이상)	27(46.6)	31(57.4)	72(40.2)	58(65.2)	43(43.9)	231(48.3)	1,854(79.9)
대학원 이상 (석·박사)	6(10.3)	7(13.0)	35(19.6)	18(20.2)	16(16.3)	82(17.2)	150(6.5)
전체	58 (100.0)	54 (100.0)	179 (100.0)	89 (100.0)	98 (100.0)	478* (100.0)	2,320 (100.0)

* 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1명과 국외출생 외국가정 청소년 1명은 무응답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은 41.5%로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58.5%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을 하였다. 특히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39.6%)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36.7%)의 장래 희망 직업 결정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북한출생청소년(49.4%)들이었다. 이를 일반집단 청소년과 비교한 결과 일반 집단 청소년 역시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58.1%로 이주배경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III-34. 장래 희망 직업 결정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예	25(43.1)	23(41.8)	71(39.4)	44(49.4)	36(36.7)	199(41.5)	972(41.9)
아니오	33(56.9)	32(58.2)	109(60.6)	45(50.6)	62(63.3)	281(58.5)	1,348(58.1)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2,320(100.0)

진로의식 수준과 관련한 질문 중 아래의 <표 III-35>와 같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의 경우 모든 하위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일반집단청소년에 비해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북한출생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희망 교육수준,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그리고 진로의식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일관되게 북한출생청소년이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포부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진로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모든 항목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각 항목에 대한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의 전체 평균을 비교해보면, 진로에 대한 주체성을 보여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이 3.14로 가장 높았다. ‘관심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의 평균은 2.65로 가장 낮았는데, 이 항목의 경우, 청소년의 관심 직종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진로 준비활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게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5. 진로의식

사례 수: 이주배경청소년 480명, 일반집단 청소년 2,320명, 단위: 4점 척도, 평균(표준편차)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일반집단 청소년	전체	F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2.78b (.80)	2.87ab (.61)	2.94ab (.65)	2.84ab (.78)	2.94ab (.69)	2.96a (.48)	2.95ab (.52)	2.53*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2.93c (.70)	3.00bc (.58)	3.07abc (.66)	3.21a (.61)	3.12ab (.65)	3.15abc (.66)	3.14 (.66)	2.39*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다	2.84c (.77)	3.02abc (.71)	3.07ab (.72)	3.18a (.72)	2.89bc (.70)	3.00abc (.65)	3.01 (.65)	2.91*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78c (.73)	3.02ab (.68)	2.98b (.70)	3.18a (.63)	2.87bc (.70)	3.03ab (.61)	3.02 (.62)	4.14**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2.97b (.77)	3.09ab (.73)	2.96b (.73)	3.22a (.72)	2.94b (.73)	2.92b (.69)	2.93 (.70)	3.84**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2.41d (1.03)	2.84ab (.79)	2.56cd (.89)	2.88a (.84)	2.62bcd (.81)	2.66abc (.72)	2.65 (.75)	4.07**

* 주: *p < .05, ** p < .01, Duncan: a)b)c)d

이어서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0.2%였다. 유형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북한출생청소년의 직업훈련 경험이 34.8%로 가장 높았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24.1%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는 일반집단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집단 청소년의 비율인 5.5%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36. 직업훈련 경험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있다	14(24.1)	18(32.7)	58(32.2)	31(34.8)	24(24.5)	145(30.2)	128(5.5)
없다	44(75.9)	37(67.3)	122(67.8)	58(65.2)	74(75.5)	335(69.8)	2,192(94.5)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2,320(100.0)

한국에서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145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목적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취창업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33.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직업훈련의 주된 목적은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국내 및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주로 취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출생청소년(51.6%)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41.7%)은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변경’이 주된 직업훈련의 목적이었다는 응답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에서만 나타났다. 일반집단 청소년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격증 취득’이 직업훈련의 주된 목적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으나, ‘더 나은 직무수행’이나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직업훈련 경험을 받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더 높았다.

표 Ⅲ-37. 직업훈련의 목적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취업/창업	9(64.3)	9(50.0)	17(29.3)	7(22.6)	7(29.2)	49(33.8)	9(7.0)
더 나은 직무수행	1(7.1)	-	7(12.1)	2(6.5)	1(4.2)	11(7.6)	35(27.3)
경력개발	1(7.1)	3(16.7)	6(10.3)	6(19.4)	3(12.5)	19(13.1)	29(22.7)
자격증 취득	3(21.4)	6(33.3)	21(36.2)	16(51.6)	10(41.7)	56(38.6)	53(41.4)
체류자격 유지·변경	-	-	6(10.3)	-	2(8.3)	8(5.5)	NA
기타	-	-	1(1.7)	-	1(4.2)	2(1.4)	2(1.6)
전체	14(100.0)	18(100.0)	58(100.0)	31(100.0)	24(100.0)	145(100.0)	128(100.0)

* 주: NA = 조사항목 아님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335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에 상관없이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 3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직업훈련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실제로 탐색해 볼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16.7%,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12.8%였는데, 이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가운데 해당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31.8%로 크게 높았다. 한편,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중에서는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일반집단 청소년의 응답은 이주배경청소년과 차이가 있었다.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44.1%)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뒤이어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직업훈련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23.4%로 많았다. 하지만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하여서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3.8%에 불과하여 일반집단 청소년에 비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8.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알지 못함	16 (36.4)	21 (56.8)	52 (42.6)	17 (29.3)	22 (29.7)	128 (38.2)	303 (13.8)
원하는 직무 관련 훈련이 없음	1 (2.3)	1 (2.7)	11 (9.0)	7 (12.1)	7 (9.5)	27 (8.1)	512 (23.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4 (31.8)	3 (8.1)	9 (7.4)	12 (20.7)	5 (6.8)	43 (12.8)	956 (44.1)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은 하지 못함	8 (18.2)	5 (13.5)	18 (14.8)	10 (17.2)	15 (20.3)	56 (16.7)	411 (18.8)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7 (5.7)	-	3 (4.1)	10 (3.0)	NA
시간이 없음	3 (6.8)	4 (10.8)	16 (13.1)	9 (15.5)	13 (17.6)	45 (13.4)	NA
비용이 많이 들어서	2 (4.5)	-	4 (3.3)	2 (3.4)	9 (12.2)	17 (5.1)	NA
기타	-	3 (8.1)	5 (4.1)	1 (1.7)	-	9 (2.7)	-
전체	44 (100.0)	37 (100.0)	122 (100.0)	58 (100.0)	74 (100.0)	335 (100.0)	2,192 (100.0)

* 주: NA = 조사항목 아님

더불어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은 66.8%였으며,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직업훈련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6%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았다. 그러나 일반집단 청소년의 경우, 향후 직업훈련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8.0%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매우 높았다.

표 III-39. 향후 직업훈련 계획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있다	28(63.6)	25(67.6)	83(68.0)	34(59.6)	53(71.6)	223(66.8)	482(22.0)
없다	16(36.4)	12(32.4)	39(32.0)	23(40.4)	21(28.4)	111(33.2)	1,710(78.0)
전체	44(100.0)	37(100.0)	122(100.0)	57(100.0)	74(100.0)	334*(100.0)	2,192(100.0)

* 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1명은 무응답

한국에서 현재 또는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은 61.9%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이 70.7%로 가장 높았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50.9%로 가장 낮았다.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7명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비율은 32.0%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이 42.4%로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북한출생청소년과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비율은 약 17%로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 청소년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현재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한 일반집단 청소년의 응답 분포는 전체 이주배경청소년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III-40.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있다	41(70.7)	28(50.9)	125(69.4)	51(57.3)	52(53.1)	297(61.9)	1,461(63.0)
없다	17(29.3)	27(49.1)	55(30.6)	38(42.7)	46(46.9)	183(38.1)	859(37.0)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2,320(100.0)

표 III-41. 현재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있다	15(36.6)	9(32.1)	53(42.4)	9(17.6)	9(17.3)	95(32.0)	481(32.9)
없다	26(63.4)	19(67.9)	72(57.6)	42(82.4)	43(82.7)	202(68.0)	980(67.1)
전체	41(100.0)	28(100.0)	125(100.0)	51(100.0)	52(100.0)	297(100.0)	1,461(100.0)

이어서 후기청소년기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진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4.0%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반집단 청소년의 일 경험 비율 30.1%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연령이 높은 후기청소년의 비율이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더 높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던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경우,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36.1%로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집단 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이어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29.3%가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현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과 다르게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6.4%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지난주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있다	17(29.3)	9(16.4)	65(36.1)	11(12.4)	13(13.3)	115(24.0)	699(30.1)
없다	41(70.7)	46(83.6)	115(63.9)	78(87.6)	85(86.7)	365(76.0)	1,621(69.9)
전체	58(100.0)	55(100.0)	180(100.0)	89(100.0)	98(100.0)	480(100.0)	2,320(100.0)

한편, ‘지난주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단 2명으로 모두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이었다. 그리고 ‘지난주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은 5명(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2명,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3명)이었다. ‘지난주 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일반집단 청소년 1,621명 중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는 10명(0.6%)에 불과하였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주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서빙이 33.3%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가 약 14.7%, 단순노동 9.8%, 판매 8.8%, 통번역 3.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15명과,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가족무급종사자 2명, 마지막으로 지난주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다고 응답한 5명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 122명을 대상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를 질문하였다. ‘사업체에 고용된 임금종사자’와 ‘자영업자 및 가족무급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종사자’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임금근로자(87.7%)라고 응답하였고 유형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반집단 청소년과 비교한 결과 경향성 자체는 크지 않으나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89.2%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근로형태는 대부분 비정규직(88.8%)이었고, 유형별로 보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정규직의 비율이 40%로 크게 높았다. 반면,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일반집단 청소년의 30.9%는 정규직이고, 69.1%가 비정규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중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에 응답한 빈도 자체가 지나치게 적어서 현재의 비율만으로는 일반집단 청소년과의 차이를 논의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근로 방식을 전일제(full-time) 또는 시간제(part-time) 근로로 나누어 보면, 이주배경청소년 가운데 시간제에 해당하는 비율이 67.3%로 전일제 32.7% 보다 높았다. 북한출생청소년은 모두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고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 또한 83.3%가 시간제 근로자로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다. 이 역시 사례 수가 많지 않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보다

대표성 있는 자료를 통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 방식의 실태를 일반집단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두 집단 간 경향성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Ⅲ-43.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5 (88.2)	10 (90.9)	60 (85.7)	10 (90.9)	12 (92.3)	107 (87.7)	644 (89.2)
	비임금근로자	2 (11.8)	1 (9.1)	10 (14.3)	1 (9.1)	1 (7.7)	15 (12.3)	78 (10.8)
	전체	17 (100.0)	11 (100.0)	70 (100.0)	11 (100.0)	13 (100.0)	122 ¹⁾ (100.0)	722 ²⁾ (100.0)
근로 형태	정규직	2 (13.3)	4 (40.0)	6 (10.0)	-	-	12 (11.2)	199 (30.9)
	비정규직	13 (86.7)	6 (60.0)	54 (90.0)	10 (100.0)	12 (100.0)	95 (88.8)	445 (69.1)
	전체	15 (100.0)	10 (100.0)	60 (100.0)	10 (100.0)	12 (100.0)	107 (100.0)	644 (100.0)
근로 방식	전일제	3 (20.0)	4 (40.0)	26 (43.3)	-	2 (16.7)	35 (32.7)	255 (39.6)
	시간제	12 (80.0)	6 (60.0)	34 (56.7)	10 (100.0)	10 (83.3)	72 (67.3)	389 (60.4)
	전체	15 (100.0)	10 (100.0)	60 (100.0)	10 (100.0)	12 (100.0)	107 (100.0)	644 (100.0)

* 주: 1) 지난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115명, 가족무급종사자 2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5명 포함
2) 지난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644명, 무급가족종사자 10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13명 포함

지난 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무응답을 제외한 이주배경청소년 102명의 월평균 소득 수준의 전체 평균은 107.85만원이었다. 이 중 정규직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175.25만원인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 97.86만원으로 근로형태에 따른 월평균 소득은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방식에 따른 전체 수준의 월평균 소득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일제의 경우, 평균 177.35만원이었으나 시간제는 평균 73.1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타났다. 사례 수의 한계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형태 및 근로방식 안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 간 월평균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의 월평균 소득 평균이 가장 낮았는데, 집단 내 표준편차가 103.40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 동일한 근로형태 내에서 월평균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큰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평균 소득 수준이 113.9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북한출생청소년은 평균 45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근로 방식 내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간 평균 소득 수준은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보다는 작았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집단 청소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주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22명의 일반집단 청소년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127.86만원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의 107.85만원에 비하여 약 20만원 더 높았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일반집단 청소년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94.25만원으로 이주배경청소년 97.86만원에 비하여 약간 낮았으나, 정규직의 월경우는 일반집단 청소년의 평균 소득 수준이 203.03만원, 이주배경청소년이 175.25만원으로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근로 방식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일반집단 청소년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이주배경청소년보다 높았는데, 특히 전일제의 경우 일반집단은 204.44만원, 이주배경청소년은 177.35만원으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월평균 소득

사례 수: 이주배경청소년 102명, 일반집단 청소년 722명, 단위: 만원, 평균(표준편차)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근로 형태	정규직	191.50 (12.02)	137.50 (103.40)	195.00 (38.34)	-	-	175.25 (66.15)	203.03 (74.71)
	비정규직	81.92 (72.72)	82.67 (61.88)	113.91 (77.95)	45.00 (27.63)	104.09 (83.93)	97.86 (75.01)	94.25 (54.46)
근로 방식	전일제	211.00 (34.83)	172.50 (91.42)	169.77 (66.94)	-	220.00 (98.99)	177.35 (68.27)	204.44 (63.19)
	시간제	66.64 (52.30)	59.33 (22.91)	86.41 (67.60)	45.00 (27.63)	78.33 (58.95)	73.10 (56.74)	77.67 (37.99)
전체		97.57 (77.91)	104.60 (80.58)	123.84 (78.68)	45.00 (27.63)	104.09 (83.93)	107.85 (78.08)	127.86 (79.36)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선택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이주배경청소년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생활비 등을 위한 수입이 필요해서(41.0%)’였다.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취업준비에 필요한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을 병행할 수 있어서’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3.1%였으며, ‘노력을 한 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전체의 10.7%로, 다른 이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현재 일을 하는 이유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생활비 등의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북한출생청소년의 81.8%인 반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18.2%로 매우 낮았다. ‘체류자격 유지 또는 변경을 위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1명 뿐이었다.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집단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집단 청소년의 경우도 생활비 등을 위한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전체의 24.1%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17.6%)’, 또는 ‘일자리의 안정성 때문(11.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표 III-45.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근로조건 만족	2 (11.8)	1 (9.1)	5 (7.1)	-	2 (15.4)	10 (8.2)	127 (17.6)
일자리의 안정성	-	-	1 (1.4)	-	-	1 (.8)	83 (11.5)
생활비 등을 위한 수입이 필요해서	8 (47.1)	2 (18.2)	24 (34.3)	9 (81.8)	7 (53.8)	50 (41.0)	174 (24.1)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1 (5.9)	2 (18.2)	4 (5.7)	-	-	7 (5.7)	65 (9.0)
전공/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	2 (2.9)	-	1 (7.7)	3 (2.5)	22 (3.0)
경력을 쌓아 이직하기 위해서	1 (5.9)	2 (18.2)	4 (5.7)	-	-	7 (5.7)	33 (4.6)
육아/가사와 병행을 위해서	-	-	1 (1.4)	-	-	1 (.8)	1 (.1)
취업준비 등과 병행하기 위해서	2 (11.8)	-	12 (17.1)	1 (9.1)	1 (7.7)	16 (13.1)	93 (12.9)
노력한 만큼 수입이 있어서	1 (5.9)	2 (18.2)	8 (11.4)	1 (9.1)	1 (7.7)	13 (10.7)	51 (7.1)
유연한 근무시간	1 (5.9)	2 (18.2)	4 (5.7)	-	1 (7.7)	8 (6.6)	47 (6.5)
가족의 일을 돕기 위해서	-	-	2 (2.9)	-	-	2 (1.6)	26 (3.6)
체류자격 유지 및 변경을 위해서	-	-	1 (1.4)	-	-	1 (.8)	NA
흥미, 적성, 전공에 맞아서	1 (5.9)	-	-	-	-	1 (.8)	NA
기타	-	-	2 (2.9)	-	-	2 (1.6)	-
전체	17 (100.0)	11 (100.0)	70 (100.0)	11 (100.0)	13 (100.0)	122 ¹⁾ (100.0)	722 ²⁾ (100.0)

* 주. 1) 지난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115명, 가족무급종사자 2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5명 포함

2) 지난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644명, 무급가족종사자 10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13명 포함
NA = 조사항목 아님

다음으로, 일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노동 관련 부당행위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노동관련 처우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다양한 상황의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노동 상황에서 고용주 혹은 직원으로부터 부당행위 또는 부당한 처우를 경험

한 청소년의 절대적 비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집단청소년과 비교할 때 이주배경청소년의 부당행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용주 혹은 직원으로부터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은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은 14.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일반집단 청소년이 해당 부당행위 경험 비율인 4.3%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 밖에 폭행, 무시 및 따돌림,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 부당행위의 비율은 10% 미만의 수준이었으나 여전히 일반집단 청소년과 비교하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경우, 소수이기는 하나 모든 항목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한 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부족 등으로 인해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것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46. 고용주 혹은 직원으로부터 노동관련 부당행위 경험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 집단 청소년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	없다	15 (93.8)	10 (100.0)	51 (78.5)	11 (100.0)	10 (83.3)	97 (85.1)	691 (95.7)
	있다	1 (6.3)	-	14 (21.5)	-	2 (16.7)	17 (14.9)	31 (4.3)
폭행	없다	16 (100.0)	10 (100.0)	60 (92.3)	11 (100.0)	11 (91.7)	108 (94.7)	719 (99.6)
	있다	-	-	5 (7.7)	-	1 (8.3)	6 (5.3)	3 (0.4)
무시 및 따돌림	없다	16 (100.0)	9 (90.0)	57 (87.7)	11 (100.0)	12 (100.0)	105 (92.1)	708 (98.1)
	있다	-	1 (10.0)	8 (12.3)	-	-	9 (7.9)	14 (1.9)
차별경험	없다	15 (93.8)	10 (100.0)	57 (87.7)	11 (100.0)	11 (91.7)	104 (91.2)	707 (97.9)
	있다	1 (6.3)	-	8 (12.3)	-	1 (8.3)	10 (8.8)	15 (2.1)
성희롱 또는 성추행	없다	16 (100.0)	9 (90.0)	62 (95.4)	11 (100.0)	12 (100.0)	110 (96.5)	715 (99.0)
	있다	-	1 (10.0)	3 (4.6)	-	-	4 (3.5)	7 (0.3)
전체		16 (100.0)	10 (100.0)	65 (100.0)	11 (100.0)	12 (100.0)	114 ¹⁾ (100.0)	722 ²⁾ (100.0)

* 주. 1) 지난해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115명, 가족무급종사자 2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5명을 모두 포함한 122명 가운데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8명 제외

2) 지난해 1시간 일한 경험이 있는 644명, 무급가족종사자 10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13명 포함

마찬가지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노동관련 부당행위 경험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아래의 <표 III-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다른 항목에 비해 ‘손님으로부터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 등을 들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13.6%로 다소 높았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일반집단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나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의 경우는 일반집단 청소년이 18.0%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손님으로부터 노동관련 부당행위 경험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 집단 청소년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	없다	12 (92.3)	6 (85.7)	52 (86.7)	9 (81.8)	10 (83.3)	89 (86.4)	495 (82.0)
	있다	1 (7.7)	1 (14.3)	8 (13.3)	2 (18.2)	2 (16.7)	14 (13.6)	109 (18.0)
폭행	없다	13 (100.0)	7 (100.0)	57 (95.0)	11 (100.0)	12 (100.0)	100 (97.1)	595 (99.0)
	있다	-	-	3 (5.0)	-	-	3 (2.9)	6 (1.0)
무시 및 따돌림	없다	13 (100.0)	6 (85.7)	57 (95.0)	11 (100.0)	10 (83.3)	97 (94.2)	578 (96.2)
	있다	-	1 (14.3)	3 (5.0)	-	2 (16.7)	6 (5.8)	23 (3.8)
차별경험	없다	12 (92.3)	6 (85.7)	55 (91.7)	10 (90.9)	12 (100.0)	95 (92.2)	568 (94.7)
	있다	1 (7.7)	1 (14.3)	5 (8.3)	1 (9.1)	-	8 (7.8)	32 (5.3)
성희롱 또는 성추행	없다	13 (100.0)	5 (71.4)	55 (91.7)	11 (100.0)	10 (83.3)	94 (91.3)	587 (97.7)
	있다	-	2 (28.6)	5 (8.3)	-	2 (16.7)	9 (8.7)	14 (2.3)
전체		13 (100.0)	7 (100.0)	60 (100.0)	11 (100.0)	12 (100.0)	103 ¹⁾ (100.0)	- ²⁾

* 주. 1) 지난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115명, 가족무급종사자 2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5명을 모두 포함한 122명 가운데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19명 제외

2)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 각 항목별 ‘해당 없음’의 응답자 수가 상이하여 전체 수는 제시하지 않음

노동관련 처우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계약을서 작성한 비율은 전체의 40%에 불과하여 고용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집단 청소년의 71.1%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기본적인 노동관련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일하고 있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도 25.5%로 다른 유형의 부당처우에 비해 높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17.3%)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경우(17.3%)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계약서 뿐 아니라 모든 항목에서 적절하지 않은 노동관련 처우의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은 일반집단 청소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해당 조사항목 역시 작은 사례 수로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일하다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에서만 발생하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청소년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부당처우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48. 노동관련 처우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 집단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없다	8 (50.0)	3 (30.0)	46 (74.2)	4 (40.0)	5 (41.7)	66 (60.0)	209 (28.9)
	있다	8 (50.0)	7 (70.0)	16 (25.8)	6 (60.0)	7 (58.3)	44 (40.0)	513 (71.1)
임금을 받지 못함	없다	16 (100.0)	10 (100.0)	55 (88.7)	10 (100.0)	11 (91.7)	102 (92.7)	718 (99.4)
	있다	-	-	7 (11.3)	-	1 (8.3)	8 (7.3)	4 (0.6)
최저임금보다 낮은 지급	없다	14 (87.5)	8 (80.0)	50 (80.6)	10 (100.0)	9 (75.0)	91 (82.7)	703 (99.2)
	있다	2 (12.5)	2 (20.0)	12 (19.4)	-	3 (25.0)	19 (17.3)	19 (2.6)
일하다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함	없다	16 (100.0)	10 (100.0)	55 (88.7)	10 (100.0)	11 (91.7)	102 (92.7)	716 (99.2)
	있다	-	-	7 (11.3)	-	1 (8.3)	8 (7.3)	6 (0.8)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을 받지 못함	없다	14 (87.5)	9 (90.0)	53 (85.5)	9 (90.0)	10 (83.3)	95 (86.4)	702 (97.2)
	있다	2 (12.5)	1 (10.0)	9 (14.5)	1 (10.0)	2 (16.7)	15 (13.6)	20 (2.8)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없다	13 (81.3)	6 (60.0)	43 (69.4)	9 (90.0)	11 (91.7)	82 (74.5)	669 (92.7)
	있다	3 (18.8)	4 (40.0)	19 (30.6)	1 (10.0)	1 (8.3)	28 (25.5)	53 (7.3)
과도한 초과근무	없다	16 (100.0)	9 (90.0)	50 (80.6)	9 (90.0)	11 (91.7)	95 (86.4)	675 (93.5)
	있다	-	1 (10.0)	12 (19.4)	1 (10.0)	1 (8.3)	15 (13.6)	47 (6.5)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없다	15 (93.8)	8 (80.0)	48 (77.4)	9 (90.0)	11 (91.7)	91 (82.7)	692 (95.8)
	있다	1 (6.3)	2 (20.0)	14 (22.6)	1 (10.0)	1 (8.3)	19 (17.3)	30 (4.2)
전체		16 (100.0)	10 (100.0)	62 (100.0)	10 (100.0)	12 (100.0)	110 (100.0)	722 (100.0)

마지막으로 지난주 1시간 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365명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하지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7명을 제외한 358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92.7%가 구직활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유형별 비율의 차도 크지 않았다. 일반집단 청소년 가운데 구직활동 경험이 ‘없음’ 비율은 89.9%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다소 낮았다. 이상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이주배경청소년은 단기간 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집단 청소년에 비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49. 구직활동 경험

단위: 명(%)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	일반집단 청소년
있다	2(4.9)	5(11.4)	11(10.0)	1(1.3)	7(8.2)	26(7.3)	161(10.1)
없다	39(95.1)	39(88.6)	99(90.0)	77(98.7)	78(91.8)	332(92.7)	1,437(89.9)
전체	41(100.0)	44(100.0)	110(100.0)	78(100.0)	85(100.0)	358 ¹⁾ (100.0)	1,598 ²⁾ (100.0)

* 주. 1) 지난해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없는 365명에서 가족무급종사자 2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5명 제외
2) 지난해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없는 1,621명에서 가족무급종사자 10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13명 제외

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전국 단위 자료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분석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21년에 실시된 조사 자료이다. 조사 대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며,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로 구성된 1인가구와 출생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조손 및 한부모가구도 포함되었다(최윤정 외, 202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만 9~24세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9~24세 자녀의 자료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활용하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가구구성원과 자녀 원자료를 추출한 뒤, 가구구성원 자료에 포함된 ‘이민귀화자와의 관계’, ‘만 나이’, ‘최초 입국 여부’, ‘출생시 국적’, ‘최초입국여부’ 변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하위유형을 분류하였다.

(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참여자 배경특성

2021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자녀는 8,296명이고, 그 중 19~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은 1,001명(12.1%)이었다. 19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유형을 최초입국여부 변수를 기준으로 국내출생과 국외출생으로 구분하였고, 이민 귀화자 본인 및 배우자의 출생시 국적 변수를 기준으로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5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표본 수

				단위: 명(%)
구분	만 9~12세	만 13~18세	19~24세	합계
빈도(%)	4,028(48.6)	3,267(39.4)	1,001(12.1)	8,296(100.0)

그러나, 가구구성원 자료에서 이민귀화자 배우자 정보가 없는 경우(131명)는 가정 유형을 국제결혼가정 또는 외국인가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본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민귀화자 본인과 배우자의 출생시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국적인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4가구 있었는데, 이들 가구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과 상이하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의해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891명이었다.

이상의 기준으로 본 분석에 활용된 분석대상자의 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III-51>과 같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이 758명(85.1%),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이 75명(8.4%),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이 22명(2.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이 36명(4.0%)이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조사모집단 기준 등록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 또는 한국인과 결혼한 기타 이민자,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국적 및 거주지 분포를 표본추출 첫 번째 단계의 기준으로 하였다(최윤정 외, 2022). 즉,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표본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표본의 대부분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으로 구성되었다. 본 분석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분류는 2021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한 가구구성원의 출생시 국적 변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출생한 당시의 가구구성원 정보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표 III-51. 유형별 분석대상자 수

단위: 명(%)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합계
하위유형	국내출생 청소년	국외출생 청소년	국내출생 청소년	국외출생 청소년	
빈도(%)	758(85.1)	75(8.4)	22(2.5)	36(4.0)	891(100.0)
	833(93.5)		58(6.5)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가 233명(26.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가 224명(25.1%)으로 19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어서 21세가 133명(14.8%), 22세가 111명(12.5%), 23세가 97명(10.9%), 24세가 93명(10.4%) 등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유형별 연령분포를 비교해보면, 모든 하위집단에서 19세 또는 20세 연령집단의 규모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 19세 연령집단이 가장 많았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은 20세 연령집단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경우 19세와 20세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그러나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은 21세와 23세 연령집단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24세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많아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분포는 남자가 455명으로 전체의 51.1%, 여자가 436명으로 전체의 48.9%였고, 하위유형에 따른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거의 반반 수준이었으나,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남자가 더 많았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경우는 여자가 더 많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52. 유형별 연령 및 성별 분포

단위: 명(%)

구분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연령	19세	207(27.3)	16(21.3)	7(31.8)	3(8.3)	233(26.2)
	20세	191(25.2)	18(24.0)	9(40.9)	6(16.7)	224(25.1)
	21세	114(15.0)	9(12.0)	2(9.1)	8(22.2)	133(14.9)
	22세	96(12.7)	9(12.0)	2(9.1)	4(11.1)	111(12.5)
	23세	73(9.6)	14(18.7)	2(9.1)	8(22.2)	97(10.9)
	24세	77(10.2)	9(12.0)	-	7(19.4)	93(10.4)
성별	남자	387(51.1)	40(53.3)	14(63.6)	14(38.9)	455(51.1)
	여자	371(48.9)	35(46.7)	8(36.4)	22(61.1)	436(48.9)
전체		758(100.0)	75(100.0)	22(100.0)	36(100.0)	891(100.0)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적취득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전체의 92.5%(824명)가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7.5%(67명)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하위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은 ‘해당 없음’이 전체의 90%를 초과하나,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과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청소년은 절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상당수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해당 조사문항이 ‘한국 국적을 언제 취득하였습니까?’로 진술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출생 당시 한국 국적 소지자 또는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국적 분포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적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4.4%(33명)는 이중국적자였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는 58.7%(44명)가 한국 국적자이고, 32.0%(24명)가 외국국적자, 9.3%(7명)는 한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국적취득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56%(56명)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므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58.7%(44명)에 해당하는 한국 국적자는 대부분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중에서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41.7%(15명)는 대부분 이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자였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32.0%(24명)는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중에서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41.7%(15명)였다.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은 현재 모두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2명은 귀화를 한 경우였다.

표 III-53. 유형별 국적취득 여부 및 현재국적 비율

						단위: 명(%)
구분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국적취득 여부	해당 없음	756(99.7)	33(44.0)	20(90.9)	15(41.7)	824(92.5)
	예	2(.3)	42(56.0)	2(9.1)	21(58.3)	67(7.5)
현재 국적	한국	724(95.5)	44(58.7)	22(100.0)	20(55.6)	810(90.9)
	외국	1(.1)	24(32.0)	-	15(41.7)	40(4.5)
	한국 포함 이중국적	33(4.4)	7(9.3)	-	1(2.8)	41(4.6)
전체		758(100.0)	75(100.0)	22(100.0)	36(100.0)	891(100.0)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중국적자인 경우 어느 나라의 국적이 많은지를 살펴 보면, 전체 일본 국적을 소지한 경우가 전체의 42.0%(34명)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대부분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31명)이었다. 이어서 한국계 중국인이 17.3%(14명)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대부분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이었다. 그 밖에 몽골,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은 대부분 일본 국적을,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청소년은 한국계 중국인 국적을 소지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국적은 몽골, 베트남, 중국, 일본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였다.

표 III-54. 유형별 국적 분포(이중국적 포함)

단위: 명(%)

국적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일본	31(91.2)	3(9.7)	-	-	34(42.0)
한국계 중국인	-	2(6.5)	-	12(75.0)	14(17.3)
몽골	-	7(22.6)	-	-	7(8.6)
중국	-	4(12.9)	-	3(18.8)	7(8.6)
베트남	-	6(19.4)	-	-	6(7.4)
태국(타이)	1(2.9)	2(6.5)	-	-	3(3.7)
싱가포르	1(2.9)	-	-	-	1(1.2)
페루	-	2(6.5)	-	-	2(2.5)
네팔	-	1(3.2)	-	-	1(1.2)
파키스탄	-	1(3.2)	-	-	1(1.2)
우즈베키스탄	-	1(3.2)	-	-	1(1.2)
멕시코	-	1(3.2)	-	-	1(1.2)
미국	-	1(3.2)	-	-	1(1.2)
인도	-	-	-	1(6.3)	1(1.2)
대만(타이완)	1(2.9)	-	-	-	1(1.2)
전체	34(100.0)	31(100.0)	-	16(100.0)	81(100.0)

다음으로 이중국적을 제외하고 외국 국적만 소지한 이주배경청소년의 현재 체류자격을 살펴보았는데,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13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방문 동거’ 12명(30.0%), ‘거주’ 7명(17.5%) 등의 순이었다. 하위유형별 주된 체류자격이 달랐는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은 ‘방문 동거(10명)’가 가장 많았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은 ‘기타(7명)’가 가장 많았다.

표 III-55. 현재 외국 국적자의 체류 자격(이중국적 제외)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잘 모름	-	1(4.2)	-	-	1(2.5)
거주(F-2)	-	6(25.0)	-	1(6.7)	7(17.5)
재외 동포(F-4)	-	-	-	3(20.0)	3(7.5)
방문 동거(F-1)	-	10(41.7)	-	2(13.3)	12(30.0)
단기 방문(C-3)	-	1(4.2)	-	-	1(2.5)
방문 취업(H-2)	-	1(4.2)	-	2(13.3)	3(7.5)
기타	1(100.0)	5(20.8)	-	7(46.7)	13(32.5)
전체	1(100.0)	24(100.0)	-	15(100.0)	40(100.0)

이와 함께 이들의 한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 정도는 한국 국적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0명(25%) 있었다.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은 2명이었고, 영주권만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1명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4명이 있었다.

표 III-56. 현재 외국 국적 소지자의 한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계획(이중국적 제외)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한국 국적을 받을 것이다	-	15(62.5)	-	8(53.3)	23(57.5)
영주권만 받을 것이다	-	1(4.2)	-	4(26.7)	5(12.5)
계획이 없다	-	2(8.3)	-	-	2(5.0)
모르겠다	1(100.0)	6(25.0)	-	3(20.0)	10(25.0)
전체	1(100.0)	24(100.0)	-	15(100.0)	40(100.0)

이주배경청소년 가운데 거주, 취업,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외국생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717명(80.5%)이었다.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청소년은 698명(92.1%)이 외국생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국외출생 청소년은 거의 모두 외국생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10년 이상인 경우가 각 유형의 절반을 넘었고, 5년 이상 9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표 Ⅲ-57. 거주,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외국생활 경험 여부 및 기간

단위: 명(%)

구분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외국생활 경험 없음			698(92.1)	1(1.3)	18(81.8)	—	717(80.5)
외국 생활 경험 있음	1년 미만		9(15.0)	1(1.4)	1(25.0)	—	11(6.3)
	1년~4년		35(58.3)	10(13.5)	1(25.0)	2(5.6)	48(27.6)
	5년~9년		3(5.0)	21(28.4)	1(25.0)	10(27.8)	35(20.1)
	10년 이상		13(21.7)	42(56.8)	1(25.0)	24(66.7)	80(46.0)
	소계		60(7.9)	74(98.7)	4(18.2)	36(100.0)	174(19.5)
전체			758(100.0)	75(100.0)	22(100.0)	36(100.0)	891(100.0)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경험에 대하여 학교급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적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2.9%(26명)에 불과하였으나,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 21.3%에 해당하는 16명이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적 ‘없다’고 응답을 하였다. 현재 4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이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200명, 4년제 미만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156명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경향은 이주배경청소년 하위유형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찬가지로 4년제 미만 대학을 졸업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도 다른 유형에 비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58. 한국에서의 학교급별 학교 재학 여부

단위: 명(%)

구분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 적 없음		2(0.3)	16(21.3)	1(4.5)	7(19.4)	26(2.9)
초등학교		1(0.1)	-	1(4.5)	-	2(0.2)
중학교	졸업	3(0.4)	1(1.3)	-	2(5.6)	6(0.7)
	중퇴	1(0.1)	-	-	-	1(0.1)
고등학교	졸업	176(23.2)	9(12.0)	8(36.4)	7(19.4)	200(22.4)
	재학	4(0.5)	9(12.0)	1(4.5)	0(0.0)	14(1.6)
	중퇴	8(1.1)	2(2.7)	2(9.1)	1(2.8)	13(1.5)
대학교 (4년제 미만)	졸업	55(7.3)	7(9.3)	1(4.5)	0(0.0)	63(7.1)
	재학	139(18.3)	10(13.3)	4(18.2)	3(8.3)	156(17.5)
	수료	1(0.1)	-	-	-	1(0.1)
	휴학	21(2.8)	-	-	-	21(2.4)
	중퇴	5(0.7)	-	1(4.5)	-	6(0.7)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29(3.8)	-	0(0.0)	2(5.6)	31(3.5)
	재학	255(33.6)	18(24.0)	1(4.5)	10(27.8)	284(31.9)
	수료	-	-	-	1(2.8)	1(0.1)
	휴학	46(6.1)	2(2.7)	2(9.1)	2(5.6)	52(5.8)
	중퇴	9(1.2)	-	-	1(2.8)	10(1.1)
대학원 이상(재학)		3(0.4)	1(1.3)	-	-	4(0.4)
전체		758(100.0)	75(100.0)	22(100.0)	36(100.0)	891(100.0)

학교급에 상관없이 한국에서의 학교 재학 여부를 종합해보면, 휴학을 포함하여 ‘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전체의 59.6%(531명)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가 34.1%(304명)로 다음으로 많았다. 하위유형별로 비교하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두었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이 높았다. 더불어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학교를 그만 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냥 다니기 싫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돈을 벌어야 해서(5명)’, ‘편입학 또는 유학준비(5명)’ 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응답한 이유와 달리 ‘한국어를 잘 몰라서’와 ‘학교생활, 문화가 달라서’라는 응답이 각각 한 명씩 있었다.

표 III-59. 한국에서의 학교 재학 여부

단위: 명(%)					
구분\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적 없음	2(.3)	16(21.3)	1(4.5)	7(19.4)	26(2.9)
학교에 다니고 있음 (재학, 휴학)	468(61.7)	40(53.3)	8(36.4)	15(41.7)	531(59.6)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그만둔(중퇴)	23(3.0)	2(2.7)	3(13.6)	2(5.6)	30(3.4)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수료)함	265(35.0)	17(22.7)	10(45.5)	12(33.3)	304(34.1)
전체	758(100.0)	75(100.0)	22(100.0)	36(100.0)	891(100.0)

지난 1년 동안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96.9%(862명)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12.0%)이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도 2명(9.1%)이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대상자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던 항목은 친구(18명)였고, 선생님(16명), 모르는 사람(14명) 순으로 많았다. 다른 항목에 비해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의 응답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이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로 진출하여 일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60.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있다	17(2.2)	9(12.0)	2(9.1)	-	28(3.1)
없다	741(97.8)	66(88.0)	20(90.9)	36(100.0)	863(96.9)
전체	758(100.0)	75(100.0)	22(100.0)	36(100.0)	891(100.0)

표 III-61. 차별 대상자(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친구(학급동료 포함)	13(25.0)	3(17.6)	2(28.6)	-	18(23.7)
선생님(교사, 교수)	12(23.1)	3(17.6)	1(14.3)	-	16(21.1)
친척	7(13.5)	2(11.8)	-	-	9(11.8)
이웃	7(13.5)	3(17.6)	-	-	10(13.2)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	5(9.6)	2(11.8)	2(28.6)	-	9(11.8)
모르는 사람	8(15.4)	4(23.5)	2(28.6)	-	14(18.4)
전체	52(100.0)	17(100.0)	7(100.0)	-	76(100.0)

(2)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따른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출 현황

2절에 제시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자료 분석에서와 같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진로 및 사회진출 관련 조사 항목 분석을 통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주배경청소년이 응답한 희망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기대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 '4년제 이상 대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1%(500명)로 가장 높았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4년제 미만 대학교'라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20.4%였고, '대학원(박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낮았다. 국내 및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청소년에 비해 ‘석사 이상의 대학원’을 원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고, ‘고등학교 이하 및 4년제 미만 대학교’의 응답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포부를 보였다.

표 III -62. 희망 교육수준

단위: 명(%)						
구분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고등학교 이하	85(11.2)	6(8.0)	4(18.2)	4(11.1)	99(11.1)
	대학교(4년제 미만)	154(20.3)	14(18.7)	7(31.8)	7(19.4)	182(20.4)
	대학교(4년제 이상)	426(56.2)	42(56.0)	11(50.0)	21(58.3)	500(56.1)
	대학원(석사)	63(8.3)	9(12.0)	-	4(11.1)	76(8.5)
	대학원(박사)	30(4.0)	4(5.3)	-	-	34(3.8)
	전체	758(100.0)	75(100.0)	22(100.0)	36(100.0)	891(100.0)

다음으로, 진로 결정 및 직업 탐색 등의 과정에서 정보의 필요성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진로체험 정보, 진학입시 정보, 직업 정보, 취업 정보, 창업관련 정보 항목에 대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응답을 비교해보면, 취업 정보의 필요성(평균 3.85)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 정보의 필요성(평균 3.7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진로체험 정도(평균 3.59), 창업관련 정보(평균 3.49) 순이었고, 진학입시 정보의 필요성(평균 3.36)이 가장 낮았다. 각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이주배경청소년 하위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각 항목에 대한 정보의 필요 정도를 낮게 응답하였다.

표 III-63. 진로 정보 필요성

사례 수: 891명, 5점 척도, 평균(표준편차)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진로체험 정보	3.59(1.18)	3.45(1.19)	3.86(1.04)	3.69(1.01)	3.59(1.17)
진학입시 정보	3.38(1.23)	3.16(1.31)	3.64(1.14)	3.31(1.17)	3.36(1.23)
직업 정보	3.77(1.09)	3.69(1.00)	3.77(0.92)	3.86(1.02)	3.77(1.07)
취업 정보	3.86(1.09)	3.72(1.02)	3.95(1.00)	3.86(0.96)	3.85(1.07)
창업관련 정보	3.49(1.11)	3.37(1.05)	3.55(0.96)	3.67(1.01)	3.49(1.09)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12.3%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각각 8.0%와 9.1%로 낮았다. 이 두 유형 중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은 위의 <표 III-6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체험 정보 필요성에 대하여 가장 낮게 지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경우 진로 및 직업탐색에 상대적인 관심 정도가 낮아 정보의 필요성도 낮고 직업훈련 훈련 경험도 낮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경우는 진로체험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실질적인 직업훈련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64. 직업훈련 경험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있다	97(12.8)	6(8.0)	2(9.1)	5(13.9)	110(12.3)
없다	661(87.2)	69(92.0)	20(90.9)	31(86.1)	781(87.7)
전체	758(100.0)	75(100.0)	22(100.0)	36(100.0)	891(100.0)

다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에 대해서는 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은 581명(65.2%)으로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보다 더 많았다.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은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낮았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40.0%로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하위유형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III -65. 지난주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명(%)

구분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있다	260(34.3)	30(40.0)	8(36.4)	12(33.3)	310(34.8)
	없다	498(65.7)	45(60.0)	14(63.6)	24(66.7)	581(65.2)
	전체	758(100.0)	75(100.0)	22(100.0)	36(100.0)	891(100.0)

또한 지난 한 주간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에 대해서는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10명과, 무급으로 가구원이 운영하는 일을 도와준 가족무급종사자 2명, 그리고 지난주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다'고 응답한 2명을 포함하여 총 314명에게 지난주 한 일의 종사상 지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임시근로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143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 90명(28.7%), 일용근로자 63명(20.1%) 순이었다. 하위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30.5%)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33.3%)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33.3%)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30.0%)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다만 일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고, 특히 표본 수 자체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을 제외한 다른 유형에서는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응답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III-66.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상용근로자	80(30.5)	6(20.0)	-	4(33.3)	90(28.7)
임시근로자	119(45.4)	13(43.3)	6(60.0)	5(41.7)	143(45.5)
일용근로자	48(18.3)	10(33.3)	3(30.0)	2(16.7)	63(20.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1.9)	-	-	-	5(1.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1.1)	1(3.3)	-	-	4(1.3)
급여 없이 가구원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무급가족 종사자	7(2.7)	-	1(10.0)	1(8.3)	9(2.9)
전체*	262(100.0)	30(100.0)	10(100.0)	12(100.0)	314(100.0)

* 주: 지난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310명, 가족무급종사자 2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2명을 모두 포함함

일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3.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경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57.1%로 크게 낮았고, ‘임금을 적게 받거나 늦게 받았다’는 응답이 2명, ‘수당 없이 초과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응답도 2명이 있었다. 이 두 항목은 다른 유형에서도 응답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방적인 부당 해고나 폭언 및 폭행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수 있었다.

표 III-67. 일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별 어려움 없음	232(86.9)	23(74.2)	8(72.7)	8(57.1)	271(83.9)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1(0.4)	1(3.2)	1(9.1)	-	3(0.9)
임금을 적게 받거나 늦게 받음	11(4.1)	2(6.5)	-	2(14.3)	15(4.6)
수당 없이 초과시간 근무함	3(1.1)	1(3.2)	1(9.1)	2(14.3)	7(2.2)
다치거나 병에 걸림	2(0.7)	-	-	-	2(0.6)
일방적인 부당한 해고	1(0.4)	-	-	-	1(0.3)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시킴	4(1.5)	1(3.2)	-	1(7.1)	6(1.9)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려움	2(0.7)	3(9.7)	0(0.0)	1(7.1)	6(1.9)
폭언, 폭행	1(0.4)	-	-	-	1(0.3)
기타	10(3.7)	-	1(9.1)	-	11(3.4)
전체*	267(100.0)	31(100.0)	11(100.0)	14(100.0)	323(100.0)

* 주: 지난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310명, 가족무급종사자 2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2명을 모두 포함함

지난주 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 577명 가운데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75명(13.3%)에 불과하였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구직활동 비율이 25.0%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구직활동 비율은 8.9%로 가장 낮았다. 구직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29.4%)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주변에 일자리가 없는 것(19.9%)'과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것(15.9%)'이 어려움이라 응답한 비율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다.

표 III-68. 구직활동 경험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있다	63(12.7)	4(8.9)	2(16.7)	6(25.0)	75(13.0)
없다	433(87.3)	41(91.1)	10(83.3)	18(75.0)	502(87.0)
전체*	496(100.0)	45(100.0)	12(100.0)	24(100.0)	577(100.0)

* 주: 지난해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없는 581명에서 가족무급종사자 2명,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이 있는 2명을 제외함

표 III-69. 구직의 어려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어려움 없음	6(5.5)	-	-	-	6(4.4)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12(10.9)	-	1(33.3)	1(5.9)	14(10.3)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37(33.6)	1(16.7)	-	2(11.8)	40(29.4)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24(21.8)	-	-	3(17.6)	27(19.9)
학력과 경력이 부족해서	14(12.7)	2(33.3)	1(33.3)	4(23.5)	21(15.4)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거나 취업방법을 몰라서	13(11.8)	1(16.7)	1(33.3)	1(5.9)	16(11.8)
나이가 너무 어려서	-	1(16.7)	-	2(11.8)	3(2.2)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1(0.9)	-	-	2(11.8)	3(2.2)
가족이 반대해서	2(1.8)	-	-	-	2(1.5)
체류 자격의 문제 때문에	-	1(16.7)	-	1(5.9)	2(1.5)
기타	1(0.9)	-	-	1(5.9)	2(1.5)
전체	110(100.0)	6(100.0)	3(100.0)	17(100.0)	136(100.0)

현재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없는 비재학 또는 비취업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주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이 가장 많은 항목은 ‘취업준비’로 전체의 34.6%였고, 이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응답도 31.9%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경우, ‘군입대 대기 및 군복무 중’이라는 응답(16.7%)도 비교적 많았다.

표 III-70. 비재학 또는 비취업 이주배경청소년의 현재 상태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특별히 하는 일 없었음	51(32.7)	4(20.0)	3(60.0)	3(30.0)	61(31.9)
취업준비	52(33.3)	9(45.0)	-	5(50.0)	66(34.6)
진학준비	21(13.5)	3(15.0)	1(20.0)	1(10.0)	26(13.6)
질병 치료 또는 요양	2(1.3)	-	-	-	2(1.0)
군입대 대기 및 군복무 중	26(16.7)	1(5.0)	1(20.0)	-	28(14.7)
가사 혹은 육아	1(0.6)	-	-	-	1(0.5)
귀화 준비	-	2(10.0)	-	-	2(1.0)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레인보우스쿨, 이주청소년센터 등)	-	1(5.0)	-	-	1(0.5)
기타	3(1.9)	-	-	1(10.0)	4(2.1)
전체	156(100.0)	20(100.0)	5(100.0)	10(100.0)	191(100.0)

비재학 및 비취업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3년 이내 어떠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3년 이내 취업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이 117명(61.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급 학교로 진학 할 것’이라는 응답도 17.8%였다. 반면 ‘아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4.1%로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III-71. 비재학 또는 비취업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계획(향후 3년 이내)

단위: 명(%)

구분 \ 하위 유형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전체
기존 학교로 복귀	5(3.2)	-	-	-	5(2.6)
상급 학교 진학	25(16.0)	4(20.0)	2(40.0)	3(30.0)	34(17.8)
취업	95(60.9)	14(70.0)	3(60.0)	5(50.0)	117(61.3)
창업	5(3.2)	1(5.0)	-	1(10.0)	7(3.7)
아무 계획이 없음	25(16.0)	1(5.0)	-	1(10.0)	27(14.1)
기타	1(0.6)	-	-	-	1(0.5)
전체	156(100.0)	20(100.0)	5(100.0)	10(100.0)	191(100.0)

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분석결과

후기청소년기 북한이탈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차 자료는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21)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상태 등 객관적인 정착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와 삶의 질 및 주관적 정착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2종의 보고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종의 조사 문항 중 후기청소년기 북한이탈청소년의 배경적 특성과 진로 및 취업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참여자 배경특성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으로 ‘북한에서 출생하여 탈북한 경향을 지닌 만 15세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2,461명 중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해당하는 19세에서 24세의 응답자 168명의 자료만을 분석 제시하였다.⁶⁾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북한배경청소년의

6)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데이터의 외부 비공개 방침에 따라 남북하나재단 소속의 연구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분석함.

경우 북한에서 출생하여 탈북한 북한이탈청소년과 제3국출생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실태조사의 경우는 조사대상이 북한에서 출생하여 탈북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우선 첫째로, 응답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표 III-7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이 88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80명으로 47.6%였다. 따라서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씩이었다.

표 III-72. 후기청소년기 북한이탈청소년 남녀 비율(%)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합계
빈도(%)	88(52.4)	80(47.6)	168(100)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7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세가 39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가 31(18.5%), 21세가 31명(18.5%), 22세가 25명(14.9%), 23세가 16명(9.5%), 24세가 26명(15.5%)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19세 연령집단이 가장 많고, 다음이 20세와 21세, 24세, 22세, 23세 등의 순임을 알 수 있다.

표 III-73.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단위: 명(%)							
연령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합계
빈도(%)	39(23.2)	31(18.5)	31(18.5)	25(14.9)	16(9.5)	26(15.5)	168(100.0)

앞에서 제시한 성별 분포와 연령 분포를 함께 살펴보면 <표 III-74>와 같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녀 성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비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은 40대이며 그 차이가 65.2%p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는 50.8%p 차이, 20대는 28.5%p 차이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15세에서 19세 연령대는 그 차이가 불과 2.2%p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성비는 지금까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형태를 보여 왔다. 그 이유로는 성인의 경우는 보통

탈북을 하는 방식이 국경을 넘는 장사활동을 통해서인데, 남성들의 경우 조직생활이나 직장 생활로부터 비교적 덜 자유롭고, 여성들의 경우 좀 더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탈북이 용이하고, 그 결과 탈북여성들의 수가 더 많은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아동·청소년기 탈북은 가족을 따라 탈북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성별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해석된다.

표 III-74. 전체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남녀 비율(%)

연령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24.0	48.9	35.9	24.6	17.4	21.1	26.3
여성	76.0	51.1	64.4	75.4	82.6	78.9	73.7
차이	△52.0	△2.2	△28.5	△50.8	△65.2	△57.8	47.4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22: 8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후기청소년기 북한이탈청소년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거주자가 61명으로 36.3%를 차지하였고, 경기지역 거주자가 44명으로 26.2%, 인천지역 거주자가 9명으로 5.4%를 차지하여 전체의 67.8%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7) 이는 현재 남한 내 전체 북한이탈주민들의 64.8%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양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III-75. 조사대상자 거주지 분포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빈도(%)	61(36.3)	7(4.2)	1(0.6)	9(5.4)	7(4.2)	1(0.6)	1(0.6)	44(26.2)	168 (100.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빈도(%)	1(0.6)	3(1.8)	14(8.3)	3(1.8)	2(1.2)	7(4.2)	6(3.6)	1(0.6)	

후기청소년기 북한이탈청소년 응답의 현재 생활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168명 중 54명은 취업 중이며 5명은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중이고, 109명은 비경제활동 상태로 나타났다.

7) 전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는 수도권이 64.8%를 차지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2: 41).

표 III-76.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빈도(%)	59(35.1)	109(64.9)	168(100)

이 중 현재 취업이나 구직 상태가 아닌 109명의 비경제활동 이유를 살펴보면 74명(67.9%)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학교에 재학 중은 아니지만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입시학원에 다니며 진로를 준비하는 경우가 22명(20.2%)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168명 중 13명에 불과하였다. 13명의 비경제활동 및 비재학 이유는 그냥 쉬는 경우가 6명(5.5%), 심신장애(건강문제)가 1명(0.9%), 육아 1명(0.9%), 기타 5명(4.6) 등이었다. 이는 19세에서 24세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 중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특례입학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III-77. 재학생 및 비재학 사유

단위: 명(%)

지역	정규교육기관통학	진학준비	취업준비	쉬었음	기타
빈도(%)	74(67.9)	8(7.3)	8(7.3)	6(5.5)	5(4.6)
지역	직업훈련기관 통합	심신장애(건강문제)	입시학원 통합	육아	합계
빈도(%)	5(4.6)	1(0.9)	1(0.9)	1(0.9)	109(100)

한편,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168명 중 137명(81.5%)이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78. 한국 학교 졸업 여부

단위: 명(%)

구분	졸업한 적 있음	졸업한 적 없음	합계
빈도(%)	137(81.5)	31(18.5)	168(100)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137명 중 졸업한 최종 학교가 고등학교인 경우가 113명(85.5%)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명(10.9%), 대학교(2년제, 4년제 포함) 9명(6.5%) 순이었다. 그런데, 본 질문 문항이 ‘졸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는 ‘고졸’에 응답하거나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31명의 경우 대학 재학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표 III-78>에 나타난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경우’는 18.5% 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북한이탈청소년들 대부분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 학교를 다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79. 남한에서 졸업한 최종 학교

단위: 명(%)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미만)	대학교(4년제 이상)	합계
빈도(%)	15(10.9)	113(82.5)	4(2.9)	5(3.6)	137(100)

다음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에서 동거가족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전체 중 113명(67.3%)이 동거가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55명(32.7%)은 동거가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동거가족이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30%나 되는 청소년들이 동거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표 III-80. 현재 동거 가족 존재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빈도(%)	113(67.3)	55(32.7)	168(100)

동거가족이 있는 집단에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거가족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중복 응답),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102명(90.3%)을 차지하고 있어 후기청소년기 북한 이탈청소년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문항의 특성상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지 부 또는 모와 사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 외에는 형제·자매와 동거한다는 응답이 42명(3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다수는 부모 형제 등 일반적인 가족구성원들과 동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8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단위: 명(%)								
구분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기타 친인척	미혼 자녀	배우자	기타	없음
빈도(%)	102(60.7)	42(25.0)	5(3.0)	1(0.9)	3(1.8)	3(1.8)	3(1.8)	55(32.7)

후기청소년기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 거주기간은 5년~10년 미만이 53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년 이상이 48명(28.6%), 1년~3년 미만이 39명(23.2%), 3년~5년 미만이 28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에 익숙해지며 소통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말하는 거주기간인 5년 이상인 경우가 101명으로 60%를 넘어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이나, 나머지 5년 미만인 경우도 거의 40%에 달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82. 한국 거주 기간

단위: 명(%)					
거주기간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빈도(%)	39(23.2)	28(16.7)	53(31.5)	48(28.6)	168(100.0)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느끼는 사회경제수준을 총 6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중상층 및 중하층 등 ‘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상층’은 1명(0.6%)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층’이라는 응답자가 52명(31.0%), ‘최하층’이라는 응답자는 13명(7.7%)으로 나타나 전체의 38.7%는 하층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으로 산출하면, 6점 만점에 평균 4.3점으로 중간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표 III-83. 남한사회의 생활수준(사회경제적 지위)(정착실태 13번)

단위: 명(%)

구분	최상층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	최하층	합계
빈도(%)	0(0.0)	1(0.6)	30(17.9)	72(42.9)	52(31.0)	13(7.7)	168(100)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남한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표 III-8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통'이 69명(4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족하는 편' -68명(40.5%), '매우 만족' 13명(7.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남한에서 자신들이 성취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84. 남한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합계
빈도(%)	5(3.0)	13(7.7)	69(41.1)	68(40.5)	13(7.7)	168(100)

그렇다면, '앞으로 남한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그럴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응답이 87명(5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높다'는 응답이 53명(31.5%)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매우 낮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고, '비교적 낮다'는 응답은 14명(8.3%)에 불과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살게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85. 남한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낮음	비교적 낮음	비교적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르겠음	합계
빈도(%)	0(0.0)	14(8.3)	87(51.8)	53(31.5)	14(8.3)	168(100)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북한 출신이라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중 10명(6.0%)만이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차별받은 이유로는 ‘말투, 생활 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을 들고 있었다.

표 III-86. 일상에서의 차별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빈도(%)	10(6.0)	158(94.0)	168(100)

표 III-87.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

단위: 명(%)				
구분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달라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	언론의 탈북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보도 영향	합계
빈도(%)	6(60.0)	3(30.0)	1(10.0)	10(100)

(2)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출 현황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출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을 어디까지 받고 싶은지에 대한 희망 교육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4년제 이상 대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84명(50.0%)으로 가장 높고, ‘대학원 석박사 이상’이라는 응답이 38명(22.6%), ‘2~3년제 대학교’ 11명(6.5%), ‘고등학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10명(6.0%)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수준’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122명으로 전체의 72.6%로 나타나 희망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경향성은 남한의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희망교육수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남한학교 및 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입학을 통한 대입의 용이성과 남한에서 학력이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III-88. 희망 교육수준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2~3년제)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 (석·박사)	없음	합계
빈도(%)	10(6.0)	11(6.5)	84(50.0)	38(22.6)	25(14.9)	168(100)

이들에게 직접 대학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62명(4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56명(42.1%)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표 III-89. 대학 이상 교육 희망 이유

단위: 명(%)

구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격과 교양을 쌓기 위해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	기타	주위 (부모 등)의 기대 때문에	합계
빈도(%)	62(46.6)	56(42.1)	9(6.8)	3(2.3)	2(1.5)	1(0.8)	133(100)

본 분석의 응답자 168명 중 37명은 ‘남한에서 대학교 휴학 또는 중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대학을 휴학 및 중퇴한 이유로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와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0명(27.0%)이었고, ‘취업준비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13.5%)이었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한 한 이후에도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II-90. 대학 휴학 중퇴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빈도(%)	37(22.0)	131(78.0)	168(100)

표 III-91. 대학 휴학 중퇴 이유

단위: 명(%)

구분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기타	취업 준비를 위해	다른 학교 편입을 위해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해서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합계
빈도(%)	10(27.0)	10(27.0)	7(18.9)	5(13.5)	2(5.4)	1(2.7)	1(2.7)	1(2.7)	37(100)

다음으로 직업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명(14.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기간 동안 진로탐색 및 직업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고, 거주지 배정 이후에도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청소년기 북한배경청소년의 직업훈련 경험비율이 낮은 것은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인지, 직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있어도 그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인지 등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19세 이상의 대학교 연령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92. 직업교육훈련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빈도(%)	24(14.3)	144(85.7)	168(100)

직업훈련을 경험한 분야로는 ‘음식, 제과, 미용 등 서비스 분야’가 41.7%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분야’ 20.8%, ‘사무, 회계분야’ 16.7%, ‘보건의료분야’ 12.5% 순으로, 직업훈련의 분야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 현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직업훈련 계획을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I-93. 직업훈련 교육 분야

단위: 명(%)

구분	음식·제과· 미용 등 서비스	정보·통신	사무·회계	보건·의료	기타	전기·전자	기계· 중장비
빈도(%)	10(41.7)	5(20.8)	4(16.7)	3(12.5)	3(12.5)	2(8.3)	1(4.2)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해당 직종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를 논하지 못하나, 19명 중 10명이 직업교육 훈련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또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훈련받은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었다. 이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의 계획과 실행이 총체적으로 재점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직업교육훈련에 투입되는 비용과 개인의 노력이 모두 무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훈련받은 분야의 일자리 자체가 없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표 III-94. 직업교육훈련 수료 분야 일한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빈도(%)	9(47.4)	10(52.6)	19(100)

표 III-95. 직업교육훈련 수료 분야에서 일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구분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훈련받은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기타	합계
빈도(%)	4(40.0)	1(10.0)	1(10.0)	4(40.0)	10(100)

그렇다면, 북한이탈청소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혹은 업종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는데,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 52명(31.0%)이 응답하였고, '자영업'이

36명(21.4%)으로 2위로 나타났다. 이어 ‘대기업’ 35명(20.8%), ‘중소기업’ 18명(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적인 청년들의 선호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96. 일하고 싶은 직장 혹은 업종

단위: 명(%)									
구분	국가기관 · 공기업	자영업 (창업)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취업	기타	외국계 기업	영농업	합계
빈도(%)	52(31.0)	36(21.4)	35(20.8)	18(10.7)	13(7.7)	7(4.2)	6(3.6)	1(0.6)	168(100)

북한이탈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수입’으로, 응답자 168명 중 62명(36.9%)이 수입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적성과 흥미’가 38명(22.6%), ‘안정성’ 36명(21.4%), ‘보람과 자아실현’ 14명(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7. 직업 선택 시 고려 요인

단위: 명(%)									
구분	수입	적성· 흥미	안정성	보람· 자아실현	발전성· 장래성	명예· 명성	근무시간	잘 모르겠음	합계
빈도(%)	62(36.9)	38(22.6)	36(21.4)	14(8.3)	10(6.0)	5(3.0)	2(1.2)	1(0.6)	168(100)

다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4명(32.1%)이었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무급 종사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명이었다. 따라서 약 70% 정도는 일을 한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98. 지난 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빈도(%)	54(32.1)	114(67.9)	168(100)

지난주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를 질문한 결과 52명(96.3%)이 임금근로자, 2명(3.7%)이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은 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자영업자가 1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명이었다.

표 III-9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단위: 명(%)			
구분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자	합계
빈도(%)	52(96.3)	2(3.7)	54(100)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52명의 근로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규직(상용직)과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이 각각 50%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100.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근로형태

단위: 명(%)			
구분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	합계
빈도(%)	26(50.0)	26(50.0)*	52(100)

* 주: 임시직16명, 일용직 10명

경제활동 상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자가 54명, 실업자가 5명이었고,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109명(전체의 64.9%)으로 후기청소년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대부분 비경제활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취업자 54명 중 남성이 35명(64.8%) 여성이 19명(35.2%)으로 남성의 취업자 수가 여성의 약 2배로 나타났다.

표 III-101.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분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합계
	취업자	실업자		
남성(%)	35(64.8)	2(40.0)	51(46.8)	88(52.4)
여성(%)	19(35.2)	3(60.0)	58(53.2)	80(47.6)
전체(%)	54(100)	5(100)	109(100)	168(100)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83.6만원이었다. 이 중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223.3만원인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 143.9만원이어서 근로형태에 따라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며, 각 근로형태별 평균임금의 표준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2.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만원)		
구분	3개월 월평균 임금	표준편차
임근근로자 전체	183.6	103.8
상용근로자	223.3	92.3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143.9	101.3

직업 유형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162.4만원이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212.5만원으로 평균임금의 격차가 5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하여도 평균임금의 수준이 200만원대인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전문직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임금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 임금이 아닌 19세에서 24세의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

표 Ⅲ-103. 현재 직업 유형

(단위: 명(%))						
구분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기타/무응답	합계
빈도(%)	17(31.5)	9(16.7)	4(7.4)	4(7.4)	20(37.0)	54(100)
월 평균 급여(만원)	16.24	167.2	212.5	190.0	227.2	183.6(만원)

업종별로 보면, 단일 항목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의 임금이 212.7만원이었고, 도매 및 소매업은 74.8만원으로, 이 역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III-104. 현재 일하는 곳의 업종

단위: 명(%)

구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무응답	합계/평균
빈도(%)	15(27.8)	10(18.5)	8(14.8)	2(3.7)	19(35.2)	54(100)
월 평균 급여(만원)	212.7	74.8	132.9	190.0	227.2	183.6(만원)

현재 일하는 곳의 종사자 수 규모를 살펴보면 ‘1~4명’이 19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30~99명’이 10명(18.5%)이었다. 따라서 70% 이상은 3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05. 현재 일하는 곳의 종사자 수 규모

단위: 명(%)

구분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500명 이상	합계
빈도(%)	19(35.2)	7(13.0)	12(22.2)	10(18.5)	1(1.9)	5(9.3)	54(100)

현재 직장 구직 기간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92.3%가 ‘4개월 미만’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6개월로 나타나 대부분은 단기간에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그만큼 비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III-106. (현재 직장) 구직에 소요된 기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4개월 미만	1~2년 미만	평균
빈도(%)	52(100)	(92.3)	3(5.3)	1.6개월

5) 결과 요약

(1) 조사별 분석결과 비교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대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국 단위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에 수집된 서로 다른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부 항목의 경우 비교가 가능하지 않으며, 조사 내용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조사 문항과 보기 등이 같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래 제시된 조사 데이터별 분석결과 비교는 최소 두 개의 조사에서 수집된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조사 참여자 배경특성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 19~24세에 해당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모집단 분포를 바탕으로 구축된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님을 고려하여 분석결과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은 이주배경실태조사에 따르면 82.3%이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93.7%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비율을 비교하면, 두 조사에서 모두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중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인 비율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및 외국인가정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한국 학교 졸업 및 재학 비율(83.63%)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66.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두 유형 모두 75% 수준으로 같았다. 한편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참여자 가운데 북한출생 및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한국 학교 졸업 및 재학 비율이 90% 이상이었으나,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결과에서는 81.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희망 교육수준에 대한 응답은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모두 4년제 이상 대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이긴 하나, 그 값은 조사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는 48.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전국다문화청소년실태조사에서는 56.1%,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는 50.0%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일반집단청소년의 80%가 4년제

이상 대학교를 희망 교육수준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4년제 대학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교육수준으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4년제 미만 대학교(각각 23.6%, 20.4%)였고,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대학원 이상(22.6%)으로 달랐다.

일상에서의 차별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는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0.6% 수준이었으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결과가 상이하였다. 유형별 응답 경향은 두 조사 모두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순으로 차별경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결과, 북한출생 및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차별경험 비율은 각각 22.5%, 17.3%로 비교적 높았던 것에 반해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는 전체의 6%만이 일상에서의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두 조사의 결과가 달랐다.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경험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경우 전체의 30.2%만이 직업훈련 경험이 있었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그 비율은 12.3%로 더 낮았으며,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역시 14.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더불어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24.1%)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32.7%)에 비해 직업훈련 경험 비율이 낮으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12.8%,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돈을 버는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없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사에서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24.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4.8%,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32.1%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참가자 가운데 북한출생 및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은 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3% 수준으로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 보다 낮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직업훈련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출생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일 경험 비율은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반대로 도출되었다.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경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

년의 일 경험 비율은 29.3%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일 경험 비율인 16.4%보다 높았다. 반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34.3%가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40.0%가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에 대한 항목의 경우, 각 조사에서 사용한 종사상 지위에 대한 구분 방식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분류 기준에 따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응답을 재분류하여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비임금근로자(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보다 월등히 높았다(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87.7%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94.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는 96.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북한출생 및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응답 결과보다도 높았다.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근로 형태에 대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의 88.8%로 이는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일반집단 청소년의 비정규직 비율인 69.1%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는 정규직의 비율과 비정규직의 비율 같은 수준으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전체의 65.6%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약 107.9만원 이었고,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결과는 143.9만원으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 참여한 북한출생 및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45~104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결과는 크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난주 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소년 가운데 구직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경우 7.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전체의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이 구직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11.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국내출생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구직활동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

소년은 8.9%로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상 기술한 세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입 실태에 대한 주요 비교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07. 주요 분석결과 비교 내용

항목	주요 분석결과
한국 학교 졸업 및 재학 비율	• 전체: [전국] 97.3% > [이주] 82.3% > [북한] 81.5%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중 북한배경청소년 90%) • [이주, 전국]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 [이주, 전국]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 [이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 [전국]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희망 교육 수준	• [이주, 전국] 4년제 이상 대학교 > 4년제 미만 대학교 • [북한] 4년제 이상 대학교 > 대학원 이상
차별 경험	• 전체: [이주] 30.6% > [북한] 6.0% > [전국] 3.1% • [이주, 전국]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직업훈련 경험	• 전체: [이주] 30.2% > [북한] 14.3% > [전국] 12.3% • [이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32.7%)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24.1%) • [전국]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8.0%)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12.8%)
일 경험	• 전체: [전국] 34.8% > [북한] 32.1% > [이주] 24.0%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중 북한배경청소년 13%) • [이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29.3%)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16.4%) • [전국]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34.3%)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40.0%)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비율: [북한] 96.3% > [전국] 94.3% > [이주] 87.7% • 비정규직 비율: [이주] 88.8% > [전국] 65.6% > [북한] 50.0%
월평균 소득	• [북한] 143.9만원 > [이주] 107.9만원
구직활동 경험	• [전국] 13% > [이주] 7.3% • [이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11.4%)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10.0%)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4.9%) • [전국]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8.9%)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12.7%)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25.0%)

*주: [이주]: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전국]: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북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 2차 데이터 분석 한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직업탐색 및 사회진출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한계는 현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정기적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근 전국 규모로 실시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9~24세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의 타당성 제고를 목적으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한 세 조사는 모두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 실시되었으므로 주요 조사 대상과 항목에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만 수집된 진로 의식, 직업훈련의 목적,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향후 직업훈련 계획, 근로사유, 노동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등에 대한 항목의 경우 다른 조사에서의 결과와 비교가 불가능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록 같은 내용의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직업훈련 경험 비율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에 비하여 낮았으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의 결과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교육수준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4년제 이상 대학교 다음으로 4년제 미만 대학교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는 4년제 이상 대학교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같은 조사 내용일지라도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각 조사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각 조사에서 표본을 구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한 통계정보가 다를뿐더러, 후기청소년기의 이주배경청소년만을 고려하여 표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같은 연령대의 응답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축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표본설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사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⁸⁾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면접조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연구원, 교사,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과 관련한 실태를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당사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설문조사나 문헌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들의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결과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추가적인 해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 파악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본 면접조사는 Focus Group Interview(FGI)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FGI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할 때, 조사참여자들이 면접조사 중에 상호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사참여자들이 해당 주제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Kitzinger, 1995). 그러므로 본 면접조사의 주 조사대상자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 중 한국어 이해 및 표현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같은 언어권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구성하는 등 집단 구성을 적절히 할 경우 상호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면접조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FGI 면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FGI 면접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열린 질문(open-ended question)을 기반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가 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응답하면서

8) 3장의 3절 면접조사는 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생기는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질문의 형태인 열린 질문, 그리고 조사대상자에 따른 일정한 질문 문항이 있지만 조사대상의 응답에 맞추어 면담자가 질문의 순서나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질문과 응답도 자유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은 개인의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적합한 면담 방식으로(Creswell, 2007; Merriam, 2009; Yin, 2014),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요구되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험과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응답을 끌어내기에 필요한 면접조사방법이다.

조사대상자의 모집 방식은 조사대상자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조사대상자의 의미 있고 풍부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써,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질문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모집하는 방식인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Creswell, 2007; Merriam, 2009, Patton, 2002).

(3) 조사 절차

면접조사를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조사안내문 및 연구참여동의서,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 사전조사설문지 및 면접조사 질문지, 연구자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및 연구자 생명윤리교육이수증을 제출하였고, 2023년 6월 23일자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2306-HR-고유-016). 면접조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이후 면접조사 목적에 근거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60명과 전문가 16명을 섭외하였고, 2023년 7월 11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면접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에게는 최소 면접조사 일주일 전 조사참여자의 배경을 묻는 사전조사설문지와 면접조사질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여 조사참여자가 미리 질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 또한 조사참여자의 배경이 담긴 사전조사설문지를 3일 전에 이메일로 제출받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상황에서 면접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면접조사는 개별 회의실에서 집단별로 진행하였으며 한 집단당 최소 3명, 최대 5명을 기준 인원으로 정해서 기본 2시간 동안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추가 질문이 있을 시 조사대상자의 양해를 구하고 30분 정도 추가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접조사내용은 조사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조사 후 조사내용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질문 사항과 이에 대한 응답을 받는 절차는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4) 조사대상자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모집은 양계민 외(2020)가 제시한 7개의 유형을 참고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모집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양계민 외(2020)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출신인 가정의 자녀와 북한출신가정자녀를 모두 포함하며, 그들이 지닌 체류자격이나 국적, 출생지와 상관없이 다음의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표 III-108.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

본인출생지	국내출생	국외출생
부모배경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②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본인출생	남한출생	남한 외 출생
부모배경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⑤ 남한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⑥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가정		⑦ 제3국출생 북한배경 아동· 청소년

* 출처: 양계민 외(2020: 22) <표 1-8> 수정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중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과 남한출생 북한배경청소년 현재 1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면접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이 두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유형, 즉, i)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i)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iv) 북한출생청소년, v)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였다. 이 때 모집 대상 연령은 19세에서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30대 초반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후기청소년

기 시기 전체를 이미 경험한 조사대상자들을 면접조사에 포함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좀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주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각 5개 유형의 집단을 다시 진로 유형에 따라 대학생, 취업자, 구직자(이하 NEET)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총 16명을 모집하였는데 크게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집단과 북한배경청소년 전문가 집단을 구분하여 모집했다. 전문가 집단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교사, 현장전문가 등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지도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면접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실제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문제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면접조사 개요와 조사대상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09.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청소년: 지역별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 현장전문가 및 교사: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및 학교
면담참여자 수	○ 청소년: 60명 ○ 현장전문가 및 교사: 16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청소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하위 유형별 및 성별, 진로 유형별로 구분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하위 유형별 1)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2)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3)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4) 북한출생청소년 5)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 성별: 남, 여 - 진로 유형별: 대학생, 취업자, NEET ○ 전문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교사, 현장전문가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통한 Focus Group Interview(FGI)
면담 시간 및 횟수	2시간, 필요 시 추가 면담 진행, 추가 질문은 전화 및 이메일로 진행
면담 시기	2023년 7월 11일 ~ 2023년 9월 1일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취 후 분석
면담자	내부 연구진

표 III-110. 면접조사 참여 청소년 배경특성

진로유형	집단	대상자	성별	나이	거주지역	본인 국적	아버지 국적	어머니 국적
대학생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Y1	여	22	경기도	한국	한국	필리핀(귀화)
		Y2	여	22	경기도	한국	한국	베트남(귀화)
		Y3	여	19	전라북도	한국	한국	필리핀(귀화)
		Y4	여	23	경기도	한국	한국	필리핀(귀화)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Y5	남	20	전라북도	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Y6	여	21	전라남도	베트남(귀화)	한국	한국(베트남)
		Y7	남	21	전라북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Y8	여	22	경기도	베트남(귀화)	한국	한국(베트남)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Y9	남	21	서울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Y10	남	20	경기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Y11	여	20	경기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Y12	여	21	경상남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Y13	남	20	경기도	네팔	네팔	네팔
		Y14	남	22	경기도	몽골	몽골	몽골
취업자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Y15	여	22	경기도	한국	한국	한국(일본)
		Y16	여	27	서울	한국	한국	한국(베트남)
		Y17	여	21	경기도	한국	한국	한국(베트남)
		Y18	남	20	경기도	한국	한국	한국(스리랑카)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Y19	남	20	인천	우즈베키스탄	한국	한국(우즈베키스탄)
		Y20	남	29	서울	중국(귀화)	한국	한국(중국)
		Y21	여	24	서울	베트남(귀화)	한국	한국(베트남)
		Y22	남	21	충청북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Y23	여	28	서울	몽골	몽골	몽골
		Y24	남	31	서울	한국(귀화)	파키스탄	파키스탄
		Y25	여	31	서울	중국	중국	중국
		Y26	남	20	경기	중국	중국	중국
NEET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Y27	남	22	경기도	한국	한국	필리핀(귀화)
		Y28	여	25	경기도	한국	한국	중국(귀화)
		Y29	남	22	서울	한국	한국	필리핀(귀화)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Y30	남	21	경기도	중국	중국	중국
		Y31	여	19	서울	베트남	한국	베트남

진로유형	집단	대상자	성별	나이	거주지역	본인 국적	아버지 국적	어머니 국적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Y32	여	19	서울	중국	중국	중국
		Y33	남	23	경상남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Y34	남	20	경상남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Y35	남	26	경기도	우간다	우간다	우간다
대학생	북한출생 청소년	Y36	여	22	서울	한국	한국	한국
		Y37	남	28	경기도	한국	사망	한국
		Y38	여	26	인천	한국	북한	한국
		Y39	남	22	서울	한국	한국	한국
	제3국출생 청소년	Y40	여	24	인천	한국	중국	한국
		Y41	남	23	경기도	한국	중국	한국
		Y42	여	23	경기도	한국	중국	한국
		Y43	여	22	경기도	한국	중국	한국
		Y44	여	20	경기도	한국	중국	한국
		Y45	여	21	경기도	한국	중국	한국
취업자	북한출생 청소년	Y46	여	29	경기도	한국	한국	한국
		Y47	남	31	서울	한국	사망	한국
		Y48	여	29	서울	한국	북한	한국
		Y49	남	24	경기도	한국	한국	한국
	제3국출생 청소년	Y50	여	22	서울	한국	한국	북한
		Y51	남	27	서울	한국	중국	한국
		Y52	여	21	인천	한국	중국	한국
		Y53	남	20	충청남도	한국	중국	한국
NEET	북한출생 청소년	Y54	남	27	서울	한국	한국	사망
		Y55	여	27	경기	한국	북한	북한
		Y56	남	29	서울	한국	한국	한국
	제3국출생 청소년	Y57	여	24	경기도	한국	중국	한국
		Y58	남	22	경기도	한국	사망	한국
		Y59	남	23	서울	한국	중국	한국
		Y60	여	20	충청남도	한국	중국	한국

표 Ⅲ-111. 면접조사 참여 전문가 배경특성

조사대상자	성별	연령	직업	관련업무 경력	전문영역
P1	여	46	현장전문가	10년	이주배경청소년
P2	남	60	현장전문가	13년	
P3	남	54	현장전문가	18년	
P4	여	33	현장전문가	13년	북한배경청소년
P5	여	32	대안학교 교사	3년	
P6	여	61	현장전문가	21년	
P7	남	52	대안학교 교사	17년	
P8	여	48	현장전문가	15년	이주배경청소년
P9	여	52	현장전문가	11년	
P10	여	43	현장전문가	12년	
P11	여	45	현장전문가	16년	
P12	남	59	현장전문가	13년	
P13	여	58	연구기관 연구원	18년	북한배경청소년
P14	여	48	대학교 교수	14년	
P15	여	63	연구기관 연구원	10년	
P16	남	47	중학교 교사	7년	

조사참여자의 개인적 배경에 치우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하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다양하고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 개인적 배경의 주요 요소인 성별, 부모 배경, 거주하는 지역 등을 최대한 다양하게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성 29명, 여성 31명으로 최대한 성비를 맞추었다. 다음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국적 혹은 부모의 국적은 최대한 다양한 국가에서 모집하였다.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우간다, 중국, 일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북한까지 총 13개 국가의 배경을 지닌 이주배경청소년을 모집함으로써 출신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많은 인원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현실 때문에, 총 15개 집단 유형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 있는 조사대상자의 숫자가 다른 지역의 조사대상자보다 더 많이 모집되었다.

전문가 조사대상자들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실태와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본 면접조사의 목적에 맞추어 현장에서 실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다년간 경험한 전문가를 모집하였다.

(5) 조사 내용

위에서 언급한대로 본 면접조사의 대상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5개의 하위 유형뿐 아니라, 각각의 유형별로 진로와 취업의 상황에 따라 3개의 범주(대학생, 취업자, NEET), 총 15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조사내용과 질문을 구성할 때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적인 질문과 별개로, 각각의 집단의 배경특성과 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각각의 집단별로 주요 질문 사항 및 세부 질문 사항을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공통질문 및 하위유형별, 진로유형별 별도 질문을 구성한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III-112>와 같다. 본 면접조사는 열린 질문을 기반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면접조사 시 다음의 질문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병합 및 추가해서 진행하였다.

표 III-112. 면접조사 내용

	공통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배경 특성	■ 이름 ■ 생년월일 ■ 거주지역 ■ 부모국적 ■ 현재 동거가족 ■ 현재 하는 일 ■ 미래의 원하는 삶	■ 한국 정착에 가장 힘든 점 ■ 주관적 한국어 소통수준 (국외출생국제결혼가정) ■ 본인 국적 ■ 입국연령, 입국 전 국가 ■ 입국이유 ■ 입국 시 비자와 현재비자 ■ 한국어 실력 ■ 원하는 한국 거주 기간 ■ 영주권 취득 및 귀화의사 여부와 이유	■ 본인 국적 ■ 입국연령, 입국 전 국가 ■ 입국이유 ■ 입국 시 비자와 현재비자 ■ 한국어 실력 ■ 원하는 한국 거주 기간 ■ 영주권 취득 및 귀화의사 여부와 이유 ■ 한국 정착에 가장 힘든 점 ■ 주관적 한국어 소통수준	■ 남한 입국시기 ■ 한국 정착에 가장 힘든 점 ■ 주관적 한국어 소통수준 (제3국출생) ■ 본인의 국적 ■ 원하는 한국 거주 기간 ■ 영주권 취득 및 귀화의사 여부와 이유

	공통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정책에 대한 태도	■ 지원정책 수혜여부 ■ 후기청소년기 이주 배경청소년으로써 받은 지원정책에 대한 좋은 점과 아쉬운 점 ■ 후기청소년기 이주 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개선점	■ 지원정책의 전달체계가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한 선호도 ■ 한국어 교육지원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 ■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 센터 설립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이유 (국외출생국제결혼가정) ■ 국외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 센터 설립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이유 ■ 비자 및 체류자격 정책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	■ 지원정책의 전달체계가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한 선호도 ■ 비자 및 체류자격 정책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 ■ 한국어 교육지원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 ■ 국외에서 출생한 외국인가정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 센터 설립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이유	■ 북한배경청소년들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에 함께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이유 ■ 북한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통일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이유 ■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을 북한출생청소년지원정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이유 (북한배경청소년) ■ 북한출생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 센터 설립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이유 (제3국출생북한배경) ■ 제3국출생 북한배경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 센터 설립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이유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 한국의 청년대상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유무 및 인식과 이해 ■ 본인이 실제 경험한 청년대상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및 이유	■ 한국의 청년대상 지원정책 중 국제결혼 가정배경 청년들에게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 정책과 이유 (한국국적소유자) ■ 국제결혼가정배경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의 청년대상 정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 한국의 청년대상 지원정책 중 국제결혼 가정배경 청년들에게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 정책과 이유 (한국국적소유자) ■ 외국인가정배경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의 청년대상 정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 한국의 청년대상 지원정책 중 국제결혼 가정배경 청년들에게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 정책과 이유 (한국국적소유자) ■ 북한배경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의 청년대상 정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공통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지원 체계	(공통) ■ 살아가면서(또는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도움 받는 사람 ■ 가족 이외 지역의 지원을 받거나 전문 기관을 이용해본 경험 (이용경험자) - 지원 내용과 지원을 해 준 지원기관 유형 - 도움이 된 점과 아쉬운 점 (비(非)경험자) - 지원을 받지 않고 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 본인에게 또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내용			
대학생	■ 대학과 전공 ■ 대학과 전공 선택 이유 ■ 대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 ■ 대학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 대학등록금 조달 방법 ■ 아르바이트 유무와 이유 ■ 휴학 여부와 휴학을 했던 이유 ■ 졸업 후 진로 계획	(국외출생국제결혼가정) ■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역량에 대한 본인의 평가 ■ 비자 연장을 위한 대학 진학의 유무 ■ 대학입시때 활용했던 전형 종류와 전형 선택의 이유 ■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후기이주배경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관련 지원의 필요성 및 이유	■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역량에 대한 본인의 평가 ■ 비자 연장을 위한 대학 진학의 유무 ■ 대학입시때 활용했던 전형 종류와 전형 선택의 이유 ■ 외국인가정 후기이주 배경대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관련 지원의 필요성 및 이유	■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역량에 대한 본인의 평가 ■ 대학입시때 활용했던 전형 종류와 전형 선택의 이유 (북한출생) ■ 북한출생을 위한 대입전형의 입시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 북한출생을 위한 대입전형의 입학 후 대학생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 북한출생 후기이주 배경대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관련 지원의 필요성 및 이유 (제3국출생북한배경) ■ 제3국출생북한배경 후기이주배경대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관련 지원의 필요성 및 이유
취업자	(공통) ■ 과거 및 현재의 직업 종류 ■ 취업을 결정한 시기 및 취업을 하게 된 이유 ■ (대학미진학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유			

	공통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 과거 및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경로 (시험, 지인 혹은 단체의 소개 등) ■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기관 혹은 사람 ■ 취업에 대한 본인 및 부모님의 만족도와 이유 ■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 앞으로의 계획과 계획을 위하여 하고 있는 준비 ■ 미래 진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 (비자소지자) ■ 현재 소지한 비자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려움 및 해결 방안			
NEET	(공통) ■ 과거에 대학 진학 및 취업 경험 ■ 현재 NEET인 이유 및 하루 일과 ■ 앞으로의 계획과 계획을 위하여 하고 있는 준비 ■ 미래 진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 (비자소지자) ■ 현재 소지한 비자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려움 및 해결 방안			

전문가에 대한 조사 내용과 질문은 현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폭 넓고 깊은 경험과 관점을 담아내고, 전문가 간의 경험과 관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 집단 간의 큰 차이가 나는 특성 관련 질문 몇 가지를 제외하고, 공통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공통 질문과 별도 질문을 통합해서 구성한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III-113>과 같다. 전문가 면접조사 역시 열린 질문을 기반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면접조사 시 다음의 질문 내용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병합 및 추가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III-113.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

전문가

- 현재의 직업 및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의 관련성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실태 및 현황
- 후기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 정착과 자립에 있어 중요한 이슈
(국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외국인가정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별)
- 후기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들의 유형별, 집단별 한국 생활 적응도와 어려움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교육 및 교육 진행의 걸림돌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기술 교육 등)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어 수준 및 한국어 역량 강화 방안
- 한국국적이 없는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정착 실태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한국국적이 없는 19세 이상 후기청소년에게 거주 및 취업자격 제공에 대한 의견 및 기준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유형별, 집단별 지원정책 및 전문센터 설립에 관한 의견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지원 방안

(6) 분석 방법

본 면접조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정확하고 현장감 넘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reswell(2018)이 제시한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면접조사 결과를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질적 연구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황 및 실태를 구성하는 현상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기 때문에(Creswell, 2018; Merriam, 2009),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심층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둘째, 질적 연구 중 하나로 분류되는 사례연구는 어떠한 사례와 관련하여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인식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연구이기 때문에(Yin, 2014),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한 인식 및 관점을 분석해야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셋째, 본 면접조사 내용을 분석할 때 활용할 사례연구의 방식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통찰력을 얻게 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변기용, 2020; Yin, 2014), 분석 자료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60명, 전문가 16명이라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용이한 분석 방법이다.

(7) 분석 절차 및 윤리 준수

면접자료는 Creswell(2018)이 제시한 다섯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i) 녹음된 면접조사내용을 전사하고 정리한 후, ii) 면접전사내용을 여러 차례 면밀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iii) 연구자가 직접 메모한 내용을 기반으로 범주와 주제 분류를 위한 약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질적 사례연구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를 사용하여 76명의 면접조사 자료에 대한 약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iv) 총 3차에 걸친 약호화 과정을 통해 드러난 주제들을 범주화시킨 후, v) 범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주제들을 추출 및 정리한 뒤, 주제들을 뒷받침하는 조사대상자의 실제 기술을 제시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 절차과정에서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기준을 준수하여, 본 연구 참여로 수집되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자, 본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자 하였다. 면접 조사내용을 보고서에 인용할 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고유 숫자를 부여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였다(예시 : Y56, P12 등). 출신 지역도 군 · 구 단위가 아닌 시 · 도로만 표기하였고 개인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대학 전공이나 직업 등도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였다. 연구 종료 후 모든 연구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USB장치에 보관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연구자의 서랍에 3년간 보관하며, 이후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공IRB)의 인간대상연구 관련 절차에 따라 자료를 영구 삭제를 통해 폐기할 예정이다.

2) 분석 결과

본 면접조사내용을 Creswell(2018)이 제안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핵심 내용을 4개의 범주, 8개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 내용 및 주제는 5개의 유형, 3개의 집단, 총 15개의 집단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난 범주와 주제들이었다. 각 범주와 범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주제는 다음의 <표 III-114>와 같다.

표 III-114. 내용분석의 범주와 주제

범주	주제
1. 사회자본의 영향	1) 가정환경과 부모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경로 2) 정보접근성의 차이에서 오는 진로선택, 취업 기회 및 정책수혜의 차이
2. 개인적 역량	3)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진로 및 취업 4) 이주배경을 장점으로 활용한 진학과 취업
3. 체류자격	5)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한국정책과 한국사회 기여를 꿈꿀 수 없는 체류자격 6)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진로와 취업
4. 지원의 방향	7) 진로특성별 필요한 지원의 다양성 및 차별화 확보 8)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 정책전달체계의 중요성

(1) 범주 1: 사회자본의 영향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 결과, 가정환경과 부모의 특성, 정보접근성 등 이들이 지닌 사회자본이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유형(i.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i.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iv. 북한출생청소년, v.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 및 모든 진로 집단(대학생, 취업자, NEET)에서 나타났다.

① 주제 1: 가정환경과 부모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경로

분석 결과 국적, 성별, 대학 진학, 취업 상황 등에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진로와 취업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가정환경 및 부모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유무, 부모의 결혼상태, 가족의 경제력 등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실제 마주하고 있는 가정환경이 그들의 진로 및 취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따라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지원은커녕 청소년 본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이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당장 경제적 도움이 되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가족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이나, 향후 진로에 있어 좀 더 많은 선택지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할 수 있었다.

연구자 : 대학 졸업 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Y41(제3국출생 북한배경, 대학생) :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다닌 것도 사실 어머니가 대학 정도는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지원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졸업 후 이기든 지든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하시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자 : 한국에 언제 오셨고 현재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Y60(제3국출생 북한배경, NEET) : 가정환경 상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좀 일을 좀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중2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깃집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나이가 안 되는데 하기 시작했고, 월급도 떼이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돈 모으고, 이런 식으로 어렵지만 계속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렇게 중2 때부터 일 안하고 선 기간이 총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일을 했어서 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자 : 대학을 다니다가 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Y6(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대학생) : 저희는 이혼 가정이고 저는 어머니와 지내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에 떨어져서 등록금을 벌어야 했어요. 저는 지금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루에 평균 10시간씩 하면서 등록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안 다니니까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내년에 다시 복학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외에도 가족이 보여주는 진로나 취업에 대한 관심, 그중 부모의 관심과 의지가 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특성상 일반적인 한국 청소년에 비해 사회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는 진로와 취업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이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에 자녀들의 진로, 취업에 대한 기회가 보다 넓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미래보다는 현재의 생활을 중시하는 가운데 자녀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한 경우는 이주배경청소년 본인 스스로 부모의 도움 없이 모든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진로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연구자: 본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Y48(북한배경, 취업자):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물론 생계를 위한 활동이 제일 중요하시지만 자녀들이 어리다면 좀 더 자녀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본인의 노력이 어려우면 최소한 그 주변에 복사사 같이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서 진로 탐색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의 정착에 어머니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기회도 잡을 수 있었고, 미국에 1년 간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나요?

Y2(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대학생) : 부모님의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시라 아예 모르시고 아빠도 학력이 낮으시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도움은 받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연구자: 본인의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Y24(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취업자) :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공부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다녔음에도 아버지의 강요로 대학을 갔어요.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환경과 부모특성이 진로 및 취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주배경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연구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3(이주배경청소년전문가): 진로와 취업에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인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사회적 자본이 빈곤한 거잖아요. 이 경우 부모님이 도와주고 만들어야 하는데 부모님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진로 탐색 같은 것에 전혀 무지하다보니, 부모 자신들의 사회적 자본도 없고 자녀들의 한국 사회의 진로에 대한 맥락도 없는 것이 안타깝죠. 그런 것이 풍부한 한국 학생들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납니다.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해요.

연구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님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P7(북한배경청소년전문가) : 기본적으로 부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차이가 있지만, 부모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좀 안정적인 부모가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적응을 잘하고 부모님과과의 갈등이 심한 친구들은 적응에 어려워서 이젠 진로 및 취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중략).... 부모가 걸림돌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가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아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엄마가 상상하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녀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학교에 요구하며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청소년들이 오히려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한국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적응, 특히 진로와 취업에 있어 가정환경과 부모특성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특성상 부모의 특성 및 자녀의 진로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가정환경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서로 다를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가정환경과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았던 반면, 반대의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지원 필요성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모든 집단을 취약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취업의 질적인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주제 2: 정보접근성의 차이에서 오는 진로 선택, 취업 기회 및 정책수혜의 차이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모든 유형과 집단에서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요인이 진로 및 취업의 기회와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주로 조사대상자의 부모, 형제, 친구, 학교, 다문화 센터 등이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좋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경로였는데, 부모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먼저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한 경우, 먼저 이주해 온 선배나 친구 등으로부터 유용한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취업처도 소개받고 있었다.

연구자 : 현재의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Y3(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대학생) : 엄마가 다문화센터에서 일하시고 있어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던 초중고 시절 다양한 진로체험 및 다문화 관련 행사 및 교육을 통한 체험들이 나중에 진로 결정에 큰 역할을 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다문화 정책 지원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서 잘 활용하고 도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자 : 한국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Y49(북한배경, 취업자) : 탈북하면서 알게 된 형이 일하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갈까, 취업을 할까 고민했는데 형이 일하는 곳의 대우와 조건을 다 들어보니 저에게 맞겠다 싶어 시작했고, 지금 6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형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연구자 : 현재의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Y40(제3국출생 북한배경, 대학생) : 진로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다니는 대학에 먼저 입학했던 친연니로부터 나오는 정보와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 중에서 저의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신 중국어 선생님의 정보였습니다. 진로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전달체계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저와 가깝거나 저의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이 있어 운 좋게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적 네트워크의 정보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진로 및 취업을 결정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었다. 이 경우,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나 조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혹은 별생각 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자 : 현재의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Y44(제3국출생 북한배경, 대학생) : 엄마가 대학은 꼭 가고 등록금이 저렴하고 취업이 잘 되는 전문직이 가능한 전공을 가라고 하셨고, 저도 가정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인터넷을 검색해서 현재의 대학 및 전공을 찾았습니다. 엄마도 요구는 하지만 대입정보에는 무지했고, 학교에서도 의례적인 진로 상담만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 : 한국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Y21(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취업자) : 저는 취업을 혼자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주배경을 가진 상황과 맞추어 취업을 준비했는데 집에서도 대학에서도 전문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다가 그냥 온라인상으로 계속 서치를 해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연구자 : 현재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Y57(제3국출생 북한배경, NEET) : 대학은 얼마랑 학교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저랑 맞지 않아 더 이상 다니기 싫고, 취업은 차차 해야해서 이것저것 인터넷을 통해 찾고 있는데 솔직히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간호조무사 같은 일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보접근성의 불균형이 정보접근성이 낮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가족, 친구, 학교, 기관 등에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조언을 받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와 직업의 만족도가 크고 진로와 직업의 안정성도 높다고 느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진로 및 직업을 결정했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그 결과 직업을 자주 바꾸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나름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미래나 일의 지속성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서울에 각종 정보나 지원이 많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서울로 오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서울지역 쏠림현상이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연구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10(이주배경청소년전문가):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어떤 정보를 얻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에 따라 진로 및 직업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급하게 당장의 돈 때문에 아무 일이나 정보 없이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도 자기가 정보력을 통해 좀 알아보고 일을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시작점에 따라서, 꽤나 긴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급하게 누구 말을 따라서 알바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정보 없이 불안정하게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단순 노동이라든가 일회성 일을 하는데 사실 자기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도 모르고 보수가 적정한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이 일이 저와 정말 잘 맞는 것인지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양육자의 정보력 수준이나 본인의 정보력 수준이 갖추어진

아이들은 훨씬 낫거든요. 정보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게 뭐 하든 못 판매점에서 일을 하든, 공장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보수에 적성도 다 알고 일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 일이 굉장히 전문직이냐 아니면 좀 비전문직이냐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자기 미래를 좀 준비해 가는 것들을 보거든요. 결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첫 시작점인 취업 시장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해서 어떻게든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을 잘하게 할 것이지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P6(북한배경청소년정문가) : 서울 쪽에는 많은 북한배경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 많이 있어 하나하나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들을 많이 얻다 보니 아이들이 그러한 정보를 통해 진로 및 취업 관련 여러 가지 지원을 잘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에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 현격하게 적다 보니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특히 서울권에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진로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상담 한번 받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격한 격차가 나다 보니 아이들의 진로와 취업 결과도 서울과 지방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되면 어떻게든 서울로 가려는 쓸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5개의 유형과 세 진로 집단에 걸쳐 동일하게 가정, 학교, 사회, 기관, 거주 지역과 같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 비롯되는 정보접근성의 격차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의 결정뿐 아니라 진로와 취업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은 경우 다양한 정책 수혜를 통해 진로 및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고 취업처의 질도 향상되는 반면에, 정보접근성이 낮거나 왜곡된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진로 방향이나 취업 방향을 설정했을 경우 진로의 질과 취업처의 질이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범주 2: 개인적 역량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진로와 취업의 기회와 질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유형(i.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i.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iv. 북한출생청소년, v.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및 모든 집단(대학생, 취업자, NEET)에서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여러 개인적 역량 중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첫째는 한국어 수준, 둘째는 이주배경이라는 개인적 특성을 진로와 취업에 장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① 주제 3: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진로 및 취업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 및 취업에 필요한 역량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어 수준이었다. 국내출생유형에 속한 이주배경청소년 중 한국인과 동일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어의 부족으로 진로와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문제부터, 의사소통은 잘 되지만 역량 및 말투나 작문 능력 등의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국내출생 일부, 국외출생, 북한출생, 제3국출생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모두 각자 개인별로 도달하고 싶은 한국어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국어 수준이 진로와 취업 선택에, 취업처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어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본인이 현재 속해 있는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 사회생활 등에 있어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었고, 현재 대학 생활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자신의 현재 상태는 한국어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른 나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장기 거주를 하였고 한국의 일반 공교육기관을 다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18세 이상의 늦은 나이에 입국했는데도 한국어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중국의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국한 것은 아닌 경우였다.

연구자 : 대학 생활을 하는데 있어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Y10(국외출생 외국인가정, 대학생) : 저는 13살에 한국에 와서 일반고를 나왔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때 한국어 공부와 수업을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한국어에 관한 모든 공부를 그 때 어느 정도 마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 안에서는 좀 쉬워진 것 같아요. 대학 다니면서 교양수업 같은 것, 철학이나 뭐 경제, 그리고 과학이나 시관련 수업이나 과제도 딱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연구자 : 취업 준비와 취업 후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Y50(제3국출생 북한배경, 취업자) : 저는 18세 때 중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중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대안학교에 갔는데요. 아빠가 조선족이어서 한국말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기 전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와서도 대안학교에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서 언어로 인한 불편함은 대안학교 졸업 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도 문제없이 다녔고 취업을 할 때도 또 지금 일하면서도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은 만일 내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으면 대학도 취업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안학교에서 중국어하는 친구들이랑만 어울리다가 한국어 수준을 높이지 못한 친구들은 아직도 취업 자리를 구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자 : 지금 NEET로 계신 이유 중에 한국어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6(북한배경, NEET) :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때 북한에서 한국으로 와서 외래어를 잘 모르고 억양과 말투에 차이가 있어 어려움은 겪었지만,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했고 지금 한국어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언어가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건 일반 한국인도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NEET로 있는 것은 제가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한 준비과정이지 한국어 문제로 취업을 못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반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본인의 한국어 수준이 현재 자신의 대학 생활, 직장 생활,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어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와 취업의 길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실제 대학 진학과 취업에 이르지 못한 NEET의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한국어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느끼는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도 각자가 속한 대학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실전 한국어나 한국어 작문 등과 같은 세부적인 역량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빨리 한국어 수준을 높이고 싶지만, 시간의 부족, 공부 방법의 어려움,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한국어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자 : 대학 생활을 하는데 있어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Y9(국외출생 외국인가정, 대학생) :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인지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았는데 대학교 올라가고 더 전문적인 한국어를 많이 듣고, 대학식 수업을 하는 것이 고등학교에 비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한국어 수준이 아직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듣고 토론할 정도의 한국어 수준이 안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에서 팀프로젝트를 할 때도 한국 친구들은 잘 안껴주고 외국 출신끼리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한국어 수준을 높일 방법도 마땅치 않으니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도 듭니다.

연구자 : 취업 준비와 취업 후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Y51(제3국출생 북한배경, 취업자) : 저는 지금 일주일 내내 식당에서 홀서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에요. 사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자격증도 따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한국어 문제가 좀 있어요. 알아듣기도 잘 하고 읽고 쓰는 것도 어느 정도 되는데 말하는 것이 잘 안됩니다. 말하기 실력을 늘리고 싶어도 결혼해서 애도 있으니 식당 일하고 집안일 도우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연구자 : 지금 NEET로 계신 이유 중에 한국어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27(국내출생외국인가정, NEET) : 네 사실 한국어 문제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실기 자격증도 났는데 이 한국어 실력으로 면접과 경쟁에 이길 자신이 없고, 되더라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한국어 학당 같은데도 다녀보고 있는데 잘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수준의 문제가 단순히 일반적인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실제 대학 진학과 취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학업과 직장 생활 안에서 수업을 따라가고 직장 일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전 한국어 역량과 수준을 갖추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한국어 역량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수준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연구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9(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 대학 진학이든 취업이든 결국 한국어 능력이 1순위입니다. 외국인 전형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찌어찌 대학을 가더라도 한국어 능력이 안되어서 한국인 학생들과의 어울림의 과정이 생기지 않으면 대학 생활을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제수행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적응을 못하고 휴학을 하거나 겨우 졸업을 하더라도 대학졸업장만 받을 뿐이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 관련한 취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업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가 부족한 아이들은 결국 한국어 의사소통의 비중이 낮은 직업, 육체노동 중심의 직업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단순노동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어 역량의 향상은 더 어려워지면서 진로와 취업의 질의 향상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한국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어 역량은 친구들이 귀화를 결심하게 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귀화 관련 시험 및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국적 언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 귀화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이지요.

연구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16(북한배경청소년 전문가) : 한국어 능력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3국출생 북한배경 친구들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북한출생 친구들은 외래어나 억양, 말투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해도 한국어 자체를 이해하는 역량과 의사소통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서 한국어 문제보다는 탈북자 차별 문제와 연결되는 반면에, 대부분 중국에서 출생한 제3국출생 북한배경친구들은 논리적인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자신이 좀 부족해도 하다보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에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도대체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해야할지 난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언어 교육의 적기를 넘어서 들어온 아이들은 한국어 교육 외에 다른 교육은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다 되어서 넘어온 이주배경 아이들을 위한 유형별, 연령별, 수준별, 목표별로 한국어 교육자원이 정말 시급합니다. 진로 및 취업 지원의 핵심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이상의 청소년과 전문가의 면접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선택과 취업에 있어 한국어 역량이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과, 한국어 역량을 갖추지 않고는 진로와 취업의 질을 높일 방법이 요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 수준의 향상이 진로 및 취업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정착과 안정된 삶과도 직결된다는 점이 분석 결과 드러나고 있었다.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 중 자신의 한국어 수준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진로와 취업을 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귀화를 해서 한국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에 비해 본인의 한국어 수준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진로와 취업에 있어 아직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와 취업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잘 정착록해서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개인적 역량이 한국어 역량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도 언급하고 있듯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준이 아닌 실제 진로와 취업에 필요한 실전 한국어의 수준과 역량을 높여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이 분석 결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어의 수준과 역량을 높여주는 지원과 방법을 고민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본 면접조사에서 나누었던 이주배경청소년의 5가지 유형, 3개의 집단, 총 15개의 서로 다른 현실과 상황에 놓인 집단에 대한 진로와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같은 유형, 같은 집단이라도 한국에 언제 입국했는가에 따라 한국어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 교육의 적기를 놓친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어 역량이 적게 요구되는 육체노동이나 단순노동으로 직업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시간도 부족하고, 생계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동기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② 주제 4: 이주배경을 장점으로 활용한 진학과 취업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 및 취업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에 있어 한국어 역량과 함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된 역량은 이주배경 특성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제도를 활용하는 역량뿐 아니라, 이주배경이기 때문에 일반 한국인과 다른 본인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역량이 진로와 취업에 큰 장점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의 조사대상자들이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자 : 이주배경이라는 사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Y16(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취업자) :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신데 방학 때마다 계속 외갓집에 갔었고 초등학교 때는 베트남에서 유치원 수업을 들어가서 공부도 하다보니 언어는 베트남 현지인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다 능숙합니다. 그러다보니 베트남어를 잘 하는 것을 살려서 대학 전공도 베트남어학과를 다녔는데 큰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대학 다니면서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통역 일도 많이 했었어요. 취업할 때가 되었을 때는 비즈니스 베트남어를 좀 배워보자 해서 베트남 관련 무역회사에 들어갔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베트남어로 계속 쪽 밀고 나가서 진로와 취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취업하기 좀 수월했죠. 이제 솔직히 해외 영업이나 무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걸 되게 많이 보세요. 그리고 해외 경험 많은 것도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지인들처럼 소통이 잘 되느냐인데 저는 어쨌든 그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어디에 서류를 넣어도 다 이제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와줬었어서. 저 가고 싶은데 골라서 갔어요.

Y5(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대학생) :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고 언어는 영어, 인도네시아, 한국어 순으로 하는 편이어서 솔직히 한국어가 제일 서투르지만, 한국의 명문대에 입학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의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지원해서 5개를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이주배경이어서 재외국민 전형에 봐서 쉽기도 했지만 또 제가 저의 이주배경 상황을 최대한 장점으로 활용해서 시험을 볼 수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영어 수업이 90%여서 수업을 듣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대학을 다니면서 저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주배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Y35(국외출생 외국인가정, NEET) : 저는 우간다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를 조금 할 줄 알고 외모는 한국인이 말하는 흑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뮤직비디오나 방송, 영화에 단역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배경과 언어가 필요한 비즈니스 관련 사무실에도 나간 적 있습니다. 제가 비자가 불안정해서 정규직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의 이주배경 특성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있어서 경제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출생청소년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진로 및 취업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이 북한이 아닌 외국에서 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출생청소년들은 탈북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대입특별전형, 대안 학교 등)을 대학 진학 및 취업에 잘 활용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반면에 대부분이 중국 출생인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중국어 실력 및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중국과

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과 같은 중국 관련 특성의 역량을 잘 활용해서 진로 및 취업의 질을 높이고 있었다.

연구자 : 북한출생이라는 사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Y39(북한출생, 대학생) : 제가 한국의 명문대학의 인기학과를 다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1때 북한에서 내려와서 일반고에서 입시를 준비했는데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같은 일반전형으로 한국에서 자란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자 전형 덕분에 5개의 학교에 합격하여 그 중 제가 원하는 곳을 골라올 수 있었던 것은 탈북학생에 대한 배려 덕분인 것을 인정합니다. 등록금도 장학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의 진로나 취업에 대한 미래가 훨씬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마치고 나면 다음 진로나 취업을 선택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테니 말입니다.

Y46(북한출생, 취업자) :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내려와서 대안학교를 2년 정도 다니고 일반 초, 중, 고를 졸업했는데요. 남한 말이 서툴렀을 때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한국 친구들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명문대 인기학과를 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국 친구들이 부러워할만한 직업을 가질 수 있던 이유가 대안학교부터 이어진 한국의 지원정책을 잘 활용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 : 제3국출생 북한배경이라는 사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Y43(제3국출생 북한배경, 대학생) : 저는 중국어를 잘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자체보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다 가능한 것을 활용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취업을 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경영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안되어서 1년 휴학 후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 들어가 인턴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언어를 다 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두 언어를 잘하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저의 상황이 진로 선택과 취업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주배경이나 북한배경을 가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그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진로와 취업의 문이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진로와 취업의 질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연구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12(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본인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진로와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 출신 나라에 대해 당당하게 생각하도록 교육받은 아이들, 그 나라 언어를 당당하게 사용할 기회와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기회가 있었던 아이들은 확실히 진로 선택과 취업에서 몇 안되는 성공하는 기회를 잡습니다. 결국 남이 갖지 못한 자신의 특성을 부끄러워 하며 피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인정하고 기회로 삼느냐는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노력이 진로와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P14(북한배경청소년 전문가) : 제3국출생 북한배경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왔는데 어찌되었든 중국어를 잘 살리는 아이들이 그래도 어찌어찌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 해내는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 아이들과의 경쟁은 너무 어렵고, 북한출생 아이들처럼 지원을 잘 못 받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경쟁력은 중국어와 중국 생활을 통한 중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부분을 잘 캐치해서 치고 나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진로나 취업에서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의 청소년과 전문가의 면접조사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취업을 위한 선택에 있어 본인의 이주배경 상황을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이주배경을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 청소년들은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진로와 취업을 위한 단순한 개인적 역량의 증대 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아 나가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분석 결과 나타나고 있었다.

적지 않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약화로 진로와 취업 선택에 대한 고민이 아닌 진로와 취업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이주배경을 장점으로 활용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넘치는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은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진로와 취업을 선택할 때 벌어지는 단점을 부각해서 그 단점을 메워주려는 지원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나라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나라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등의 이주배경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개인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 지원에는 이주배경 특성의 역량을

활용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로 교육, 인턴 체험 등을 통해 진로 및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 범주 3: 체류자격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진로와 취업의 기회와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범주 및 키워드로 체류자격으로 꼽고 있었다. 체류자격으로 인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형(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청소년, 북한출생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을 제외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의 모든 집단에서(대학생, 취업자, NEET)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과 꿈을 펼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로와 취업을 펼쳐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① 주제 5: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한국정착과 한국사회 기여를 꿈꿀 수 없는 체류자격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유년 시절 이후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여 영주권 및 귀화를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 및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외출생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본인들의 불안한 체류자격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진로와 취업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자 및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움과 많은 제약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와 취업 선택을 꿈꿀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하고 싶은 일과 꿈이 있어도 가장 취득이 쉬운 학생비자 취득을 위해 원치 않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자 : 한국에서 진로와 취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Y23(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취업자) : 저는 비자 유지 때문에 제 진로를 바꿔야 했어요. 저는 어릴 때 한국에 살다가 몽골로 돌아갔지만 한국에서 일하고 살고 귀화도 하고 싶어서 일단 진로와 취업을 위해 석사과정을 한국에 있는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D-2비자를 받고 석사를 졸업하면서 D-10 비자로 변경되었어요. D-10 비자는 2년 기간으로 주어지는데 2년 안에 일을 찾으면 일하는 비자로 변경돼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을 못 찾은 거예요. 석사학위를 활용해서 할만한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비자 문제 때문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다시 D-2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원치 않았어요. 석사 졸업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얼른 직장 잡고 일하고 자리 잡고 싶은데 비자 때문에 원치 않는 공부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박사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하면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기가 어려워요.

연구자 :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Y13(국외출생 외국인가정, 대학생) : 저는 13살에 네팔에서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F-1이었는데 비자가 엄청 바뀌었었어요. F-2로 올라갔다가 다시 F-1으로 간 적도 있었구요. 가장 난감 했을 때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다닌 학교가 국제학교였는데 국제학교 성적 학업 인정이 한국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서 제가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다보니 생각보다 어려워서 검정고시 합격과 비자 만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난리가 났었어요. 검정고시를 한국에서 치를 때도 이제 비자가 이미 다 만료되다 보니까 엄청 출입국사무소 가서 제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검정고시만 보게 해서 고졸만 취득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많이 드려서 겨우 시험은 봤는데, 시험 보자마자 다시 이제 비자 없는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고 다시 네팔에서 다시 와야 했어요. 부모님은 다 한국에 계신데 저만 네팔에 있어야 했는데 비자 문제로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 혹시 못 들어오게 될까봐 굉장히 불안했어요. 어쨌든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대학을 진학하는 비자인 D-2를 신청해서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속 있고 싶고 영주권도 따고 싶은데 비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2년 후 대학 졸업 후가 벌써 또 걱정입니다. 진로나 취업도 비자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국외출생 유형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정부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보다, 근본적인 체류자격의 안정을 통해서 진로와 취업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국외출생 유형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잘 정착해서 영주권도 얻고 귀화도 해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돕고 기부도 하면서 사는 보통의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원하고 있었다.

연구자 : 한국에서 진로와 취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Y31(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NEET) :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되었는데 한국을 정말 좋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꼭 귀화를 해서 한국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한국인으로서 한국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먼 여정이기는 하지만 그게 저의 꿈이에요. 하지만 주변의 같은 국외출생 친구들에게 제가 귀화까지 가는 동안 체류자격과 비자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과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잘 해내는 것은 내 몫이지만 너무 많은 제약들을 들을 때마다 벌써부터 좀 무섭고 걱정됩니다.

연구자 : 한국에서 진로와 취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Y33(국외출생 외국인가정, NEET) : 저는 부모님도 저도 고려인 동포여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왔고 부모님과 저 한국이 정말 좋아서 다 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F-4고 나는 F-1인데 나는 비자 때문에 일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비자 문제 알고 일해도 돈 안주고 그랬어요. 엄마 몸 안 좋아서 엄마 일 좀 안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일하느라 중학교 졸업장만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F-4로 바뀌지가 않다보니 계속 일하는데 돈도 작고 어려워요. 지금 성인이니까 우즈베키스탄 돌아가서 다시 H-2비자 받아서 와서 일한 다음 F-4로 바꿀 계획이예요. 그런데 우린 한국 좋아하고 일 열심히 하는 동포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여기 지방에 우리 필요로 하는 기업들 많은데 비자가 이상하면 계속 피해만 보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귀화해서 일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줄 돈 벌고 나 같이 피해 본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전문가들 역시 국외출생 유형의 중도 입국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의 기회 확대와 그들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비자와 체류자격의 엄격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재외동포 같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체류자격을 주는 것이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서 훨씬 득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자와 체류자격으로 인해 많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나 취업 같은 미래 계획을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대한 제도적 완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서 비자 및 체류자격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영향이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1(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아무튼 비자가 바뀌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추첨에서 비자를 땀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땀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살 이상이 되면 본국으로 나가야 하죠. 부모님과 가족은 다 한국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 그런 궁리하면서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선택하는 것이 대학진학이에요. 아이들 중 대학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애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순수 외국인들 중에 우즈베키스탄 아이가 이태원에서 아버지가 장사나 식당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의 식당이나 가게를 물려받고 싶는데 비자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을 가는 것이예요. 가족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아이들 비자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3(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 안정적인 비자를 먼저 좀 줬으면 좋겠어요. F-4라는 비자가 동포 비자인데 그러기 전에 18세까지는 F-1으로 이제 체류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이 되면 당연히 F-4가 돼야 되는데,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건을 걸었죠. 법무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한국에 몇 급 이상 해야든지 대학교를 나와야 되든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던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애들이 꽤 있어요. 일단 안정적으로 좀 뭔가 설계를 해야 진로 및 취업 같은 미래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결국 개인의 선택과 노력과 여러 가지 사회 자본을 갖고 하는 건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분명히 주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설사 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지낼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점수제를 하든 뭐든 해가지고 비자를 좀 줘야죠. 한국에서 순수 외국인인데 F-1이나 F-2비자로 여기에서 5년 이상의 체류를 했고 고등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체류자격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중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진로와 취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비자 및 체류자격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자 및 체류자격이 이주배경청소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로와 취업에 대한 선택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과 전문가들 모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비자 및 체류자격에 대해 모든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비자의 순기능도 분명 존재하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유형의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정착해서 자신의 진로와 취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비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고등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을 달리 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고등학교 3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주어서 그들이 원하는 진로와 취업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에 중지가 모이고 있었다.

② 주제 6: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진로와 취업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유형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유형에 속하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한 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해 자신의 진로와 취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분석 결과 드러나고 있었다. 해당 이주배경청소년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해서 취업한 경우, 현재 받는 급여는 좀 낮은 편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주권 취득 자격 때문에 애써 잡은 직장보다 좀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다. 또한 비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한창 진로와 취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격증을 어쩔 수 없이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 : 비자 문제로 인해 진로와 취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Y25(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취업자) : 저는 지금 취업한 상황이고 이 회사에서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받고 싶어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 올해(2023년) 7월 기준으로 1년에 제가 4,200만원 이상은 벌어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 월급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적성이나 뜻과 별개로 순전히 비자 문제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Y19(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취업자) : 저는 처음에는 F-1이었던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비자 유지를 위해 무조건 자격증을 따라고 해서 건축 관련 자격증 따고 F-4로 받아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대학도 가고 싶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싶었고 사업도 해보고 싶고 했는데 비자 유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 관심과는 전혀 거리가 있던 건축 관련 자격증을 따서 회사에 갔어요. 회사가 싫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으니 계속 이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외출생자 중 대학 재학생 혹은 국외출생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유형의 조사대상자들은 대학 및 대학 전공을 정할 때 비자 및 체류자격 유지가 중요하다 보니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대학이나 전공을 택할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또한 국외출생 NEET유형들 중에서는 비자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적성은커녕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도 없는 상태의 한국어 실력으로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공부도 거의 안 하고 관리도 못 받는 가운데 시간만 때우는 식의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배운 것도 없고 취업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어서 시간만 버렸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자 : 비자 문제로 인해 진로와 취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Y11(국외출생 외국인가정, 대학생) : 저는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대학에 지원할 때 일단 비자가 제일 중요하다보니 원치 않는 대학과 전공을 가게 되었어요. 만일 비자 문제만 아니면 한번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일단 안정이 중요해서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공보다 부전공 수업 듣고 자격증 따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대학과 전공에서는 비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좀 아쉬워요. 평범하게 대학을 간 아이들이 부럽더라고요.

Y30(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NEET) : 저는 비자 때문에 부모님이 대학 가라고 해서 시험 없이 등록금만 내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입학했어요. 지금도 한국어 잘 못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못해서 대학다니면서 뭘 배웠는지는 기억안나요. 한국어 조금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대학 나온 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좀 한국어가 준비되고 다녔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문가들은 비자 및 영주권 변환을 위해 원치 않는 취업을 해야 하거나 애써 잡은 직장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몇몇 비자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수제를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비자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또한 점수제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좀 더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체류 기간, 한국 교육과정 이수, 취업한 직업군별, 취득한 자격증별 등 세부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와 취업을 선택할 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수제의 도입이 국외출생 후기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잘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본연의 뜻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특히 단기 고액 알바 양성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비자의 점수제 기준에 한국어 역량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개진하고 있었다.

연구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서 비자 및 체류자격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영향이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2(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 비자나 체류자격을 완전하게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에 필요한 업종이 있어요. 인력이 부족한 업종은 점수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측 가능성이 있게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 몇 점 무슨 기능은 몇 점 해서 이 점수 이상 되면 한국에 체류도 할 수 있고 취업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인력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해주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 및 취업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인력시장에도 상당히 좋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P12(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 저도 점수제 확대 도입에 찬성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진로와 취업, 적응과 정착의 핵심은 한국어 능력임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7비자나 F-2비자에서 점수제 할 때 한국어 토픽 4급 이상을 기준으로 놓듯이 다른 비자에서 최소한 한국어 토픽 2급 이상이라든지 그런 언어 능력은 일정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국외출생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실을 반영한 체류자격 기준의 변화는 국외출생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평범한 정착과 삶을 꿈꾸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대학 진학이 오로지 체류자격 연장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폐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함이 드러나고 있었다. 물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 다양한 부작용 등에 대해 고민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겠지만, 이주배경청소년과 전문가들의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한국에 정착, 귀화하고 싶어 하는 동포 및 국외출생유형에 대한 체류자격 완화 등의 조속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제시된 체류자격 점수제의 확대 및 세부 기준 강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격증, 취업 분야, 검정고시 등과 같은 체류자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해 주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주는 식의 제도는 국외출생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 안정성 확보와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임이 분석 결과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하나가 갑자기 도입된다

고 해서 바로 국외출생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의 원하는 진로와 취업에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로와 취업을 염두에 두면서 체류자격을 갖추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할 것임이 분석 결과 나타나고 있었다.

(4) 범주 4: 지원의 방향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모든 유형 및 집단,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모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진로 및 취업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가적,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원의 방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해서는 유형별, 집단별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다양한 의견 중 특히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첫째는 모든 유형(i.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i.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iv. 북한출생청소년, v.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 및 모든 진로의 특성별(대학생, 취업자, NEET)로 필요한 지원이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둘째는 5가지로 나눈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원 관련 정책전달체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었다.

① 주제 7: 유형별, 진로특성별 필요한 지원의 다양성 및 차별화 확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중 북한배경을 제외한 국내 및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하여 이주배경을 가진 본인들에게 주는 진로와 취업과 관련한 혜택이나 지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이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각 유형별 특성 및 대학생, 취업자, NEET라는 개인의 상황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지원 방식이 아쉽다는 의견과 함께 각 집단별로 이러한 지원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의견도 함께 개진하고 있었다. 먼저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는 진학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대학에서 공부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 예를 들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 가족 돌봄의 어려움, 대학 공부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지원책의 부족 등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연구자 : 대학 입학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적이 있나요? 있다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Y4(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대학생) : 어렸을때부터 다문화가족센터를 엄마와 함께 다녔고,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로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저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연계한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선생님께 진로 상담을 꾸준히 받았는데 그것이 대학 및 전공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인 제가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제가 아니라 저랑 떨어져 계신 제 어머니를 누군가 좀 케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면 한국어가 서투르신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매번 갑자기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는 많은 다문화 친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대학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Y1도 같은 동일한 경험을 했고 위 내용에 동의하고 공감함).

Y7(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대학생) : 저는 다문화학교를 다니면서 다문화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과 전공에 대한 정보도 다문화학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다문화학교를 통해 진로 설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의 지원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학에 와서는 사실 등록금과 생활비가 제일 문제인데 외국인이라 외국인이 받는 교내 장학금 숫자가 적어서 좀 힘이 드는데요. 그래도 재단이나 교회 같은 교외 장학금으로 최대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같은 곳의 장학금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교회 같은 곳의 장학금은 교회를 다녀야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저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이 조금 확대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Y35(국외출생 외국인가정, 대학생) : 저도 다문화가족센터나 지역 이주민 센터에서 진로 상담이나 체험,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고 큰 도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와서 대학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전혀 없어서 대학 공부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학을 하고 한국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도 인정하지만 기왕에 대학에서 뽑아줬으면 대학 수업을 잘 따라가도록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자들은 대학생과 NEET에 비해 진로 및 취업 관련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적었다. 그러나 국외출생 이주배경 취업자 유형은 이미 취업을 한 상황이지만 대학 진학이나 이직과 같은 그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취업의 지원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 취업자들이 가족이나 다니는 학교 혹은 지인의 추천 형식으로 취업처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언급하며, 좀 더 전문적인 진로 및 취업 상담을 받고 취업했을 때 퇴사율과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연구자 : 취업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적이 있나요? 있다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Y18(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취업자) : 다문화가족센터 정도에서 진로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했는데 어렸을 때나 몇 번 갔고 10대 중후반 되어서는 안 갔어요. 취업에 대해 딱히 무언가 도움이 되거나 지원을 받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엄마가 연결해준 회사에 자격증 따서 다니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으면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이주배경을 위한 취업상담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Y22(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취업자) : 저는 다문화학교와 다문화학교를 설립한 교회 두 곳에서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상담도 해주시고 금전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업해서 번 돈의 일부를 다문화학교에 기부하고 있어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딱히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그만두고 대학을 가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는데 대안학교 출신인 저는 수능을 보거나 검정고시를 다시 봐서 거의 100점을 맞아야 수준있는 대학을 갈 희망이 생기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저 같이 취업을 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26(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취업자) : 취업 및 진로에 관한 특별한 도움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주변 지인들에게 알음알음 취업처를 찾았던 것 같아요. 월급을 많이 주냐 안주냐에 따라서 공장도 다니고 토목 작업도 하고 회사를 옮겨다녔는데요. 회사를 옮길 때 한국어가 아주 원활하지 않고 정보에 취약한 저희 같은 이주배경 사람들의 이직을 돕는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정보, 월급, 제 적성에 맞는지를 좀 알고 가면 적응이 편할 것 같아요.

NEET의 경우는 진로 및 취업을 하고는 싶지만, 동기 부족에서 나오는 게으름,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정, 지원센터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이유 등으로 진로 선택 및 취업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NEET들도 언젠가 취업을 해서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얻거나 직업 교육, 한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전문적인 진로 및 심리 상담 등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NEET들에게는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해 대학생이나 취업자 집단보다 더 세심한 배려와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 : 취업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Y30(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NEET) : 지역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토픽 지원, 검정고시 등 많은 지원이 다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한국 문화를 더 알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외국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을 해줘요. 대학은 부모님이 꼭 가라고 해서 어떻게 갈지 몰랐는데 센터에서 알려줘서 어느 대학 다니고 싶은지 골라줘서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돈만 내면 다니는 학교였고, 뭘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업은 아직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집에만 있어서 부모님께 혼나니까 지금은 좀 쉬다가 알바를 할거예요. 그렇게 알바를 하는 중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많이 받으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알바나 일자리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Y32(국외출생 외국인가정, NEET) : 저는 처음에 출입국사무소 옆에 있는 외국인 센터에서 중국어로 상담하는 선생님들 계셔서 여러 센터 정보 얻었고 또 바로 연락해 주셔서 한국어 교육이나 진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등의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서 우울할 때가 많은데 심리 상담 같은 것이 지원되면 진로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Y34(국외출생 외국인가정, NEET) : 저는 러시아에서 온지 얼마 안되어서 한국어도 거의 못하기 때문에 통역이나 러시아어를 잘하는 분의 상담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출입국에서 통역 도움을 줬던 사람 정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겨우겨우 정보를 얻고 러시아 출신 고려인들 에게 정보를 얻는 정도입니다. 다문화센터에 가면 된다고 하지만 지방은 다문화센터가 몇 개 없어서 너무 멀리 있고 또 아이들이 많아서 저처럼 성인의 나이가 된 사람이 가기는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진로 및 취업을 도와주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출생과 제3국출생 북한배경 유형의 경우 유형별로 서로 받는 지원의 규모와 내용이 다른 만큼 진로와 취업 지원에 대한 관점 및 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에서 서로 차이가 나고 있었다. 먼저 북한출생유형의 경우 본인들이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해 주거 지원, 대입 특별 전형 등의 국가적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재단 및 종교 단체로부터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감사해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출생 중 무연고로 혈혈단신으로 넘어온 경우,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로 자살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위한 심리 상담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많은 지원들이 수혜자들에게 독이 되어서 자립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많은 지원으로 인해 본인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적응하고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원 보다는 수혜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연구자 : 진로나 취업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Y38(북한출생, 대학생) : 19살에 탈북 후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대안학교와 시민단체를 통해 대학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주요 과목 과외부터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대학 탐방, 자기소개서 피드백 등 진학을 위한 모든 도움을 대안학교와 시민단체를 통해 받아서 대학도 잘 들어왔고 대학 생활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특별전형이 있어서 좋은 대학과 전공을 통해 미래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높은 수준의 대학 공부를 할 준비가 안 된 북한출생친구들이 대학에 와서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서 저에게는 고맙지만 조금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Y47(북한출생, 취업자) : 저는 두 개의 재단과 교회의 지원 덕을 많이 봤습니다. 대학 때는 첫 번째 재단에서 책도 많이 받고 장학금도 챙겨줘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단에서는 해외에서 1년간 공부하고 인턴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서 다녀왔는데, 이러한 진로 및 취업지원 덕분에 IT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IT쪽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적자본과 네트워크를 제공받았고 정착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북한출생 친구들은 진로 및 취업 지원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지원을 잘 활용하는 의지와 자기개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에서 온 친구들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대우를 되게 많이 받아서 명문대도 쉽게 가고 대학 다니면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높은 사람들, 일반인은 할 수 없는 활동들, 갈 수 없는 곳들에 가면서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딱 그 대학교를 벗어나면 한국사회의 현실, 취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에 대해 객관적 능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자기 수준이 미달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방황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 대학원 가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은 좋은 것이지만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걸림탄 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지원을 잘 활용하는 의지가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독일 수 있습니다. 지원체계의 세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Y55(북한출생, NEET) : 저는 21살에 혼자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무연고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지원에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 같은 무연고 친구 4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것을 보니 나도 사업하다 내리막길을 걸으면 저렇게 되는 걸까 라는 불안함 같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상담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 대부분 교회에서 제공하고 답은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니 별 소용이 없어요. 진로와 취업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진로를 결정할 때 마음을 다잡아주는 상담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국가적으로 받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무료로 갈 수 있는 대안학교나 종교단체를 통해 받는 지원이 많이 있었음을 밝히며, 이러한 지원들이 분명히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이직률도 높고 사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이직 및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자신들과 비교되는 북한출생 유형에 비해 적은 혜택과 지원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 특성상 사실상 같은 북한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출생에만 적용하는 대입특별전형의 차이로 인해 진로와 취업의 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반면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게 살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었다.

연구자 : 진로나 취업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적이 있나요? 있다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북한출생유형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45(제3국출생 북한배경, 대학생) : 저는 좀 어렸을 때 와서 진로나 대입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 북한배경 프로그램 중 진로 관련 프로그램 몇 개 참여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저희 같은 북한배경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나 물품이 재단이나 종교단체에서 있어서 그런 것은 부모님이 수령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북한배경이나 외국인전형의 덕을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북한 출생, 특히 나이 들어서 보면 말투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차별을 겪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대학이든 뭐든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도 잘 되었다라는 마음입니다.

Y53(제3국출생 북한배경, 취업자) : 저는 15살에 들어와서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대안학교 통해서 진로와 취업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도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가 없어요,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할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직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요, 평균 6개월 정도 일하면서 4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듣는 정보나 자문 말고 국가 차원의 자문과 상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Y59(제3국출생 북한배경, NEET) : 저는 9살에 입국했는데 다니게 된 대안학교가 활동적이어서 다양한 진로체험도 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미술 치료 등도 해주셔서 진로 및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한국어 되면 일반 학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안학교 다니면서 대립동 같은데 모여서 안 좋은 환경에서 내일이 없이 사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북한출생애들처럼 대학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대학 가고 싶은데 좀 서럽습니다. 솔직히 보통 부모님 정착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 중국 친구들 많잖아요. 같이 고생했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전문가 역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진로특성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전문가들의 맞춤형 지원 방안들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맞춤형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다. 첫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해줄 좋은 어른, 훌륭한 어른의 역할을 해줄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애를 써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유형별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 상담, 멘토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진로와

취업 선택을 위한 심리 및 진로 상담사들이 단순한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동반하는 상담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실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업기초훈련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및 진로특성별로 맞춤형으로 구성해서 실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자로 잡히지 않는 NEET 유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전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문화센터에 나오거나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를 정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그나마 진로와 취업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서만 있는 청소년들, 진로와 취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력한 아이들, 부모나 가족의 사랑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찾아내고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연구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9(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의 진로와 취업,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눌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됐든, 센터의 선생님이 됐든. 아이들도 한국에서 너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산다는 것은 어엿한 직업을 갖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데, 아이들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꿈과 진로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게 애네들한테 가장 절망적인 거예요. 그냥 정말 닥치는 대로 알아하고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일하고 막 지게차도 몰고 막 벌거 벌거 다 하고 막일을 하는데 막노동 현장에도 가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본인이 그걸 다 하다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상담을 해주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됐든 그런 상담을 할 곳이 없다. 아이들에게는 꿈과 미래, 진로를 들어주고 잘 인도해줄 수 있는 ‘한 명의 훌륭한 어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P8(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 이런 주제에 면담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지원도 받고 잘 지내는 편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나오지 않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은둔형 이주배경 NEET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모에 의해서건, 본인에 의해서건 전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인력과 예산은 찾아오는 아이들을 감당할 정도에 그쳐 있어 숨어 있는 아이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NEET유형의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몫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상담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P4(북한배경청소년 전문가) : 북한배경의 특수함을 잘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배경 아이들의 진로 및 취업 교육을 위해서는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라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사라고 뽑아냈는데, 북한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심지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비밀 유지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없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P16(북한배경청소년 전문가) : 지원예산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 금액 한도를 정해놓고 북한배경친구들을 도와주고 그 나머지 금액들을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한테 더 주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기초학업능력, 기초직업훈련을 잘 시켜주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한국어와 교양 및 문화 교육, 취업을 위해서는 팩스 사용법과 문서 작성법 같은 한국에서 자란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초적인 것을 잘 교육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좋은 어른, 후견인,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유형별, 진로특성별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천차만별로 상황이 다르게 형성되는 유형별, 진로특성별 배려가 없는 지원은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책임의식과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내출생, 국외출생, 북한배경 등의 같은 유형과 속해있거나 같은 대학생, 취업자, NEET라는 같은 집단에서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5개의 유형, 3개의 집단, 총 15개 집단에 대한 지원의 방향성 및 목표, 그리고 이를 실천할 방법에 있어 다양성과 차별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주제 8: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 정책전달체계의 중요성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에 와서 진로와 취업을 위해 돕는 유형별, 진로특성별 필요한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전달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5개의 유형(i.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청소년, iii.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청소년, iv. 북한출생청소년, v.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별 지원 정책이나 정보 등의 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애써 만든 지원정책들이 이주배경청소년 누구에게나 소외 없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 정책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중 모든 유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만을 위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센터의 설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센터의 설치였다.

연구자 : 진로나 취업과 관련한 정보나 지원이 잘 전달되려면 어떤 방법이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Y8(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대학생) : 한국에 온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대학을 갈 때 대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한학교의 정보와 역량에 따라 대학 수준이나 전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학교 선배들이 자주 가던 대학이나 전공의 정보 위주로 진로가 정해지는거죠. 이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진로 중 하나인데 이주배경청소년의 대입 관련 정보를 상담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센터들은 대개 어린이나 초기 청소년 위주여서, 저희가 가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요.

Y24(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취업자) : 저는 대한학교도 다니고 일반고등학교도 다녔고 지금 취업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저의 진로나 취업을 위한 무슨 센터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들어요. 그러니까 다녔던 학교, 지인들의 조언이 취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죠. 다문화센터는 어렸을 때 엄마랑 잠깐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주민센터는 일반 지원이지 진로와는 관계가 없죠. 진로나 취업을 위한 상담이나 정보를 주는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등 청년나이의 취준생이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가 좀 필요하죠. 딱 우리만을 위한 것이 중요해요. 안 그럼 안갈 것 같아요.

Y29(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NEET) : 저는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진로 상담이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멘탈 관리, 이주배경으로서 사업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좀 교육도 받고 싶는데 후기청소년기 나이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를 상담하고 고충을 토로할 곳이 없어요. 결국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는데 그들도 힘든 상황이니 쉽지 않죠. 일반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센터, 진로센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은 다문화 청년 나이 대를 위한 진로센터, 창업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유형에서 자신의 유형별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전문적인 센터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한 경향성은 국외출생청소년, 북한출생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비자가 필요한 국외출생 청소년들은 입국의 순간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진로를 위해 필요한 비자나 지원 등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센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북한배경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 서로 간의 의심도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북한관련재단들이 아닌, 최대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 주는 센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들은 지원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북한출생자들과 함께 묶여 있는 센터가 아닌 자신들을 위한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둔 센터가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연구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진로나 취업과 관련한 정보나 지원이 잘 전달되려면 어떤 방법이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Y11(국외출생 외국인가정, 대학생) : 한국에 딱 왔을 때 비자 문제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를 딱 알려주는 원스톱센터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입국사무소에서 뭘 알려주기는 하는데 여러 곳을 알려주다보니 뭐가 필요할 때 어디다 정확하게 연락해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하나의 원스톱센터가 저희의 시작부터 진로나 취업까지 관리해주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Y24(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취업자) : 저는 한국에 온지 20년 동안 비자도 정말 많이 바꾸고 영주권도 취득하고 결국 귀화까지 했는데요. 한국에서 와서 영주권도 따고 귀화할 생각으로 오는 이주배경청소년들, 즉 비자 변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국외출생 중도입국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센터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진로와 취업을 선택할 때 항상 비자문제도 함께 연동되기 때문이에요. 중도입국자들 중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비자와 연동된 진로와 취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필요합니다.

Y54, 56(북한출생, NEET) : 사실 저희는 탈북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들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너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로나 취업 상담을 받을 때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취업도 못했는데 아는 사람을 만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Y58(제3국출생 북한배경 NEET) : 저희는 북한출생과는 아무래도 다른 점이 많기도 하고 지원체계도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출생보다 저희 같은 제3국출생 북한배경이 훨씬

많이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특성에 맞는 진로 및 취업센터가 있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도 북한출생과 서로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또한 정책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센터들이 늘어나야 함과 동시에, 여러 센터의 역할이 분산되어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면접조사에서 진행된 5가지의 유형 외에도 고려인이나 특정 국가 같은 출신 배경에 따라 언어, 비자, 진로와 취업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신 배경에 맞춰 전문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전문센터가 운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도 언급한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원스톱센터를 시급히 세워야 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원스톱센터의 기능 중 가정 지원을 통한 진로 지도를 함께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연구자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진로나 취업과 관련한 정보나 지원이 잘 전달되려면 어떤 방법이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P2(이주배경청소년전문가) :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보통 5개 국가인데, 일단 부모부터 애들까지 말이 아예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가 아예 달라요. 특히 아이 때 안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온 아이들은 한국 학교도 포기를 해요. 학교로 가면 적응이 안 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인터넷하고 게임만 하고 몸 쓰는 알바나 하고 그렇게 진로나 취업의 질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려인은 정규직이 거의 없어요. 동포라면 최소한 와서 부리를 열른 내리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비자 같은 것이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좀 장애 요인이 되게 만든 것도 많아요. 이런 러시아어권의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이들 만을 위한 전문센터가 정말 절실합니다.

P5(북한배경청소년전문가) : 유형별로 진로, 취업 센터가 나누어지면 정말 좋기는 한데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이주배경이든 북한배경이든 한국 땅에 딱 떨어져서 진로와 취업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때 까지 정보와 지원을 해 주는 센터가 원스톱센터로 딱 한군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사이트도 원스톱센터 한군데에서 관리가 되어서 그 센터에서 모든 정보와 지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크게 격차가 나고 있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정보와

지원의 격차도 훨씬 줄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의 절반도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P13(북한배경청소년전문가) :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유형별 전문센터 설립은 정말 필요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진로 및 취업 지원을 가정단위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와 취업의 방향성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가정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포함한 심리 상담, 진로 교육 등의 가정단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문센터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15(북한배경청소년전문가)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대상별,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미 성장해서 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체계 안에 이들이 지원 대상으로서 확대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정보 및 지원 정책이 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한 방안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었다. 첫 번째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센터의 운영이었다. 각각의 유형별로 진로와 취업의 방향성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두를 포괄하는 다문화센터 등에서는 아동, 초기청소년기가 아닌 후기청소년기 청소년들과 관련한 각 유형에 맞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상담 및 교육을 받기는 어렵다는데 조사대상자들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이 진로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대안학교의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 및 교육이 학교별 시스템의 우수함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 대안학교 자체가 이주배경청소년 중 특정 유형에 맞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형별 진로 및 취업 지도의 효과성은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보를 총괄하는 원스톱센터의 필요성이었다. 진로와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문제, 체류자격 및 비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 다양한 센터와 재단, 종교단체, 대안학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교육 등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입국 때부터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센터가 있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정책전달체계가 갖추어질 것이 분석 결과 드러나고 있었다.

4. 요약 및 소결⁹⁾

3장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수행된 학술논문과 정책연구 등에 나타난 후기청소년들의 생활과 적응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둘째는 기존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한 세 가지 조사, 즉,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및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유형과 상관없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진로정보부족과 진로장벽인식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이나 부모님, 지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얻고 있어서 각 청소년이 지닌 사회자본 및 환경에 의해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정보격차는 진로와 취업의 선택 및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가정환경 등 개별 청소년들이 지닌 사회자본에 의한 정보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진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처한 환경과 배경특성에 따라 적응수준이 다르나, 국외출생자들이 국내출생자들에 비하여 좀 더 열악한 진로환경에 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외출생자들 중 언어가 부족한 경우 학업 및 취업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경우는 한국에서의 안정적 진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체류를 위하여 진로를 맞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후기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진입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에서 정착할 경우 개인적으로도 적응적 삶을 살 수 있고, 한국사회의 입장에서든 인구감소 시대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착에 대한 지원방안을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생각된다.

셋째, 이주의 배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점, 한국과 본국의 문화를 모두 잘 알기 때문에 양국의 가교역할을

9) 3장의 4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할 수도 있고, 양국의 상황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는 등 진로를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데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기술직이나 직업훈련 쪽으로 집중하기 보다는 이주배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역량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희망교육의 수준이 일반 청소년집단에 비하여 낮고, 월평균 소득수준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배경집단이 선주민 집단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볼 때, 교육 및 소득수준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격차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이주배경집단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을 차지하고 이것이 결국 사회통합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노동 및 자립지원을 위한 방안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방안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어서 이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수요자 입장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진로, 취업정보,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어의 문제, 체류안정성의 문제, 정보부재나 정보접근성의 문제, 편견과 차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된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원스톱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장하여 후기청소년기, 성인기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결국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주요 이슈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점차 증가하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수용의 태도와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본 연구가 파악한 실태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표 III-115.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생활 및 적응실태 요약

방법	결과
선행 연구 분석	■ 유형과 상관없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진로정보부족, 진로장벽인식의 어려움을 겪음. ■ 진로정보는 주로 인터넷이나 부모님, 지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획득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낮은 학력과 문화차이, 정보부재 등은 단순노동이나 불법적 근로를 반복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중언어 등 이주배경의 장점을 활용하는 경우 진로 및 취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 ■ 국외출생자 중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집단은 불안정한 생활을 하며 진로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고, 취업에 제약이 있어 안정적 삶의 영위하지 못함. ■ 국외출생자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한국생활 적응, 취업, 향후 정착계획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진학에 대한 포부와 열망이 매우 높으나, 부모의 관심부족, 남한문화이해의 부족과 편견과 차별, 직업과 관련된 지식의 부족, 직무관련 한국어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음. ■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은 언어 및 사회적응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며, 불안정한 노동 및 고용형태에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고, 본국으로의 귀국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음.
2차 자료 분석	■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수준에서 이주배경집단이 전국의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크게 낮음. ■ 진로의식 수준에서 일반집단청소년들에 비하여 이주배경집단이 낮음.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일상생활의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1%에 불과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는 6%만이 차별경험이 있다고 나타남. 이는 국내출생, 한국어 기능여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차별경험자는 외국출신자일 것으로 보임. ■ 한국에서의 직업훈련경험은 별로 없음. ■ 일경험자 중 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그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음.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 월평균 소득수준은 외국배경자(107.9만원)에 비하여 북한배경청소년(143.9만원)들이 높은 편이나 2021년 통계청의 20-24세 평균소득수준(180만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구직활동 경험은 높지 않음
면접 조사	■ 가정환경과 부모특성에 따라 삶의 경로가 달라짐. ■ 정보접근성의 격차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의 결정 뿐 아니라 진로와 취업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정착이나 귀화에 대한 의지도 높아짐 ■ 의사소통 수준이 되어도 대학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실전 한국어 역량에 대한 요구도가 큼 그러나 직업수준의 한국어 역량을 키우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방법	결과
	■ 이주배경을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 경우, 취업 및 한국사회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음. ■ 국외출생이주배경청소년들은 불안한 체류자격과 비자 및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움으로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와 취업 선택을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함. ■ 고등학교, 대학교시기에 비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어렵고, 비자 연장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인생을 사용하게 되는 일이 다수 발생함.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 유형별, 진로특성별로 필요한 자원이 다양하고 외국배경자와 북한배경자를 위한 차별화된 자원체계를 선호함. 특히 북한배경자의 경우 별도의 자원시스템에 대한 선호가 강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보를 총괄하는 원스톱전문센터가 필요함. 출입국 문제, 체류자격 및 비자 문제, 자원기관, 교육정보, 진로 및 취업정보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국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 1. 분석 개요
- 2.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 3.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 4. 요약 및 소결

1.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은 두 가지 영역에서 다루었는데,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되는 중앙부처의 국가 기본계획 영역,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중 외국국적자의 체류와 관련된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영역인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기 연령대로 가면 관련 법령과 정책 대상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19세에서 24세는 청소년기본법, 19세에서 34세는 청년기본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이주배경청소년 범주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도 관련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진로, 노동, 자립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령과 정책 대상의 폭이 더욱 넓어져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교육에 관련된 정책으로 교육부의 진로교육활성화방안과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도 포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아래의 <표 IV-1>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네 가지 정책과, 일반국민 대상 정책이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연령집단이 포함되는 네 가지 정책을 선정한 후, 선정한 정책들의 각 기본계획에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외국국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자격 종류를 살펴보고, 외국국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체류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었다.

10) 4장의 1절 분석개요와 2절 국내정책분석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다음으로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총 5개 국가의 이민역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과 체류정책 등을 분석한 한국사회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IV-1.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분석 대상

정책 대상	국가 기본계획
이주배경청소년	(1)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 2023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2023) (3)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4) 제 3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일반국민	(5) 진로교육활성화방안(2023-2027) (6) 제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7) 제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8) 제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두 번째 영역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중 외국국적자의 체류와 관련된 정책현황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취업, 자립지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한국의 정착을 원하는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체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의 외국국적자 체류와 관련한 법령 및 정책을 중심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인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이며, 분석의 틀은 i) 각 국가의 이민역사와 이민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i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iv) 이주배경청소년 체류정책 등 총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였다. 다섯 개 국가는 이민자 통합지표인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8개 정책영역별 순위가 10위 권 안에 드는 대표적인 이민국가 중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및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체류자격 및 기준마련에 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 5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2.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1) 국가 기본계획에 나타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계획으로 2010년 처음 시작되었다.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계획,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었고, 현재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당시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연령이 취학 전 또는 초등 저학년 수준이 되면서 이들의 언어발달지원 및 학교부적응 지원 등 주로 이들 집단을 부적응집단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 시각과는 상반되게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당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에 이해 부족을 드러낸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0). 그 후 2013년부터 시작한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을 주요 주제로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어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접근성 제고 등 주로 학령기 자녀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2013). 이렇듯 학령기 자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 이유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성장하여 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로 주제를 발전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었는데(여성가족부, 2018.03),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배경은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학업능력 및 진로준비, 사회진출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입국자녀, 즉 국외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자녀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가

역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기본계획 및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총 13년간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집단 중 국내 및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범주에 해당하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발달 및 성장에 맞추어 현실을 반영한 정책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과제가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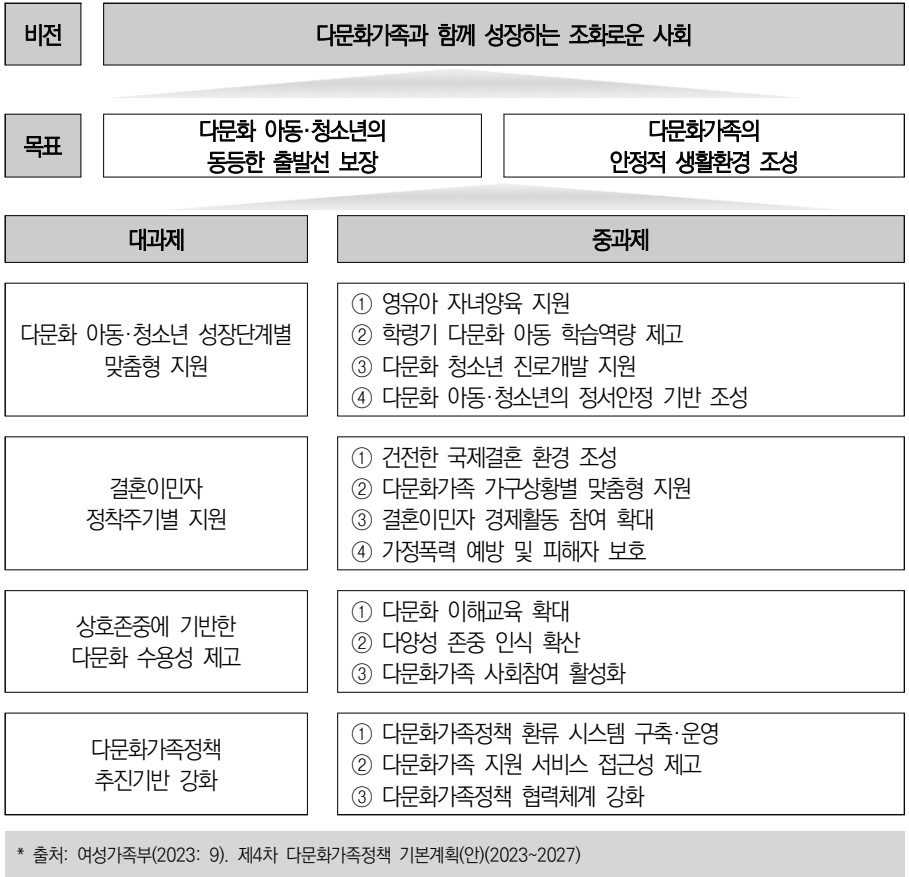


그림 IV-1.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과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차별성은 아래의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성장단계 및 전달체계를 고려한 정책과제들을 계획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기 집단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이르는 집단의 증가 현상에 대한 정책적 반응으로 지금까지의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발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후기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과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다문화 후기청소년 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이다. 이 과제는 향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직접적으로 후기청소년기 집단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나 매우 의미 있는 기획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로는 19세에서 24세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 계획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포괄하는 국제결혼가정자녀에 국한되지 않고 이주배경청소년 전체의 통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다문화 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가족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등을 통하여 상담제공, 폴리텍대학, 내일이룸학교 등을 통한 직업훈련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취업 촉진 및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경제적 지원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 제도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지원, 가족센터의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제공 등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데, 후기청소년기 집단의 규모와 지원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이용자,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 등이 발굴을 하고, 이를 가족센터가 총괄을 하여 지원의 수요를 파악한 후 심리·정서, 직업훈련, 취업정보, 관계망 등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연계의 내용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기존의 단편적인 사업들을 이주배경청소년들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상담지원이나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취업정보 제공 등은 모든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대상인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 모두 접근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직업훈련기관이나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가정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인가정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적 한계 때문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레인보우스쿨사업은 그런 면에서 볼 때 포용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국적이나 체류상태 등 배경특성과 상관없이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 한국사회 적응, 학교편입학, 진로지원 등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국의 중도입국청소년의 규모를 고려하면 기관의 수가 전국에 20개 내외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규모가 적고, 내용적으로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취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 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비하여 후기청소년기 연령집단에 대한 과제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한 지원방안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최근 18세에서 24세 연령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폴리텍 대학에서 각종 기술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문화청소년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관련 예산배정이 확정되어 2024년부터 실시될 예정인데(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0.03.), 사업의 실행방법과 성공여부는 차치하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V-2.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전달체계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각 급 학교 및 교육부 지원체계	청소년 등 기타 지원체계
성장단계	양육 및 성장	교육 및 학교적응	각종 자원 연계
영유아 미취학	• 양육단계별 부모교육 및 지역 돌봄공동체 강화 •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강화 • 이중언어 친화적 가족환경조성	• 학교 준비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 단계 지원체계 강화	• 누리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초등 취학전후 기초학습기	• 정보제공, 학부모 교육품앗이 • 가족센터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 이중언어 기초교육 • 정체성 확립 및 부모-자녀 관계 증진(자녀성장지원)	• 학교교육 진입 안내 및 지원 • 한국어학급 등 한국어교육 강화 • 학교적응 지원(징검다리과정) • 학습결손 보완(두드림학교)	-
중·고등학생 진로탐색기	• 이중언어 교육·인재DB 연계 • 청소년 진로컨설팅·상담 강화 • 대학생 멘토링 연계	• 진로체험 정보제공(꿈길) 및 진로교육(진로탄탄) • 청소년기 심리상담 강화 (학교, 교육지원청 등) • 교원 등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및 다문화 교육 근거 마련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등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강화 •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확대 • 다문화 청소년 중심 진로 체험처 발굴·확대 • 폴리텍 다문화고등학교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자원 체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후기 청소년기	• 지원 수요 등 조사 • 맞춤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 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참여 확대 • KOICA·KOTRA 등 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후기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연계

이주배경 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진

중도입국 자녀	•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한 공교육 진입 지원 • 가족센터-학교 간 한국어교육 연계 •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한국어·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통계 구축 추진	귀한 다문화 가족 자녀	• 귀한가족·자녀 규모 파악 • 자녀 대상 돌봄,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 출처: 여성가족부 (2023.04).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 p.10

(2) 다문화교육지원계획(202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정책은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이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의 경우 2006년 이래로 매년 수립되는데,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아래의 [그림 IV-2]와 같이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해소 및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 이상의 연령대는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부에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 측면에서 일부 다루고 있다. 진로교육과 평생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일반청소년대상 정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비전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목표	■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
추진과제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①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②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
2. 학교적응 및 안정적 성장지원	①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② 학교적응 및 인재양성 지원
3.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환경 조성	① 전체 학교의 다문화교육 확대 ②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제고 ③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4.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내실화	① 다문화교육 제도 개선 및 실태 파악 ② 타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③ 중앙-지역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 출처: 교육부 (2023a: 7).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그림 IV-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비전 및 주요과제

(3)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2008년 제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2012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시작되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추진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2023년 10월 현재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중이고 아직 최종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그 때 수립된 내용이 [그림 IV-3]이다. 이는 최종본과는 다소간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로써 최종본이고 큰 틀에서는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중심으로 법무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이며, 정책목표는 총 5개로,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 및 인프라이고, 각 목표별로 3-4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점과제는 [통합]의 3-③ 이민자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3-④ 사회구성원으로 공생하는 발전의 두 가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3-③ 이민자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과제에는 i)결혼이민자,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와 ii)외국인근로자 밀집 지역 중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추가 지정·지원으로 상담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3-④의 사회구성원으로 공생하는 발전의 과제에는 i)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와 취업제한을 완화하고, 동포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센터 확대와 ii)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학업·진로컨설팅 및 대학생 멘토링 확대를 통해 능동적인 미래설계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는 내용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와 취업완화 및 재외동포 적응을 위한 지원센터 확대의 두 가지 과제이다. 이 과제들은 제4차 이민정책의 방향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장기적으로 정착할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정착의 대상은 주로 재외동포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외국국적을 지닌 후기청소년들 중 다수가 재외동포의 자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를 확대하고 취업기준을 완화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학령기를 보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정착 기회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역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할 경우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이주배경청소년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적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외국국적자도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범주의 이주배경청소년만을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국내의 인구위기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출산을 제고, 여성과 노인의 고용 확대 정책만으로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이민정책을 통하여 경제활동인구를 보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민자 유입단계부터 정주가능성과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필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법무부, 2022: 8). 이러한 방향은 첫 번째에 제시된 [경제] 영역의 과제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 지역특성과 산업수요를 고려한 지역특화비자 사업의 정규화, 국내 정착에 필요한 역량(언어, 기술 등)을 갖춘 우수한 이민자의 정주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듯 인구문제와 노동력 부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이민자로 해결하고자 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 있는, 국내에서 성장하여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이른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먼저 진행한다면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내에서 성장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새로이 입국하는 외국인들과 달리 한국어와 한국사회, 한국문화에 대하여 익숙하므로 이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본인이 성장하고 적응해 온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진로를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줌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주배경주민들을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전제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 책 목 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①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②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활성화 ③ 국가매력도 연계를 통해 경제 성장 ④ 체계적인 이민자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① 엄정한 체류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 ②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체류질서 확립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① 질적으로 향상된 수준 높은 사회통합 실현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③ 이민자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 ④ 사회구성원으로 공생하는 발전
	[인권] 인권의 가치를 존중 하는 환경조성	① 실질적이며 다각적인 이민자 인권보호 ②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③ 인도적인 차원의 국제적 의무 이행
	[협력/인프라] 글로벌 선도국가다운 이민행정 기반구축	① 범정부가 협력하는 이민행정 추진체계 구축 ② 정책수요자와 소통하는 이민정책 수립 ③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행정 서비스 고도화 ④ 국격 상승에 부합하는 국제사회 협력
* 출처: 법무부 (2022:10). 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공청회 자료.		

그림 IV-3.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은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후 2015년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매 3년 마다 수립 및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본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1: 2). 제 1차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 2차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 및 시행되었고, 현재는 3차 기본계획(2021-2023)이 시행되고 있다. 제 3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심리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착을 지원하는 「사회적 통합지향성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림 IV-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과제는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지원」이라는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분야의 핵심은 교육지원과 탈북청소년의 역량강화, 보호 등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과제는 우선 5-③의 탈북대학생 교육지원 사업으로 탈북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입학금이나 장학금 등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취업과 진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민이 다수 재학 중인 대학을 지정하여 멘토링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대학진학연령의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 사업에 연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한 탈북청소년들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진학 후 겪는 어려움 등 대학 입학과 적응 문제에 대한 그 간의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이다.

후기청소년기 연령의 탈북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또 하나의 사업은 5-⑥의 건강한 가정형성지원 중 ‘제3국출생 자녀의 한국어교육 및 학력인정 노력’의 부분이다. 그러나 후기청소년기 탈북청소년이 주요 대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5-⑦의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사업이다. 무연고 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없이 국내에 입국한 청소년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나타난 내용은 주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으로 ‘통일부-하나재단-보호단체(대안학교, 공동생활시설)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협의회 운영 활성화, 탈북무연고 청소년 보호자(단체)지정 심의 강화,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운영관리 지원, 그룹홈 거주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한 무연고 청소년 개별적 사례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 33).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모든 정책과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과제가 개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탈북민을 위한 정책이 있다할지라도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용할 수 없고, 여러 정책 중 어떤 지원을 받아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면 정책이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향과 정도로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 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중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의 내용들은 후기청소년기 연령의 탈북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후기청소년기 탈북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4-①의 맞춤형 취업·창업지원과제에는 하나원과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간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등 채용박람회 개최시 탈북민에 대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탈북민 대상 기술 및 벤처 중심의 신규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우선 구매제도 등을 통해 탈북민의 생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26). 또한 맞춤형 영농정착지원으로 귀농귀촌 탈북민 대상으로 영농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영농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귀농귀촌센터를 활용하여 영농희망 탈북민에게 농지를 임대해주는 사업, 취업에 앞서 직장체험이나 직무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기연수를 확대하는 사업, 정부나 공공부문, 지자체에 탈북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 26-27). 4-②의 탈북민 취업지원 협업체계 강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¹¹⁾에 북한이탈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간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의 취업전문상담사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탈북민의 구인구직, 맞춤형사례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지원 등을 돕는 내용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 26-27). 그 외 4-③ 자산형성 지원제도 안착은 탈북민의 근로소득 저축분에 대해 동일 금액을 매월 매칭 지원하는(최대 월 50만원, 최장 4년)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자 외 특수형태근로자나 자영업자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후기청소년기 탈북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상담사와의 1:1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Ⅰ 유형: 구직촉진수당, Ⅱ 유형: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임(관계부처합동, 2021: 27).

비전	북한이탈주민이 아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 생산적 기여자로서 탈북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 ■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착	
6대 분야 24개 정책 과제	1.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1-①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1-② 탈북민 단체 지원 및 소통 확대 1-③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2-① 지자체의 참여·역할 확대 2-② 탈북민 자원기관 간 소통·협업 강화 2-③ 비대면 정착지원 시스템 공고화 2-④ 탈북민 보호 체계 내실화 2-⑤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강화
	3.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3-① 수요 맞춤 개인별 서비스 확대 3-②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3-③ 심리상담 및 전문분야 교육 지원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4-①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4-② 탈북민 취업지원 협업체계 강화 4-③ 자산형성 지원제도 안착 4-④ 탈북민 채용유인제도 개선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5-① 입국 초기 적응지원 5-② 정규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적응 강화 5-③ 탈북대학생 교육지원 사업 개선 5-④ 대안교육시설 지원 내실화 5-⑤ 탈북학생 잠재역량 강화 지원 5-⑥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5-⑦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6.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6-① 참여형·맞춤형·실용적 하나원 교육 운영 6-② 하나센터 운영 내실화 및 인력 역량 강화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1:17). 제 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그림 IV-4. 제 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그러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아동기를 지나 막 성인기로 진입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점, 성인과는 달리 아직 자립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점, 결정적 시기인 후기청소년기 시기에 자립역량을 키울 경우 사회적응도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무연고 청소년들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진로선택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체계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5) 진로교육활성화방안(2023-202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서는 아쉽게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연령집단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진로교육활성화방안의 경우는 ‘전 생애적 진로교육 정책’과 ‘진로교육의 사각지대해소’(교육부, 2023b: 6)를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교육부의 진로교육활성화방안은 2010년 제1차 진로계획 5개년 계획(2010-2015)으로 시작하여, 제 2차 진로계획(2016-2020)으로 명명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진로교육활성화방안으로 정책명을 수정하고 2022년까지 추진되었다. 현재는 2023년부터 2027년간의 5개년 간의 진로교육활성화방안이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시작한 진로교육활성화방안의 비전은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으로, 총 4개의 대응전략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그림 IV-5]에서 제시된 3-3 항목의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이다.

이 중 취약계층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탈북, 학교부적응 등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멘토링, 진로캠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진로탄력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특별프로그램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창업체험센터와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업을 통하여 다문화학생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유형별(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등)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로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업, 즉, 진로취약계층지원과 다문화특별 프로그램은 학령기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연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새로이 기획된 진로교육활성화방안(2023-2027)은 네 번째 대응전략인 ‘진로교육 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의 내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과제들이 더 개발 및 발전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 간의 진로교육이 학령기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진로교육의 대상을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을 기획했기 때문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등의 사업에 후기청소년기의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전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대응전략	추진과제	
1. 학교진로교육 내실화	1.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1-1. 초등 진로교육 강화 1-2. 진로수업·상담 내실화 1-3.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2. 미래사회 대응역량 강화	2. 미래 역량을 기르는 진로교육 2-1.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강화 2-2.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2-3. 진로교육정보망 통합 및 고도화	
3.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지원역량 강화	3.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로교육 3-1. 진로체험지원센터 기능 강화 3-2. 지역연계 진로·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3.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4. 진로교육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	4.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 4-1. 국가진로교육센터 기능 강화 4-2. 대학 진로교육 내실화 4-3. 성인 진로개발역량강화 지원	

* 출처: 교육부 (2023b: 6). 진로교육 활성화방안(2023-2027)

그림 IV-5. 진로교육 활성화방안(2023-2027)의 비전 및 추진과제

(6)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2002년 제 1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제 1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립 및 추진되었고, 제 2차 기본계획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제 3차 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 4차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었다. 현재는 제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이 추진 중인데, [그림 I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 6대 핵심과제, 20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평생교육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중 이주배경청소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기획된 과제로는 ‘4.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중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의 평생 학습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과제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지원’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대학, 직업계고등학교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등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내용,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학생을 함께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K-MOOC 등 온라인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더빙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47). 둘째는 거주지 인근에서 평생학습에 접근하기 쉽도록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전담 평생학습 안내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47). 이는 내용적으로 볼 때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기존 과제들을 포함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의 내용으로,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보조, 탈북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및 지원,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수료자 전문교육과정 운영(하나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 및 자립지원 등 제공, 방문·원격교육 등(관계부처 합동, 2022: 48)은 평생교육진흥 계획이 아니어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계획의 내용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향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비전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정책목표	■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

6대 핵심 과제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 성인 역량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2.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기업 등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진흥
	3.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4.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정책강화 ■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집중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 성인문해교육 지속 확대 및 다양화 ■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의 평생학습 지원 강화
	5.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 디지털분야 온라인강의 조합형 학위제도 신설 ■ 학점은행제 학점원 확대 및 글로벌화
	6.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체제	■ 인공지능 기반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 ■ 평생학습 이력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
	7. 뒷받침 과제	■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공고화 ■ 데이터 기반 평생학습 정책추진 역량 강화 ■ 안정적 재원 마련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2:13). 제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그림 IV-6. 5차 평생교육진흥 활성화방안(2023-2027)의 비전 및 추진과제

이주배경자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 차원의 노력은 2022년 강득구 의원 대표로 발의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주배경자교육·포용교육의 실시 및 이주배경자교육센터지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등>의안번호 제2116584호)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안에서는 평생교육법 제 19조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주배경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이주배경자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이주배경자 교육센터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이주배경자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이하 “이주배경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이주배경자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이하 “포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주배경자교육 및 포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주배경자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자교육

2. 포용교육

3. 이주배경자교육과 포용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4. 이주배경자교육과 포용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5. 그 밖에 이주배경자교육과 포용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이주배경자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주배경자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이주배경자교육 프로그램 운영

3의4. 포용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21조제3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이주배경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4. 포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7)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 15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 1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1993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제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으로 청소년 성장기회제공과 안전한 보호환경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정책과제로는 5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를 수립하였는데(관계부처합동, 2023a: 19), 이 중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되는 과제는 ‘2-2. 청소년자립지원강화’와 ‘2-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2-2. 청소년자립지원강화에 포함된 과제로 ‘후기청소년(19세-24세)의 안정적 삶’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후기청소년 진로·직업교육 실시, 후기청소년의 창업시장 진입 지원, 후기청소년 취업지원, 후기청소년 건강 및 주거지원 등의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언급한 내용은 2-3의 과제 중 ‘다문화청소년 지원강화’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습 및 사회적응지원과 이주배경청소년 종합통계구축 및 지원이 있는데, 사실상 첫 번째 내용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습 및 사회적응지원은 후기청소년이 주 대상이 아니고 학령기 청소년연령을 중심으로 한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통계구축사업의 경우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다고 보다는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전반의 기초가 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점차 증가하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과제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국민 대상정책의 대상으로써 지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닌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을 과제로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그리고, 한국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	
목표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정책과제	대과제(5개)	중과제(14개)
	①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1-1.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 1-2.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 1-3.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1-4.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
	②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2-1.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2-2.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2-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③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3-1.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조성 3-2. 청소년 범죄예방 및 회복지원 3-3.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④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4-1.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 4-2. 청소년 권익 증진
	⑤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5-1.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 5-2.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3a:19).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그림 IV-7. 제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 및 추진과제

(8)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청년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시작된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제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대상연령이 19세에서 24세인 것과 달리, 연령대상이

19세에서 34세로 보다 광범위하다. 비전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이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참여 및 권리 등 총 5대 정책분야의 20개 중점과제, 270개 과제가 수립되었다.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방향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3대 원칙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5대 정책 방향 및 중점 과제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②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③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④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 ②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③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 ②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①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② 청년건강 증진 ③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참여·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②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③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④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3b:6). 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그림 IV-8. 제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 및 추진과제

이 중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과제는 복지·문화 영역의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중의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의 내용으로 다문화, 탈북청년에 대하여 한국어, 진로, 직업 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주민 밀집지역 중심 지역자원연계사업을 확산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역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 기존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특히 이주민 밀집 지역 중심의 지역자원연계사업은 특별히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 어렵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고, 별도의 신규사업이나 맞춤형 지원방안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청년대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주배경인을 고려했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개발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2)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관련 정책 현황

(1) 외국국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가능 체류자격

다음으로 이번 절에서는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상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외국국적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체류상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에서의 진로계획과 삶의 방향성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IV-3>에 제시된 비자의 종류는 후기청소년기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이 소지할 수 있는 체류자격들이다. 외국국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류자격은 장기체류와 영주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유학(D-2), 일반연수(D-4),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기타(G-1)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영주권(F-5)이다.

유학비자(D-2)의 경우는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으로, 19세 이상의 이주배경청소년 중 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입학할 함으로써 유학(D-2)비자를 받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대학에 당장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는 일반연수(D-4)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방문동거(F-1)의 비자를 소지할 수 있는데,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이나 가족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다. 거주(F-2)바지의 경우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체류가 안정적이고, 취업이 가능하나 일부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이 있다. 그러나 제한 직종은 주로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으로 사실상 큰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동반(F-3)비자의 경우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자격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가질 수 있는 비자로 취업은 불가능하다. 재외동포(F-4) 비자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로, 체류가 안정적이며 단순노무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 외 영주(F-5)비자는 체류에 제한이 없고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그 외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 경우 역시 특정 국가의 동포로 국가가 정한 46개 업종 이외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비자라고 볼 수 있다.

표 IV-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가능 체류자격 종류와 특성

계열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취업제한
D계열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사람	2년(연장 가능)	취업불가
	일반연수(D-4)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2년(연장 가능)	취업불가
F계열	방문동거(F-1)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년	취업불가
	거주(F-2)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5년	취업 일부 제한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동반기간	취업 불가
	재외동포(F-4)	재외동포법 제 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	3년	단순노무 불가
	영주(F-5)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영구	취업제한 없음
기타	방문취업(H-2)	18세 이상 7개 국적(중국,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	3년(연장 가능)	46개 업종 이외 취업불가
	기타(G-1)	산재, 질병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1년(연장가능)	취업 일부 제한

※ 출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비자 내비게이터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2) 외국국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체류의 주요 이슈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중 체류의 문제를 지닌 집단은 외국국적자이다. 북한배경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한국 국적소지자들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설해하는 데 있어 체류상태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외국국적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문제인데,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다수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 집단은 고등학교까지는 국적과 상관없이 체류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유학이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 국적자가 취업을 할 곳은 많지 않다. 따라서 대학공부에 뜻이 없어도 일단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비자를 받아서 체류를 연장하지만 대학교육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는 방법 이외에 합법적 체류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취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동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정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적응한 집단이 한국의 정주를 원하는 경우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청소년들,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이후 장기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류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외국국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체류자격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3)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을 국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배경청소년이 주 대상인 국가 기본계획으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공청회 자료), 제3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 등 네 가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일반 국민대상 기본계획으로 진로교육활성화방안,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등

네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정책현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국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정책현황 요약

대상	국가 기본계획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이주 배경 청소년	(1)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지원수요 등 조사 ■ 맞춤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참여 확대 ■ KOICA·KOTRA 등 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후기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연계 ■ 가족센터-학교 간 한국어교육 연계 ■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한국어·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통계구축 추진
	(2) 2023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없음
	(3)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와 취업완화 및 재외동포 적응을 위한 지원센터확대
	(4) 제3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	■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영농정착지원 ■ 탈북민 취업지원 협업체계 강화 ■ 탈북민 자산형성지원제도 ■ 탈북대학생 교육 및 멘토링사업 ■ 대학진학자 진학설명회 ■ 대학졸업자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사업 연계 ■ 제3국출생 자녀의 한국어교육 및 학력인정 ■ 무연고 청소년 보호강화
일반 국민	(5) 진로교육활성화방안	■ 대학생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내실화
	(6)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평생학습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전담 평생학습 안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7)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후기청소년 진로·직업교육, 창업시장 진입 후원 ■ 후기청소년 취업지원, 건강 및 주거지원 ■ 다문화청소년 학습 및 사회적응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종합통계구축 및 지원
	(8)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 다문화, 탈북청년 한국어, 진로, 직업교육, ■ 다문화, 탈북청년 이중언어 인재발굴, 상담 ■ 밀집지역 중심 지역지원연계사업 확산

위에 제시된 정책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주로 학령기 이전 또는 초·중·고등학교 연령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각종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대상의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의 연령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의 경우 ‘함께’, ‘성장’등의 키워드가 비전에 제시됨으로써 이주배경자들을 보호나 관리, 또는 지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공동체 일원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대상, 사회통합으로써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이고, 교육부의 2023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의 비전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이며,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이고, 제 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계획의 비전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구현’이다. 이러한 비전은 모두 이주배경주민들을 통합의 대상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것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이 주 대상인 정책과 일반국민이 주 대상인 정책 모두에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매우 협소한 분야에 국한되거나, 추진과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근거한 영역별 지원정책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아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후기청소년기 연령에 달하는 집단의 규모가 증가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일반국민 대상 기본계획에 포함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 대상 정책과 제들의 경우 대부분은 기존의 사업들을 포함한 내용으로, 각 기본계획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제로 개발된 내용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까지는 있으나 실제로 구체화된 정책과제까지는 도출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구색 맞추기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각 기본계획에서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다문화청소년’ 이라고 정의할 때 어느 범주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한국국적을 소지한 청소년인지, 외국국적자여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은 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대부분은 한국국적을 소지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외국국적자이면서 한국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고 한국에 장기정착의지가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각종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는 향후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범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정책이 방향성과 세부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 때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와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 중 외국국적자들의 체류안정성 문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은 동포들의 입국과 체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체류자격은 결국 모두 F계열이다. 즉, 동포와 동포의 가족들을 장기체류 자격 부여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 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다소 배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 조망으로 볼 때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를 하고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문화에 적응을 한 이주배경청소년들, 특히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경우는 이후 장기체류와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된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1) 프랑스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체류정책¹²⁾

(1) 프랑스 이민의 역사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이주 수용국이며 1920년대 말에는 이주민 비율이 미국을 제쳤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오래되었다(Noiriél, 2010). 프랑스 이주 역사에는 세 번의 중요한 이주 물결이 있었는데, 세 번의 이주 물결은 모두 프랑스 경제가 급격하게 팽창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첫 번째는 180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전까지로 국가 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이때의 이주민은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내 인접국 출신이었으며 정착 지역도 두 국가의 국경지대에 밀집되었다(예를 들어 벨기에 출신 이주민은 프랑스 북부, 스페인과 이탈리아 출신 이주민은 각각 프랑스 남서, 남동쪽에 주로 정착하였다). 1911년 기준 이탈리아인의 경우 프랑스 내 전체 이주민 인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36%), 이는 이미 프랑스 전체 인구의 1%에 달했다(Bernardot, 2008b). 또한 당시 파리(Paris) 인구의 7%가 이주민이었고(약 20만 명)(Géopolis, 1993.11.20.), 1차 세계대전 직전 마르세유(Marseille)의 전체 인구 55만 명 중 약 10만 명이 이주민으로, 국경지대뿐 아니라 대도시까지 이주민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었다(Ponty, 1988).

두 번째 이주 물결은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되는데 이주민 출신국이 인접국을 넘어 폴란드, 러시아, 아르메니아 등으로 확장된다. 또한 이때는 프랑스 식민국에서 이주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북아프리카 3국(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뿐 아니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에서까지 많은 이주민이 유입된다. 당시 프랑스 국방부는 전쟁에 필요한 군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했다(Bernardot, 2008b). 그러나 1930년대 초반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외국인 혐오가 짙어지는데 Noiriél(2010)은 이를 프랑스 사회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우파 정당(Front national)도 70년대 초반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프랑스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였지만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함께 극단주의가 기승을 부리며 국가 공식 문서에 난민을 ‘불청객

12) 프랑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은 김다솔(파리 8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이 집필함.

(indésirable)’으로 규정하고 수용소 구금이 논의되는 등 강력한 난민 통제가 이루어졌다 (Blanchard, 2013.05.29).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극강의 경제 부흥기를 전 세계적으로 맞이하면서 프랑스 또한 영광의 30년(Les Trente Glorieuses)이라 불리는 시기가 찾아온다. 이때 국가 재건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나서서 이주를 장려하며 이주민이 대거로 유입되는 세 번째 시기를 맞게 되는데, 1968년에 프랑스 내 이주민 비율이 이미 전체 인구의 6.5%¹³⁾에 이르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다시 한 번 경제가 휘청거리자 1976년부터 당시 프랑스 정부는 이주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Laurens, 2008). 자발적으로 프랑스 영토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만 프랑(2022년 환산 기준 약 6,993유로)¹⁴⁾을 지급하여 국내 이주민 인구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 재결합제도(Regroupement familial)를 시행하여 이주민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수 함으로써 특히 프랑스와 식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아프리카 3개국과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온 이주민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이주민 인구의 상승곡선이 주춤하게 되었다(1975년과 1982년의 이주민인구 비율이 7.5%로 거의 동일).¹⁵⁾ 이후 80년대 초에 들어선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정부는 기존의 정책들을 걷어내며 가족 재결합제도를 확장하고 13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체류증을 부여하는 등 이주민 친화 정책을 펼치며 다시금 이주민 인구가 상승하였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과 정권에 따라 이주민 문제는 사회 쟁점화 되었다. 이처럼 한 세기 반이 넘는 이주 역사에서 이주민을 향한 사회의 시각, 그로 인한 정책의 변화는 프랑스라는 이주 수용국의 필요에 따라 바뀌었으며 현재는 1980년대부터 직면하고 있는 높은 실업률과 기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으로 프랑스는 한때 이주민의 나라였던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 유럽 국가 중 가장 취약한 이주 수용국 중 하나가 되고 있다(Noiriel, 2010).

13) INSEE. (2023.05.07). Population immigrée et étrangère en France. https://www.insee.fr/fr/outil-inter-actif/5367857/details/20_DEM/25_ETR/25B_Figure2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14) INSEE. (2022.04.25.). Convertisseur franc-euro, <https://www.insee.fr/fr/information/2417794#:~:text=En%20plus%20de%20l'inflation,quelle%20que%20soit%20la%20date>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15) INSEE. (2023.05.07). Population immigrée et étrangère en France. https://www.insee.fr/fr/outil-inter-actif/5367857/details/20_DEM/25_ETR/25B_Figure2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2) 프랑스 이주민 정의 및 현황

① 정의 및 현황

프랑스 사회통합 상임 위원회(HIC : HautConseil à l'Intégration)는 이주민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기준은 현재 국적과 상관없이 '출생 당시 국가와 국적'이 되고, 귀화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획득해도 여전히 이주민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외국인'은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구'를 지칭한다. 즉, 외국인의 정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의 인구는 외국인이지만 이주민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 자녀(Descendants d'immigrés)라는 카테고리의 인구 또한 프랑스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부모 중 1명 이상이 이주민이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인구를 지칭한다. 한국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구를 '외국인주민'으로 묶어내며 이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 3가지 분류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2.10.31.). 이를 프랑스의 기준과 비교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이주민과 외국인 모두에 포함되는 인구이며 한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이 아닌 이주민에만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국인 주민 자녀는 프랑스의 이주민 자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외국인 주민 자녀를 외국인 부모의 수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 자녀 (부모 중 한명만 이주민), 외국인가정자녀(부모 두 명이 모두 이주민)로 분류하지만 프랑스는 프랑스 내 출생이며 부모 1명 이상이 이주민인 인구를 모두 이주민 자녀에 포함한다. 이러한 이주 1세대 자녀를 나누는 기준이 한국과 프랑스가 상이하며 이주민 구분 기준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다.

2023년 프랑스 통계청 자료¹⁶⁾ 기준 이주민 인구는 약 7백만 명으로 총 인구 중 10.3%이며 외국인 인구는 5백 2십만 명으로 총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 2세대인 이주민 자녀 인구는 약 11%로 7백 3십만 명에 달하며 그 수가 이주 1세대보다 많다. 또한 해당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부모 중 1명만 이주민이다. 이주 3세대는 약 10%로 조부모 4명 중 2명 이상이 이주민인 경우가 10명 중 9명에 해당한다. 자신이 직접 이주를 경험한

16) INSEE. (2023). Étrangers - Immigrés, https://www.insee.fr/fr/outil-interactif/5367857/tableau/20_DEM/25_ETR#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759#tableau-figure1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이주민(1세대)과 프랑스에서 출생한 이주민 2, 3세대 인구만으로 이미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31%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48.2%로 가장 많고, 유럽 32.3%, 아시아 13.5%,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가 6%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중 북아프리카 3국(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이 29.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뿐만 아니라 식민지 역사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약 13.5%를 차지함으로써 이주민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아프리카에서 왔고 또 프랑스어권이 약 44%이다(〈표 IV-5〉 참고).¹⁸⁾

표 IV-5. 프랑스 내 이주민 출신국별 분류

구분		분포율	
아프리카	알제리	12.5%	48.3%
	모로코	11.9%	
	튀니지	4.7%	
	코모로	2.1%	
	코트디부아르	1.9%	
	세네갈	1.9%	
	카메룬	1.4%	
	말리	1.4%	
	콩고 공화국	1.3%	
	콩고 민주 공화국	1.3%	
	마다가스카르	1.2%	
	기네	1.0%	
	기타	3.4%	
유럽		32.3%	
아시아		13.5%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6.0%	

* 출처: INSEE. (2023.05.07). Pays de naissance des immigrés vivants en France en 2022, https://www.insee.fr/fr/outil-interactif/5367857/details/20_DEM/25_ETR/25C_Figure3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 주: 2022년 프랑스 거주 이주민의 출생국을 기준으로 작성된 표임.

17) INSEE. (2023.03.30). Immigrés et descendants d’immigrés,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793314?sommaire=6793391>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18) INSEE. (2023.05.07.). Pays de naissance des immigrés vivants en France en 2022, https://www.insee.fr/fr/outil-interactif/5367857/details/20_DEM/25_ETR/25C_Figure3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②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15-24/34세) 현황

2023년에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라 프랑스 내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5세부터 34세 중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구를 보면 외국에서 태어나 후기 청소년기 진입 (15세) 이후 프랑스로 이주한 인구가 해당 연령 전체의 6.8%, 진입 이전에 유입된 인구가 3.7%, 프랑스 출생이며 부모 중 1명이 이주민인 인구는 9.9%, 부모 2명 모두 이주민인 인구는 7.2%이다(〈표 IV-6〉 참고).¹⁹⁾

표 IV-6. 프랑스 내 이주배경청소년 중 후기 청소년 (15-34세) 연령 해당 비율

구분	프랑스 출생		외국 출생	
	부모 모두 이주민	부모 1명 이주민	15세 이전 입국 (전기 청소년기)	15세 이후 입국 (후기 청소년기)
전체	7.2%	9.9%	3.7%	6.8%

* 출처: 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Indicators of ImmigrantIntegration 2023: Settling In. OECD. <https://doi.org/10.1787/1d5020a6-en>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프랑스의 유일한 교육 정책인 프랑스어 학급의 대상은 의무 교육 연령(3세에서 16세로 대부분 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현 정책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집단은 외국 출생인, 즉 자기 자신이 이주를 경험한 16세 이하 이주 1세대 청소년이다. 2018년 프랑스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주민 인구(1세대) 6백 5십만 명 중 15세 미만의 인구는 약 34만 명(5.2%), 15세에서 24세 인구는 약 56만 명(8.6%)으로 이들을 합하면 총 13.9%였다(INSEE, 2018).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 대비 1.3%에 해당되고, 동일 연령 전체 인구 대비 15세 미만은 2.8%, 15세부터 24세는 7.1%였다(〈표 IV-7〉²⁰⁾, 〈표 IV-8〉²¹⁾, 〈표 IV-9〉 참고). 15세 미만 이주배경청소년 중 알제리 출신이 약 2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륙으로는 북아프리카 3국 (모로코,

19) 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Indicators of ImmigrantIntegration 2023: Settling In. OECD. <https://doi.org/10.1787/1d5020a6-en>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20) INSEE. (2021.06.30.). Étrangers – Immigrés en 2018,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397751?sommaire=5397790&geo=FE-1>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21) DRESS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2018). Structure par âge de la population –Effectifs par classe d'âge au 1er janvier 2018 – Ensemble,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sites/default/files/panorama/panorama2018/tableau/structuragep/structuragep.asp-prov=AC-depar=AE.htm#top>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알제리, 튀니지)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가 약 1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15세부터 24세 청소년은 모로코, 알제리 출신이 각각 5만 1천 명, 5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통틀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청소년이 약 2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7. 이주배경청소년(1세대) 연령별/출신국별 인구

	15세 미만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합계
포르투갈	23,125	29,118	263,631	294,332	610,206
이탈리아	25,125	16,221	60,780	183,990	286,115
스페인	25,532	11,226	55,825	152,519	245,102
이외 EU국가	43,718	51,304	304,808	210,611	610,441
이외 유럽 국가	46,214	52,751	220,649	151,759	471,373
알제리	25,788	50,266	470,561	292,088	838,703
모로코	14,447	51,437	462,583	256,352	784,818
튀니지	7,908	14,952	164,661	103,316	290,837
이외 아프리카 국가	54,436	140,641	649,354	185,189	1,029,620
터키	5,163	15,886	166,102	58,082	245,233
기타	66,829	127,055	632,944	249,487	1,076,314
합계	338,285 (A)	560,857 (B)	3,451,897	2,137,724	6,488,762 (C)

* 출처: INSEE. (2021.06.30.). Étrangers - Immigrés en 2018,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397751?som-maire=5397790&geo=FE-1>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표 IV-8. 연령별 프랑스 전체 인구

연령	수
0-14세	12,226,451 (D)
15-24세	7,942,893 (E)
25-54세	25,489,832
55-85세 이상	21,527,462
합계	67,186,638 (F)

*출처: DRESS. (2018). Structure par âge de la population -Effectifs par classe d'âge au 1er janvier 2018 - Ensemble,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sites/default/files/panorama/panorama2018/tableau/structuragep/structuragep.asp-prov=AC-depar=AE.htm#top> 2023년 9월 14일 인출

*주 : 인구 연령 구조 - 2018년 1월 1일 기준 연령대별 인구 수 - 전체)

표 IV-9. 이주배경청소년 (1세대) 비율

구분	비율
전체 이주민 인구 대비 15세 미만 인구 (A/C)	5.2%
전체 이주민 인구 대비 15-24세 인구 (B/C)	8.6%
동일 연령 전체 인구 대비 15세 미만 인구 (A/D)	2.8%
동일 연령 전체 인구 대비 15-24세 인구 (B/E)	7.1%
전체 프랑스 인구 대비 0-24세 인구 (A+B/F)	1.3%

* 주: 표 IV-7, 표 IV-8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3) 프랑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① 프랑스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100년 : 유일한 정책 ‘프랑스어 학급’

①-1. 프랑스어 학급(UPE2A)의 역사

현재 프랑스에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책은 없다. 외국 출생(외국인)이며 프랑스에 새롭게 도착한(이주민) 청소년들을 위해 공교육 내에 설치된 프랑스어 학급(UPE2A)(Les unités pédagogiques pour élèves allophones arrivants)이 유일한 교육 조치이다. 이 학급의 시작은 1800년대 후반 이주민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0년대에 성별과 국적에 상관없이 프랑스 영토 내에 거주하는 6세에서 14세 사이의 모든 아동, 청소년이 동일한 교육권을 가진다는 법령에 따라 공립학교들이 세워졌으며 또한 초등교육이 의무화되어 이주배경청소년들도 프랑스 선주민들과 같이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 조치는 192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방과 후에 배정된 프랑스어 수업이었으며 외국인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프랑스어뿐 아니라 출신국의 언어, 지리 및 역사 수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1927년에 의무 교육 정책으로 이미 학교 내 초등학교 연령 이주배경청소년이 26만 명(전체 초등학생의 8.4%)에 달했지만(Schor, 1993), 정규 수업시간에는 이주 배경이 고려되지 않고 선주민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시작된 해당 교육 조치는 1973년에 도입되어 정규 수업시간에 이주배경청소년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 교육(ELCO)(Enseignement Langue et Culture d'origine)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LCO의 목표는 공교육 내 다양성을 장려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출신 국가와 언어적, 문화적 연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성공적인 학교 생활과 학습을

위해서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의 배경에 대한 더 나은 지식과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균형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Berque, 1985).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의 본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면 올바른 자아 정체성 형성에 문제가 생겨 이주국에서의 학교 생활 및 학업에서 실패를 겪을 수 있고 또한 제2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탄탄한 모국어 실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들을 배경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다(De Smet & Rasson, 1993). 더불어 ELCO의 개설은 이주 수용국 문화만을 고집했던 공립 학교 내에서 문화적 이질성과 다양성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사건으로 프랑스 교육 역사에서 혁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Kerzil, 2002). 그러나 ELCO의 탄생은 교육적인 필요성과 더불어 이주 역사 속에서의 경제적인 필요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프랑스의 경제 호황기가 끝을 맺고 다시금 위기가 찾아왔던 시기에 프랑스와 주요 이주민 배출국 간 외교적 합의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교사 채용과 급여 지급을 이주민 본국 정부에서 담당하고 프랑스는 공교육 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이주민 귀국을 장려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 재통합 과정을 거치기 위해 필요한 학습 과정을 진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프랑스 공립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프랑스어 수업이 시작되었을까? 1970년대부터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적, 문화적, 심지어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Kerzil,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프랑스어 학급이 정규 수업 시간에 편성되었다. 또한 이 교육 정책은 가족 재결합정책이 1976년 제도화되기 직전에 실행되었으며(Armagnague-Roucher & Rigoni, 2016), 프랑스어 학급은 해당 제도를 통해 프랑스에 막 도착한 청소년들이 최대한 빨리 프랑스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학급은 대상 학생 연령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연령 이주배경청소년들은 Clin(Classes d'initiation), 중학교 연령 청소년들은 Cla(Classes d'adaptation), 이전에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Cla-NSA(nonscolarisés antérieurement)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였다. 2012년에 해당 법안이 개정되며 모든 학급이 UPE2A(Unités Pédagogiques pour Élèves Allophones Arrivants)로 용어가 통일되었으며, 이때부터 학생들도 사용 언어를 기준으로 해 '타 언어 학생(élève allopho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게 되었다.22)

①-2. 프랑스어 학급(UPE2A)의 현황

현재 프랑스에 도착한 3세에서 16세(국적, 행정 조건 불문 프랑스의 의무 교육 연령)의 타 언어 학생들은 일반 학급에 투입되기 전에 제2 언어로서의 프랑스어(FLS)(français langue seconde) 교육을 위한 프랑스어 학급에 배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프랑스어 교육 일정 기간(최대 1년, 유급 가능) 동안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2021-2022학년도에 77,435명의 타 언어 학생이 공교육 체제로 편입되었으며 이 중 약 90%의 학생이 제2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받았다. 이는 프랑스 전체 학생 1,000명당 7.9명의 비율이며 학년별(프랑스의 학제는 5-4-3)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35,374명, 중학교에서 31,826명, 고등학교에서 10,235명이었다(Brun, 2023.06.). 39,000명의 학생이 프랑스어 학급에서 수학했던 2003-2004학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초등학생 연령 청소년의 경우 먼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거치면 해당 지역 학교 중 제2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의 교장에 의해 입학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학년 배정을 위한 이전 학습 경험 및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은 주로 제 2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혹은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다. 시험 과목은 주로 프랑스어와 수학, 언어 능력 등이며 프랑스어 이외의 과목은 학생의 모국어로 진행이 가능하다. 중·고등학생 연령 청소년의 경우 해당 지역의 타 언어 학생 취학 센터(CASNAV)(Centres acadé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élèves allophones nouvellement arrivés et des enfants issus de familles itinérantes et de voyageurs) 혹은 정보/진학 센터(CIO)(Centre d'Information et d'Orientation)에서 초등학생의 경우와 같이 이전 학습 경험 및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은 프랑스어 학급 혹은 일반 학급에 배정된다. 2021-2022학년도에 타 언어 학생 전체 중 89%가 프랑스어 학급이나 관련 수업의 혜택을 받았다(Brun, 2023.06.).

22)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12). Document d'aide à l'évaluation des élèves allophones nouvellement arrivés, https://cache.media.eduscol.education.fr/file/College/12/3/Document_evaluation_121009_c_228902_356123.pdf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23) Sénat. (2023). Scolariser les allophones, une politique encore fragile et insuffisamment évaluée, https://www.senat.fr/rap/r22-427/r22-427_mono.html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프랑스어 학급에 배정될 경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생이 프랑스어로 학교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일반 학급으로 옮겨가거나 하이브리드 형식(프랑스어 학급과 일반 학급을 병행) 또한 가능하다. 2021-2022학년도에 평가 시험을 보고 학급에 배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초등학교의 경우 시험을 본 당일 배정되는 경우가 72.3%이며, 이를 포함하여 90.3%가 최대 1개월 이내에 학급을 배정받아 수업을 듣는다. 중학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배정되는 경우가 68.9%, 고등학교는 64.6%였다(Brun, 2023).

초등학교에 설치된 프랑스어 학급에서는 최소 주 8시간의 프랑스어 교육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최소 주 12시간이 시행되지만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프랑스어 학급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전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배정되는 학급(UPE2A)과 학교 교육 경험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학생들이 배정되는 학급(UPE2A-NSA)(UPE2A-Non Scolarisés Antérieurement)이 있다.

프랑스 교육부가 타 언어 학생과 관련하여 제시한 교육 목표는 일반학급으로의 ‘통합(inclusion)’이기 때문에 이들은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 처음 발을 들였지만 부분적으로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프랑스어가 비교적 덜 필수적인 과목(외국어, 수학 등)을 학생 연령 대비 최대 2년 이상 차이나지 않는 학년에서 수학한다. 따라서 같은 프랑스어 특별 학급에 배정되더라도 모두 같은 시간표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으며, 학생의 이전 교육 경험과 프랑스어 능력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개인별 시간표가 제공된다. 이전 교육경험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학생들 중 중학교 연령 학생들의 경우 기본적인 문자교육(Alphabétisation)부터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해당하는 언어 교육을 받는다. 이들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과목(체육, 음악, 미술 등)은 일반 학급에 포함되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중학교 마지막 학년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학급은 고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어 프랑스어 학급 이후 이어질 고등학교 진로 계획을 함께 준비한다. 프랑스 전체에서 프랑스어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7,164개, 중학교 2,814개, 고등학교 1,256개로 총 11,271개이며(Brun, 2023), 수도인 파리 내에 초등학교 57개, 중학교 37개, 고등학교 29개에 학급이 설치되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프랑스어 집중 수업을 받는다.²⁴⁾

24) Académie de Paris. (2023).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https://www.w.ac-paris.fr/scolarisation-des-nouveaux-arrivants-et-des-enfants-du-voyage-122833>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② 프랑스어 학급 이후 선주민 청소년과 동일한 진로 선택 환경

프랑스의 의무 교육 연령(3세에서 16세)에 해당하며 후기 청소년기(15세에서 24/34세)에 속하는 중 프랑스어학급에 배정될 수 있는 타 언어 청소년은 15세로 이들은 프랑스에 도착하면 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중학교 3학년 프랑스어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평가 시험 및 면접에서 충분한 이전 학습 경험과 프랑스어 능력이 인정되면 일반 학급에 배정될 수 있다). 2021-2022학년도에 해당 학급을 수료한 타 언어 학생의 47%가 직업 과정에 진학했는데, 이는 프랑스 전체 평균인 28%와 비교했을 때 약 1.7배 높은 수치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직업 현장 투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인 CAP(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해당 과정은 직업고등학교에서 2년 만에 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CAP는 기본적으로 약 200개 전공이 있는 국가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중졸 이상 16세 이상 30세 미만이라면 누구든지 직업 훈련 센터(CFA)(Centres de formation d'apprentis)에서도 취득할 수 있다.

CAP를 직업고등학교에서 이수할 경우 교과 과정은 실무에서 필요한 기술 및 전문 교육 약 50%, 일반 교과 과목(프랑스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등) 약 50%로 이루어져 있으며 12주에서 14주 동안 의무적으로 직업 현장에 투입되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²⁵⁾ 반면에 직업 훈련 센터(CFA)과정을 이수할 경우 일반 교과(프랑스어, 수학 등) 수업을 듣지만 이보다 현장 실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신분도 학생이 아닌 연수생(Apprenti)이며 고등학교 과정과 달리 급여를 받고(최저시급) 유급휴가, 출산휴가, 연금 및 실업 급여 등 사회 보장 제도도 일반 노동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다.²⁶⁾

②-1. 15-16세 타언어 청소년 : 이미 정해져 버린 진로 선택, CAP

2019-2020학년도에 르망(Le mans)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프랑스어 학급 학생들의 54%가 CAP 과정을 선택했으며(직업 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모두 74%)(〈표 IV-10〉참고)²⁷⁾, 또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교육청 2021년 자료²⁸⁾에 따르면, 프랑스어 학급

25)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06). Le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CAP), <https://eduscol.education.fr/1923/le-certificat-d-aptitude-professionnelle-cap#summary-it-em-11>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26)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2.09). Se former par l'apprentissage, [https://www.education.gouv.fr/se-former-par-l-apprentissage-2216#:~:text=Dur%C3%A9e%20de%20formation%20en%20CFA&text=CAP%20%3A%20800%20heures%20\(2%20ans,ou%20400%20heures%20\(1%20an\)](https://www.education.gouv.fr/se-former-par-l-apprentissage-2216#:~:text=Dur%C3%A9e%20de%20formation%20en%20CFA&text=CAP%20%3A%20800%20heures%20(2%20ans,ou%20400%20heures%20(1%20an))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이후 직업 과정에 진학한 타 언어 학생이 43.1%였고, 그 중 CAP는 22.8%였다(해당 지역 전체 평균 4%).

그렇다면 왜 CAP로 진학하는 후기 청소년기 타 언어 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을까? 중학교 마지막 학년 프랑스어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15-16세 타 언어 청소년은 이후 곧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15세 이전에 도착한 학생들보다 진로 선택이 더 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2 언어 학습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은 2-3년 정도의 교육으로 습득할 수 있지만, 학습 목적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교육해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Cummins, 1980), 1년에서 최대 2년간 프랑스어 학급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일반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본국에서 교육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경우에는 단순히 언어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프랑스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 그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Régnier, 2016.11.23). 이러한 이유로 많은 타 언어 청소년들이 언어와 학습 능력을 비교적 많이 필요하지 않는 CAP 과정으로 진학하는 실정이지만, CAP로 진학하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 학습 수준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예방 센터(MLDS)(La mission de 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로 가게 된다. 이 또한 이주배경청소년만을 위한 센터는 아니며 16세 이상 청소년 중, 학교 교육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표 IV-10. 2019-2020학년도 르망(Le mans) 지역 고등학교 프랑스어 학급 학생 진로 현황

구분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직업고등학교 진학	72% (CAP 43%)	74% (CAP 56%)	85% (CAP 60%)	74% (CAP 54%)
일반고등학교 진학	28%	26%	15%	16%

* 출처: Graveleau E. (2020). LYCÉE GÉNÉRAL OU PROFESSIONNEL: UNE ORIENTATION SUBIE PAR LES ALLOPHONES?, <https://upe2a.hypotheses.org/1429>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27) Graveleau E. (2020). LYCÉE GÉNÉRAL OU PROFESSIONNEL: UNE ORIENTATION SUBIE PAR LES ALLOPHONES?, <https://upe2a.hypotheses.org/1429>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28) Académie de Strasbourg. (2021). Parcours des élèves entrants dans undispositif allophone dans l'académie Strasbourg, <https://www.ac-strasbourg.fr/media/18157/download>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①-2. 16세 이상 타 언어 청소년을 위한 교육 조치의 부재

2023년 프랑스 상원 자료²⁹⁾에 따르면, 2018-2019년도에 프랑스어 학습의 대상이 되는 타 언어 학생 중 16세 이상은 11,340명으로 전체의 16.7%이며 그 중 특히 16-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대다수가 무연고 청소년이다. 2022년 프랑스 교육부 통계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간 프랑스에 입국한 무연고 청소년 중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5세 이상이 연도별로 각각 88.7%, 90.1%, 94.3%, 87%, 90.1%였으며 의무 교육 연령에서 제외되는 16세 이후 청소년 또한 56%, 59.2%, 79.9%, 58.8%, 59.2%로 그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며 특히 2020년에는 80%를 육박했다(표 IV-11) 참고).³⁰⁾

표 IV-11. 무연고 청소년 연령별 현황

나이	2022	2021	2020	2019	2018
10세 미만	0.12%	0.31%	0.12%	0.12%	0.16%
10-12세	0.70%	0.82%	0.52%	0.70%	0.56%
13-14세	9.11%	11.85%	5.01%	9.11%	10.62%
15세	30.89%	28.24%	14.40%	30.89%	32.67%
16세	45.63%	40.92%	36.58%	45.63%	44.04%
17세 이상	13.56%	17.86%	43.34%	13.56%	11.94%
총계	100%	100%	100%	100%	100%

* 출처: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09.08). Les rapports d'activité de la mission mineurs non accompagnés, <https://www.justice.gouv.fr/rapports-dactivite-mission-mineurs-non-accompagnes>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무연고 청소년(MNA)(mineurs nonaccompagnés)이란 부모 등 어떤 보호자도 없이 프랑스에 온 이주배경청소년이며 민법(Code civil) 제 375항에 의해, 여권이나 비자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자와

29) Sénat. (2023). LA SCOLARISATION DES ÉLÈVES ALLOPHONES, <https://www.senat.fr/rap/r22-427/r22-427-annexe.pdf>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30)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3.09.08). Les rapports d'activité de la mission mineurs non accompagnés, <https://www.justice.gouv.fr/rapports-dactivite-mission-mineurs-non-accompagnes>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함께 프랑스에 온 타 언어 청소년보다 학교 교육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프랑스 영토에 들어오자마자 미성년이면서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Mendonça & Rigoni, 2020), 이 기간 동안 공교육 진입이 막혀 교육 공백이 생긴다. 무연고 청소년은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ASE)(Aide sociale à l'enfance)에서 관리하는데 이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만을 위한 기관이 아닌 어려움에 처한 21세 미만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³¹⁾

프랑스에 입국하는 무연고 청소년의 인구 특징으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남성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95.5%, 2020년 94.2%, 2021년 94.8%, 2022년에는 93.2%가 남성이었다. 출신국으로는 2022년 코트디부아르 (17.61%), 기네 (17.3%), 튀니지 (10.68%) 3국이 45.6%를 차지하였으며 말리 (9.36%), 아프가니스탄 (8.63%), 알제리 (5.95%)가 그 뒤를 이었다. 출신국의 경우 이주민 전체 인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IV-12〉 참고).³²⁾

표 IV-12. 무연고 청소년 출신국 현황

국가명	비율	국가명	비율
코트디부아르	17.61%	방글라데시	3.36%
기네	17.30%	파키스탄	2.82%
튀니지	10.68%	모로코	2.77%
말리	9.36%	이집트	2.62%
아프가니스탄	8.63%	알바니아	2.29%
알제리	5.95%	-	-

* 출처: DRESS. (2020). Les dispositifs de l'aide sociale 24 à l'enfance,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sites/default/files/2021-01/Fiche%2024%20-%20Les%20dispositifs%20de%20l%E2%80%99aide%20sociale%20%C3%A0%20l%E2%80%99enfance.pdf>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31) DRESS. (2020). Les dispositifs de l'aide sociale 24 à l'enfance,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sites/default/files/2021-01/Fiche%2024%20-%20Les%20dispositifs%20de%20l%E2%80%99aide%20sociale%20%C3%A0%20l%E2%80%99enfance.pdf>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32) ibid

2019년 말 기준 약 3만 명의 무연고 청소년 중 국가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의 비율은 1/3이 조금 넘었다. 한 사례로 2019년 1월 기준 크레테유 교육청(Académie de Créteil)이 담당하는 수도권 3개 지역에서 16세 이상 타 언어 청소년 최소 100명이 시스템과 시설 부족으로 학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프랑스 상원은 2023 보고서³³⁾에서 이러한 교육 공백의 원인을 국가 교육 정책의 부실함으로 꼽았다. 특히 2012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법안³⁴⁾에서 프랑스어 학급이 16세 이상의 타 언어 청소년들을 포함할 수 없고, 또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학업 중단 예방 센터(MLDS)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 센터에서 16세 이상 타 언어 청소년들이 프랑스어 학습과 함께 기초 학력을 다질 수 있지만 공식적인 학교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학위 취득은 가능하지 않아 이후 직업 훈련 센터(CFA) 등으로 거취를 옮겨 CAP 등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한다. 그러나 16세 이상 타 언어 청소년 중 학업 중단 예방 센터에 속해 학업을 진행하는 비율 또한 2018-2019학년도 기준 20%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노르망디(Normandie) 지역 2020-2021학년도에 16세 이상 타 언어 청소년 880명 중 73명은 대기상태, 157명은 어떤 프로그램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이 비율은 26%에 달한다. 따라서 프랑스 교육부는 적절한 조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제2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15시간)과 진로 교육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어 학급의 고등학교 내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 파리의 경우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1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무연고 청소년 510명 중 45.95%가 17세였으며 이들은 직업 훈련 센터(CFA) 등 직업 교육 기관에 바로 들어가 CAP 등의 직업 과정을 준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파리 교육청(Académie de Paris)은 16세 이상이며 이전 학습 경험이 없는 타 언어 청소년들을 위해 11개의 프랑스어 학급을 개설하였으며, 2020-2021학년도에는 4개의 임시 프랑스어 학급이 직업 고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해당 프로필의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결국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타 언어 청소년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 또한 언어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3) Sénat. (2023). LA SCOLARISATION DES ÉLÈVES ALLOPHONES, <https://www.senat.fr/rap/r22-427/r22-427-annexe.pdf>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34)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12.02.10.). Circulaire n° 2012-141 du 2-10-2012, <https://www.education.gouv.fr/bo/12/Hebdo37/MENE1234231C.htm>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③ 18-21세 후기 청소년을 위한 제도 : 젊은 성년자 계약

무연고 청소년이 18세 이후, 즉 법적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아동 보호 정책(Protection de l'enfance)³⁵⁾에 의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ASE)이 제공하는 사회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년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자립하기에 여전히 가족, 사회, 교육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되는 후기 청소년들이 미성년이 받는 사회 복지 혜택을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젊은 성년자 계약(Contrat jeune majeur)³⁶⁾이다. 이 제도는 1974년 프랑스 정부가 법적 성년의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변경하며 1975년에 생겨났다. 젊은 성년자 계약 제도는 물질적(식비, 운전면허 취득 비용 등), 교육적(방문 교육 지도 등),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홈스테이, 공동 숙박 시설, 호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계약'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일정 수를 선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들이 생겨난다. 2018년 프랑스 정부 자료³⁷⁾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젊은 성년자 계약을 통해 아동 보호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청소년은 총 20,900명으로 18-21세 전체 인구 중 9%였다. 또 2007년에 해당 계약을 맺었던 청소년의 수는 21,500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20,900명으로 약 3%가 감소했다. 같은 문서에서 젊은 성년자 계약 법령이 "가족 내, 사회적, 교육적 어려움(difficultés familiales, sociales et éducatives)"³⁸⁾에 처해있는 청소년이라는 명시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 결국 지역별로 정책이 매우 다르게 실현된다고 지적되었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는 미성년일 때부터 이미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ASE)에서 관리 받았던 청소년들에 한해서 해당 계약을 적용시키는 등 그 양상이 지역별로 달랐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프랑스 9개 지역(Nord, Pas-de-Calais, Seine-et-Marne, Paris, Seine-Saint-Denis, Hauts

35)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Prévention. (n.d.). Protection de l'enfance, <https://sante.gouv.fr/archives/archives-affaires-sociales/familles-enfance/protection-de-l-enfance-10740/#::~text=La%20protection%20de%20l'enfance%20vise%20%C3%A0%20garantir%20la%20prise,sa%20moralit%C3%A9%20et%20son%20%C3%A9ducation>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36) Légifrance. (2022.02.07.).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rticle L221-1,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5136891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37) ONPE. (2017). Douzième RAPPORT DE L'ONPEAU GOUVERNEMENT ET AU PARLEMENT Année 2017, https://www.onpe.gouv.fr/system/files/publication/ragp_2017_web_complet.pdf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38) Légifrance. (2022.02.07.).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rticle L221-1,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5136891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de-Seine et Essonne) 17-20세 청소년 1,6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³⁹⁾에 따르면, 젊은 성년자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데 68%는 교육과정 지속 혹은 재시작, 22%는 구직 활동, 15%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계약을 위해서 청소년이 처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뿐 아니라 추가적인 의무사항까지 고려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계약을 맺을 시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그 기간을 한정하여 단기간으로만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17세에 아동 보호 정책 하에 관리를 받고 있던 청소년 중 33%가 젊은 성년자 계약을 맺지 않거나 6개월 미만의 계약 기간 이후로 해당 시스템을 떠났으며 40%는 18.5세에서 만 21세 전에, 26%는 만 21세까지 계약을 지속했지만 이 또한 지역별로 양상이 크게 차이가 났다(〈표 IV-13〉 참고).⁴⁰⁾ 특히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인 일 드 프랑스(Île-de-France)에서는 젊은 성년자 계약 중 41%가 6개월 이하였으며, 1년 이상은 단 2%밖에 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장기적인 계약 혜택을 누리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

표 IV-13. 지역별 17세에 아동 보호 정책 관리를 받기 시작한 청소년의 해당 제도 혜택 종료 시점

	18세 이전	18-18.5세	18.5-21세	만 21세
Nord	28%	35%	32%	34%
Pas-de-Calais	37%	44%	22%	34%
Paris	19%	24%	53%	23%
Seine-et-Marne	35%	45%	50%	5%
Essonne	14%	18%	46%	36%
Hauts-de-Seine	31%	39%	45%	16%
Seine-Saint-Denis	25%	32%	45%	23%
평균	27%	33%	40%	26%

* 출처: BOURGUIGNON Brigitte (2018).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renforcer l'accompagnement des jeunes majeurs vulnérables vers l'autonomi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rapports/cion-soc/l15b1150_rapport-fond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39) BOURGUIGNON Brigitte (2018).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renforcer l'accompagnement des jeunes majeurs vulnérables vers l'autonomi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rapports/cion-soc/l15b1150_rapport-fond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40) ibid

또한 2013년 12월과 2016년 12월 사이에 16-17세 청소년 중 아동 보호 정책 하에 놓인 비율은 20%가 증가하여 그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많아졌지만 해당 기간 동안 같은 맥락으로 젊은 성년자 계약 건수가 증가해야 했으나 오히려 1%가 감소하여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성년이 되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96개 행정 지역 중 32개에서 계약제도 건수를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하였다. 하지만 2013-2014년에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성년 연령을 코앞에 둔 17세 보호 청소년 중 2/3가 아동 보호 정책 수혜를 종료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무연고 청소년은 수치가 84%로 가장 심각했다(〈표 IV-14〉 참고).⁴¹⁾ 이렇게 후기 청소년기에 놓여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프랑스어 학급 이외에 거의 유일한 정책인) 젊은 성년자 계약제도 또한 그 취지와 다르게 수혜의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으며 이 또한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동일한 프로필의 청소년도 지역에 따라 정책 수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표 IV-14. 아동 보호 정책 수혜 종료에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17세			18세-20세		
	무연고 청소년	그 외	합계	무연고 청소년	그 외	합계
그렇다	16%	39%	33%	27%	42%	37%
아니다	84%	61%	67%	73%	58%	6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BOURGUIGNON Brigitte (2018).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renforcer l'accompagnement des jeunes majeurs vulnérables vers l'autonomi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rapports/cion-soc/l15b1150_rapport-fond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④ ‘이주배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복지 정책

프랑스어 학급을 제외한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 중 청소년들의 ‘이주배경’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없었다. 중등교육과 직업교육 이외에 고등교육, 그 외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 선주민 학생들과 같은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게 된다. 프랑스는 유럽 및 퀘벡

41) ibid

출신 학생들과 비(非)유럽권에서 온 학생들에게 차별된 등록금을 적용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본국에서 처음으로 프랑스 대학을 지원해서 오는 경우에 한한다. 전자의 경우 학사 170유로, 석사 243유로, 박사 380유로이며 후자의 경우 학사 2,770유로, 석사 3,770유로, 박사 380유로로 학, 석사의 경우 약 15-16배 차이가 난다.⁴²⁾ 또 대학생은 정부에 주택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적이 아닌 급여와 장학금 등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된다.⁴³⁾ 장학금 또한 학업을 지속하는 데에 경제적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 신청 당시 28세 미만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⁴⁴⁾ 또 다른 예로 가정에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국적이나 이주 배경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⁴⁵⁾ (그러나 외국 국적일 경우 합법적 체류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프랑스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이주배경’이 기준으로 잡히지 않으며, 그보다 급여 수준 등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⑤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정책

⑤-1. 미성년 (18세 이전) 체류 정책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미성년자는 거주 체류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비자 없이 프랑스 및 쉥겐(Schengen) 이외의 지역을 출입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DCEM)(Document de circulation délivré à l'étranger mineur)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갱신이 가능하며 아래 9가지의 조건의 경우 발급할 수 있다.⁴⁶⁾

42) Campus France. (2022). LE COÛT DES ÉTUDES SUPÉRIEURES EN FRANCE, <https://www.campusfrance.org/fr/cout-etudes-superieures-france-frais-inscription>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43) Service Public. (2022.02.11.). Un étudiant peut-il toucher une aide au logement (APL, ALS, ALF)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63>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44) Service Public. (2023.09.07.). Étudiant: bourse sur critères sociaux,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214>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45) Service Public. (2023.05.01.). Allocations familiales (famille de 2 enfants ou plu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3>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46)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s Outre-mer. (2014.03.22.). Les documents de circulation délivrés aux étrangers mineurs,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Immigration/L-immigration-familiale/Le-sejour-des-mineurs-etrangers/Les-documents-de-circulation-delivres-aux-etrangers-mineurs>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 부모 중 1명 이상이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미성년
- 프랑스인의 외국인 자녀 혹은 EU, 유럽 경제 지역 협정국 및 스위스 국민의 직계 자녀
- EU, 유럽 경제 지역 협정국 및 스위스 국민의 배우자의 직계 자녀
- 부모 중 1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
- 16세 이전에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ASE)의 보호 하에 들어간 미성년
- 난민 혹은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은 미성년
- 프랑스 국적자 또는 입양아의 자녀로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로 프랑스에 입국한 미성년
- 3개월 이상의 방문자(Visiteur)비자로 만 13세 이전에 입국한 미성년(이후 프랑스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함)
- 해외 출생 미성년 중 가족 재결합 제도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경로로 마요트(Mayotte,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프랑스 해외 영토)에 입국하였을 때 시행 중인 국제 협약 및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와 비자를 소지하고 부모 중 1명 이상이 임시, 다년(4년), 10년 거주를 허가하는 체류증을 가진 경우

⑤-2. 성년 체류 정책 (미성년에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

프랑스에 입국 당시 미성년이었지만 이후 성장하여 성년이 되었을 때 해당 청소년은 이주 허가를 위한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4가지 경우로 나뉜다.⁴⁷⁾ 특히 식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알제리, 튀니지계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체류증 발급 과정이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표 IV-15. 프랑스 미성년 입국자의 유형별 체류정책

유형	체류정책
가족 재결합제도를 통해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	■ 미성년 기간 중 1년간 프랑스에 체류한 경우 4년 체류증 발급 ■ 미성년 기간 중 3년간 프랑스에 체류한 경우 10년 체류증 발급
13세 이전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과 프랑스에 13세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년 체류증 발급 ■ 프랑스에 10세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알제리 청소년은 부모 조건과 상관없이 알제리인을 위한 특별 거주 허가증(10년) 발급 ■ 프랑스에 10세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튀니지 청소년은 임시 체류증 발급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	■ 프랑스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10세 이후 프랑스 교육 기관에서 5년 이상 재학하였을 경우 1년 임시 체류증 발급

47)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s Outre-mer. (2021.03.22.). La délivrance d'un titre de séjour aux jeunes majeurs, entrés mineurs en France,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Immigration/L-immigration-familiale/Le-sejour-des-mineurs-etrangeurs/La-delivrance-d-un-titre-de-sejour-aux-jeunes-majeurs-entres-mineurs-en-France>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유형	체류정책
미성년에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ASE)의 보호 하에 들어간 경우	■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진정성과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출신국에 연고가 없거나 있어도 그 연고가 끊겼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었음을 해당 청소년을 호스트하고 있는 개인/기관으로 부터 증명될 수 있는 경우 ■ 만약 16세 이후에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의 보호 하에 들어간 경우 '예외적' 거주 허가를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6개월 이상 '진정성' 있게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또한 출신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해당 청소년을 호스트하고 있는 개인/기관으로부터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었음을 증명 받아야 함. 이 내용을 충족하였을 경우 노동(Salarié)비자 혹은 임시 근로자(Travailleur temporaire) 체류증을 발급함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경우 학생비자 발급)

이주배경청소년이 성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 정부로부터 체류허가를 받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무연고 청소년, 그중에서도 1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21세가 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ASE)이 제공하는 사회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연령 이전에 재정적 독립을 위한 노동 시장 진입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경우 프랑스 체류와 경제활동을 위해 노동비자 혹은 임시 근로자 비자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를 위해 18세 이후 무연고 청소년은 많은 경우 직업 훈련 센터(CFA)에서 학위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때 노동을 위한 체류증이 필요하다. 이 체류증은 '예외적으로' 프랑스에서의 학업에 대한 '진정성(suivi réel et sérieux)⁴⁸⁾'을 증명할 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16세 이후에 입국한 무연고 청소년들은 이들을 위한 교육 조치의 부족으로 학교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혜택의 기회를 거의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Lemaire, 2013). 해당 체류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비유럽권 국적 외국인과 같은 과정을 통해 체류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취업에 성공하여 노동 비자를 취득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생 비자를 받거나 혹은 프랑스인과 생활로 묶여(결혼, 시민연대 제도 등) 관련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교육 과정 수료 없이 취업을 하거나 무려 고등 교육과정에 진학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16세 이후 입국 무연고 청소년들이 프랑스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해당 체류증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8) ibid

(4) 결론 및 시사점

① 이주배경 인구 최소 31%, 정책 대상자 선정의 모호성

가나긴 이주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랑스 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2023 프랑스 통계청 자료⁴⁹⁾에 따르면, 실업률의 경우 이주 1세대는 13%, 이주 2세대(이주민 자녀)는 12%, 선주민은 7%로 나타났다(2021년 15-64세 경제 활동인구 기준). 또한 생활수준도 프랑스 인구 전체 수준 6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이주 1세대는 32%, 이주민 자녀는 22%, 선주민 11%로 이주민 1세대 3명 중 1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중졸 이하의 인구 비율이 이주 1세대는 38%, 선주민은 16%로 그 차이가 컸지만,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는 이주 1세대가 24%, 선주민이 25%로 거의 비슷했다(2021년 30-64세 인구 기준). 이러한 교육 수준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1년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주 1세대 중 30-39세의 43%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50-64세는 25%에 불과했다(〈표 IV-16〉 참고).⁵⁰⁾

표 IV-16. 이주배경 및 연령 기준 고등 교육 학위 취득자 비율

구분	연령	학위 없음	학위 있음
이주 1세대	30-39세	31%	43%
	40-49세	37%	32%
	50-64세	44%	25%
이주민자녀(이주 2세대)	30-39세	13%	47%

* 출처: INSEE (2023.03.30). Immigres et descendants d'immigres,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793314?sommaire=6793391>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또한 이주배경 인구와 선주민 인구 간 사회·경제적 차이는 세대를 지나며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는 이주 1세대는 32%, 이주민 자녀는 38%, 선주민은 41%로 이주민 자녀와 선주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2021년 30-64세 인구 기준). 또 2019-2020년 기준 이주민 자녀의 52%는 15세 당시 아버지의

49) INSEE. (2023.03.30). Immigres et descendants d'immigres,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793314?sommaire=6793391>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50) ibid

직업이 노동자 계층이었던 반면, 선주민 인구의 경우는 35%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아프리카와 남유럽 출신 이주민 자녀에게서 두드러졌으며 또한 아버지의 직업 중 비숙련 노동자가 18%로 선주민 아버지(10%)보다 그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주민 자녀는 선주민 인구보다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하여 30-59세 이주민 자녀 중 아버지와 같은 직업 계층에 속하는 비율은 19%로, 선주민 인구 (26%)보다 낮았다. 또한 아버지가 비숙련 노동자였던 이주민 자녀의 33%가 관리자 혹은 중간 계층의 직업군에 속해 있어 선주민 인구(27%)에 비해 높았다.

프랑스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은 3세부터 16세까지 의무 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 그중에서도 국외 출생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 이주를 경험한 이주 1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프랑스어 학급이 유일하다. 이는 이주역사가 200년에 가까워지며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전체 인구의 최소 30%가 넘어가는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가족사에 따라 이주 배경의 범위가 더 이상 분류하기 어려워질 만큼 다각화되어 만약 ‘이주배경’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이 생긴다면 어떤 프로필의 대상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냐는 끝없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구분짓기와 (역)차별의 문제까지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이주역사가 쌓일수록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국적을 넘어 천차만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을 가진 집단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해당 인구를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 인식하는 것이지만 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 더 이상 프랑스 사회에서 이주배경이 사회, 경제적 또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공식이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가 갖는 취약성이 세대를 거치며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하며, 한국과 같이 이주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된 국가의 경우 불평등의 크기가 보다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민과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② 선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문제의식 공감의 필요성

프랑스 영토 내에 이주민이 첫발을 내딛은 지 한 세기 반이 흘렀다. 1800년대 후반 당시 이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다양한 주변 유럽 국가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프랑스로 유입되는 시기였지만 프랑스 교육 시스템은 프랑스어 학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며 학교 기관에서 프랑스어 이외의 다른 언어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이 본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배제하고 이주 수용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Kerzil, 2002). 오늘날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도 학교 내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이주국 언어’ 중심이라는 방향성은 현재까지 이어져 이주배경청소년만을 위한 유일한 지원 정책이 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논점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먼저 이주 수용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이주민의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이주국 언어 학습이 이주 사회에 동화되는데 주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이주국 사회에 던져졌을 때, 이들의 언어적 차이를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주국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은 논란의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게 된다(Armagnague-Roucher & Rigoni, 2016). 결국 이주민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 실현은 선주민을 포함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주 수용국 언어 위주의 교육 정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주민들이 이주 사회에 갖게 되는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 수용국의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이주 수용국의 구성원이 된 이주민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본국 문화와 언어 또한 이주 수용국의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문화들을 위계의 관점이 아닌 다양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 사회적으로 갖게 된 의미 때문에 못매를 맞고 있는 ‘다문화’라는 용어, 어쩌면 이는 ‘다문화’의 잘못이 아닌 한국 사회가 부여한 인식 때문일지 모른다.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을 위해서는 진실한 ‘다문화’의 의미를 찾아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는 공간을 이동하는 행위와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 이주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 왔지만 현재 국민국가 개념이 생긴 이후로 국경을 넘는 행위로만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있다(Noiriel, 2010). 또한 이주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주 수용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주를 실행하는 개인의 이야기와 상황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듣지 못하고 있다. 이주와 이주민이 가져오는 경제적, 정치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는 인간의 이야기이기에 이주민의 삶은 그 누구의 삶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동일한 인간과 인류의 이야기로 이주 관련 담론을 소화한다면 이주민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많은 공감대를 얻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독일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체류정책⁵¹⁾

(1) 독일 이민의 역사

19세기 독일은 전형적인 이민 송출국이었으나 20세기 이후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는 동서독 분단 이후, 동독 출신의 노동력 유입이 줄어들어 서독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서독은 일종의 개발 원조의 형태로 숙련직 노동자들을 초대해 독일의 기술을 습득한 후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초청노동자(Gastarbeiter)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1982년 헬무트 콜(Helmut Kohl) 정부는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님’(Deutschland ist kein Einwanderungsland)을 분명히 했고,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통일 이후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1년 독일 통일 이후 독일계 재외동포가 구소련 연방에서 유입되었고, 유고슬라비아 전쟁 및 터키 쿠르드 지역에서 발생한 망명자와 피난민의 유입이 증가했다(이규용, 김기선, 정기선, 최서리, 최홍엽, 2015: 149).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내전 등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에 따른 난민과 동유럽 출신 독일계 이민자 유입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독일은 전통적인 속인주의적 국적법의 원칙을 따랐으며 이에 따라 배타적인 외국인 정책을 고수하였다(박명선, 2007). 『외국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은 통일 후,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입국과 체류, 출국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독일 정부는 해당 법을 통해 장기체류와 가족 재결합, 이민 2세대와 장기 거주자의 귀화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이민자 신분을 일부 인정했으나, 추방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조직적으로 운영토록 했다(권형진, 2014: 140).

독일 이민정책의 기본 입장인 ‘비이민국가 독일’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98년 슈뢰더(Gerhard Schröder)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정이 수립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졌는데(권형진, 2014: 146), 새로운 『국적법』은 엄격한 속인주의 일부가 포기되고 제한적이거나 속지주의적 성격이 포함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2004년 독일의 『신이민법』(the Immigration Act, Zuwanderungsgesetz)이 통과되었고(Castles, de Haas, Miller, 2014: 278-279), 이 법을 근거로 2000년 1월 1일 이후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그 부모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51) 독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최영미(한양대학교 글로벌문화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함.

에 한 해 제한적으로나마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그 자녀는 만 23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해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귀화 신청 자격의 경우 15년 이상 체류가 8년 이상으로 단축되었다(이규용 외, 2015: 149).

이어 슈뢰더 정부는 2000년 ‘그린카드(Green-card)’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IT전문가에게 한시적 노동허가 체류권을 제정했으며, ‘이주문제독립위원회(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를 구성해 외국인 정책을 제안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경제, 인구학적 이유에서 이민국가를 부정하는 기존의 독일 이민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독일이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Gestalten, 2001). 독일은 2005년 통합성, 관리성, 안보성을 근간으로 하는 『이민법』을 제정하며 실질적으로 독일 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로의 정책적 전환을 추구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강화할 목적으로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배우는 시민 통합과정(Integration Kurs)을 개설해 이민자들에게 수강할 것을 명시했다(Immigration Law,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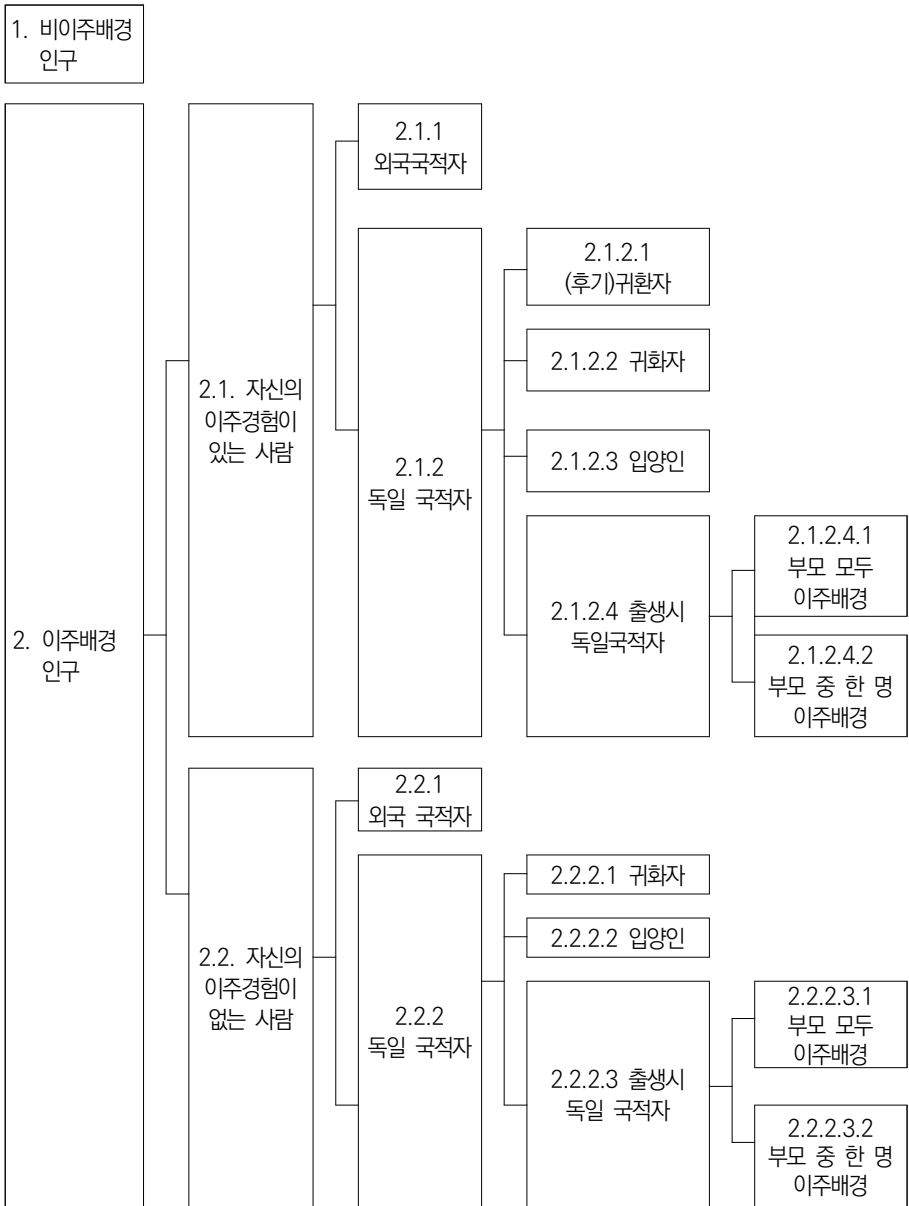
2007년 독일은 독일 국가통합계획(Nationalen Integrationsplan)을 수립하기 위해 통합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상들을 소집해 통합정상회담(Integrationsgipfel)을 개최하며 독일 국가통합계획(Nationalen Integrationsplan)을 수립했다(정수정, 최순중, 2015). 국가통합실행계획의 목표는 ‘통합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정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다(Bundesregierung, 2012). 독일 내부부는 “독일의 이민정책은 독일 이민을 관리, 통제 및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고 “독일 사회가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 및 노동시장의 이익 및 인도주의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BMI, 2023). 독일연방정부는 국가통합계획(Nationalen Integrationsplan)을 통해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독일어를 배우고, 학교에 다니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독일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 1세대들은 언어능력 부족 및 숙련기술 미인정 등으로 인해 독일인보다 저임금과 고실업률에 시달렸다(Reimann, 2010.07.07). 게다가 이와 같은 불평등이 이민자 2세대에게 대물림되며 이주배경 2세대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숙련도가 독일인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6.03.13.). 따라서 독일 사회는 독일 내 증가한 외국인들을 독일 사회로 통합해 사회적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요구와 직면하게 된다(유숙란, 2010: 228-231).

이에 독일 정부는 통합에 관한 국가통합 실행계획을 통해 연정 합의에 명시된 공약을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이민자를 지원하고 이민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다양하고 다양한 통합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목표는 이민자의 삶을 개선하고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 전반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정부 부처가 주재하는 총 24개의 주제별 포럼에서 주 및 지방 당국, 비정부 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민자 단체와 함께 핵심 프로젝트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Bundesregierung, 2020; 2021).

(2) 독일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와 규모

① 독일의 이주배경 정의

이민법의 개정 후에도 독일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난 많은 이민자 자녀들은 ‘외국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민자 자녀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원주민 외국인’(native foreigners)들을 포함할 수 있는 분류법과 통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학계와 정치권에 나오면서, ‘이주 배경’ 개념이 2000년대 초반 여러 정부 보고서에서 등장했다. 2006년 독일 인구통계조사(Mikrozensus)에서 이를 반영하여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persons with a migration background)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었다(Will, 2019: 542-544). 2005년 연방 통계청은 해당 분류법을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즉,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은 「1949년 이후 독일 연방공화국의 현재 영토에 입국한 모든 이민자, 독일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독일에서 독일로 이주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독일인이거나 독일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난 모든 독일인」으로 정의된다(Destatis, 2009: 6; Will, 2019,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2016년에 변경되고 단순화되어 현재는 “1950년 이후 독일로 이민 온 사람(1세대)이거나 직계 후손(2세대)”을 지칭한다(Destatis, 2023.04.27). 2008년 독일 전체인구의 20%가 ‘이주 배경’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2022년 자료 기준으로 이주 배경 인구가 점차 증가해 전체 인구의 24.3%(약 2,0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Destatis, 2023.04.20).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2022.01.31.: 5)의 기준에 따라 독일에서 이주 배경은 ‘본인 또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출생 시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한다. 해당 정의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그림 IV-9] 참조).



* 출처: Destatis. (2022.01.31.).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20,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Publicationen/Downloads-Migration/migrationshintergrund-endergebnisse-2010220207004.pdf?__blob=publicationFile 에서 2023년 8월 24일 인출

그림 IV-9. 독일 연방통계청의 이주배경에 대한 세부 범주

② 독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OECD자료에서 외국 출신 부모를 둔 청소년은 a) 외국 출신 부모가 둘인 원주민 출생, b) 부모가 혼혈인 원주민 출생(원주민 부모와 외국 태생 부모 중 한 명), c) 15세 이전에 이민 온 외국 출생, d) 15세 이후에 이민 온 외국 출생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ibid., 2023.04.27.: 168). OECD 국가들 내에서 이러한 외국 출신 부모를 둔 후기 청소년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EU 전체에서 15세에서 34세 사이의 후기 청소년 중 23%가 본인이 외국 출생이거나 외국 출신인 부모를 두고 있다. 후기 청소년 중 이주배경을 가진 비중(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외국 출신인 경우)은 지난 10년 동안 EU전체(2천 2백만 명) 2.3%p, OECD전체(6천만 명) 2.6%p가 증가했다(ibid., 2023.04.27: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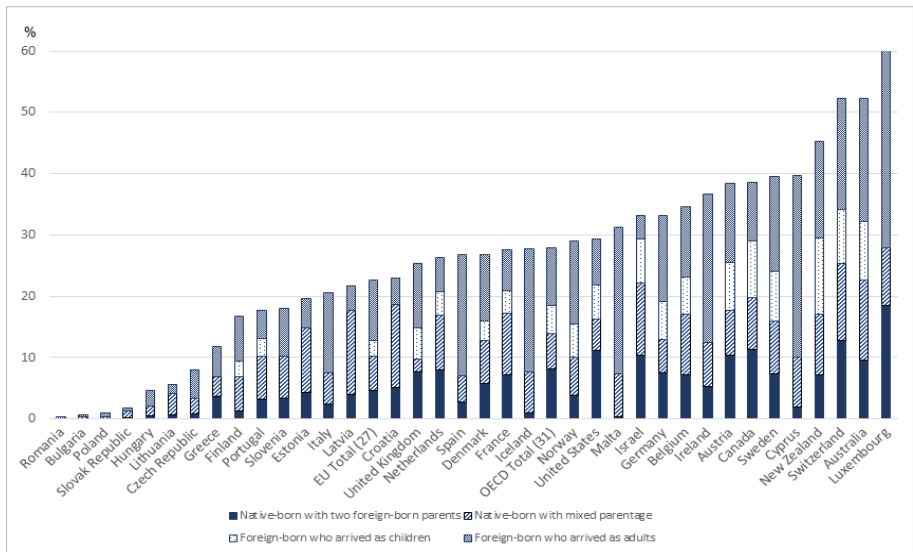


그림 IV-10. 독일 이주배경 청년 규모

독일의 전체인구 중 후기청소년(15살에서 34살) 비중은 23%(1,878만 9천 명)이었고, 전체 후기 청소년 중 34.1%(641만 1천 명)가 이주 배경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었다(Destatis, 2022.01.31.: 31, 32, 33). 연령집단 내 비율로는 15~20세 35.5%, 20~25세 34.1%, 25~34세 33.6%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령집단(15~34세)이 전체 이주배경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였다(Destatis, 2022.01.31.: 31, 32, 33).

(3) 독일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체류정책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와 함께 독일로 이주했을 때 미성년자였던 외국인인 16세⁵²⁾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단, 5년 동안 거주 허가를 소지한 미성년 외국인에 한한다. 성인 된 이후에는 충분한 독일어 능력, 안정적인 생계보장, 공인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거주 허가를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BAMF, 2023). 연방 이민 및 난민 청에서는 충분한 독일어에 대한 지식(sufficient knowledge of German)을 언급했으나 실제 베를린 외국인 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독일어 수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공인된 학교, 직업 또는 학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일반 및 정규, 학교 출석, 회사 견습생, 학위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 또는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녀의 부모는 생계유지 증명서⁵³⁾를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독일에서 제한 없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취업이나 자영업 또한 어떠한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⁵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이상 거주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연금 보험에 6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 조건은 배우자도 충족할 수 있음),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유럽 공통 언어 기준 프레임워크의 B1 레벨에 해당). 넷째, 독일의 법률 및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적절한 거처가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조건은 배우자도 충족할 수 있음). 여섯째, 공공 안전 또는 질서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발급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⁵⁵⁾

52) 16세 이전에는 영주권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53) 자녀가 학교, 직업 또는 학업 교육을 이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생계가 보장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고용 계약서, 고용주의 증명서 또는 지속적인 고용 (14일 이내) 및 임시 거주 허가를 마지막으로 발급 한 이후의 급여 명세서, 또는 자영업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4863/en/>).

54) Die bundesregierung. (n.d.). Niederlassungserlaubnis, <https://www.make-it-in-germany.com/en/visa-residence/living-permanently/settlement-permit>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55) FOMR. (2023.11.18.) Settling in Germany, <https://www.bamf.de/EN/Themen/MigrationAufenthalt/ZuwandererDrittstaaten/Migrathek/Niederlassen/niederlassen-node.html>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표 IV-17. 영주권 신청 대기 시간 단축 및 더 유리한 사전 조건 제공 집단

구분	내용
공무원 (Tenured civil servants)	독일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3년 근무, 이 경우 60개월의 법정 연금보험료 납입 요건도 면제
숙련노동자 (Skilled Workers)	- 숙련 노동자(직업 훈련 또는 학업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연구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4년 동안 거주 자격 보유 - 직업이 있어야 하며, 48개월 동안 의무 연금 보험료 납부 - 독일어 능력
독일에서 학위 또는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 독일에서 직업 훈련 또는 학위 이수 - 숙련 노동자(직업 훈련 또는 학업 교육을 받은) 또는 연구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2년간 거주 허가 - 직업이 있어야 하며, 24개월 동안 의무 연금 보험료 납부 - 독일어 능력
EU 블루 카드 소지자	- EU 블루카드 소지 - 독일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적절한 직장에 근무하고 법정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33개월 만에 영주권 신청 가능 -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경우 21개월 만에 영주권 신청 가능
자영업자	- 충분한 생계유지 정도의 성공적인 자영업 - 부양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우 3년 만에 영주권 신청 가능
독일 국적자의 가족	3년 거주허가 보유 - 가족 단위 독일 정착 - 독일어 능력
외국 국적자의 자녀	16세 이상 거주 허가를 보유한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 성인이 되고 5년 동안 거주 허가를 소지한 경우, 독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안정적인 생계가 있거나 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개방형 거주 자격을 가진 외 국인의 가족 구성원	-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과 결혼 동거 중이거나 동거한 적이 있는 경우, 별거하여 결혼 동거가 종료되더라도 영주권 신청 가능 - 생계보장
이전 독일 국적자	독일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편 국적과 관련해 독일 정부는 2023년 8월 국적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법을 승인했고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적법은 BI의 독일어 자격증과 안정된 수입 그리고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 등을 귀화 신청 요건으로 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8년 이상 거주 요건을 5년으로 줄였고 독일 사회통합에 특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거주 요건은 3년으로 줄어든 수 있다. 독일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부모 중 한 명 이상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중국적 허용을 또한 완화했다(Volker, 2023.05.31).

(4) 독일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OECD에서 수행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만 15살 대상) 테스트의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외국 출생의 부모를 둔 후기 청소년들은 선주민 부모를 둔 또래보다 문해력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178). 유럽연합 전체에서 문해력 점수의 격차는 약 34점에 이른다. 이는 거의 한 학년 간 발생하는 격차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a)와 b)에 해당하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 부모인 경우) PISA의 문해력 점수(Reading scores)에서 477점을 받았는데 이는 선주민 부모를 둔 또래(523점)보다 46점 낮은 수치이다(Schleicher, 2019).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민자 학생은 선주민 학생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되었다(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182). 특히 독일의 경우, 이민자 자녀(c에 해당, 15세 이전에 이민 온 외국 출생)가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선주민 자녀(20%)보다 거의 두 배(39%)나 높았고, ‘학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래와 어울리지 못한 다’는 응답에서 또한 이민자 자녀(28%)가 선주민(14%) 자녀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183). 유럽연합 국가에서 외국 출생의 부모를 둔 25세~34세의 청년(32%)은 같은 나이의 선주민 청년(40%)보다 학업 성취가 낮게 나타났다(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186). 이와 같은 추세는 독일(선주민 30.5%, 외국 출생 부모 자녀 17.8%)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외국 출생의 부모를 둔 청년들은 낮은 사회적 자본과 노동시장 접근성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OECD, 2023: 190).

이러한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의 낮은 학업성취 및 노동시장 진입등을 반영하여 독일은 ‘국가통합계획(National Integration Plan)’의 일환으로서 교육에 대한 집중과 언어 기술 개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통합과정’을 개설했다. 교육을 통해 독일어 능력을 함양하고, 교육-노동시장으로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 통합 촉진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정수정, 최순중, 2015: 85). 독일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별 통합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2015년 대거 유입된 시리아 난민들) 이민 당국은 통합교육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다(Bither & Ziebarth, 2016: 11). 현재 독일로

새롭게 이주한 아이들의 학교 교육은 의무이며, 학교 내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난민 신청 자녀들은 이주 후 환영, 전환 또는 준비 수업에 참여하며 통합 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에 추가로 실행된다(Bither & Ziebarth, 2016: 13). 통합과정은 600시간의 언어교육 및 독일의 법제도, 정치, 문화, 사회, 역사 전반을 다룬다(FOMR, 2007: 6). 이어 이민자가 통합 과정을 졸업하고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회사에서 인턴십을 포함한 22개월의 이수 과정을 연계하고 있다(FOMR, 2007: 8).

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2011)에 보고서에서 이민자와 그들 자녀를 통해 다양한 방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그러한 기술을 더 일찍 장려하고 활용할수록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따라서 독일은 “이민자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학교에서 직업훈련으로 전환하는 과정 및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민 관련 장벽을 줄여야 한다”며 “노동시장 정책의 관심과 목표는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⁵⁶⁾

한편, 독일 연방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BMFSFJ, 2020.12.23.)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연방정부의 청소년 전략은 연방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자립 청소년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1,400만 명의 청소년과 12~27세 사이 청년들의 공통 관심사를 가시화하고 있다. ‘공동 책임 아래에’ 청소년 정책 전략은 모든 부처가 함께 개발한다. 연방정부는 청년 전략을 통해 젊은 세대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시키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특정 단계에서도 도전과제를 극복하는데 가능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MFSFJ, 2020.12.23). 연방 노동사회부는 사회법(Sozialgesetz)에 근거해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할 목적으로 여러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노동사회부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재정적 안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며 고용 촉진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BMAS, 2023.03.23). 사회법I (§ 3 SGB I Bildungs-und Arbeitsförderung)에 따르면 (1) 자신의 성향, 적합성 및 성과에 맞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필요한 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에 대한 개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직장생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교육 경로 및 직업 선택에 대한 조언, 2.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

56) Die Bundesregierung (2011). Report of the German Lander on the National Action Plan on Integration Together for greater integration(<https://polen.diplo.de/blob/485830/b3bada7b7614c18bb869326b0bef63aa/integration-nap-eng-data.pdf>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대한 개별적인 홍보, 3. 괜찮은 직업을 얻고 유지하는 데 도움, 4. 고용주의 파산 및 실업 시 경제적 안정(Sozialgesetz, 2022.12.20.).⁵⁷⁾ 의무적 근로 지원은 늦어도 학교 졸업 1년 전부터 시작되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독일 정부는 3가지 의무적 지원 외에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 및 불리한 여건의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법 II, III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수정, 최순중, 2015: 87).⁵⁸⁾ 특히, 연방 사회노동부는 실업보험에 따른 실업수당 및 시민수당(Bürgergeld)⁵⁹⁾을 통해 실질 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BMAS, 2023.03.23.).

(5) 독일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직업 및 진로정책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배경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성취가 낮고, 이러한 낮은 학업성취는 진로결정 및 직업교육으로 이어진다(정수정, 최순중, 2015: 86). 이에 독일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성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략을 추구한다. 먼저, 개개인의 잠재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직업에 관한 예비 교육을 시행해 전반적인 진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의 기반인 학교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성공적 직업교육 이수를 위해 제3자 동행을 지원하며, 이밖에 모든 과정에서의 개별적 지원을 강화하여

57) Sozialgesetz (2022.12.20.), § 3 SGB I Bildungs- und Arbeitsförderung, <https://www.sozialgesetzbuch-sgb.de/sgbi/3.html>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58) 독일 노동시장은 여전히 정규직 비중이 지배적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전체 고용근로자의 약 38%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1991년(20%) 대비 약 두 배 정도 증가했다(Seifert, 2013: 16). 이민자는 선주민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례가 더 많았고 특히 비정규직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Seifert, 2013: 20). 연방 노동사회부의 통합정책 관련 업무는 독일의 고용 촉진 사회법 제3권(SGB III)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업 예방, 실업 기간 단축, 노동 시장 및 직업 훈련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BMAS, 2023). 해당 법은 실업 위험자, 실업자, 그리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더 빨리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재교육과 재숙련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실업을 예방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취업 및 훈련 알선, 단시간 근로 수당, 평생 교육 및 훈련, 고용주 통합 수당, 창업 수당, 장애인 지원 수당 등이 포함된다(ibid., 2023.04.14.).

59) 시민수당은 올라프 숄츠 정부에 의해 2023년 1월 도입된 실업급여로 이전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II)에 비해 그 수당이 더 증가했다. 혼자 사는 성인 구직자는 이전 449유로였던 기본 금액이 이제 502유로로 인상되었으며, 시민수당의 도입으로 실업수당의 일부를 공제하지 않고도 수혜자가 보유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 늘어났다(성인 한 명 최대 40,000유로). 또한 시민수당은 기존의 실업수당과 사회수당(Sozialgeld)을 대체했다(BMAS, 2023.04.14.). 이와 같은 시민수당 혜택은 지역 일자리 센터(Job Center, Agentur für Arbeit)에서 제공되는데, 지역고용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수당의 책임 기관으로 일자리 센터와 함께 일한다. 고용기관은 시민수당 신청자의 생계 및 통합 혜택을 확보 및 지불할 책임이 있고, 지자체는 숙박 및 난방 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ibid., 2023.04.14.).

전체적으로 진로 및 직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정수정, 최순중, 2015: 86) 할 수 있다.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및 연방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등은 이주배경청소년 직업 및 진로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방노동청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8. 이주배경청소년 직업 및 진로정책 담당부처 및 프로그램

담당부처	프로그램 내용
연방노동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질 향상 프로그램(Einstiegsqualifizierung, EQ) ■ 직업준비 교육방안(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Bvb) ■ 직업교육지원금 ■ 청소년 고용 기관(Youth employment agencies)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청소년(JUGEND STÄRKEN) 프로그램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Jugendmigrationdienste) ■ 존중 코치(Respekt Coaches) 배치
연방 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및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이민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BOF) ■ 교육 체인 기획 (Bildungskette, Educational Chains Initiative) ■ VeRa Initiative ■ 직업선택어플(berufswahlapp) ■ 아동 미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①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질 향상 프로그램(Einstiegsqualifizierung, EQ)⁶⁰⁾

연방노동청의 EQ 프로그램은 전일제 학교 의무 교육이 종료된 25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이주배경과 같은 사회적 불리함,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자격요건 부족 등으로 이원적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정수정, 최순중, 2015: 88에서 재인용). EQ 프로그램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목적이 이원적

60) Bundesagentur für Arbeit (n.d.). Einstiegsqualifizierung, <https://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ausbilden/einstiegsqualifizierung-arbeitgeber>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직업교육(dual system)으로의 진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최소한 6개월에서 최대한 1년까지 운영되며,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능력을 위한 교육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서는 매달 임금과 사회보장보험비가 주어진다. 적어도 교육받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원청 또는 고용센터가 참가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과(최대 월 2165유로), 참가자 전체 사회보장보험의 평균 분담금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매년 40,000여 개의 EQ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② 직업준비 교육방안(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Bvb)⁶¹⁾

연방 노동청에서 주관하는 BvB는 직업교육 진입 개선을 위한 직업교육 준비과정으로 직업교육 자리를 구직하지 못한 청소년, 학교 졸업장이 없거나 이주배경이거나 장애로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직업상담사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추천하고, 개개인에게 교육방안을 지원하기도 한다. 실제 노동시장에 적합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반교육도 시행하지만 사회성과 인성교육, 언어교육, IT-미디어 교육, 구직 훈련 등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된다. 전체 이수과정은 10개월이며, 장기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지원금에 해당하는 250유로를 매달 받게 되는데, 청소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추천하고 개별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방안을 지원한다(정수정, 최순중, 2015: 88에서 재인용).

③ 직업교육지원금⁶²⁾

직업교육 지원금은 교육기관과 거주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원거리 거주자들을 위한 지원금이다. 국가가 인정한 직업교육이 및 직업 준비 교육 참여자 중 18세 이상의 원거리 거주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 지원금 자격 대상이 된다. 먼저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기혼자,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 지원금은 배우자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교통비, 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이 주어진다.

61) Bundesagentur für Arbeit (n.d.).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 <https://www.arbeitsagentur.de/bildung/ausbildung/berufsvorbereitende-bildungsmassnahme>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62) Bundesagentur für Arbeit (n.d.). Berufsausbildungsbeihilfe, <https://www.arbeitsagentur.de/en/vocational-training>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④ 청소년 고용 기관(Youth employment agencies)

연방 노동청 산하의 청소년 고용기관은 25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후 취업으로의 전환 및 노동 상담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업무는 청년 이주 서비스(youth migration services), 고용주 단체(employer organizations), 청소년 법원 보조(juvenile court assistance)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년 고용기관은 주로 지역 협력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 고용기관 및 지역 일자리 센터의 직원의 역량에 의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⁶³⁾

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Jugendmigrationsdienste)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Jugendmigrationsdienste, Youth Migration Service, JMD)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규 교육 대상이 아닌 직업교육 및 훈련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이다. 사회통합 및 독일어 과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적 지원과 함께 이주배경 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전체 약 460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대상은 12세에서 27세 사이의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이나 청년층, 특히 자녀의 교육/훈련 문제와 관련된 부모, 청소년 생활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청소년 이민의 통합 과정과 관련된 기관을 포함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통합정책 대상자들의 언어, 사회, 교육, 직업적 통합 가능성을 증진하고, 사회, 문화 및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를 장려하여 독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촉진하는 것이다.⁶⁴⁾

⑥ 이민자를 위한 직업 오리엔테이션(BOF, Berufliche Orientierung für Zugewanderte)

프로그램

이민자를 위한 직업 오리엔테이션(BOF, Berufliche Orientierung für Zugewanderte) 프로그램은 연방교육연구부(BMBF)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청년층 이민 및 난민을 위한 직업교육이다. BOF 과정은 최대 26주 동안 진행되며, 참가자는 개별적인 사회 및

63) Bundesagentur für Arbeit (n.d.). Jugendberufsagenturen: Arbeitsbündnis für bessere Integration Jugendlicher, <https://www.arbeitsagentur.de/institutionen/jugendberufsagenturen>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64) Jugend Migrations Dienste (n.d.). JUGENDMIGRATIONSDIENSTE, <https://www.jugendmigrationsdienste.de/en/>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교육 지원과 함께 희망하는 훈련 직종에 필요한 전문 용어와 지식을 습득한다. 이민 관련 지원이 필요한 난민과 이민자는 누구나 본 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⁶⁵⁾

⑦ 교육 체인 이니셔티브(Bildungskette, Educational Chains Initiative)

교육 체인 이니셔티브(Educational Chain Initiative)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목표한 학교 졸업과 노동시장 진입을 대비하도록 지원한다. 연방 교육 연구부, 노동 사회부, 노동청은 연방 주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본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전반적인 목표는 직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년을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초기 단계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은 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 세계로 통합하는 데 개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⑧ 자원봉사자 코칭(VeRa Initiative)

VerA 기획은 직업훈련(Ausbildung)의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목표로 구성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독일 전역에 걸친 10년 이상 시니어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직업진입 단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독일 전체 직업훈련자 중 25%가 조기에 종료했고, 이중 절반만이 새로운 견습 직종 및 회사를 찾음).

표 IV-19. 청소년이 제공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조치

지원 조치
■ 잠재력 분석(강점에 대한 학습) ■ 직업 오리엔테이션(예: 워크숍 세션, 실습 배치를 통해 취업 지향적인 방식으로 직업 분야 탐색) ■ 직업 진입 지원 ■ 자원봉사자의 코칭(VeRa) ■ 과도기 부문의 조치 ■ 교육 내 조치 ■ 직업 오리엔테이션부터 훈련까지 단일 구조 및 지원 수단(예: 커리어 초이스 패스)

65)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n.d.). Berufliche Orientierung für Zugewanderte, https://www.berufsorientierungsprogramm.de/bop/de/angebot-fuer-zugewanderte/berufliche-orientierung-fuer-zugewanderte-bof/berufliche-orientierung-fuer-zugewanderte-bof_node.html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6) 결론 및 시사점

독일은 전형적인 이민 국가가 아니며, 연방정부가 오랫동안 이민 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 연방 노동청(The Bundesagentur für Arbeit, Federal Employment Agency)은 향후 10년에서 20년 후 노동 가능한 인구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라며 “고용주가 국내 및 필요한 경우 해외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교육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한다”고 밝혔으며,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은 좋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낼 권리가 있다. 처음부터 출신, 성별, 종교,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BMFSFJ, 2020.12.23.).

독일 정부의 이민자 자녀 세대를 위한 정책은 크게 1) 체류 안정화, 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이민자 자녀 교육정책, 3) 노동시장 통합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외국 국적자의 자녀의 경우 16세에 도달하고, 5년 이상 거주권을 소지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시 주어지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부모와 함께 독일로 이주한 아동·청소년이 독일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독일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부모 한 명 이상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중국적 허용을 완화했다.

둘째, 독일뿐만 아니라 EU 전체에서도 이주 배경 자녀와 비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격차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PISA 테스트 결과에서도 증명해준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주 배경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편성하기보다는 보편적 교육정책을 정책방향으로 삼는다. EQ(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질 향상 프로그램), Bvb(직업준비 교육방안) 등은 현재 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어려움’ 안에 ‘이주로 인한 어려움’도 포함된다. 이주배경 청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교육정책에 포함되어 ‘이주배경적’ 요인을 하나의 특성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물론 독일어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를 제안하기도 하며, JMD(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서비스)와 같은 기관을 지역에 두어 정규 교육 대상이 아닌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와 같은 상담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해소되지 않는 교육격차는 결국 노동시장 불이익으로 연결된다. 위에서 언급한 EQ, Bvb 역시 독일의 이주 배경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JMD의 상담 서비스도 진로와 직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교육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후,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것이 독일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스웨덴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체류정책⁶⁶⁾

(1) 스웨덴 이민의 역사

① 스웨덴 이민의 역사적 흐름

스웨덴 이민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850-1939년, 1940-1979년, 1980-1999년, 2000-2012년, 2013-2014년, 2015-2023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권경득 외, 2021). 먼저 1850-1939년은 스웨덴 민족대이동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당시 스웨덴 안으로의 인구 유입 보다는 외국으로 유출된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가난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전체 인구의 1/3이 다른 나라로 떠났는데, 대부분이 미국으로 갔으며, 이를 민족대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1940년대에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스웨덴 이민자들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다시 스웨덴으로 역이민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던 시기이다(백석인, 2008; Holgersson, 2000).

1940-1979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들이 스웨덴으로 유입된 시기이다.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독일, 핀란드, 발트해 국민들이 전쟁이 없는 스웨덴 이민을 선택하였고, 전쟁 후에는 스웨덴에서 내수산업이 급격하게 발전됨에 따라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노동 인력을 채우기 위해 북유럽 인근 국가 노동자들 뿐 아니라 기타 유럽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이주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동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대규모 노동 이민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하다(신정완, 2013). 하지만 인근 국가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 주택 부족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1970년대부터는 노동 이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후 노동 허가증이 있는 사람만 스웨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함에 따라 노동이민은 크게

66) 스웨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은 홍희정(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감소하게 되었다.

1980-1999년에는 정치망명자 유입이 활발했던 시기이다.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칠레 독재 정권을 피해 스웨덴으로 유입된 칠레인이 당시 약 45,000명이었으며, 이들은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스웨덴에 정착하게 된다(Riniolo, 2016). 1980년에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약 7,000여 명의 이라크 국민과 약 2,700여명의 이란 국민들이 전쟁을 피해 스웨덴으로 이주했으며, 1990년에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인해 보스니아, 코소보인들이 약 1,400여명이 유입됐으며, 1990년대 초에는 발칸 지역의 군사 분쟁으로 인해 또 다른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다.

2000-2012년에는 이라크 전쟁 난민과 EU 시민들의 유입이 많았던 시기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대규모 난민이 또 한 번 스웨덴에 유입되었다. 그리고 1995년 스웨덴이 유럽 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쉥겐 조약으로 인해 약 29,000여 명이 기타 유럽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했고, 2011년에는 국가 차원의 창업 및 기술 산업의 장려로 IT 기술자 등을 적극적으로 영입함에 따라 약 2만 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스웨덴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2013-2014년에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난민의 유입이 많았던 시기이다. 2014년 스웨덴은 인구가 약 10만 명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는 중동 지역의 빈번한 전쟁과 아프리카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대규모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스웨덴은 망명을 신청하는 모든 난민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함에 따라 당시 시리아에서만 약 7만 여 명의 사람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했다. 이들 대부분은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로 이들의 비율이 전체 난민의 약 9%였다. 스웨덴에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교외 지역에서는 이민자 간 분쟁이 나타나기도 하고, 스웨덴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이민자들의 폭동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사회통합을 중시하던 스웨덴의 이민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시기이다(홍세영, 2017).

2015년-2023년 현재는 이민 정책의 규제로 이민과 난민 유입이 감소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013년 대규모 난민이 스웨덴에 유입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자국민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난민 수용을 소극적으로 전환하고, 사실상 노동 이민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노동 이민도 소극적으로 전환되었다(홍희정, 홍성현, 2019). 다만, 2023년부터 전문직의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② 스웨덴 이민 정책의 특성

스웨덴은 과거 주변 국가 출신 노동자들을 적극 유입하고, 전쟁과 국가 위기를 피해 스웨덴으로 온 정치망명자와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다문화 사회를 이루었다. 일찍이 이민자 정책과 기본원칙을 제정하여, 스웨덴 자국민과 이민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였다. 스웨덴 이민정책의 주요 원칙은 평등(Equality), 문화 선택의 자유(Freedom of Cultural Choice), 협동과 연대의식(Cooperation and Solidarity)이다(Jederlund, 1999). 구체적으로 ‘평등’은 스웨덴 국민과 이민자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문화선택의 자유는 스웨덴 문화를 수용할 수도 있고, 자국문화를 지켜나갈 수도 있는 선택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과 연대의식’은 스웨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출생지와 구분 없이 동등한 사회인으로 함께 사회를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포용적 이민정책은 스웨덴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강주현, 2011).

(2) 스웨덴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① 전체 인구대비 후기청소년기 규모

스웨덴 전체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1,050만 명 정도이며, 이중에서 19-24세 후기청소년은 약 7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20>에서 최근

표 IV-20. 스웨덴 전체 인구 대비 후기청소년기 비율 (최근 5년 기준)

(단위: 명, %)

연도	전체인구	후기청소년기	
		수	비율
2022	10,521,556	703,449	6.7
2021	10,452,326	693,068	6.6
2020	10,379,295	690,455	6.7
2019	10,327,589	700,595	6.8
2018	10,230,185	710,399	6.9

* 출처: SCB Statistikdatabasen (2023.02.22.). Folkmängd,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5년 기준 스웨덴 전체 인구 대비 후기청소년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스웨덴 전체 인구 대비 후기청소년기 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IV-11]과 같이 후기청소년기의 비중은 해마다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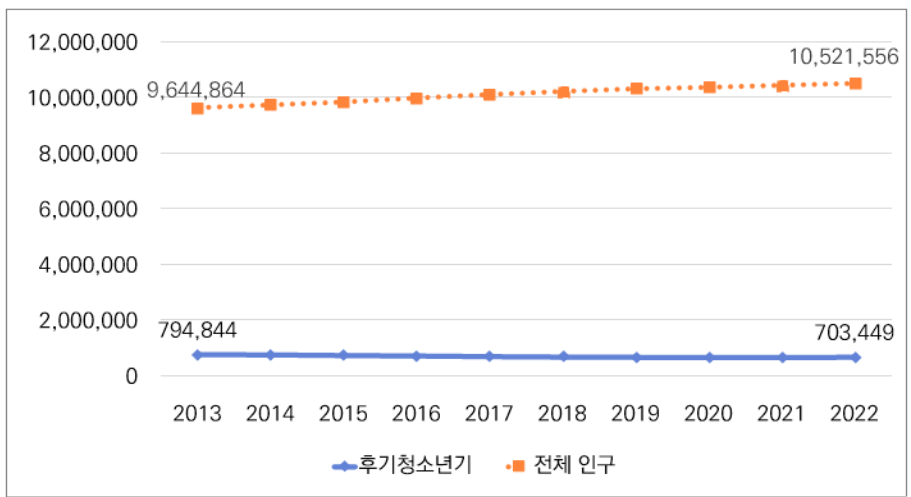


그림 IV-11. 스웨덴 전체 인구 대비 후기청소년기 규모(15-24세)

②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스웨덴에서는 출신 배경을 중심으로 크게 자국민과 이민자를 구분하고 있으며(Åslund & Skans, 2010), 세부적으로 이주배경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자국민’은 ‘스웨덴 부모를 둔 스웨덴인’,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인인 스웨덴인’, ‘외국에서 태어난 스웨덴인’, ‘외국인 부모를 둔 스웨덴인’이며, ‘이민자’는 스웨덴으로 ‘본인이 직접 이주한 사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본인도 외국 국적인 자’를 이민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이주배경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 이주배경은 크게 스웨덴배경을 가진 자와 아닌 자로 구분하며, 총 4가지로 분류한다. 스웨덴배경을 가진 자는 ‘부모 모두 스웨덴인인 자’, ‘부모 중 한 명이 스웨덴인인 자’, 이주배경을 가진 자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자’, ‘외국에서 태어난 자’로 구분하고 있다.

〈표 IV-21〉을 보면 최근 5년 기준 전체 후기청소년 대비 이주배경청소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내 전체 후기청소년 대비 이주배경청소년 규모는 2022년 현재 약 32%로

그 비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후기청소년 규모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인구 대비 후기청소년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후기청소년 중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21. 전체 후기청소년기 대비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최근 5년 기준)

(단위: 명)

연도	전체 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전체 수	전체인구대비 후기청소년 비율	전체 수	후기청소년기 인구 대비 이주배경청소년 비율
2022	703,449	6.7	225,784	32.1
2021	693,068	6.6	223,040	32.2
2020	690,455	6.7	221,029	32.0
2019	700,595	6.8	221,587	31.6
2018	710,399	6.9	212,331	29.9

* 출처: SCB Statistikdatabasen (2023.03.22.). Utländsk/svensk bakgrund,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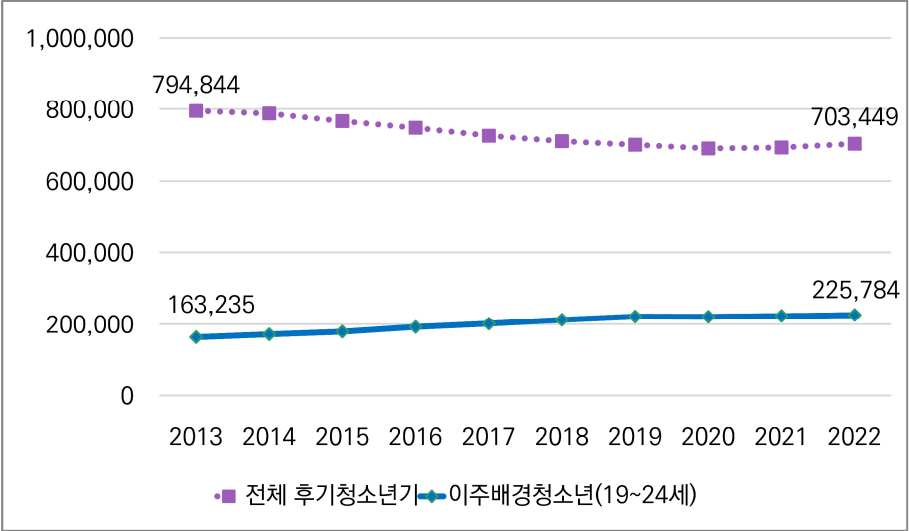


그림 IV-12. 스웨덴 후기청소년 및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비교

③ 스웨덴배경과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스웨덴배경과 이주배경청소년의 최근 5년 기준 규모는 <표 IV-22>와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웨덴배경 청소년은 줄어들고, 이주배경청소년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모두 스웨덴인인 경우와 외국태생 자의 간의 그래프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변화를 시계열로 보면 [그림 IV-13]과 같다.

표 IV-22. 스웨덴배경 및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비교 (최근 5년 기준)

(단위: 명, %)

연도	스웨덴배경				이주배경			
	부모 모두 스웨덴인	한부모 스웨덴인	인원	%	부모 모두 외국인	외국태생	인원	%
2022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21	414,564	58.9	63,041	9.0	62,805	8.9	162,979	23.2
2020	409,118	59.0	60,910	8.8	61,290	8.8	161,750	23.3
2019	409,556	59.3	59,770	8.7	60,663	8.8	160,366	23.2
2018	418,914	59.8	60,094	8.6	61,556	8.8	160,031	22.8

* 출처: SCB Statistikdatabasen (2023.03.22.). Utländsk/svensk bakgrund,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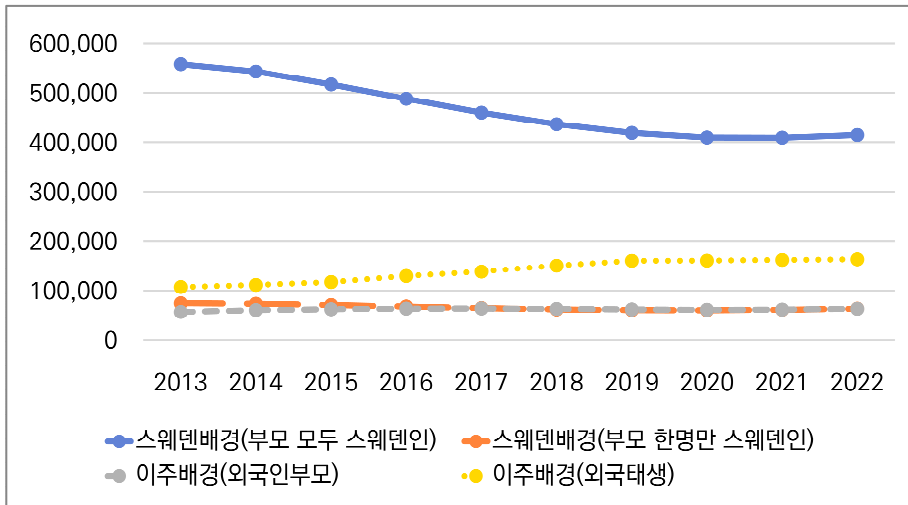


그림 IV-13. 스웨덴배경 및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비교

④ 이주배경청소년 국가지역별 비교

스웨덴의 후기청소년의 출신국을 국가지역별로 구분하면 스웨덴, 북유럽 또는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유럽과 EU를 제외한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스웨덴 출신이 540,470명(76.8%)으로 전체 후기청소년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출신이 84,017명(11.9%)으로 많았고, 아프리카 30,456명(4.3%), 북유럽 또는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 출신이 28,573명(4.1%), 북유럽과 EU를 제외한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출신이 19,933명(2.8%)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후기청소년의 국가지역별 변화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그림 IV-14]와 같다. [그림 IV-14]를 보면, 스웨덴 출신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비율이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V-23. 후기청소년기 국가지역별 비교 (최근 5년 비교)

(단위: 명)

지역 구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스웨덴	560,489	540,564	530,089	531,318	540,470
북유럽 또는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	26,549	26,743	26,272	26,867	28,573
아프리카	26,124	28,313	29,181	30,384	30,456
아시아	77,073	84,399	84,659	84,356	84,017
북유럽과 EU를 제외한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20,163	20,576	20,244	20,143	19,933

* 출처: SCB Statistikdatabasen (2023.02.22.). Utrikes födda,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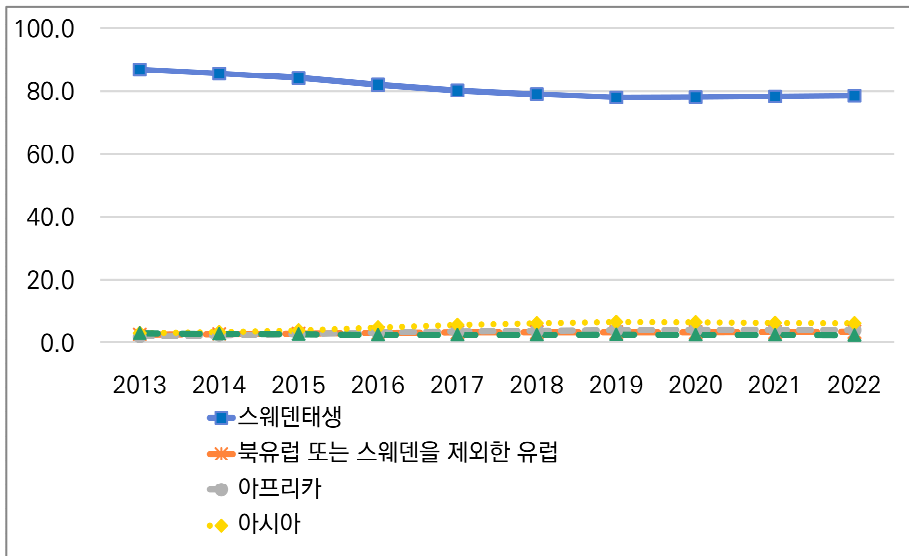


그림 IV-14. 후기청소년기 국가지역별 규모 비교

(3) 스웨덴의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체류정책

①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장기 체류 기준 자격 조건⁶⁷⁾

스웨덴에서 19세 이상의 외국국적자가 장기거주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전부터 스웨덴에서 거주한 자’ 외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든지, 거주허가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스웨덴에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장기거주를 위해 거주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1. 시민권 취득

□ 성인(20세 이상)의 일반적인 시민권 취득 관련 요건

스웨덴 시민권은 연령, 신분확인, 거주기간, 국내법 준수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성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며, 스웨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경우로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⁶⁸⁾했어야 한다. 만약

67) 이 부분은 스웨덴 이민청 홈페이지(<http://www.migrationsverket.se>)를 주로 참고했다.

68) 특정 개인에 대해 5년 이상 상주해야 한다는 요건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이주를 간 전 스웨덴 시민권자가 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 둘째, 스웨덴 선박회사에 고용된 국세청에 등록된 사람의 경우, 셋째, 스웨덴

스웨덴 외의 국가에서 1년 중 총 6주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스웨덴 체류 상주 기간에서 차감 된다.⁶⁹⁾ 북유럽 시민의 경우 상주 요건에서 제외되며, EU/EEA 시민 또는 그 가족의 경우에는 상주 요건을 충족해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⁷⁰⁾에 연루되지 않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도 시민권 신청해야한다. 자녀의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거주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적 보호자(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보호자(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12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이 외에 무국적자이거나 난민의 경우 스웨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 스웨덴에서 거주해야 한다. 난민의 경우 난민 할당으로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시민권 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난민 체류 허가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12세 미만에 스웨덴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웨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북유럽 내 취업과 이동이 자유롭고 EU/EEA 내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스웨덴 군대 입대가 가능하고, 경찰, 판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주권은 중대 범죄에 연루 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수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없다.

□ 후기 청소년기(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시민권 취득 관련 요건

18세에서 2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스웨덴에서 13세 이후 계속 거주했으며(무국적자의 경우 15세 이후), 스웨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 또는 기타 이유로 보호 대상자인 경우, 또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웨덴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시민이며 18-20세인

사람으로 스웨덴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된 사람의 경우, 넷째, 스웨덴 시민과 해외에서 혼인 또는 동거로 관계를 10년이상 지속한 사람의 경우가 해당된다.

69) 단기 방문, 초청연수, 오퍼 등을 위해 거주허가를 받았거나, 스웨덴에 임시 거주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 기간이 상주 거주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른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상주 거주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스웨덴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의사가 있는 경우 학업 동안의 기간을 체류 상주 기간으로 허용하고 있다.

70) 스웨덴 국세청에 의해 미지급 채무가 밝혀지는 경우, 범죄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스웨덴 보안 검색에 저촉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되며, EU/EEA 시민인 경우 거주허가증을 갖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것을 입증⁷¹⁾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①-2. 영주권 취득

□ 성인(20세 이상)의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 관련 요건

스웨덴에서 영주권은 본인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먼저 EU/EEA 시민이라면 영주 거주권 증명서(Intyg om Permanent uppehållsrätt)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EU 법률에 따라 최소 5년 동안 거주권을 가지고 스웨덴에 거주했으며,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동으로 영구 거주권을 얻게 된다. 영주 거주권 증명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로 새로운 거주상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주 상태를 문서화 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2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거주권을 잃을 수 있다.

다음으로 영주권 카드(Permanent uppehållskort)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EU/EEA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발급받는 영주권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신청 가능하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영주 거주권 증명서 발급과 같이 스웨덴을 2년 이상 떠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영주 거주권 증명서와 영주권 카드는 18세 이상이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거주 허가를 갱신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취업 비자의 경우 업종이 전환될 경우 다시 거주 허가를 변경해야 하지만, 영주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스웨덴 내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타국에 있는 가족을 스웨덴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 후기 청소년기(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영주권 취득 관련 요건

일반 성인과 동일한 과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EU/EEA 국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전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의 여부를 밝혔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무국적자이거나 난민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71)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명세,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학업을 한 경우 학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졸업하게 되면,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스웨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①-3. 영주권 외 장기 거주

□ 성인(20세 이상)의 일반적인 장기 거주 요건

스웨덴에서 90일 이상을 머무를 경우 거주 허가증(Permanent uphållstillstånd/PUT)이 필요하다. 장기 거주 허가증은 EU 법률이 아닌 스웨덴 법률에 따라 스웨덴 이민국에서 부여하는 허가증이다. 따라서 일자리, 학업, 가족, 연구 등을 위해 스웨덴에 장기 거주할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거주 허가가 승인 되면 거주 허가 카드(Permanent uphållstillståndskort/UT-kort)를 받을 수 있는데, 허가 유형에 따라 2-4년 거주한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 전까지 스웨덴에 머무르고자 할 때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고용주로부터 재승인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 1년 이상 거주 허가를 받을 경우 개인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개인번호가 등록되면 사회서비스(의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후기 청소년기(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장기 거주 요건

후기 청소년의 경우 취업, 자영업, 공연예술가, 오페어, 워킹홀리데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거주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나, 오페어와 워킹홀리데이는 최대 연령이 제한된다. 그리고 거주 기간은 대체로 1-2년 정도로 기간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스웨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취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영주권의 기본 요건인 체류기간(4년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취업

스웨덴 내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을 한 경우 해당 고용주의 승인을 통해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주 허가증을 취득 할 수 있다. 거주 허가증은 해당 업종에 종사할 경우에 한정하여 거주 기간을 허락한 것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이직을 할 경우 거주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계속해서 거주를 원할 경우 고용주의 승인(재계약 등)을 통해 거주 허가를 연장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4년 이상일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자영업

18세 이상으로 스웨덴 내 법인 등을 설립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민국에 거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 허가는 최대 2년까지 주어지며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할 경우 거주 허가를 연장해야 한다. 취업 거주 허가과 마찬가지로 업종은 변경할 수 없고, 거주 허가 연장을 위해서는 세금 납부 내역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거주 허가 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공연예술가

18세 이상이며 공연예술가(가수, 음악가, 댄서, 서커스 공연자, 배우, 감독 및 영화제작 관련 등)의 경우 해당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을 통한 거주 허가과 비슷하다. 스웨덴 단체와 협약을 맺었거나 해당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고용 계약⁷²⁾을 맺은 경우 해당 거주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계약을 맺은 단체)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후 거주 기간이 4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학생 (학부, 석박사과정, 교환학생)

스웨덴에서 학생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학교나 대학원의 입학 승인서가 있어야 하고 재학 기간 동안 거주 허가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향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학업 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학업 도중 취업을 해서 거주 허가증을 전환하든지, 학업 이후 바로 취업을 하여 거주 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법이 수정되면서 석박사과정에 재학한 학생들은 졸업 이후 3개월~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그동안에 취업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하여 거주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교환학생의 경우 거주 허가는 제한적이며, 1년 이상의 거주허가 대신 6개월 정도로 짧게 발급 되는 경향도 있으므로 장기 체류는 사실상 제한적이다.

㉣ 오페어 (Au pair)

스웨덴에서 오페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이 18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가능

72) 월급을 세전 SEK 13,000 이상을 지급받아야 가능하다

하다.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가족과 근로계약을 맺고 주당 최대 25시간 동안 가벼운 가사노동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⁷³⁾ 또한 종합 건강 보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체류 중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 1년 이내로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다른 유형의 거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㉞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는 호주, 홍콩,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시민의 경우에 가능하다.⁷⁴⁾ 18세부터 30세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스웨덴에서 처음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증빙⁷⁵⁾해야 한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 건강 보험이 있어야 하며 동행하는 자녀가 없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 거주 허가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추후 연장되지 않으므로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다른 유형의 거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㉟ 국제교류를 통한 연수

국제교류를 통한 연수 거주 허가는 18세 이상 후기 청소년 기간의 연수생이나 실습생들이 포함된다. 연수생의 경우 학업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학업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실습생의 국제협약⁷⁶⁾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 거주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장기 거주 자격 부여의 이유와 기본 원칙

스웨덴 이민 정책의 기본은 인권 존중으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평등 이념을 통해 스웨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배경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재판과 소송 등에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며 표현, 종교, 결사, 집회에 관한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Swedish Parliament, 1995). 이러한 사회적 이념은 외국인이 스웨덴에 거주하고자 할 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73) 가사노동과 학업 시간을 합해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4) 아르헨티나, 칠레, 우르과이 등의 국가와는 전염병으로 인해 당분간 협정이 중단되었으며, 추후 변경 가능하다.

75) 생활비는 최소 월 SEK 15,000가 있어야 하며, 왕복항공권을 소지한다면 유리하다

76) AIESEC, IAESTE, JUF 및 SACCUSA와 같은 조직 내 국제 교환 프로그램

거주를 목적을 할 경우에도 다른 국가와 달리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2000년 후반부터 사회 곳곳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테러와 폭동이 잦아짐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자국 체류에 대한 검증이 예전보다 강화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장기 거주(영주권 취득을 기준)를 위한 기본 요건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체류 기간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의 시간을 연속적으로 머물러야 한다. 근로자나 자영업의 경우 보통 거주 허가증 만료 기한이 2년이므로 갱신을 통해 2년을 더 거주한 후에 신청할 수 있고, 박사과정 학생은 4년 동안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유효한 거주 허가증의 소지이다. 스웨덴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 허가증이 필요한데, 영주권 취득 전 그 사람의 신분(국적, 체류 목적 등)을 증명해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셋째, 자신(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비용 별도 추가로 필요)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23년 기준 스웨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성인 1인당 비용은 월 SEK 5,717⁷⁷⁾으로 연 소득이 최소 약 SEK 68,600은 있어야 한다.⁷⁸⁾ 넷째, 질서 있는 생활이다. 스웨덴에서 체류하는 동안 범죄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경우 영주권이 제한될 수 있다. 스웨덴에서의 영주권 취득 조건은 후기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청소년기부터 스웨덴에서 거주하였다면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 동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나, 당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 거주 요건을 만족 시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스웨덴에서 교육과정을 마쳤고, 스웨덴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은 공공고용서비스청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스웨덴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스웨덴에서 교육과정⁷⁹⁾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구직 요령도 갖추지 않아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크게 어렵다고 보인다.

③ 장기 거주 허가증을 지닌 경우 취업 가능 범위

스웨덴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일반 거주 허가증을 취득했을

77) 2023년 9월 12일 기준 1 SEK=119.69, 한화 약 684,267원

78) 성인 1인당 비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이민국이 영주권 결정을 내리 전 18세 미만이거나, 연금수급자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난민, 망명 등)에는 예외 적용한다.

79) 스웨덴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는지 정도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면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언어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때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 영주권을 발급 받은 경우 취업의 범위가 넓어져 EU/EEA 국가 및 스위스에서도 자유롭게 취업 할 수 있고, 스웨덴 내에서도 자유롭게 직업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 군인 등의 직종은 시민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거주 허가증은 영주권보다 취업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일단 스웨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거주 허가증을 발급 받을 때 거주 목적이 명시되기 때문에 해당 영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주 허가증 뒷면에는 거주 허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직종인지가 명시되며 만약 직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려면 거주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주 허가증은 최대 2년까지 발급되며, 장기 거주를 원할 시 2번 갱신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령이 19-34세 미만인 경우에는 오페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스웨덴에서 체류하며 장기적인 취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어가 되지 않으면 스웨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개인번호가 없는 경우 공공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거주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스웨덴 내 있는 다국적 기업에 취직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향이 높다.

④ 정책적으로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집단

스웨덴에서 정책적으로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집단은 없고, 다만 이주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스웨덴에서 장기 거주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로 War Child라는 단체의 활동이 있다.⁸⁰⁾ 이 단체는 정부 기관인 공공고용서비스청 및 Nordisk Kompetens와 연계하여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구직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이력서 작성, 구직 플랫폼 등록 등)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기업 전문가들과 1:1 매칭을 통한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스웨덴 기업인 스카니아(Scania)와 협력을 맺고 실제 멘토링이 취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 스웨덴의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스웨덴은 평등 이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선주민과 이주배경자와의 차이를 크지 않다. 특히 시민권자의 경우 선주민과 거의 동일하다. 스웨덴 선거에도

80) War Child (n.d.). PROJEKT I SVERIGE, <https://www.warchild.se/projekt-i-sverige/> 에서 2023년 9월 17일 인출

참여할 수 있고, 경찰이 되거나 군인이 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스웨덴 내 유명 정치인 중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도 선거권이 나 직업선택 시 제한적인 부분은 있으나 그 외는 시민권자, 선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주배경자 중에도 국적은 크게 상관없으나 어떤 목적으로 스웨덴에 체류하게 되었느냐에 따라 스웨덴에서 정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스웨덴에 정착한 경우에는 이미 스웨덴에게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며, 2세의 경우에도 크게 문제없이 스웨덴 사회에 잘 적응을 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 난민 자격으로 스웨덴에 정착하게 된 경우에는 초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지속되지 않으면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2세들의 경우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사회 불만이 커지는 등 사회 적응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에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은 사회 공공보건국(Minister for Social Affairs and Public Health)이며, 주요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위 기관으로 스웨덴 청소년 및 시민사회기관(Swedish Agency for Youth and Civil Society)이 있다. 이 기관에서는 후기청소년기를 포함하여 청년 관련 정책 및 시민 사회 관련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① 이주배경청소년 자립 지원정책⁸¹⁾

스웨덴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16세 이후부터 스스로 본인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16세까지 자녀 양육의 의무를 지니며, 개인 상황(고등교육 진학)으로 인해 학업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최대 21세까지만 법적으로 양육의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스웨덴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16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16세 이후부터 20세 미만까지는 스웨덴 학생 재정 위원회(The Swedish Board of Student Finance)를 통해 학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18세까지는 아동수당과 같이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에게 지급되지만, 18세 이후부터는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듯 스웨덴 학생 재정 위원회에서의 지급하는 보조금과 학자

81) 이 부분은 스웨덴 학생 재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sn.se>)를 주로 참고했다

금 대출도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스웨덴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장기거주자의 경우도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EU/EEA⁸²⁾ 또는 스위스 시민권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특별한 조건⁸³⁾을 더 충족해야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

스웨덴 학생 재정 위원회는 학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로 하지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대출, 가전제품 구입을 위한 대출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기도 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대출 지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8-24세를 위한 대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고용서비스청(Arbetsförmedlingen)에서 실시하는 노동 시장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는 25-47세를 위한 대출로 신청 당시 실직 상태이며, 공공고용서비스청에서 실시하는 노동 시장 정책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출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SEK 15,000⁸⁴⁾까지 지원된다. 총 3회에 나눠 SEK 5,000⁸⁵⁾씩 지급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대출금은 상환해야 한다.

가전제품 구입을 위한 대출은 2021년까지만 이루어지고 현재는 폐지되었다. 스웨덴으로 새롭게 이주한 학생, 난민, 외국인들이 거주를 위해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집의 규모, 가족의 수, 집을 빌린 경우 가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이 달라지며, 2023년 기준 이자율은 1.7%이며, 대출을 받은 후부터 2년 내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스웨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언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계층(난민 등)에게는 언어 과정 이수 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 학업(진로) 지원정책⁸⁶⁾

②-1. 스웨덴 학생 재정 위원회의 학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스웨덴은 학생 재정 위원회를 통해 학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82) 유럽연합 (EU), 유럽경제자유구역 (EEA)

83) 부모 중 한 사람이 스웨덴 시민권자이거나, 결혼 또는 동거를 통해 거주 허가를 받은 자, 스웨덴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개인번호가 있는 자, 만 20세 미만의 경우 부모로 인해 스웨덴으로 왔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84) 2023년 9월 12일 기준 1 SEK=119.69, 한화 약 1,795,350원

85) 2023년 9월 12일 기준 1 SEK=119.69, 한화 약 598,450원

86) 이 부분은 스웨덴 학생 재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sn.se>)를 주로 참고 했다

우선 스웨덴 학생 재정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학업을 위한 보조금은 전문대학(Högskola), 대학(Universitet), 직업학교(Yrkeshögskola), 성인학교(Komvux), 민속학교(Folkhögskola), 고등학교(Gymnasiet), 해외유학(Utlandsstudier), 고등교육 또는 예술 및 문화학교(Konst- och kulturutbildning), 부모를 위한 수화교육(Teckenspråksutbildning föräldrar, TUFF) 등을 공부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이중에서 후기 청소년기에 신청 가능한 보조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년들이 다니는 성인학교 또는 민속학교, 전문대학이나 직업학교 진학 시에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전일제 학생이어야 하며, 무단결근을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다. 학업을 위한 기본 보조금은 SEK 1,250⁸⁷⁾가 지급되며, 이외에 가정의 전체 연소득이 SEK 125,000⁸⁸⁾ 미만이면 추가 보조금⁸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시립 고등학교나 민속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지역이 달라 통학거리가 먼 경우 통학 보조금⁹⁰⁾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교과과정에 실습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SEK 1,000⁹¹⁾가 지급되며, 전일제 학생이 아닌 직장 급여 수급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국립 장애인 고등학교(청각, 난청 등)에 재학 중이라면, RG 보조금(Riksgymnasium Bidrag)을 신청할 수 있다. RG 보조금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수령할 수 있는 학업 보조금, 통학 보조금, 실습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유학이나 예술 및 문화학교 진학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유념한다. 그리고 박사과정이나 이와 유사한 고등교육 과정은 학업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면, 20세-61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기준 이자는 0.59%로 저렴하다.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스웨덴 학생 재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⁹²⁾에 등록해야 하며,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과정, 박사과정(이와 유사한 과정), 예비군 훈련 및 전문 장교 사관학교, 위탁교육(직장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87) 2023년 9월 12일 기준 1 SEK=119.69, 한화 약 149,612원

88) 2023년 9월 12일 기준 1 SEK=119.69, 한화 약 14,960,932원

89) SEK 85,000 미만이면 SEK 855, SEK 85,000-104,999이면 SEK 570, SEK 105,000-124,999이면, SEK 285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90) 0-44㎡ SEK1,190, 45-84㎡ SEK 1,315, 85-124㎡ SEK 1,400, 125-174㎡ SEK 1,625, 175-224㎡ SEK 1,770, 225-599㎡ SEK 1,875, 600-899㎡ SEK 1,900, 900-1299㎡ SEK 2,100, 1300㎡ 이상 SEK 2,350

91) 2023년 9월 12일 기준 1 SEK=119.69, 한화 약 119,690원

92) 스웨덴 학생 재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s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하는 과정 등) 등은 학자금 대출 지원에서 제외된다. 학업 이수정도(전일제, 시간제 75%, 50% 등), 학업 기간, 소득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제 학생의 경우 최소 50% 이상은 학업에 할애를 해야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보충 교육(선이수)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학업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시민권자이거나 EU/EEA 또는 스위스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거주자의 경우 신청가능하다.

②-2. 스웨덴 교육청⁹³⁾에 의한 모국어 또는 가장 친숙한 언어 학습 지원

스웨덴 교육법 제3장12절에 의하면 스웨덴 내 외국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들은 이주 이후 학습에 익숙해질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모국어로 학습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모국어 뿐 아니라 전쟁이나 망명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 제3국에 머물렀을 경우 모국어보다 더 친숙한 언어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난민들의 경우 특별 지원을 통해 모국어 학습 및 보충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

③ 이주배경청소년 취업 및 노동 지원정책⁹⁴⁾

③-1. 노동 시장 재진입을 위한 학업 보조금 지원

스웨덴에서는 의무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실직한 후 다시 재취업을 위해 학업 시작할 경우 입학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이 보조금은 25-60세에 지원할 수 있고 공공고용서비스청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1주 또는 4주 단위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학업 이수정도(전일제, 시간제 75%, 50% 등), 학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표 IV-24 참조), 자녀가 있다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학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동안 소득이 있어도 되지만 일정 소득이 넘으면 보조금이 감소한다. 주택수당과 아동수당은 학업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업수당, 육아수당 등은 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3) 이 부분은 스웨덴 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skolverket.se>)를 주로 참고했다

94) 이 부분은 스웨덴 학생 재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sn.se>)를 주로 참고 했다

표 IV-24. 노동 시장 재진입을 위한 학업 보조금

(단위: 크로나)

구 분	1주	4주
전일제 (100%)	2,493	9,972
시간제 (75%)	1,869	7,476
시간제 (50%)	1,249	4,996

* 출처: CSN (n.d.). Bidrag och lån för studier, <https://www.csn.se>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③-2. 업무 전환을 위한 학업 보조금 지원

업무 전환을 위한 학업 보조금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려고 하거나 자기 분야를 보다 심화하려고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27-62세 사이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전환하려는 직종이 인기 직종이거나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신직종이거나 비인기 직종의 경우 유리하다. 그리고 직장에서 특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학업 이수정도, 학업 기간(최소 20% 이상 수업 이수)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지원은 중복되지 않고, 만약 끝나지 않은 과정이 있다면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료한 이후 새로운 과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학교 등록금 등 대학생 지원

스웨덴 내 자국민 뿐 아니라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국립대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며, 거주 허가증을 지닌 경우도 일부의 경우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감액된다. 사립대의 경우도 국립대만큼의 비용은 감액되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대학원의 경우에는 자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만 국립대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스웨덴은 스웨덴 학생 재정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외에 학업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을 통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고, 스웨덴 연구위원회를 통해 각종 장학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소수 민족을 위한 장학금, 자국(본래 국적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 등 다양한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갈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스웨덴 학생 재정위원회에 별도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스웨덴 내에서 공부할 때 드는 비용만큼

해당 국가의 물가를 반영하여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해 해당되며 자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업보조금과 학자금 대출도 신청가능하며, 이때도 해당 국가의 물가를 반영하여 자국 내 신청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때도 장학금을 통해 학비를 지불해야 할 경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스웨덴은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가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이주배경을 가진 후기청소년기 대상자들도 크게 증가했다. 2002년 전체 후기청소년기 대상자(617,492명) 중 이주배경 후기청소년(107,546명)은 약 17%였으나, 2022년 현재 후기 청소년기 대상자(703,389명) 대비 이주배경 후기청소년(225,784명)은 약 3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이후 대규모 난민 유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유추된다. 이주배경을 가진 후기청소년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스웨덴 사회에 미래 사회를 책임질 중요한 동력으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스웨덴 배경을 가진 자와 동일하게 이주배경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노동, 자립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재정위원회를 통해 학업에 필요한 재정(학업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스웨덴 교육청을 통해 모국어 또는 가장 친숙한 언어로 학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청을 통해 16세 생일 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독립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고용서비스청을 통해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취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스웨덴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일정 단계를 이수하면 학업 격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으 수 있는 것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경우이며, 18세 이후 스스로 스웨덴으로 와서 정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적이다. 대체로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스웨덴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크게 세 가지 인데, 첫 번째는 부모를 따라 이주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북유럽, EU, EEA, 스위스 국적이 아니라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거주 허가가 유효하고, 거주 기간이 5년을 경과했으며, 12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의만 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여 정착하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거주 가능하다. 두 번째는 난민으로 스웨덴에 온 경우이다. 2016년 이전까지는 난민의 경우 모두 영주권을 발급해줬지만, 이제는 난민 요청 절차를 거친 후 입국한 사람들에게만 일정 기간 후 영주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만약 후기청소년기에 난민으로 비공식(보트 난민 등)으로 입국을 했다면 임시 허가증을 발급받은 이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데, 스웨덴어를 하지 못한다면 장기 체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스웨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기간 동안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8세에 본인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세 이후 스스로 스웨덴으로 온 경우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EU, EEA, 스위스 국적자거나 난민이 아니라면 거주 허가 요건을 갖춘 후 승인이 되면 단기 체류는 가능하지만,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취업이나 결혼(동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한 조건은 쉽지 않다. 하지만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간을 충족했고 스웨덴에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취득도 어렵지 않다. 다만, 18세 이상이 되어 스웨덴으로 홀로 입국한 경우에는 한국과 같이 취업이나 결혼 등을 통한 장기 체류 외에는 지속적인 거주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스웨덴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후부터 스웨덴에서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면 시민권(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는 스웨덴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 거주하는 후기청소년(18세 미만까지만)의 경우 이주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교육,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21세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 해결을 통해 스웨덴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공공고용노동청이나 코뮌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취업 교육과 훈련,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주배경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캐나다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체류정책⁹⁵⁾

(1) 캐나다 이민의 역사

① 역사적 맥락

캐나다 이민의 역사는 16세기 프랑스 주민들의 이주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주민이 북미지역에 진출한 최초의 목적은 원주민과의 모피 거래 등 상업적인 이유가 컸다. 그러나 16-17세기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 시기와 함께 프랑스도 식민지 개척의 일환으로 캐나다 동부 지역에 프랑스 주민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과열된 식민지 확장으로 북미 지역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영국이 승리하였다. 그 결과 북미지역의 프랑스 식민지는 영국에 할양되었다(문영석, 2005).

영국은 광활한 캐나다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프랑스계 주민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영국계 주민의 유입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프랑스계 주민은 퀘벡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었고,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영국계 주민이 대거 이주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황무지를 개관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강한 농민의 이주를 환영하였다. 이들은 1896년부터 1911년 사이 캐나다 대평원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서부 개발을 강조한 미국이 캐나다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캐나다로 유입된 이민자는 유럽계 백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인종 및 문화에 대한 편견이 큰 수준이었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어느 국가 출신이냐에 따라 서열이 매겨졌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유색인종의 경우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외국인 취급을 받았으며, 백인보다 열등한 민족으로 여겨졌다(문영석, 2005). 이러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95) 캐나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강해정(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이 집필함.

병참 기지로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른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나 이민자는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존재로 인식하여 이들의 유입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민자의 유입을 통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캐나다인 혹은 백인 위주의 이민자만으로는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수급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전 세계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을 허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과 그 이후 국가 간 전쟁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제 난민이 급증하자 이들의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② 이민정책의 발전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1986년 캐나다 이민법(Immigration Act)을 처음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동 법은 당시 캐나다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민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즉, 장애인, 환자, 저소득층의 이민을 봉쇄하고, 도시근로자, 수공업자 및 상인의 유입을 제한하는 반면 농어민 이민자의 유입을 대거 허용하였다. 또한 출신국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였다. 유럽 출신 백인의 유입은 대거 허용하고 정착이 가능한 농토도 무료로 제공하였다. 반면 유럽계 백인 이외의 출신자에게는 유입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이민정책은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60년대 접어들면서 캐나다는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 특히 숙련 기술자의 부족으로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1962년 차별적인 이민정책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고, 전 세계로부터 이민자의 유입을 환영하는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이민정책의 특징은 1967년에 도입된 점수제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점수제는 민족, 인종,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면 이민이 가능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신청자의 학력, 경력, 캐나다 공식 언어능력, 캐나다 내 취업 유무, 배우자의 교육 수준, 캐나다 내 친인척 거주 유무 등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최서리, 2014).

1971년 캐나다 이민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국가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에 관계없이 법 앞에서의 평등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민자의 가치관과 존엄성을 모든 정책에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구조를 재편성하였고, 캐나다 사회 속에서 다양성과 캐나다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 및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부터 주 정부 추천 이민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연방정부와 2개의 주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주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유입하였으나, 2008년 11개의 주 정부의 참여로 거의 모든 캐나다 주 정부가 주 정부 추천이민제도에 참여하게 되었다(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2017). 지방정부의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원하는 이민자 수요 유형 및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에 오래 머무르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를 지역 기업 및 주·지방정부에서 발굴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Aziz, 2020.0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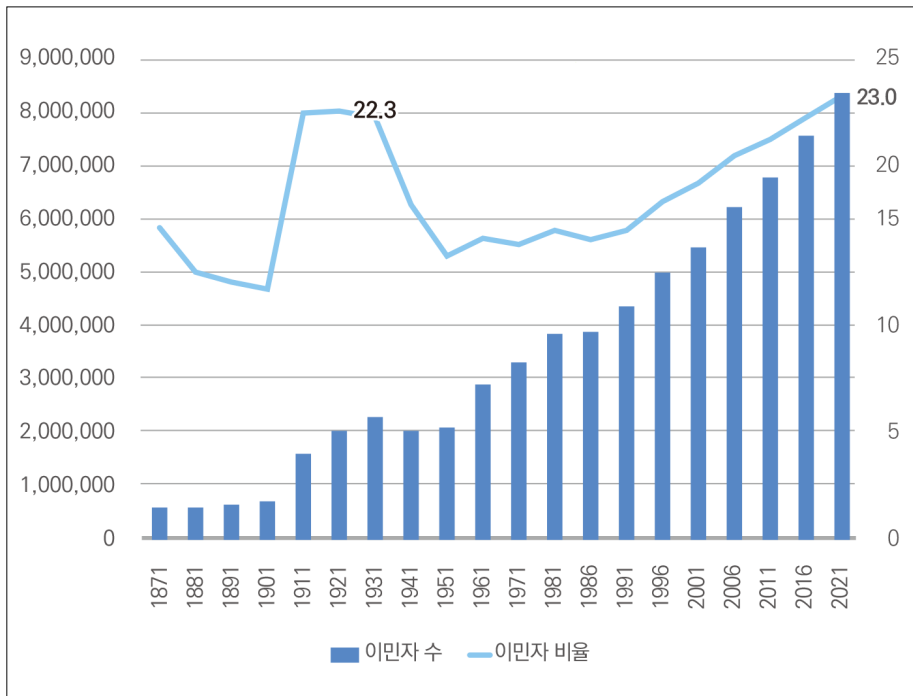
또 하나의 변화는 신속 이민제도(Express Entry)이다. 이는 점수제에 의해 영주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지만 연간 영주이민 도입 쿼터제로 이민신청이 정제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에 신속 이민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 국가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살펴보았듯이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에서 평등하고 개방적인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평등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캐나다가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을 함께 지향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정책 변화의 근간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캐나다 내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모두 동등한 캐나다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가치로써 캐나다의 모든 제도와 체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동등한 캐나다 사회 구성원이라는 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유지라는 순환적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 결과 캐나다는 인종적 다양성,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응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다(김영순 외, 2019).

(2) 캐나다의 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① 캐나다 이민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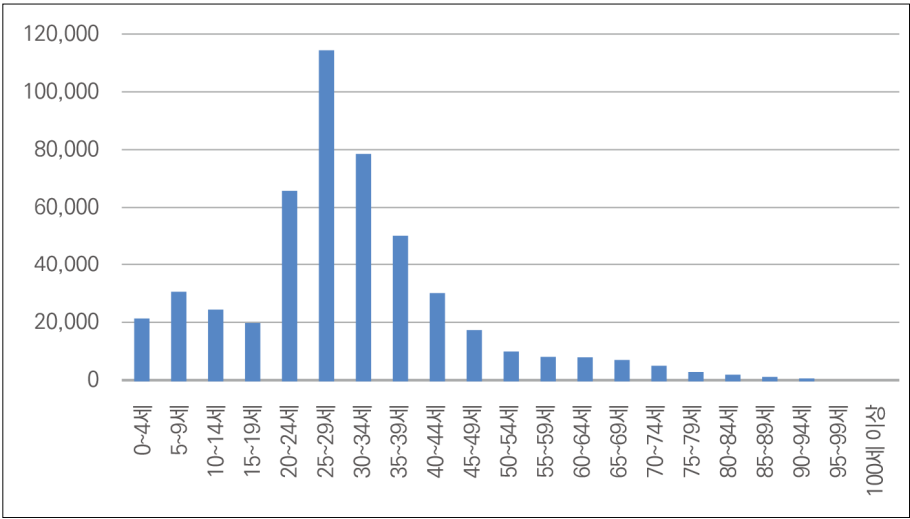
2021년 캐나다 이민자는 830만 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고,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Canada Statistics, 2022).



* 출처: Canada Statistics. (2022a). Canada at Glance, 2022, <https://www150.statcan.gc.ca/n1/pub/12-581-x/2022001/sec2-eng.htm>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그림 IV-15. 캐나다 이민자 수 및 비율

캐나다 이민자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5-29세가 114,650명으로 가장 많고, 30-34세는 78,394명, 20-24세는 65,407명으로 후기청소년인 20세에서 34세까지가 가장 많이 이주하였다(StatCan, 2022.09.28).



* 출처: StatCan (2022.09.28.). Number of people immigrating to Canada in 2022, by age [Graph].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43305/international-migrants-in-canada-2014/> 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그림 IV-16. 연령에 따른 캐나다 이민자 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캐나다 이민자의 대다수(95.8%)가 65세 미만이다. 신규 이민자 10명 중 1명은 15-24세의 청년(10.9%)이고, 대부분(64.2%)은 25-54세의 핵심 근로 연령층에 해당한다. 신규이민자 중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약 1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출신(중동 포함)이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는 1971년에는 12.1%였으나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62.0%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유럽 출신의 이민자 비율은 50여 년 동안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971년 기준 신규이민자의 61.6%가 유럽 출신이었는데, 2021년에는 10.1%로 감소하였다. 캐나다 신규 이민자의 주요 출생지를 살펴보면, 인도가 18.6%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11.4%), 중국(8.9%), 시리아(4.8%), 나이지리아(3.0%) 순으로 나타났다(Canada Statistics, 2022b).

표 IV-25. 캐나다 이민자 주요 출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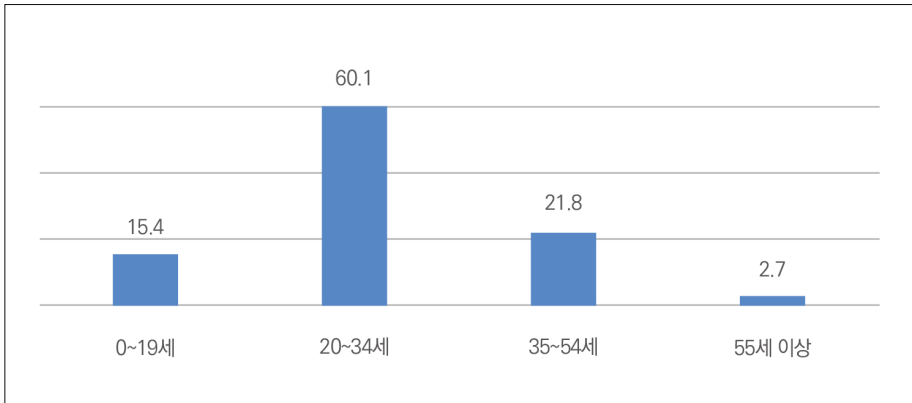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2021	2016	순위	국가명	2021	2016
1	인도	18.6%	12.1%	6	미국	3.0%	2.7%
2	필리핀	11.4%	15.6%	7	파키스탄	2.7%	3.4%
3	중국	8.9%	10.6%	8	프랑스	2.0%	2.0%
4	시리아	4.8%	2.5%	9	이란	1.9%	3.3%
5	나이지리아	3.0%	1.4%	10	영국	1.7%	2.0%

* 자료: Canada Statistics (2022b). Immigrants make up the largest share of the population in over 150 years and continue to shape who we are as Canadians.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221026/dq221026a-eng.htm>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② 이주배경 집단의 범주

캐나다는 이주배경 집단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먼저 캐나다 통계청(2021)에 따르면 캐나다의 이주배경 집단은 캐나다 출생 여부를 기준으로 3개의 세대(generation)로 구분한다. 1세대(the first generation)는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혹은 한때 캐나다 이민자였던 사람들을 포함한다. 2세대(the second generation)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 3세대 이상(the third generation or more)은 본인과 부모 모두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나 그 이상의 조상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나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1세대는 전체 캐나다 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2세대는 17.6%를, 3세대 이상은 56.0%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이민 유무에 따라 이주배경 집단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민 유무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를 비이민자(non-immigrant), 이민자(immigrant), 비영주권자(non-permanent residents)로 구분한다. 여기서 이주배경 집단은 이민자와 비영주권자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민자는 캐나다 인구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젊은 층이 전체 이민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비영주권자(non-permanent residents)의 규모는 924,000명으로 캐나다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60.1%는 20세에서 34세인 후기청소년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을 살펴보면 인도 출신이 28.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10.5%), 프랑스(5.1%), 필리핀(3.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0%로 8위에 해당한다(Canada Statistics, 2023.06.27).



* 자료: Canada Statistics (2023.06.27). A Portrait of non-permanent residents in Canada.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27-m/11-627-m2023039-eng.htm> 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그림 IV-17. 연령에 따른 캐나다 비영주권자 비율

한편 고용 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에서는 이주배경 집단을 가시적 소수자(visible minority)로 명시한다. 가시적 소수자는 캐나다 원주민과 백인(Caucasian)이 아니면서 피부색이 흰색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된다. 남아시아인, 중국인, 흑인, 필리핀인, 아랍인, 라틴 아메리카인, 동남아시아인, 서아시아인, 한국인, 일본인 등 가시적인 생김새 및 피부색 등으로 백인과 구분되는 사람으로써 대부분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이 해당한다. 2021년 가시적 소수자 인구는 총 9,639,205명으로 전체 캐나다 인구의 26.5%를 차지한다.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아시아인이 7.1%, 중국인 4.7%, 흑인 4.3%, 필리핀인 2.6%, 아랍인 1.9%, 남미인 1.6%, 동남아시아인 1.1%, 서아시아인 1.0%, 한국인 0.6%, 일본인 0.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Canada Statistics, 2023.02.10).

③ 이주배경 청소년 집단 규모

15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캐나다 후기 청소년의 인구는 2018년 기준 700만 명을 넘어섰다. 캐나다 후기 청소년 인구는 전체 캐나다 인구의 약 19.2%를 차지한다. 캐나다 후기 청소년 인구 중 약 27%는 이민자 배경(visible minority group)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6년 13%와 비교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토론토(56%), 밴쿠버(55%), 캘거리(35%), 몬트리올(26%) 등 대도시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anada Statistics, 2019).

캐나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캐나다 출생 여부(generation)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캐나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약 21%는 1세대 이주배경 청소년이고, 20%는 2세대 이주배경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토론토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76%가 1·2세대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약 38%는 1세대 이주배경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자체가 이민자이고, 37%는 2세대로서 부모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신자인 것이다(Statistics Canada, 2019). 이주배경 청소년 집단의 인종·문화적 배경은 북미(35.8%), 유럽(52.18%), 캐리비언(2.83%), 중남미 아메리카(2.53%), 아프리카(3.91), 아시아(21.5%), 오세아니아(0.3%), 원주민(8.14%) 등이다(Diversity Institute, 2023.03.).

(3) 캐나다의 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체류정책

① 캐나다의 신분 및 체류 제도

캐나다의 이주배경청소년(children with an immigrant background)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중도입국한 청소년, 외국인 부모이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 캐나다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 다양한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거주권자 등 체류 신분은 상이하다. 따라서 먼저 캐나다의 신분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신분 및 체류 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는 시민권법(the Canadian Citizenship Act)과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이 있다. 캐나다 시민권법은 캐나다 국민의 신분을 명시한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하면 캐나다 거주자들의 법적 신분(Legal Status)은 영구 신분(Permanent status)과 임시 신분(Temporary status)으로 구분된다. 영구 신분은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캐나다인으로서의 국적을 갖추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선 시민권자(Canadian Citizen)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s)를 포함한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지만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캐나다 영주권자는 모국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임시 신분은 캐나다에 일정기간 동안 체류할

96) 시민권자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와 귀화한 경우로 다시 구분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귀화 시민이라고 한다. 귀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 최소 3년 이상 캐나다 내에서 체류해야 하고 캐나다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 있는 신분으로서 방문자, 학생,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받은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에만 캐나다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민난민보호법은 캐나다에 입국 및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의 법적 신분을 평가하고, 관리하며 행정 처리하는 데 근간이 되는 법이다. 동 법은 캐나다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 의거하면 캐나다 체류 자격은 영주이민(Permanent Immigrants), 임시 거주권자(Temporary Resident), 기타로 구분한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부의 승인 하에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이민 심사를 통해 취득 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경제 이민자, 가족초청 이민자, 난민(정부지원, 민간지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민자는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경제이민자의 경우 기술, 학력, 재정 등 캐나다 노동시장에 즉각적으로 참여하여 캐나다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직접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영주권은 기술(skill), 교육수준(education), 취업경험(work experience), 거주기간, 공식언어능력 등을 갖춘 후 심사에 의해 취득 가능하며, 각 요건은 영주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다.⁹⁷⁾ 가족초청 이민자는 캐나다 영구 신분을 취득한 자가 부양가족을 캐나다로 데려와 가족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이민유형 중 하나로써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난민은 캐나다로의 난민 신청 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치, 종교 등의 이유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캐나다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임시 거주권자(temporary residents)는 캐나다 이외의 국적을 지니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방문(visit), 학업(study permit), 취업(work permit) 등 캐나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유효기간 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방문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학업 비자의 경우 캐나다 공식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 이수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취업 비자의 경우도 취업계약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학업이 더 필요하거나 취업을 유지하고자 할 때, 교육기관 및 취업기관의 건강검진서 등과 함께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승인을 받은 후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IRCC, 2021.07.27).

97) 경제이민의 유형 중에서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은 재정 매니저, 건축 등 특정 직업 및 분야에 관련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며,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은 특정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표 IV-26. 캐나다 체류 신분 구분

영주 이민자	임시 거주자
- 경제이민(economic immigrant) - 가족후원이민자(Immigrant sponsored by family) - 난민 (refugee) - 기타 이민(Other immigrant)	- 방문자(visitor) -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 임시 고용 외국인(temporary workers)

* 주: 캐나다 이민난민부(IRCC)의 임시거주 신분⁹⁸⁾과 캐나다 통계청의 이민자 유입구분⁹⁹⁾ 등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한편 캐나다 통계청은 이민 유무에 따라 체류자격을 비이민자(non-immigrant), 이민자(immigrant), 비영주권자(non-permanent resident)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이민자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로서 시민권자를 의미한다. 이민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 온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써 귀화 시민, 영주권자를 모두 포함한다. 반면 비영주권자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임시 거주권자인 학생, 취업자 등이 해당한다.¹⁰⁰⁾ 따라서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캐나다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임시거주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② 캐나다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장기체류 조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캐나다에 장기체류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로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임시거주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19세 이상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한국에서는 후기청소년기라고 범주화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성인¹⁰¹⁾으로 인정한다. 성인이 된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비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비영주권자인 이주배경청소년이 캐나다에 장기 거주하기 위한 요건은 일반적인 비영주권자의 장기거주요건과 동일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비영주

98) Government of Canada (2018.07.16.). Temporary resident visa versus temporary resident statu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visitors/status.html>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99) StatCan. (2022.10.18.). Classification of admission category of immigrant, <https://www23.statcan.gc.ca/imdb/p3VD.pl?Function=getVD&TVD=323293> 에서 2023년 9월 3일 인출

100) StatCan. (2023.12.20.). Immigrant status of person, <https://www23.statcan.gc.ca/imdb/p3Var.pl?Function=DEC&id=103339>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101) 캐나다에서 성인의 기준은 주별로 상이하다. 알버타, 마니토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서스캐처원 주에서는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인정한다. 한편 브리티시 콜럼비아, 뉴 브런스윅, 뉴 펀드랜드,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노바 스코티아, 뉴나부트, 유콘주에서는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인정한다(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22. 12.20).

권자는 취업자, 학생, 난민 신청자에 해당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도 취업 비자(Work Permit) 혹은 학생비자(Study Permit)를 획득해야지만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취업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학생비자는 학교에서 허가받은 학기 동안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두 비자 모두 캐나다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해당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기간 연장, 다른 비자 취득 및 영주권 취득을 통해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학생비자로 캐나다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는 캐나다에서 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더 체류할 수 있는 임시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학습 기관(칼리지, 전문 기술학교, 대학 등)에서 학업을 마쳐야 한다.¹⁰²⁾ 해당 학습 기관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위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학업 기간 동안 풀타임 학생(full-time student)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학업을 마친 후 180일 이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하며, 학위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동 비자 소지자는 캐나다의 모든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IRCC, 2023.01.17). 동 비자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업무 경험을 쌓고 향후 Canadian Experience Class 또는 다른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캐나다의 취업비자는 고숙련 노동자(High-skilled occupation) 및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의 가족에게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s)의 부양 자녀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캐나다의 만성적인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 함께 캐나다 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정책은 부모인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직업기준에 따라 TEER 0-3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는 모든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절 농업 근로자 등 TEER 4-5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족은 해당하지 않는다(CIC NEWS, 2023.08.07).

102) 정부가 지정한 학습 기관(eligible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인지의 여부는 캐나다 정부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Government of Canada, 2023.12.19.).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 <https://www.vv.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prepare/designated-learning-institutions-list.html>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표 IV-27. 캐나다 직업분류(NOC2021버전)

TEER	직업 유형	예시
TEER 0	관리직	광고, 마케팅 및 홍보 관리자, 재무 관리자
TEER 1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업	재정 고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TEER 2	대학 학위, 2년 이상의 견습 훈련 등이 필요한 직업	컴퓨터 네트워크, 웹 기술자, 의료 실험실 기술자
TEER 3	대학 학위, 6개월 이상의 현장 실습이 요구되는 직업	제빵사, 치과 조수, 치과 기공소 조수
TEER 4	고등학교 졸업 및 단기간의 현장 훈련	가정보육사, 소매 판매원
TEER 5	정규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단기 직업	조경사, 배달 서비스 운전자, 방문 유통업자

* 출처: Government of Canada (2023.08.23.). TEER categories and examples of job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find-national-occupation-code.html>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③ 영주권 취득

이주배경 청소년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입국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는 Family Class Sponsorship을 통해 가능하다. 부양자녀 후원을 뜻하는 동 프로그램은 영주권 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서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캐나다에서 다시 만나 생활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 자녀가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자녀들의 이민을 후원할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와 자녀가 모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후원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캐나다 정부로부터 소득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후원자는 자녀를 위해 주택, 의류, 음식, 의료비 등을 지원할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자녀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결혼 및 사실혼 관계가 없어야 하며, 22세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자녀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재정적 자립을 하지 못한 경우 25세까지 후원이 가능하다(IRCC, 2020.05.27.).

또 하나는 캐나다에서 학업, 취업 등의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Canadian Experience Class는 캐나다 내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이수하거나 노동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캐나다에 영구 정착할 수 있는 경로로써 캐나다의 중요한 이민 경로 중 하나이다. 학생으로서 CEC를 신청하려면 먼저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학습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임시 취업 허가(PGWP)를 부여 받아야 한다. 취업 허가를 통해 TEER 카테고리 0, 1, 2, 3에 해당하는 직업에서 최소 1,560시간의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영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TEER 0, 1의 업무 경험이 있는 자는 캐나다 공식언어 시험인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7 이상을, TEER 2, 3의 업무 경험이 있는 자는 CLB 5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임시 근로자의 경우 캐나다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work permit)을 받아야 한다. 이후의 조건은 학생으로 CEC 신청 조건과 동일하다.

최근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으로 의료보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The time-limited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를 마련하였다. 동 이민프로그램은 의료보건분야(health or health servic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캐나다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이수한 자 중에서 현재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시 거주자 및 그 가족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 및 그의 가족이 의료보건과 관련된 대학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근무경력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IRCC, 2021.11.08).

(4) 캐나다의 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① 취업 및 노동 지원

캐나다 이민정책의 핵심은 캐나다 경제발전 및 노동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인력 충원이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15-30세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를 미래 캐나다 경제를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이민 유무에 상관없이 취업 및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청소년 고용 및 기술전략(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y, YESS)

청소년 고용 및 기술전략은 2019년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가 발표한 캐나다 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 능력 및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의미한다. 동 전략은 기존의 청소년 고용프로그램인 Skills Link(위기 청소년 고용을 위한 지원 사업), Career Focus(대학졸업자 고용정책), Summer Work Experience(여름방학 일자리 창출 사업)를 통합한 형태로써 청소년들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경험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전략은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가 주도하고 12개 연방부서 및 기관이 참여한다.

동 전략에 기반을 두고 2020년부터 추진된 청소년 고용 및 기술 전략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and Skills Program, YESP)은 15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취업 장벽을 극복하고 캐나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지식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은 취업 장벽에 직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1) 고등학교 조기 졸업 청소년(Youth who are early leavers from high school), 2) 신규 이민자 청소년(recent immigrant youth), 3) 눈에 보이는 소수 집단 청소년(youth from visible minority groups), 4) 장애 청소년(youth living with disabilities), 5) 한부모 가정 청소년(single parent youth), 6) 저소득 가구 청소년(youth living in low-income households), 7) 노숙자 및 불안정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youth experiencing homelessness or precarious housing), 8) 농촌 및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youth living in rural or remote areas)을 포함한다.¹⁰³⁾ 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이력서 및 면접 기술 교육, 직업 체험, 고용주와의 연계, 직업 연계 훈련, 창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 고용 및 기술 전략 프로그램(YESP)은 정부,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service delivery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고용주(employer)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연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service delivery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에서는 취업장벽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취업교육, 기술 및 훈련 제공, 취업 후 일자리 지속을 위한 경력 관리, 취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업무는 경쟁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 단체(non-for-profit organizations), 지방자치단체(municipal governments), 원주민 조직(indigenous organizations), 영리단체(for-profit organizations), 주 및 준주정부기관 및 공기업(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institutions, agencies and Crown Corporations) 등이다. 고용주(employer)는 동 프로젝트에 참여함을 동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파트너

103) IRCC. (2023.11.22.). The 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y,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youth-employment-strategy.html>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로서 훈련받은 청소년을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¹⁰⁴⁾

동 프로그램은 국가 프로젝트와 지역 프로젝트로 구분되는데, 국가 프로젝트는 국가 단위 혹은 3개 이상의 주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고 프로젝트 당 연간 최대 50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프로젝트는 주 및 준주 등 지역 단위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 당 연간 최대 30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프로젝트는 2020년 4월 시작하여 최소 12개월 최대 36개월까지 진행하고 있다.¹⁰⁵⁾

2022년 6월 15-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고용율은 58.5%로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 실업률은 9.2%로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다. 물론 이 수치는 취업장벽에 직면한 청소년을 포함한 전반적인 캐나다 청소년의 취업률 및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지만, 전반적인 캐나다 청소년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데 동 전략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CISION, 2022. 6. 13).

□ 캐나다 여름방학 일자리 사업(Canada Summer Jobs)

Canada Summer Jobs는 청소년 고용 및 기술 전략(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y, YESS)에 따른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모든 캐나다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¹⁰⁶⁾

동 프로그램은 정규 직원이 50명 이하인 비영리조직,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 조직의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을 제공하여 15-30세의 캐나다 청소년들에게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양질의 취업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동 프로그램은 취업 기회의 우선순위를 국가 차원과 지역차원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2023년 국가차원의 우선순위는 장애청소년, 흑인 및 기타 인종차별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노동시장에서 과소 대표되는 그룹의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체 보고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조직, 환경 부분의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지역 차원의 우선순위는 주 및 준주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서 컬럼비아주의 경우 지역관광개발,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의료 및 사회지원, 농·임·어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¹⁰⁷⁾

104) IRCC. (2023.04.11.). Youth Employment and Skills Program: Contact information, <https://agriculture.canada.ca/en/programs/youth-employment-and-skills/contact-information>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105) Ibid (2023.04.11.).

106) Ibid (2023.04.11.).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청소년은 i) 15세에서 30세 미만의 청소년이어야 하고, ii)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법적 인정 난민이어야 하며, iii)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¹⁰⁸⁾ 캐나다 여름방학 일자리 사업은 캐나다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의 복학예정자 중 절반 이상(53.2%)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보다 높은 수치이다(CISION, 2022.06.13).

□ 캐나다 성공을 위한 기술(Skills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기술(Skills for Success) 프로그램은 2021년 5월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의 자금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모든 캐나다인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유지하며 성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캐나다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적응하는 데 필요한 쓰기(writing), 읽기(reading), 수리력(numeracy), 디지털(digital),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적응(adaptability), 창의성(creativity) 및 혁신(innovation), 협업(collaboration) 등 9가지 역량개발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The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2021.05.18).

동 프로그램은 장애인, 원주민, 인종차별 대상인 소수자 집단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맞춤화되었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결여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주민 기술 및 고용 훈련 전략(the Indigenous Skills and Employment Training Strategy), 청소년 고용 및 기술전략(the 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y), 공식 언어 소수자 커뮤니티 지원 기금(the Enabling Fund for Official Language Minority Communities) 등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¹⁰⁹⁾

캐나다 성공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은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에게 최대 75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에

107) Ibid (2023.04.11.)

108) IRCC. (2023.11.22.). Canada Summer Jobs applicant guide: Screening for eligibility,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unding/canada-summer-jobs/screening-eligibility.html>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109) IRCC. (2023.06.02.). About the Skills for Success Program,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literacy-essential-skills.html>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제안서를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단체(non-for-profit organizations), 지방자치단체(municipal governments), 원주민 조직(indigenous organizations), 영리단체(for-profit organizations), 주 및 준주정부기관 및 공기업(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institutions, agencies and Crown Corporations)이다.¹¹⁰⁾

② 진로/진학 지원

캐나다 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만을 위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주배경청소년일지라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 및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특히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정부 지원이 아닌 민간 지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난민과 같이 특수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는 비정부기관의 지원 정책이지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본 고에서 강조하는 정부지원 정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 지원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소개하고자 한다.

□ 장학금 및 대출 지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민이 대학(post-secondary education)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수하고자 할 때 다양한 장학금 및 대출을 지원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장학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체류 신분을 장학금 수혜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장학금이 딕 마틴 장학금(Dick Martin Scholarship Award)이다. 딕 마틴 장학금은 캐나다 산업보건센터(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COHS) 이사회에서 캐나다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관련 선구자인 딕 마틴을 기리기 위해 2002년에 장학기금을 설립하여 매년 2명의 관련 전공자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다. 동 장학금은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학습 기관(전문대학, 대학교, 기술학교 등)에서 광산 안전, 직업/산업 보건 및 안전, 산업 위생, 안전 관리

110) IRCC. (2023.06.02.). Funding: Skills for Success - Overview,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unding/literacy-skills.html>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및 기타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등록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동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에세이, 자기 소개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을 희망하는 학생은 캐나다 시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된 학습 기관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CCOHS, 2020.05.26).

캐나다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배경청소년은 캐나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Loan)을 지원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유학생 등 캐나다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민간 대출(private loan)로서 전문 교육 대출 기관(specialist education loan providers)에서 제공한다. 동 대출을 받기 위해 학생은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학습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 조건을 갖출 경우 보증인(cosigner)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 대출은 캐나다 국적자, 영주권자 등 캐나다 교육기관에 등록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며 대출을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¹¹¹⁾

□ 불확실한 이민 신분을 가진 학생을 위한 접근 프로그램(Access for Students with Precarious Immigration Status Program)

접근 프로그램은 토론토 지역을 기반으로 난민 혹은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이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토론토 지역의 FCJ난민센터, 요크대학(York University), 토론토 대학 등이 협업하여 2017년부터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난민 혹은 불법체류 상태의 이주배경청소년이 FCJ난민센터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고, 대학은 이를 심사한 후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요크대학은 10명의 불안정한 상태의 학생에게 입학할 허가했으며, 토론토 대학의 경우 2017년 가을 및 겨울 학기에는 12명의 난민 학생의 입학할 허가하였고, 2018년 가을/겨울학기에는 16명이 입학할 허가했다. 접근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현지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학비를 지불하며, 저소득층 학생은 캐논버리 기금(the Cannonbury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1) IEFA (n.d.). International Student Loans Canada, <https://www.iefaf.org/international-student-loan-canada>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③ 자립 지원

캐나다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한 캐나다 청소년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캐나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금융과 정신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금융문해력 지원

캐나다 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마친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요소인 금융 지식을 강조한다. 2015년 국가 최초로 5년 단위의 국가금융 문해력 전략(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에 발전된 국가금융 문해력 전략을 마련하였다. 동 전략은 학생 및 성인에게 재정 관련 지식 및 재정관리 기술 등에 대해 교육하고, 관련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전 국민이 금융과 관련한 지식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각 주정부의 지원 하에 정규 교육기관 및 커뮤니티 그룹(Community group)에서 금융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주 및 준주에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금융 문해력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인 소비 방법(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구분), 화폐단위, 세금 및 봉사료 계산, 주택구입을 위한 재정관리, 은퇴를 위한 저축방법, 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재정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2021). 동 전략의 시행 결과 캐나다 15세 청소년의 금융문해력은 전 세계에서 2위로 평가되었으며, 용돈 및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재정관리를 논의하는 청소년의 금융 문해력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2020).

□ 정신건강 지원

캐나다 보건부의 산하기관인 캐나다 공중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은 Mental Health Promotion Innovation Fund(MHP-IF)를 기반으로 원주민, 신규이민자, 이민자 집단에 속하는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의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KDE HUB, n.d.).¹¹²⁾ MHP-IF는 캐나다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을

112) Government of Canada (2023.07.31.). Mental Health Promotion Innovation Fund, <https://www.canad>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으로써 3단계 자금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프로그램 초기 단계로서 최대 18개월 기간 동안 지원되고, 2단계는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단계로서 최대 4년 동안 지원 가능하고, 3단계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단계로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동 프로그램 하에 20개의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세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캐나다 전국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하기도 한다. 또한 대상에 따라 특정 국가 출신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캐나다에 거주하는 소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캐나다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¹¹³⁾ 예를 들어 Nation of Wellness 프로그램은 MAtsqi-Abbotsford Impact Society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14세에서 28세에 해당하는 캐나다 청소년이 멘토가 되어 소외경험(marginalization)이 있는 비슷한 연령의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이에선 청소년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주도의 컨퍼런스, 지역사회 행사, 옹호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캐나다 청소년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소외경험으로부터 심리적 회복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¹¹⁴⁾

□ 의료보험 지원

캐나다는 이주배경청소년만을 위한 의료보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공공 의료시스템인 Medicare를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의 보건체계는 보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뿐만 아니라 이민자라도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캐나다는 연방국가로서 의료체계 또한 주정부 중심의 분권화된 시스템이다. 주정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보험 시스템(Health Insurance Plan)을 마련하고 있어 보험 혜택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이 주마다 차이가 있다(Martin et al., 2018).

한편 캐나다는 난민 수용비용이 높은 국가로서 난민을 위한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료보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난민에게 임시적으로

a.ca/en/public-health/services/funding-opportunities/mental-health-promotion-innovation-fund.html 에서 2023년 9월 19일 인출

113) Government of Canada (2023.07.31.) Mental Health Promotion Innovation Fund,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funding-opportunities/mental-health-promotion-innovation-fund.html> 에서 2023년 9월 19일 인출

114) KDE HUB (n.d.) MHP-IF Projects, <https://kdehub.ca/projects/mhp-if/> 에서 2023년 9월 7일 인출

제공하는 의료보험인 임시 연방건강프로그램(the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인 보건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동 프로그램은 난민의 건강검진 및 후속 조치, 예방접종, 기본 진료 및 의약처방 등 캐나다에서 거주하기 위한 필수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¹¹⁵⁾

④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책 담당부처

캐나다는 이주배경청소년 업무 전담 부처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국가의 특징으로 주정부의 책임 하에 중요한 정책이 마련·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캐나다는 선주민, 이주민 모두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은 고용노동, 보건,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분야는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보건분야는 보건부(Health Canada), 교육분야는 캐나다 교육부 장관 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CMEC)에서 담당한다.

□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앞선 두 분야와 달리 고용노동분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고용노동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캐나다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노동자, 유학생, 젊은 캐나다인(Young Canadian) 등 캐나다 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고용사회개발부에서 청소년 취업을 고용사회개발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청소년 취업 관련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보건복지(건강, 보건 등) 분야는 연방정부인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주민, 아동, 이주배경청소년 등과 같이 특정 약자 계층의 의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기관 및 사회단체

115) Government of Canada (2023.10.25.) What is the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https://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272&top=33>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앞선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캐나다 국민이 보편적 의료권을 보유했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난민에 대한 의료권 보장을 위해 임시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을 운영한다(Government of Canada, 2017.09.13.).

□ 캐나다 교육부 장관 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CMEC)
및 주정부 교육부

캐나다의 교육(문화, 여가, 진로 등)정책은 주정부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관련 연방 기구는 캐나다 교육부 장관 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CMEC)가 있다. 동 위원회는 1967년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이 캐나다 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한 기구로서 10개 지방(provinces)과 3개의 준주(territories) 교육부 장관 모두 위원회의 회원이며, 모든 회원이 승인한 합의각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주정부 교육부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 적응, 학습 능력, 고등교육 진학, 학부모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취업 지도 및 취업 연계 교육은 고용사회개발부 및 관련 정부 기관과 협업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캐나다의 다양성과 개방성은 연방국가 성립 초기부터 형성되었으며, 지속적인 이민자의 유입에 따라 캐나다의 다양성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가 보유한 이러한 다양성을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발전시켜 왔다(신지원 외, 2011). 특히 캐나다에서 이민은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인구증가,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의 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캐나다 발전에 직접적 및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15세-19세) 및 젊은 세대(20-34세)의 유입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이 캐나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취업 진로 등 경제적인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이 캐나다에 오랫동안 체류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캐나다는 부모의 자격조건만 갖춘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입국 전에 이민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족초청이민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입국과 동시에 이민자 혹은 영주권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캐나다는 18세 혹은 19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과 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후원이 필요한 경우 20대 중반까지 지원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인이 된 이후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배경청소년은 학생 및 취업 등의 경로를 통해 임시거주자의 자격을 취득해야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 이주배경청소년이 캐나다 나이 기준으로 성인이 된 이후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캐나다 고등교육에 입학한 후 졸업하면 임시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제공된다. 즉, 학업완료 이후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비전문직 이민자의 자녀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이들의 캐나다 정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위기에 따른 필요 직업군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 취업자들에게 임시적이지만 영주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착의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민 자체를 국가경제 발전 및 노동시장의 수요 확보를 위한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을 현재 및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한 캐나다 청소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이 취업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유지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고학력자들의 해외 유출 방지 및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을 위해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임시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나아가 영주권과 연계된 취업비자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모국으로 돌려보낼 대상인지 한국사회에 정착시킬 대상인지, 정착시킨다면 어떠한 목적에서 정착시켜야 하는지 등에 따라 지원

정책의 목적, 범위, 내용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캐나다의 경우 이주배경 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훈련을 관련 기관을 통해 제공 받고, 취업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취업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교육, 훈련의 기회를 기업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취업 준비 및 관련 문제를 자격과 능력을 갖춘 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성과 지역 차원의 특수성을 포괄하는 형태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큰 틀과 방향은 연방정부에서 제시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에 맞춘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단체(시민단체, 인종집단 등)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 및 운영을 담당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취업지원정책의 경우 고용사회개발부의 전략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인구특성, 노동시장 수요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략은 연방정부에서 마련하지만, 실질적인 집행 및 운영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치를 확립한 교육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경제이민자의 가족결합을 강조한다. 가족이 모여 삶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따라서 이민자의 자녀는 부모가 일정 조건의 자격을 갖추면 입국 전에 영주권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의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후원에 의해 일정기간 캐나다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학교 과정 이후에는 영주권과 연계된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학업 이후 캐나다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비자 변경을 위해 모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캐나다 내에서 체류하면서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캐나다의 정책은 젊은 세대의 인구

증가, 노동시장의 수요 충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한국도 이주배경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 기준 및 비자 취득 방법 등의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5) 호주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체류정책¹¹⁶⁾

(1) 호주 이민정책의 역사

이민은 외국인들을 자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민정책은 어떤 외국인을 자국 민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정부정책이다(임동진, 2018). 따라서 각 국가들은 각자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민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권경득 외, 2019: 36). 국가별로 역사적 배경 및 이민정책의 목표에 따라 크게 i) 전통적인 이민국가의 이민정책(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ii) 후기식민지 이민국가의 이민 정책(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iii) 신(新)이민체제 국가의 이민정책(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로 구분할 수 있다(최혜지, 2017; Bauer, Lofstrom, & Zimmerman, 2000).

현대 선진국들의 이민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자국의 노동시장과 인력 수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경제적 측면이다(권경득 외, 2019: 36) 이에 덧붙여 가족 재결합이나 난민 수용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요구에 어느 수준에서 대응 하는가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권경득 외, 2019: 36). 이런 측면에서 이민정책은 한 국가가 직면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auer et al., 2000).

호주의 이민정책은 본격적인 이민정책을 시작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나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통제하려는 것이며(Cronin, 1993: 84), 다른 하나는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settlement program)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두 가지 이민정책 요소가 1945년 이후 호주의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속되어 온 정책 이슈이다(권경득 외, 2019).

호주는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서 유입 이민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어 왔다. 1788년에

116) 호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임동진(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 집필함.

영국 탐험대가 호주에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 영국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호주에 이민해 왔다. 건국 초기에는 영국 출신 이민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주는 다른 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들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01년 이후 ‘백호주의(White Australia)’ 이민정책이 도입된 배경이었다. 이 정책은 주로 백인 영국 출신 이민자를 선호하며, 이민자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29년의 경제 대공황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과 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은 감소했다(Cully, 2011).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 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민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호주 연방 정부는 1945년에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를 신설하였으며, 그 후 호주의 이민정책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Hugo, 2014).

호주의 이민자 유입을 통한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의 이민정책은 시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②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③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각 시기의 주요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노동 인력을 확보하던 시기였다. 당시 호주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영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유도했지만 필요한 노동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서유럽 및 동유럽 지역에서도 이민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를 받아들였지만 호주는 영주 이민자를 주로 받아들였다. 이민자들이 더 많이 호주로 유입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이민에 필요한 기술이나 교육과 같은 자격요건을 거의 요구하지 않았다(Hugo, 2014). 이 결과로 1945년에서 1975년까지 호주의 인구는 750만 명에서 거의 두 배인 1,300만 명으로 증가했다(Teicher, Shah, & Griffin, 2000; Thomson, 2014). 또한, 1947년 7월에는 호주가 국제 난민 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와 난민 수용 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1만 2,000여 명의 동유럽 출신 난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설동훈, 강기정, 이병하, 2012).

다음으로, 1970년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이민심사점수제도(Numerical Multifactor Assessment System: NUMAS)를 도입하고 아시아 이민 인구가 증가한 시기였다. 1970년대에 호주는 경제 부흥 기간이 끝나고 생산의 자동화로 인해 노동 집약

적인 산업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고용과 단순 업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Hugo, 2014; Castles et al., 2014). 이 시기 이후 호주의 이민 정책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가족 결합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Hugo, 2014). 또한,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민심사점수제(NUMAS)'의 도입이었다. 이민심사점수제(NUMAS)는 이민 신청자 개인의 기술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 이민을 허용하는 제도이다(설동훈 외, 2012; Phillips, Klapdor, & Simon-Davis, 2010).

1980년대 후반부터 호주 정부는 영주 이민제도를 기술 이민, 가족 이민, 인도적 이민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Phillips et al., 2010). 1977년에 호주 정부는 동티모르와 인도차이나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하면서 인도적 이민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로써 1975년 4월부터 1988년 6월까지 총 108,641명의 인도차이나 난민이 호주에 정착하게 되었다(Phillips et al., 2010). 1980년대 중반 이후, 몇 차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인도적 이민(난민 등) 수용 규모는 약 13,00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Phillips et al., 2010). 한편, 1980년대에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Thomson, 2014). 1970년대 초반까지 호주 유입 이민자들이 주로 유럽 출신자였다면,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도차이나 난민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 이민자가 급증했다. 이로써 1984년에는 호주의 아시아화(Asianization of Australia)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한경구 외, 2012).

셋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노동 수요에 따라 기술 이민자들의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호주의 이민정책은 기존의 가족 결합 이민에서 경제적 수요에 중점을 두는 기술 이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동기는 가족 결합 중심 이민이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Larsen, 2013).¹¹⁷⁾ 이 시기부터 가족 이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기술 이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결과적으로 1993/94 회계 연도에 전체 영주 이민자 중 기술 영주 이민자의 비중은 23.7%였으나, 2008/09년(15년 후)에는 이 비중이 62.1%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호주의 기술 이민 제도는 공급 중심에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하는 '융합형(hybrid system)'으로 전환되었다¹¹⁸⁾(Cully, 2011). 1999년에는 인력 부족 직업

117) 2000년 기준으로 가족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국가 평균치의 두 배 정도를 기록했다(Larsen, 2013).

118) 호주 정부가 이민심사점수제(NUMAS)와 관련하여 추진하였던 시도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직업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2010년 2월 이전에는 호주 기술이민제도 운영에 있어서 인력부족직업리스트(MOVL)에

리스트(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MODL)¹¹⁹⁾를 작성하였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 영주 이민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기술 이민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한시적 이민 제도(temporary migration visa categories)를 확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이 전 지구화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호주 정부는 한시적 외국 노동력 도입을 위해 1996년 한시적 기술직 취업비자(subclass 457)를 도입하였다. 한시적 기술직 취업비자(subclass 457) 도입의 핵심은, 기술이 없는 인력(unskilled and low-skilled)에게는 한시적 취업 허용을 허용하지 않고, 한시적 체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전문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영주 이민의 경우 인력 부족 직업 리스트(MODL, 현재는 기술직 리스트(Skilled Occupations List: SOL)로 변경)에 있는 기술 인력보다는 고용주의 후원(permanent employer-sponsored visa)을 받은 기술 이민자를 선호한다(Cully,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주의 후원 없이) 이민자의 기술, 언어 능력, 자질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심사점수제(NUMAS) 만으로도 영주 이민은 가능하다. 이민심사점수제(NUMAS)는 개인의 자질에 근거한 영주 기술 이민으로 호주 정부가 인적 자원 개발 전략 차원에서 이 제도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이민심사점수제(NUMAS)와 고용주 후원 기술 이민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특화된 기술 분야(specialized skills)의 인력 부족 부분은 호주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그렇지 않은 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기업과 시장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원칙에 기반한다(Cully, 2011).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인구 저성장 지역에 기술 이민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기술 이민제도 운영에 주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1997년에 주정부들의 요청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이민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에게 한시적 기술직 취업비자(subclass 457)를 부여하고, 그 지역의 노동시장과 사회적응이 증명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Hugo, 2014). 즉, 주정부가 주도하는 이민

가 활용되었는데, MODL에 속한 직업을 분류하여 직업군별로 차등으로 점수(40, 50, 60)를 부여하여 이민신청자의 직업과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다. 2010년 MODL가 잠정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제 이민신청자의 직업 자체가 점수로 환산되지는 않게 되었다.

119) 인력부족직업리스트(MODL)는 2010년 이후 기술직 리스트(Skilled Occupations Lists: SOL)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Australia Visa Bureau (2017.04.18.). Skilled Occupation List (SOL) Australia, <http://www.visabureau.com/australia/skilled-occupation-list.aspx> 에서 2023년 9월 3일 인출).

프로그램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의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심사접수제(NUMAS)를 통과하지 못한 이민자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호주의 이민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적 맥락을 토대로 본 장의 목적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19세 이상)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규모,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과 이들을 위한 체류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지원정책 및 체류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의 유형 및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①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 유형 및 이민자 현황

호주의 전반적인 이민 정책의 제도와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비자)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현재 호주의 이민 비자(프로그램) 유형은 크게 보면 ① 방문자 비자(Visitor Visas), ② 학업 및 훈련비자(Studying and Training Visas), ③ 가족 및 파트너 비자(Family and Partner Visas), ④ 근로 및 기술비자(Working and Skilled Visas), ⑤ 난민 및 인도주의 비자(Refugee and Humanitarian Visas), ⑥ 기타 비자(Other Visas)로 구분된다(DHA, 2021a).

호주 정부는 위의 이민 비자(프로그램) 중 기술(skill) 비자, 가족(family) 비자, 특별자격(special eligibility) 비자, 아동(child) 비자에 대해서만 상세한 실적과 통계치를 ‘연례 이민 프로그램 보고서(Annual Migration Program Report)’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 이유는 기술비자, 가족비자, 특별자격비자, 아동비자가 영주권으로 바로 연결되는 영구 이민 비자이고, 이들 공식적인 이민 비자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설명이 예비 이민자들과 정책당국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방문자 비자와 학업 및 훈련비자 등은 공식적인 이민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관련한 실적과 통계치를 제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런 종류의 비자들이 영주권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임시 비자이고, 해마다 변동 요인이 매우 커서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한 영구이민비자에 비해 이민정책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임시비자도 호주의 개별 정부부처의 별도의 통계나 보고서에서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다(DHA, 2021a: 8). 호주의 전체적인 비자 유형 및 비자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체적인 비자의 자격과 내용은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V-28.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비자) 유형 및 내용

비자 유형	구체적인 비자 내용
방문자 비자 (Visitor Visas)	•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 eVisitor (subclass 651) • Transit visa (subclass 771) • Visitor (subclass 600) •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학업 및 훈련비자 (Studying and Training Visas)	• Student visa (subclass 500) • Student Guardian visa (subclass 590) • Training visa (subclass 407)
가족 및 파트너 비자 (Family and Partner Visas)	• Adoption visa (subclass 102) • Aged Dependent Relative visa (subclass 114) • Aged Dependent Relative visa (subclass 838) • Aged Parent visa (subclass 804) • Carer visa (subclass 836) • Carer visa (subclass 116) • Child visa (subclass 101) • Child visa (subclass 802) • Contributory Ag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884) • Contributory Aged Parent visa (subclass 864) • Contributory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173) • 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 Dependent Child visa (subclass 445) • New Zealand Citizen Family Relationship (temporary) visa (subclass 461) • Orphan Relative (subclass 117) • Orphan Relative (subclass 837) • Parent visa (subclass 103) • Partner (Provisional and Migrant) visa (subclass 309 100) • Partner visa (subclass 801 820) • Prospective Marriage visa (subclass 300) • Remaining Relative visa (subclass 115) • Remaining Relative visa (subclass 835) •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870)
근로 및 기술비자 (Working and Skilled Visas)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ermanent) visa (subclass 888)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 (subclass 188) • Business Owner (subclass 890) • Global Talent visa (subclass 858) •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 Investor visa (subclass 891) •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191) • Regional Sponsor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 Skilled Recognition Graduate visa (subclass 476) •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비자 유형	구체적인 비자 내용
	•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887)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 State or 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 visa (subclass 892) • State or Territory Sponsored Investor visa (subclass 893) • Temporary Activity visa (subclass 408) •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visa (subclass 403) • Temporary Work (Short Stay Specialist) visa (subclass 400) •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난민 및 인도주의 비자 (Refugee and humanitarian Visas)	• Global Special Humanitarian (subclass 202) • Protection visa (subclass 866) • Refugee visas (subclass 200, 201, 203 and 204) • Temporary Protection visa (subclass 785) • Safe Haven Enterprise visa (subclass 790) • Resolution of Status visa (subclass 851)
기타 비자 (Other Visas)	• Bridging visa A - BVA - (subclass 010) • Bridging visa B - BVB - (subclass 020) • Bridging visa C - BVC - (subclass 030) • Bridging visa E - BVE - (subclass 050 and 051) • Crew Travel Authority visa (subclass 942) • Former Resident visa (subclass 151) • Maritime Crew visa (subclass 988) • Medical Treatment visa (subclass 602) • Resident Return visa (subclass 155 157) •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 Special Purpose visa • Investor Retirement visa (subclass 405) • Confirmatory (Residence) visa (subclass 808)
폐지된 비자 (Repealed Visas)	• Business (Short Stay) visa (subclass 456) • Business Skills (Provisional) visa (subclass 160 and 165) 외 다수 • 폐지된 비자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DHA (2023.02.14.). Getting a visa: Visa list,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 에서 2023년 9월 19일	

다음에서는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 및 정책을 총괄하는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DHA)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한 2020/21년의 “이민 프로그램의 보고서(Migration Program Report)”를 중심으로 호주의 이민(비자) 유형별 이민자 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정부 회계연도(fiscal year)의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이며,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비자)의 총량 규모와 구성은 매년 단위로 정해지고 호주 정부의 예산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DHA, 2021b).

앞서도 설명했듯이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 보고서에는 이민 관련한 실적과 통계치를 제공하는 이민유형은 ①기술 비자군(skill stream), ②가족 비자군(family stream), ③특별자격 비자군(special eligibility stream), ④아동 비자군(child stream)이다. 각 이민 비자군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 비자군(Skill stream)은 경제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호주 지역을 포함한 노동 시장의 기술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다. 다음으로 가족 비자군(Family stream)은 주로 파트너와 가족 범주 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온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 특별자격비자군(Special Eligibility stream)은 다른 비자 종류에 맞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 떨어져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영주권자도 포함될 수 있다. 자녀 비자군(Child stream)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이민 경로를 제공하며 수요 중심의 비자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및 가족 비자 범주 중 임시(또는 1단계) 비자에서 영구(또는 2단계) 비자로 영주권 경로를 제공받는 이른바 '2단계' 이민 비자(two-stage visas) 소지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2단계 비자 경로에는 두 번의 비자가 부여되는데, 이중 계산을 피하고자 2단계 비자 소지자는 임시(1단계) 비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이민 비자 통계 수치에 포함한다. '2단계' 비자 외에도 일부 비자의 상황¹²⁰⁾에서는 이민 프로그램의 통계수치에 포함하지 않는다(DHA, 2021b: 8).

호주의 이민유형별 이민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0/11년의 경우 전체 영주이민자 수는 168,685명(100.0%)이고, 이 중 기술이민은 113,725명(67.4%), 가족이민은 54,543명(32.3%), 난민은 417명(0.24%)이다.¹²¹⁾ 2010/11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 전인 2018/19년까지 이민자 총량은 16만~18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기술이민자 비중은 67~69%, 가족이민자의 비중은 30~32%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9/20년부터는 이민자 이동이 어려운 관계로 이민자 수와 이민유형

120) ①이전에 이민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비자를 받은 사람은 다시 포함되지 않는다. ②동일한 프로그램 연도에 비자가 승인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 ③파트너 비자 신청자가 2단계(영주) 비자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가 자격이 반환된다. ④특정 권한에 따라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이전 연도에 부여됨)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해에 프로그램 자격이 반환된다(DHA, 2021b: 8).

121) 호주의 2020/21년의 이민유형별 이민자 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영주이민자(160,052명) 중 기술이민자는 79,620명이고, 이 중 고용주 후원비자 23,503명(29.6%), 기술독립비자 7,213명(9.1%), 지역비자 13,268명(16.6%), 주정부지명비자 14,268명(17.9%), 사업투자비자 11,198명(14.1%), 글로벌인재 9,584명(12.0%), 최우수인재 269명(0.3%)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이민자는 총 77,372명이고, 이 중 파트너 비자는 72,376명(93.5%)이고, 부모비자는 4,500명(5.8%), 다른 가족이 496명(0.6%)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난민은 54명(0.03%)과 아동비자 3,006명(1.8%)이다(Spinks, 2021).

별 비중에는 다소 변화가 있다.¹²²⁾ 구체적으로 2020/21년의 경우 전체 영주이민자 수는 160,052명(100.0%)이고, 이 중 기술이민은 79,620명(49.7%)이고, 가족이민은 77,372명(48.3%), 아동비자 3,006명(1.8%), 난민은 54명(0.03%)이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이민자 정책을(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해당 기간 동안의 일시적 현상으로 볼 경우) 영주 이민자 수와 유형별 비중으로 구분해 본다면 호주는 이민자 수 총량은 매년 약 17만 명 수준이고, 이 중 기술이민은 약 68%, 가족이민은 약 31%의 비중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29) 참조).

표 IV-29. 호주의 이민유형별 영주 이민자 수 현황(2010/11~2020/21년)

연도	비자범주 연도	기술 비자군 (Skill)	가족 비자군 (Family)	아동 비자군 (Child)	특별자격 (Special Eligibility)	전체 (Total)	기술비중 (% of Skill)	가족비중 (% of Family)
2010-11		113,725	54,543	0	417	168,685	67.4	32.3
2011-12		125,755	58,604	0	639	184,998	68.0	31.7
2012-13		128,973	60,185	0	842	190,000	67.9	31.7
2013-14		128,550	61,112	0	338	190,000	67.7	32.2
2014-15		127,774	61,085	0	238	189,097	67.6	32.3
2015-16		128,550	57,400	3,512	308	189,770	69.0	30.8
2016-17		123,567	56,220	3,400	421	183,608	68.6	31.2
2017-18		111,099	47,732	3,350	236	162,417	69.8	30.0
2018-19		109,713	47,247	3,248	115	160,323	69.8	30.1
2019-20		95,843	41,961	2,481	81	140,366	69.5	30.4
2020-21		79,620	77,372	3,006	54	160,052	50.7	49.3

* 출처: DHA (2021b: 14)

* 주: 아동 비자군 중 아동이 기술/가족비자에 포함되는 되는 경우는 통계치에서 제외함

122)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주와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국제 여행의 제한으로 인해 호주에 도착하는 영구 이민자와 임시 이민자 모두 감소하였다. 이에 호주 정부는 2020/21 회계연도에는 영구이민비자를 165,999개 발급하였고, 임시(단기) 비자는 993,708개가 발급하였다. 이 중 코로나19 이전에 임시 비자 발급건 수가 650만개에 비하면 84.7%가 감소한 것이다(DHA, 2021b).

②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중 및 출생지역

OECD(2023)에 따르면 외국 태생 부모를 둔 청소년(15~34세)(young aged 15 to 34 years with foreign-born parents)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외국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 ii)혼합 혈통의 부모를 둔 본토 태생(부모 중 한 명은 현지인이고 한 명은 외국 태생), iii)아동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15세 이전에 호스트 국가에 도착), iv)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15세 이상)으로 구분된다.

OECD(2023)가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77.2%이고, 그 다음으로 호주와 스위스가 각각 52.3%, 뉴질랜드 45.4%,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리아가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EU 전체 국가(27개국)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의 평균은 22.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은 4.6%, 혼합혈통의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은 5.6%, 아동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은 2.6%,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은 9.8%로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태생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OECD 국가(31개국)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은 28.1%로 EU 국가의 평균보다 5.5% 더 높다. 구체적으로 외국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은 8.1%, 혼합혈통의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은 5.8%, 아동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은 4.7%,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은 9.5%로 EU국가와 마찬가지로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청소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은 52.3%로 OECD국가의 평균보다 24.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은 9.6%, 혼합혈통의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은 13.0%, 아동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은 9.6%,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은 20.1%로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호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외국 태생 부모를 둔 청소년의 비중이 2번째로 높은 국가에 속하고 특히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청소년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0. 호주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둔 청소년(15~34세)의 비중

국가명	외국 태생 청소년 유형 외국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	혼합혈통의 부모를 둔 본토 태생	아동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Romania	0.0	0.1	0.0	0.3
Bulgaria	0.0	0.2	0.0	0.4
Poland	0.0	0.3	0.0	0.6
Slovak Republic	0.1	1.1	0.0	0.5
Hungary	0.6	1.5	0.0	2.6
Lithuania	0.7	3.5	0.0	1.4
Czech Republic	0.7	2.7	0.0	4.6
Greece	3.7	3.2	0.0	4.9
Finland	1.3	5.6	2.6	7.3
Portugal	3.2	7.0	2.8	4.6
Slovenia	3.3	6.9	0.0	7.9
Estonia	4.3	10.5	0.0	4.8
Italy	2.5	5.0	0.0	13.1
Latvia	3.9	13.8	0.0	3.9
EU Total (27)	4.6	5.6	2.6	9.8
Croatia	5.1	13.5	0.0	4.3
United Kingdom	7.6	2.1	5.1	10.4
Netherlands	8.0	8.9	3.9	5.6
Spain	2.7	4.4	0.0	19.6
Denmark	5.8	6.9	3.3	10.8
France	7.2	9.9	3.7	6.8
Iceland	0.9	6.7	0.0	20.0
OECD Total (31)	8.1	5.8	4.7	9.5
Norway	3.8	6.3	5.4	13.6
United States	11.1	5.2	5.6	7.4
Malta	0.4	6.9	0.0	23.9
Israel	10.4	11.7	7.3	3.8
Germany	7.5	5.5	6.1	14.1
Belgium	7.2	9.8	6.1	11.4
Ireland	5.3	7.2	0.0	24.2

외국 태생 청소년 유형 국가명	외국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	혼혈혈통의 부모를 둔 본토 태생	아동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Austria	10.4	7.3	7.9	12.9
Canada	11.3	8.5	9.2	9.5
Sweden	7.4	8.5	8.2	15.4
Cyprus	1.9	8.1	0.0	29.6
New Zealand	7.2	9.9	12.4	15.9
Switzerland	12.8	12.5	8.8	18.2
Australia	9.6	13.0	9.6	20.1
Luxembourg	18.5	9.5	0.0	49.2

* 출처: 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169)

EU 국가와 OECD 국가들의 외국 태생의 부모를 둔 15~34세의 청소년 비중의 2012~2021년(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혼합)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6.1%이고, 아동기(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4.7%로 나타났다. EU 국가 전체에서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의 비중이 지난 10년간 4.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외국(혼합)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이 2.3%이고, 아동기(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이 2.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ECD 국가 전체에서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의 비중이 지난 10년간 2.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외국(혼합)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이 2.6%이고, 아동기(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이 0.2%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의 비중이 지난 10년간 3.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외국(혼합)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은 -1.7로 감소했고, 아동기(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이 5.4%로 나타났다. 이처럼 호주와 EU 국가와 OECD 국가를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호주는 외국(혼합) 부모를 둔 본토 태생 청소년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동기(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청소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1. 호주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둔 청소년(15~34세) 비중의 변화(2012~2021년)

국가명	외국 태생 청소년 유형	외국(혼합)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	아동기·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Israel		-7.3	-3.6
Australia		-1.7	5.4
France		-1.7	1.1
Canada		1.0	1.9
Belgium		1.2	1.4
Sweden		1.2	4.5
United Kingdom		1.9	-1.9
Netherlands		1.9	-0.2
EU total (10)		2.3	2.4
Norway		2.4	-1.2
Luxembourg		2.6	14.7
Switzerland		2.6	-0.9
OECD total (17)		2.6	0.2
Denmark		3.1	1.2
Germany		3.3	4.6
United States		3.4	-0.8
Spain		3.5	1.7
Finland		3.7	1.6
Austria		6.1	2.8

* 출처: 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169)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의 부친의 출생 지역을 OECD 국가 전체로 보면,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언이 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 24%, 유럽 22%, 아프리카 11%,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1%의 순으로 나타났다. EU 국가 전체로 보면, 유럽이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 26%, 아시아 18%, EU 국가내가 15%,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언이 5%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 부친의 출생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럽 38%,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10%, 아프리카 5%,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언이 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호주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부친의 출생지역은 아시아 국가가 전체의 45%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출신 37%를 합하면 전체의 83% 수준으로 이 두 개 대륙의 국가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 호주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둔 청소년(15~34세)의 부친의 출생지역(2020~2021년)

출신국가 국가명	Africa	As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United States, Canada and Oceania	Europe	of which EU
United States	4	24	6733	199	4	
Portugal	55	14	91	100	4	17
France	65	10	3	100	11	11
OECD total (29)	11	24	42	1	22	
Canada	8	47	20	2	23	
Spain	30	10	33	100	2	25
Netherlands	31	14	20	100	31	4
Australia	5	45	3	10	38	
Denmark	13	455	100	100	34	7
Belgium	52	5	100	100	41	0
Sweden	13	39	64	100	26	15
Italy	30	20	8	100	26	16
Finland	25	28	1	100	34	12
EU total (27)	26	18	5	100	37	15
Ireland	15	14	100	100	64	6
Germany	4	23	100	100	53	20
Switzerland	5	12	2	100	46	35
Czech Republic	100	18	100	100	11	71
Greece	37	13	100	100	74	9
Hungary	2	14	100	100	30	54
Austria	46	8	100	100	72	15
Luxembourg	3		100	100	2	94
Latvia	100	3	100	100	92	5
Estonia	100	2	100	100	98	0

* 출처: 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173)

③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 및 특성

호주에서는 정부보고서나 통계자료 등에서 사용하는 '청소년(youth)'이라는 용어는 12~24세 사이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호주의 정부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기반하여 2012~2017년의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와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은 이민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민유형을 인도주의 이민, 가족이민, 기술이민으로 구분하고 이민유형별로 12~24세의 청소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유형 구분은 영주권을 받는 이민자의 유형구분이다. 다시 말해, 단기나 임시이민자 가족 중에 이주배경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호주의 연도별(2012~2017년) 이주배경청소년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13년에 385,553명이었고, 2014/15년에 29,447명, 2016/17년에 17,446명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민유형별로는 2012/13년에 인도주의 이민이 10%, 가족이민이 39%, 기술이민이 51%로 이민유형별로 비중이 비슷한 경향이 보이다가, 2016/17년 인도주의 이민이 32%, 가족이민이 43%, 기술이민이 25%의 수준으로 이민유형별로 비중의 변화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표 IV-33. 호주의 연도별 이주배경청소년 수 현황(2012~2017년)

이민유형 회기연도	인도주의 이민 (humanitarian)	가족이민 (Family)	기술이민 (Skill)	합계 (Total)
2012/13	3,828 (10%)	15,161 (39%)	19,564 (51%)	38,553 (100%)
2013/14	4,087 (11%)	14,556 (40%)	17,336 (48%)	35,979 (100%)
2014/15	3,313 (11%)	12,563 (43%)	13,571 (46%)	29,447 (100%)
2015/16	3,033 (14%)	10,332 (48%)	8,342 (38%)	21,707 (100%)
2016/17	5,646 (32%)	7,488 (43%)	4,312 (25%)	17,446 (100%)

* 출처: MYAN (2018: 9, 재인용)

2016/17년을 기준으로 호주의 연령별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를 살펴보면, 12-15세가 4,866(28%)명이고, 16-17세가 2,279명(13%), 18-24세가 10,301명(59%)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이민유형을 구분해 보면, 12-15세는 인도주의 이민이 1,938명(40%),

16-17세 역시 인도주의 이민이 928명(41%)로 가장 많은데 반해, 18-24세는 가족이민 5,249명(51%)로 가족이민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호주의 연령별 이주배경청소년 수 현황(2016/17년)

연령 \ 이민유형	인도주의 이민 (humanitarian)	가족이민 (Family)	기술이민 (Skill)	합계 (Total)
12-15세	1,938 (40%)	1,405 (29%)	1,523 (31%)	4,866 (28%)
16-17세	928 (41%)	834 (37%)	517 (23%)	2,279 (13%)
18-24세	2,780 (30%)	5,249 (51%)	2,272 (22%)	10,301 (59%)
합계	5,646 (32%)	7,488 (43%)	4,312 (25%)	17,446(100%)

* 출처: MYAN (2018: 10, 재인용)

2016/17년을 기준으로 호주의 출신 국가별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를 살펴보면, 이라크가 2,126명(1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 1,788명(10%), 시리아 1,724명(10%), 인도 1,522명(9%), 아프가니스탄 1,205명(7%), 필리핀 1,072명(6%), 베트남 701명(4%), 파키스탄 539명(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출신국가별 이주배경청소년은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로 상위 10개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호주 내에서는 New South Wales 주와 Victoria 주에서 가장 많이 정착하고 있다. 2016/17년 기준으로 모든 이민 프로그램 범주에서는 성별로는 여성이 59%, 남성이 41%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주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 수준이다. 2016/17년 기준 모든 이민 범주에 걸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상위 5개 주요 언어는 아랍어, 영어, 중국어, 아시리아어, 다리어였다(MYAN, 2018).

표 IV-35. 호주의 출신 국가별 이주배경청소년 수 현황(2016/17년)

출신 국가별(Country of Birth)	합계	비율(%)
Iraq	2,126	12%
People Republic China	1,788	10%
Syrian Arab Republic	1,724	10%
India	1,522	9%
Afghanistan	1,205	7%
Philippines	1,072	6%
Vietnam	701	4%
Pakistan	539	3%
Thailand	509	3%
Nepal	443	3%
Others	5,817	33%
합계	17,446	100%

* 출처: MYAN (2018: 17, 재인용)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은 전체 이민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주배경청소년 중 인도주의 이민이 전체 이주배경청소년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8~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전체의 대다수(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이민의 청소년 중 거의 절반(49%)이 18~24세 연령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 이민으로 호주에 도착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태어난 4대 국가로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이고, 전체 인도주의 입국자 중 77%를 차지하고 있다.

(3) 호주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체류정책

①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의 장기체류 조건

본 절에서는 외국 국적의 부모가 18세 이하 청소년 자녀와 호주에서 비영주형 비자로 체류하다 청소년 자녀가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외국 국적 청년이 인도주의 비자¹²³⁾, 가족 비자¹²⁴⁾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는

123) 보호 및 인도주의 비자(Protection and Humanitarian Visas)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난민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개인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인도주의 및 보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즉, 외국 국적의 부모가 호주에서 비영주형 또는 단기체류형(임시 숙련근로자 비자 등)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고 있으며, 함께 호주에 온 청소년 자녀가 성장하여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는 경우를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런 경우 보통 청소년 자녀는 부모 비자에 따른 종속(Dependent on Parent's Visa)으로 포함되어 이들 청소년의 비자 상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비자와 연결된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가 성인이 되면(특정 비자에 따라 18세 또는 19세가 됨) 일반적으로 더 이상 부모의 비자에 피부양자로 포함될 자격이 사라진다. 따라서 외국 국적의 성인으로서 개별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 국적 청년이 장기거주가 가능한 자격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 국적 청년이 호주에서 계속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학생 비자(Student Visas)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면 학업을 기간 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며, 공부를 마친 후, 그들은 학업 후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길을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 임시 졸업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통해 최근 졸업생들은 일시적으로 호주에 머물면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체류 기간은 신청하는 임시 졸업 비자 세부 종류에 따라 다르다.

셋째, 성인 자녀가 호주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술 독립 비자(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또는 기술 지명 비자(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와 같은 기술 이민(skilled migration) 비자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비자에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긍정적인 기술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CMY, 2020).

이러한 숙련된 이주 비자(Skilled Migration Visas)는 호주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비자에는 ①고용주 후원 비자(Employer-Sponsored Visas), ②일반 숙련 이민 점수제도(General Skilled Migration Points System), ③독립 기술 비자(independent skilled visas) 등이 있다. 고용주 후원 비자는 일부 외국 국적자가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124) 가족 비자(Family Visas)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가족(부모, 파트너 또는 자녀 등)이 있는 사람을 위한 비자이다.

호주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숙련 이민 점수 제도는 숙련 이민 비자에 대한 점수(point) 기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점수는 신청자의 나이, 기술, 직업 경험, 영어 능력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비자를 부여한다. 또한 독립 기술 비자(independent skilled visas)는 청년이 독립 기술 이민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보유하고 포인트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 후원없이 기술 독립 비자(서브클래스 189)와 같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넷째, 외국 국적 청년들이 영주권을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지역 비자(regional visas)가 있다. 이 비자는 호주의 일부 특정 지역(주로 비도시지역)에서 정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국적 청년들에게 독립적인 거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비자와 사업 비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호주에 가까운 가족이 있는 개인은 상황에 따라 잔여 친척 비자(Remaining Relative Visas), 노인 부양 친척 비자(Aged Dependent Relative Visas) 또는 간병인 비자(Carer Visas)와 같은 가족 재결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진정한 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파트너 비자(Partner Visas)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 청년이 호주에서 사업 또는 투자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사업 혁신 및 투자 비자(business and invest visas, subclass 188)를 발급받을 수 있다(CMY, 2020). 물론 외국 국적 청년의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호주에 장기 체류하는 데 필요한 적합한 비자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의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하는 기본원칙과 이유

호주에서 외국 국적의 아동 및 청소년이 19세 이상으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호주 정부는 이들이 장기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 장기 거주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과 기본원칙은 호주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수요와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주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민정책을 기반으로 한다(DHA, 2023.06.30.).

호주 정부가 이들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기본원칙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수요에 의한 것이다. 호주 이민정책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호주 노동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기술 독립 비자(Subclass 189)와 같은 기술 이민 프로그램은 호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호주의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호주 기업에 필요한 근로자의 입국 및 영주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당한 사업 통찰력과 투자 자본을 갖춘 이민자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호주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족 재결합과 지역개발과 같은 사회적 수요에 의한 것이다. 호주는 가족 재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원칙은 부모 비자(subclass 103)와 같은 가족 후원 비자에 반영되어 있다. 부모는 성인 자녀의 영주권을 후원하여 가족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대도시집중현상 완화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고,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고 일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주의적 이유에서이다. 호주는 박해나 기타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처럼 인도주의 비자는 난민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기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호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고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지역사회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민자의 성격과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호주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을 제한하고 있고, 호주의 사회통합을 위해 영어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헌신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DHA, 2023.06.30.).

③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청년이 장기거주비자를 지닌 경우 취업가능 범위

호주에서는 외국국적 아동·청소년이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 장기 거주 비자를 받았을 때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일반적인 제한은 없다. 물론 외국국적의 청년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도 있다. 이런 분야에는 군대와 경찰, 정부기관, 정보 및 안전관련 기관, 규제기관, 방위산업, 항공조정사와 관제사 등이 있다. 이런 분야에 외국국적 청년이 취업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처럼 특정 직업분야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요구하는 것은 국익, 공공 안전 및 중요 기반시설의 보안과 안정을

위한 것이며 외국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Mackey, Coates, & Sherrell, 2020).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 청년이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장기 거주 비자를 받아서 취업하려고 할 때, 취업 가능성, 업계 수요, 개인 선호도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호주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일부 직업 및 직업에는 특정 면허 또는 인증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외국 국적 청년도 호주 시민권자와 같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직업에 대한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술 지역 비자 소지자는 비자 조건의 일부로 특정기간 동안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 고용주 후원을 통해 장기 거주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인은 후원 고용주와 관련된 고용 조건을 가질 수 있다.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고용주 후원자를 찾거나 고용주 변경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다. 모든 이민자는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일하는 경우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된다. 다만, 고용 기회는 경제적 요인, 산업 집중도, 특정 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로 인해 호주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일부 지역에는 특정 산업이나 취업 기회의 집중도가 높아 취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Mackey et al., 2020).

④ 정책적으로 장기거주를 유도하는 집단 존재 여부와 사회적 효과

호주에 거주하던 외국 국적 아동 및 청소년이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 장기 거주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진 이민 절차와 경로를 통해 장기 거주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명시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이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호주 정부는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 국적 청년들에게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이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민자들이 호주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민정책의 경제적인 목표로는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여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와 경제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사회적 목표로는 가족의 화합과 재결합을 촉진하고,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지역별로 분산하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목표에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의 이행이 포함되어 있다. 즉, 호주 정부는 이러한 이민정책의 목표에 부합한 이민자들을 호주에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호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의 이민자는 호주가 원하는 이민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영주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MCA, 2017.04).

이러한 호주의 이민정책의 목표를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우선 숙련된 이민자와 투자자는 호주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민정책은 호주 사회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기여하여 국가의 사회 구조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호주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이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인구 증가와 비(非)도시권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다(MCA, 2017.04). 이러한 호주의 이민정책은 정부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호주에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이민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특정 비자 경로를 숙지하고 신청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4) 호주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

호주에서 이주 배경의 청소년들은 종종 “이주 청소년(migrant youth)” 또는 “젊은 이주자(young migrants)” 또는 단순히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youth with migrant background)”이라고 지칭된다. 또한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culturally and linguistic diverse, CALD) 청소년(youth)”과 같은 용어는 더 넓은 범위의 배경과 경험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19~24세의 개인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청년(young adults)” 또는 “젊은이(young people)”이고, 25~34세의 개인은 일반적으로 “청년(young adults)” 또는 “성인(adults)”이라고 부른다(MYAN, 2018). 이에 본 절에서는 문맥에 따라 후기청소년기(19~24 또는 3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이주(이민) 배경청년’ 또는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호주에서 이주 배경 청년(young people with immigration background)은 외국 국적을 가진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민자 가족 출신의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청년들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주 배경을 가진 청년에는 ①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뿐만 아니라 ②외국 국적(임시 거주자)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상에 따른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용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청년(young people with foreign nationalities, temporary residents)은 호주에서 성장했지만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청년을 의미한다. 그들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나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가 보유했던 기타 유형의 비자와 같은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청년을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young people with foreign nationalities)”라기보다는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s)” 또는 “비자 소지자(visa holders)”라고 부른다(MYAN, 2018).

본 절에서는 후기청소년기(청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연구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호주에서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장한 영주권 소지 이주배경청년과 외국 국적의 이주배경청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호주의 이주배경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을 논의할 때 관련 이주배경 청년들의 구체적인 이민 신분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정책이나 서비스의 수혜여부는 신분 상태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호주 정부는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이민 신분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② 외국국적 이민배경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②-1. 19-24세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용

호주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청년(19~24세 또는 25~34세)을 위한 직업, 취업, 노동,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이민 신분, 비자 유형,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외국 국적을 가진 다양한 청년 집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이다. 먼저, 외국 국적 청년이 ①대학생(학생)인 경우와 ②일반 청년(임시거주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인 경우는 유학생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노동 권리(work rights), 취업서비스(career services), 학업 후 노동권리(post-study work rights)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노동 권리는 학생 비자(Student Visa, Subclass 500)를 소지한 유학생으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동안 제한된 노동 권리를 갖는다(대개 학기 중 2주당 최대 40시간).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유학생들이 파트타임 또는 임시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상담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 교육기관의 졸업생은 학업을 마친 후 특정 기간 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 졸업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¹²⁵⁾를 받을

125) 임시 졸업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는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국적의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졸업자 모두가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며, 최근에 호주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호주에서 직장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임시 졸업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iddy, 2016).

다음으로, 외국 국적 청년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s)일 때 그들은 취업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일부는 임시 기술 부족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또는 기술 취업 지역 비자(Skilled Work Regional Visa, Subclass 491)와 같은 특정 기술 또는 후원 취업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시 비자 소지자(Temporary Visas holders)는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유형, 근무 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특정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외국 국적 청년(대학생 포함)은 비자 조건에 명시된 노동 권리, 교육기관에의 접근, 취업 기회 등이 있으나, 청년수당, 등록금 지원 등 각종 사회 복지 혜택에 대한 이용 자격이나 권한은 없다(Liddy, 2016).

②-2. 16-18세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용

외국 국적 임시비자로 부모와 함께 호주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16~18세의 외국 국적 청소년은 다양한 직업, 취업, 노동, 자립 프로그램 또는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외국 국적 청소년(16~18세)이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적이지만 취업할 수 있는 노동 권리(work rights)를 갖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 유급 노동 및 직업훈련을 결합한 학교 기반 견습 및 연수생 제도(school-based apprenticeships and traineeship, SBAT)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실용적인 기술과 자격을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호주의 많은 직업교육 및 훈련 기관에서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직업교육과 훈련(vocational educational and training, VET)을 실시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을 포함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Jobactive)을 이용할 수 있다(VSG, 2023).

거주지역에 근거한 지역사회 및 이민자 자원 센터(community and migrant resources centers)를 통해 구직 지원, 이력서 작성 워크숍,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비자는 크게 졸업 근로 비자(Graduate Work)와 학업 후 근로 비자(Post-Study Work)로 구분이 된다. 졸업 근로 비자는 최근 6개월 이내 호주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대상은 고교 졸업 이상 또는 직업교육 및 훈련생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은 18개월 정도이다. 반면, 학업 후 근로 비자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등 고등교육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보통 체류기간은 학사 2년, 석사 2~3년, 박사 4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민간기관들로부터 언어향상, 기술습득, 교육훈련, 자문 및 상담서비스 등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외국 국적의 청소년(16~18세)들이 성공적으로 호주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직업훈련, 기술습득, 구직활동, 언어능력 등을 지원하여 청년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VSG, 2023).

③ 영주권 이상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③-1. 19-24세 영주권 이상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용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이주배경청년들은 임시비자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청년들에 비해 광범위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 이주배경 청년들 간에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이는 없는 편이다. 다만,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에 비해 정부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포함하여 영주권자 보다 더 광범위한 지원 서비스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호주에서는 19세~24세, 35세 사이의 이민 배경(영주권자 이상)을 가진 청년들의 진로, 취업, 노동시장 참여 및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정책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취업 장벽을 해결하고 기술 개발,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들에는 ①Jobactive, ②Youth Jobs Path, ③Skilling Australia Fund, ④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⑤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Jobactive는 이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포함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호주 정부의 주요 프로그램이고, Youth Jobs PaTH(준비-시험-고용)은 청년들이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돕기 위해 프로그램이다. Skilling Australia Fund은 이민자를 포함한 젊은이들이 노동력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직업교육 및 훈련(VET)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새로운 기업 인센티브 제도(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¹²⁶), NEIS) 젊은 이민자를 포함한 야심찬 기업가에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및 기타 재정 지원은

126) “비자(visa)”는 개인이 호주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정 문서지만, “제도(scheme)”는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를 포괄하고 특정 카테고리 또는 경로의 이민에 대한 규칙 및 기준을 설정하는 광범위한 프레임워크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제도(scheme)는 특정 프로그램에 따른 이민 구조와 지침을 정의하는 반면, 비자는 이 제도(scheme)에 따른 성공적인 신청의 실질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부, 훈련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수당(Youth Allowance) 또는 Austudy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으로 교육이나 구직 활동 기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DESE, 2018).

그 외에 지원프로그램으로 다양성 및 포용 프로그램(Diversity and Inclusion Program), 문화 및 언어 다양성 프로그램(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Program), 멘토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Mentorship and Networking Programs), 지역사회 및 이민자 서비스(Community and Migrant Services) 등이 있다. 다양성 및 포용 프로그램(Diversity and Inclusion Program)은 많은 호주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보다 포용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및 포용 프로그램이고, 문화 및 언어 다양성 프로그램(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Program)은 일부 기관에서는 이민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멘토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Mentorship and Networking Programs)은 이민자를 포함한 젊은 구직자를 구직 시장 탐색에 대한 안내, 진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고, 지역사회 및 이민자 서비스(Community and Migrant Services)에는 이력서 작성 워크숍, 인터뷰 준비, 구직 지원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DESE, 2018). 위에서 언급한 제공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지역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중 일부 주정부(지방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외국 국적의 이주배경청년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③-2. 영주권 이상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주요 사례: 청소년전환지원서비스 (Youth Transition Support Services)

호주 연방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15~25세 사이의 청소년 인도주의 입국자¹²⁷⁾ 및 기타 취약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고용 및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기 개입 지원 프로그램인 청소년전환지원(Youth Transition Support: Y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TS 서비스의 정책목표는 젊은 인도주의 입국자와 다른 자격을 갖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교육이나 훈련에 계속 참여하고 성공적인 고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역량과 회복력을

127) 인도주의적 이주자(humanitarian migrants)는 망명을 원하는 사람이나 난민을 의미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가입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UNHCR, 1951, p. 14).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Synergistiq, 2019). YT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5~25세 사이의 청소년 난민 및 기타 취약한 청소년 이민자로 최근 5년간 호주에 도착한 영주권자로 다음의 범주가 포함된다(①인도주의 입국자(하위 등급 200-영구 보호 비자); ②영어 실력이 낮은 가족 범주의 이민자; ③영어 실력이 낮은 시골 및 지역 지역의 숙련된 이민자의 부양가족).

YTS 서비스는 크게 ①고용, ②교육, ③직업훈련, ④스포츠 활동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고용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employment)은 취업 알선 기회 및 프로젝트 제공, 취업 준비 과정 및 프로그램 제공, 취업 경험 기회 제공, 결원 관련 링크, 고용주, 구직 활동 제공자 및 기타 관련 서비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격을 갖춘 참가자가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강한 연계성(strong connections to education)은 참가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지식을 쌓고 자신감과 또래 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셋째, 직업 기회 증가(increased vocational opportunities)는 참가자들이 지속 가능한 고용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인정받는 직업 훈련 및 업무 경험, 직업 기술 인식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 호주기술타학(TAFE), 등록된 훈련 기관 및 참여 고용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업 기술을 강화하고 습득한다. 넷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활동(sports engagement for youth)은 참가자들이 자신감을 쌓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고립을 극복하고, 자신의 지역 사회를 넘어 다른 호주의 젊은 사람들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Synergistiq, 2019).

YTS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연방정부기관인 사회서비스부(DSS)는 청소년 정착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인 다문화청소년옹호네트워크(Multiculture Youth Advocacy Network: MYAN)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MYAN을 포함해 지역별 6개 YTS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6개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대상자 많은 Brisbane, Logan, Melbourne 및 Sydney의 19개 주요 지방정부 지역(LGA)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36. 호주의 주별 YTS 서비스 제공업체

주정부 이름	YTS 서비스 제공업체	약자 명칭	아울렛 갯수	지방정부 이름
New South Wales (NSW)	Community Migrant Resource Centre Inc	CMRC	4	Auburn and Blacktown
	Lebanese Muslim Association	LMA	42	Canterbury, Bankstown, Liverpool and Fairfield
Queensland (QLD)	Access Community Services Limited	ACS	1	Logan
	Multicultural Development Australia Ltd	MDA	1	Brisbane
Victoria (VIC)	Brotherhood of St Laurence	BSL	6	Hume
	Victorian Foundation for Survivors of Torture Inc (Foundation House)	FH	5	Greater Dandenong, Casey, Hume, Brimbank, Darebin, Maribyrnong, Maroondah, Melbourne, Melton, Whitehorse and Wyndham

* 출처: DSS (2016). The National Settlement Framework

YTS 서비스 제공업체에 배분된 전체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5/16년에 8.444백만 달러에서 2016/17년에 11.556백만 달러로 확대되었다가 2019/20년에 4.265백만달러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37. YTS 서비스 제공업체에 할당된 전체 예산 규모(2015/16~2019/20년)

(단위: 호주 백만 달러)

연도 제공업체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합계
LMA	2.281	3.162	0.878	2.107	1.053	9.481
CMRC	1.160	1.614	1.246	1.340	0.670	6.030
MDA	1.238	1.722	1.330	1.430	0.715	6.436
ACS	0.792	1.105	0.855	0.917	0.459	4.128
FH	2.051	2.844	0.806	1.900	0.950	8.550
BSL	0.722	1.009	0.780	0.837	0.418	3.766
MYAN	0.200	0.100	0.169	0.050	0.000	0.519
합계	8.444	11.556	6.064	8.581	4.265	38.910

* 출처: DSS (2016). The National Settlement Framework

다음은 YTS 서비스 제공업체별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민배경 청소년들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규모의 산정 시기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이다. 개별 고객(individual clients)은 측정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이며, 세션(sessions)은 각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제공되는 세션의 수이며, 사례(cases)는 YTS의 4가지 서비스로 분류되어 설정된 활동입니다. 제공업체별로 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LMA(8,872개)는 가장 많은 세션 수를 제공했고, LMA(2,586개)는 개별고객의 수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케이스는 CMRC(1,652개)는 가장 많은 케이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YTS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고객, 세션, 케이스 현황

제공업체 \ 방법	개인고객수 (individual clients)	세션 수 (sessions)	사례 수 (cases)	합계
ACS	1,576	4,284	589	6,449
BSL	804	6,429	30	7,263
CMRC	2,359	7,791	1,652	11,802
MDA	1,001	4,936	1,081	7,018
LMA	2,586	8,872	1,001	12,459
FH	1,709	3,819	637	6,165
합계	10,035	36,131	4,990	51,156

* 출처: DSS (2019); Synergistiq (2019: 15)

④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 대학생과 영주권이상 이주배경청년 대학생 간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차이

호주에서 성장해 대학생이 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들은 이민 신분과 개인 상황에 따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이용에 차이가 있다. 먼저, 외국 국적 대학생(유학생)들은 호주 내국인(영주권 이상) 학생들이 받는 고등교육대출프로그램(Higher Education Loans Programs: HELP)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 교육 과정의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호주 국내 학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졸업생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 시스템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학생

은 일반적으로 수업료를 선불로 지불하거나 기타 재정적 조치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물론 호주의 일부 단과대학 및 대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 전공 분야 또는 기타 기준에 따라 유학생에게 장학금(international scholarship)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동안 시간제 근무직(part-time work)으로 일할 수 있어 생활비와 수업료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DOE, 2023).

다음으로, 호주 시민(영주권자)인 대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는 고등교육대출프로그램(HELP), 영연방 지원 장소(CSP), 장학금과 보조금, 청소년 수당 및 청년수당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HECS-HELP, FEE-HELP 등과 같은 다양한 대출 제도가 포함된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L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수업료 지불을 지원하며 상환은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공립 대학의 학부 과정에 대해 할인된 수업료를 제공하는 연방 지원 장소(Commonwealth Supported Places, CSP)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대학, 정부 기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학금, 보조금,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상황에 따라 16~24세의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를 받을 수 있고, 25세 이상은 청년수당(Austudy)를 받을 수 있다.¹²⁸⁾ 이러한 정부 지원금은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DOE, 2023).

요약하면, 대학 등록금 지원 측면에서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청년과 영주권이상 이주배경청년 간의 주요 차이점은 HELP 및 CSP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자격 여부이다.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수업료를 보조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 학생이나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 물론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과 일부 민간기관 등이 제공하는 언어 및 의사소통지원, 문화 및 사회적 지원, 진로상담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이용할 수 있다.

128) 호주에서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과 청년수당(Austudy)이 있는데, 청소년 수당은 16-24세의 풀타임으로 공부하거나 호주 견습 과정을 밟고 있는 영주권자 이상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반해, 청년수당은 25세 이상의 풀타임 학생이거나 견습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주권자 이상의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이나 임시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⑤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과 영주권이상 이주배경청년 간 지원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호주에서는 외국국적의 아동청소년이 성장하여 19세 이상의 외국국적의 청년이 되었을 때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과 호주 영주권자 이주배경 청년 간의 진로, 취업, 노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자격)에 차이(구분)가 있다. 이는 호주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민권자와 비영주권자(외국인)를 구별하는 이유 또는 근거이며 법적 지위, 시민권 권리, 국가안보 및 공익, 사회적·경제적 고려 등에 근거하고 있다(Van Mol & de Valk, 2016).

우선 법적 지위(legal status) 측면으로 이민법과 규정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 비자 소지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해당 국가에서 개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집단에 대한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권 권리(citizenship rights)로 시민권은 개인들에게 정부 지원 지원 프로그램 및 혜택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특정 권리와 특권을 제공한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시민이 되어 국가에 장기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또한 국가 안보 및 공익(national security and public interests)차원으로, 호주 정부는 이민을 관리하고 국가 안보와 공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는 정책은 자원과 기회가 적절하게 할당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적 고려(soci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측면으로 시민과 비시민권자를 구별하는 것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시민들(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격 기준을 높으로써 공적자원을 공평하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호주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청소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임시 비자 소지자에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전환될 수 있다. 법적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도 변경될 수 있다(Van Mol & de Valk, 2016).

그런데도 호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국적, 민족, 이민 신분과 같은 특성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 국적 청년이 국제 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에 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호주 정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비(非)시민권자가 공정하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⑥ 이주배경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주요 효과와 한계점

호주의 경우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나 정책은 영주권 이상 이주배경청년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영주권이상 이주배경청년들에 대한 진로, 취업, 노동,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와 지원프로그램의 한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호주의 이주 배경 청년(주로 영주권자 이상)들의 직업, 고용, 노동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성과를 갖고 있다. 우선, 이민 배경의 청년들이 구직 지원, 기술 훈련,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술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취업 시장의 요구에 맞는 귀중한 기술을 갖추게 한다. 교육 지원정책으로 인해 이들이 교육기관 등록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더 나은 취업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이민 청년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종종 젊은 이민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며 포용적인 문화적 인식을 하게 한다(Heyeres et al., 2021).

위와 같이 이주 배경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어려움과 한계도 있다. 먼저, 언어 장벽은 직장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이민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어 경력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호주는 이민자들에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만, 재정적 제약이나 자격 기준으로 인해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젊은 이민자들은 호주에서 직업의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취업 기회 및 경력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일부 청년이민자들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갖고 있어서 교육 및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모든 이민 배경 청년들이 포괄적인 정착 서비스나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Couch, Liddy, & McDougall, 2021).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기관, 고용주,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은 이들이 호주의 노동력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언어 능력, 문화적 역량,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장의 목적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19세 이상)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규모,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과 이들을 위한 체류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지원정책 및 체류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장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호주의 이민정책과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와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전체 이민자 수 총량은 지난 10년간(2010~2021년) 매년 약 17만 명 수준이고, 이 중 기술이민은 약 68%, 가족이민은 약 31%, 인도주의 이민은 약 1%의 비중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호주의 경우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은 52.3%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4.3% 높고, 외국 태생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은 9.6%, 혼혈혈통의 부모를 둔 본토 태생은 13.0%, 아동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은 9.6%, 성인기(15세 이상)에 이민 온 외국 태생은 20.1%로 성인기에 이민 온 외국 태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 태생 부모를 둔 15~34세 청소년의 비중이 지난 10년간(2012~2021년) 3.7%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12~24세)의 규모는 2016/17년 기준으로 17,446명이고, 전체 이민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주배경청소년 중 인도주의 이민이 전체 이주배경청소년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8~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전체의 대다수(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이민의 청소년 중 거의 절반(49%)이 18~24세 연령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 이민으로 호주에 도착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태어난 4대 국가로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이고, 전체 인도주의 입국자 중 7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에서는 후기청소년기(19세 이상) 이주배경청소년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과 ‘영주권이상 이주배경청년’구분해서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대학생의 경우, 노동 권리(work rights), 취업서비스(career services), 학업 후 노동권리(post-study work rights)를 갖고 있고, 일반청년의 경우 임시거주자로 기술취업비자를 통해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청년수당, 등록금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이용 자격이나 권한은 없다.

둘째, 외국국적 청소년(16~18세)이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에는 노동 권리(work rights), 견습 및 연수생 제도(school-based apprenticeships and traineeship, SBAT), 실용적인 직업교육과 훈련(vocational educational and training, VET), 구직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Jobactive)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주권이상 이주배경청년(19세 이상)들이 이용 가능한 지원정책에는 i)Jobactive, ii)Youth Jobs Path, iii)Skilling Australia Fund, iv)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v)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등으로 외국국적 청소년에 비해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이 훨씬 넓고 다양하다.

셋째, 호주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영주권이상의 이주배경청소년(12~25세)을 대상으로 고용, 교육, 직업훈련, 스포츠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전환지원(Youth Transition Suppor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대학 등록금 지원 측면에서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청년과 영주권이상 이주배경청년 간의 주요 차이점은 고등교육대출프로그램(Higher Education Loans Programs) 및 연방 지원 장소(Commonwealth Supported Places)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자격 여부이다.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수업료를 보조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 청년이나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 물론 유학생들을 위한 일부 교육기관과 일부 민간기관 등이 제공하는 언어 및 의사소통지원, 문화 및 사회적 지원, 진로상담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호주 정부가 이주배경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진로, 취업, 노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과 영주권이상 이주배경청년 간 프로그램의 이용에 차이(구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호주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차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권자와 비영주권자(외국인)를 구별하는 이유로 법적 지위, 시민권 권리, 국가안보 및 공익, 사회적·경제적 고려 등에 근거하고 있다.

여섯째, 호주의 경우 이주배경청년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에는 정부수준별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있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기관에는 내무부와 교육, 기술 및 고용부 등이 있고, 주 및 준주 정부(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기관에는 교육훈련부, 고용 및 지역성장부 등이 있고,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 기관들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호주의 이주배경청년들의 직업, 고용, 노동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은 이민 배경의 청년들이 구직 지원, 기술 훈련,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보장하도록 하고, 일자리를 얻은 이민 청년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며 포용적인 문화적 인식을 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언어장벽, 고등교육 접근에 제한, 건강 문제,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체류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이 장기거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학생비자, 임시졸업비자, 기술독립비자 등을 통해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용주후원비자, 일반 숙련이민점수제도, 독립기술비자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

둘째, 호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아동 및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호주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비자 상태, 신청하려는 비자 유형, 개인적인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청년은 호주를 떠나지 않고도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광, 사업, 가족 및 친구 방문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visitor visas, subclass 600), 워킹 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s, Subclass 417 및 Subclass 462)와 최초의 입국을 위한 학생 비자(student visas)는 호주 밖(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호주에서 외국 국적의 아동·청소년이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 호주 시민권(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i)영주권 취득, ii)거주요건, iii)시민권 시험 통과, iv)영어 요건, v)시민권 신청, vi)시민권 수여식 등을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

넷째, 호주에서 외국 국적의 아동 및 청소년이 19세 이상으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호주 정부는 이들이 장기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 장기 거주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과 기본 원칙은 호주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수요와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주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민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섯째, 호주에서는 외국국적 아동·청소년이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 장기 거주 비자를 받았을 때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일반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특정 직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런 직업 분야에는 군대와 경찰, 정부기관(특정부문), 정보 및 안전관련 기관, 규제기관, 방위산업, 항공조정

사와 관제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 거주하던 외국 국적 아동 및 청소년이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 장기 거주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진 이민 절차와 경로를 통해 장기 거주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명시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이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호주 정부는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국적 청년들에게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요약

지금까지 해외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각국 이민의 역사,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및 범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정책,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및 직업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국가별 정책현황을 각 국가별 이주배경자에 대한 정의 및 범주, 체류정책, 지원정책 등 세 가지 주요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9.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요약

주제	국가	내용
정의 및 범주	프랑스	■ 이주민과 외국인을 구분 - 이주민: 출생 당시 국적이 프랑스인이 아닌 사람 - 외국인: 프랑스에 거주하지만 프랑스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 이주민 자녀: 부모 중 1명 이상이 이주민이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인구
	독일	■ 이주배경자: 본인 또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출생 시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외국국적자와 독일국적자 모두 포함. - 독일국적자의 경우 귀화자, 입양인, 출생시 독일국적자(부모 모두 이주배경, 부모 중 한 명 이주배경자)
	스웨덴	■ 자국민과 이민자로 구분 - 자국민: 스웨덴 부모를 둔 스웨덴인. 부모 중 한명은 외국인인 스웨덴인, 외국에서 태어난 스웨덴인, 외국부모를 둔 스웨덴인 - 이민자: 본인이 직접 이주한 사람, 부모 모두 외국인이며 본인도 외국국적인 자 ■ 이주배경자: 스웨덴 배경을 가진 자와 아닌자 - 스웨덴배경자(부모 모두 스웨덴인, 한부모 스웨덴인) - 이주배경자(부모 모두 외국인, 외국태생자)

주제	국가	내용
	캐나다	■ 세대별 - 1세대: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 2세대: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 3세대 이상: 본인과 부모 모두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나 그 이상의 조상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 이민유무 - 비이민자(non-immigrant) - 이민자(immigrant) - 비영주권자(non-permanent residents)
	호주	■ OECD기준의 이주배경청소년 개념 따름 - 외국출신 부모를 둔 호주 출생자 - 국제결혼가정의 호주 출생자(부모 중 한명은 호주인이고 한 명은 외국 출신) - 아동기에 이민 온 외국 출생자(15세 이전에 입국) - 성장 후 이민 온 외국 출생자(15세 이상 연령시기에 입국) ■ 호주의 청소년 연령은 12-24세임.
체류 정책	프랑스	■ 18세 이전(체류증 소지 불필요) - 부모 중 1명 이상이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 프랑스인의 외국인자녀, 또는 EU, 유럽 경제 지역 협정국 및 스위스 국민의 직계자녀 - 부모 중 1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 - 16세 이전에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의 보호 하에 들어간 미성년 -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은 미성년 - 프랑스 국적자 또는 입양아의 자녀로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로 프랑스에 입국한 미성년 - 3개월 이상 방문자 비자로 만 13세 이전에 입국한 미성년(이후 프랑스에 계속 거주 증명) - 해외출생 미성년 중 가족 재결합 제도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경로로 마요트(지역명)에 입국하였을 때 시행 중인 국제협약 및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와 비자를 소지하고 부모 중 1명이 임시, 다년(4년), 10년 거주를 허가하는 체류증을 가진 경우 ■ 성년 체류정책(미성년에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 (가족 재결합제도를 통해 입국한 경우) - 미성년 기간 중 1년간 프랑스에 체류한 경우 4년 체류증 - 미성년 기간 중 3년간 프랑스에 체류한 경우 10년 체류증 (13세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과 프랑스에 13세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년 체류증 발급 - 프랑스에 10세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알제리 청소년은 부모 조건과 상관없이 알제리인을 위한 특별 거주 허가증(10년) 발급 - 프랑스에 10세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튀니지 청소년은 임시 체류증 발급 (프랑스에 출생한 경우) - 프랑스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10세 이후 프랑스 교육 기관에서 5년 이상 재학한 경우 1년 임시 체류증

주제	국가	내용
		(미성년에 아동복지서비스기관에 들어간 경우) -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진정성과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출신국에 연고가 없거나 있어도 그 연고가 끊겼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었음을 해당 청소년을 호스트하고 있는 개인/기관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는 경우 - 16세 이후에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의 보호 하에 들어간 경우 '예외적' 거주 허가를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6개월 이상 '진정성' 있게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또한 출신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해당 청소년을 호스트하고 있는 개인/기관으로부터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었음을 증명 받아야 함. 이 내용을 충족하였을 경우 노동(Salarié)비자 혹은 임시 근로자(Travailleur temporaire) 체류증을 발급함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경우 학생비자 발급)
	독일	■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와 함께 독일로 이주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외국인이 16세가 되면 영주권 취득 가능. 단, 5년 동안 거주허가를 소지한 미성년 외국인에 한함. ■ 성인 이후에는 독일어능력, 안정적 생계보장, 공인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가능. 5년 동안 거주허가를 소지한 경우 ■ 독일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부모 중 한 명 이상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 ■ 독일에서 학위 또는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숙련노동자 또는 연구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2년간 거주를 허가함. 직업이 있어야 하고, 24개월 동안 의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독일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영주권 신청에 유리
	스웨덴	(시민권) ■ 20세 이상 성인 - 스웨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경우로 5년 이상 연속거주자 - 스웨덴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자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법적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12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 신청) ■ 18세에서 20세 미만 청년의 경우 - 13세 이후 계속 스웨덴에 거주하였고(무국적자의 경우 15세 이후), 스웨덴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영주권) ■ 20세 이상 성인 - 영주권증명서: 국적에 따라 다름. EU/EEA시민은 EU법률에 따라 최소 5년 동안 거주권을 가지고 스웨덴에 거주했으며,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동 영주권 획득. 2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으면 취소됨 - 영주권카드: EU/EEA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 최소 스웨덴에서 5년 이상 지속거주자. 재정증명과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능력 증명 필요. 2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으면 취소됨 ■ 18세에서 20세 미만 청년 - 일반성인과 동일함. - 18세 이전에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의여불 밝힌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 무국적자와 난민허가증 소지자는 일반성인과 동일.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주제	국가	내용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지속 거주가능 (기타 장기거주) - 취업: 스웨덴 내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을 한 경우. 고용주의 승인을 통해 이민국에 신청하고 거주 허가증을 취득함. 거주 허가증은 해당 업종에 종사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되며, 업종을 변경할 경우 거주권리를 상실함. 최대 2년.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고용주의 승인을 통해 거주허가 연장. 취업상태에서 거주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 가능 - 자영업: 18세 이상으로 스웨덴 내 법인 등을 설립한 경우. 최대 2년. 업종변경 불가능. 역시 4년을 초과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 그 외, 공연예술가, 학생, 오페어(가족 근로계약), 워킹홀리데이, 국제교류연수 등 (장기거주허가증 소시자의 취업가능범위) - 스웨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가능하고 EU/EEA 국가 및 스위스에서도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함.
	캐나다	■ 성인기 이주배경자 (영주이민) - 경제이민: 기술, 학력, 재정 등 캐나다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직접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 교육수준, 취업경험, 거주기간, 공식언어 능력 등을 갖춘 후 심사 - 가족초청이민: 캐나다 영구신분을 취득한 자가 부양가족을 캐나다로 데려와 가족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형태로,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 등 - 난민: 정치, 종교 등의 이유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캐나다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사람 (임시거주권자) - 캐나다 이외의 국적을 지니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방문, 학업, 취업 등 캐나다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기간 동안에만 체류가능 - 방문은 6개월 미만, 학업은 정규 교육 이수시간, 취업은 취업계약기간까지 체류 가능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임시거주) -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 취업자, 학생, 난민 신청자에 해당함. -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획득해야 함. - 학생비자로 대학을 졸업한 자는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더 체류할 수 있는 임시취업비자(PGW)발급.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학습기관(컬리지, 전문기술학교, 대학 등)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고, 해당 학습기관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위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학업기간 동안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함. (영주권) - 입국전 취득(가족초청이민제도):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양자녀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후원자는 18세 이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캐나다 정부로부터 소득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또한 자녀를 위해 주택, 의료, 음식, 의료비 등 지원을 확인. 자녀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자녀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결혼 및 사실혼 관계가 없어야

주제	국가	내용
		하며, 22세 미만이어야 함. 단,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후원이 가능함. - 캐나다 학업 및 취업 경험자: 캐나다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이수하거나 노동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영주권 부여. 정부가 지정한 학습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임시 취업허가를 부여받아야 하며, 취업허가를 통해 TEER 카테고리 0, 1, 2, 3에 해당하는 직업에서 최소 1,560시간의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함. 동시에 TEER 카테고리 0, 1의 업무경험자는 캐나다 공식언어시험 CLB에서 7 이상을 받아야 하고, TEER 카테고리 2, 3의 업무경험자는 CLB 5 이상을 받아야 함.
	호주	■ 외국국적 부모가 18세 이하 청소년 자녀와 호주에서 비영주형 비자로 체류하다가 청소년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19세 이전에는 부모에 종속된 비자소지) - 호주에서 계속 교육받기를 원하는 경우: 학생비자 신청. 학업을 마친 후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가능 - 학교를 마친 경우: 임시출업비자 획득. 임시적으로 호주에 머물면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음. 체류기간은 신청하는 임시 출업 비자의 세부 종류에 따라 다름 - 호주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술이민비자 신청가능. 이 경우 호주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과 자격을 가진 비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비자: 호주의 일부 특정 지역(주로 비도시지역)에서 정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외국국적 청년들에게 독립적 거주기회 제공 가능 - 가족비자와 사업비자: 호주에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는 잔여친척비자, 노인부양 친척 비자, 간병인 비자 등 가족재결합비자 신청 가능.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관계있는 외국인인 파트너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장기거주비자 소지자의 취업가능 범위 - 장기거주 비자를 받은 경우는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없음(다만, 군대, 경찰, 정부기관, 정보 및 안전관련 기관, 규제기관, 방위산업, 항공조정사와 관제사 등은 제한됨)
지원 정책	프랑스	■ 프랑스어 학급이후에는 선주민과 동일 - 프랑스어 학급을 제외하고는 이주배경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없음 - 대학장학금의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28세 미만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 넘지 않음) -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의 보조금도 국적이나 이주배경은 조건이 아님(단, 외국국적자는 합법적 체류자에 한함). ■ 18-21세 청소년대상 젊은 성년자 계약 - 생활비, 교육비, 심리적 지원, 주거지원 등 - 국가가 선발하며 대상자가 매우 적음
	독일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JMD) - 언어, 사회, 교육, 직업적 통합 가능성 증진을 위한 상담지원

주제	국가	내용
		■ 이민자를 위한 직업 오리엔테이션(BOF) - 26주간 사회 및 교육지원, 희망하는 훈련직종에 필요한 전문용어와 지식 습득 (전체 청소년 대상) ■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질 향상 프로그램 ■ 직업준비 교육방안 ■ 직업교육지원금 ■ 청소년 고용 기관 ■ 교육 체인 아니셔티브 ■ 자원봉사자 코칭
	스웨덴	■ 이주배경청소년 자립지원정책 - 16세부터 19세 까지 학업보조금 지원 - 운전면허 취득, 가전제품 구입 등을 위한 대출 지원 - 무료 언어교육 지원. 난민의 경우 언어과정 이수 시 보조금 지급 ■ 학자금 대출 -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년들이 다니는 성인학교, 민속학교, 전문 대학이나 직업학교 진학 시 학자금 대출. 전일제 학생에 한함. - 20-61세까지 신청 가능 - 시민권자, EU/EEA 또는 스위스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거주자에 한함. ■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학업 보조금 - 의무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학업을 다시작할 경우 입학보조금 지원 - 25-60세 지원 가능하고 공공고용서비스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업무 전환을 위한 학업보조금 -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려고 하거나 자기 분야를 심화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원 - 27-62세 지원 가능. 전환하려는 직종이 새로운 직종이거나 비인기 직종 유리 ■ 대학교 등록금 등 대학생 지원 - 자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대학등록금은 전액 면제임. 거주 허가증을 지닌 경우도 일부 감면 - 대학원의 경우는 자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만 등록금 전액 면제
	캐나다	○ 이민유무에 상관없이 취업 및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 청소년 고용 및 기술 전략 프로그램(YESP): 취업장벽에 직면한 청소년(고등학교 조기졸업자, 신규이민자 청소년, 소수집단,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저소득가 구 청소년, 노숙자 및 불안정한 주택거주 청소년, 농촌 및 산간지역 거주 청소년)에게 취업교육, 기술 및 훈련제공, 취업 후 일자리 지속을 위한 경력관리, 취업연계. 고용주도 참여하여 서비스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파트너로서 훈련받은 청소년을 고용하고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원받음. ■ 캐나다 여름방학 일자리 사업: 정규직원이 50명 이하인 비영리조직,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 조직의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 제공하여 15-30세 청소년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양질의 취업경험 제공.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법적 인정 난민대상이고, 사회보험번호 소지자이며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주제	국가	내용
		■ 취업 성공을 위한 기술: 노동시장 참여에 필요한 쓰기, 읽기, 수리력, 디지털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적응력, 창의성 및 혁신, 협업능력 등 9가지 역량을 개발의 훈련기회 제공. 소수집단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 장학금: 체류신분은 수혜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도 받을 수 있음. ■ 학자금 대출: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배경청소년은 캐나다 정부 학자금 대출 지원 자격이 없음. 그러나 민간 기관인 전문교육대출기관에서 가능한 함. 그러나 캐나다 국적자, 영주권자 등 모든 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함. ■ 불확실한 이민 신분을 가진 학생을 위한 접근 프로그램: 난민 또는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이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역의 난민센터와 대학교가 협업하여 불안정한 체류자격 상태인 학생에게 대학입학을 허가함. 학비 및 재정지원. ■ 금융문해력 지원: 합리적인 소비방법, 화폐단위, 세금 및 봉사료 계산, 주택구입을 위한 재정관리, 은퇴를 위한 저축방법, 투자 및 대출 등 재정관리 교육. ■ 정신건강 지원: 멘토링, 청소년주도의 컨퍼런스, 지역사회 행사, 옹호활동 등 ■ 의료보험 지원: 캐나다 시민과 이민자 모두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 받음. 특히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료보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민의 경우 임시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며, 건강검진, 후속조치, 예방접종, 기본 진료 및 의약처방 등 필요자원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을 전담하는 부처는 존재하지 않음. 주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관련 정책은 고용사회개발부, 보건부, 교육부장관회의에서 각각 담당함.
	호주	■ 외국국적 대학생 - 학생비자를 지닌 유학생의 경우 학기 중 2주 당 최대 40시간 한도 내에서 노동권리를 가짐. 교육기관에서 유학생들이 파트타임이나 임시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함. - 졸업 후 특정 기간 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제공하여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 ■ 대학 비진학자 - 임시 기술부족 비자 또는 기술 취업 지역비자를 받을 수 있음. 업무의 유형, 근무시간 등에 제한이 있고, 정부지원금이나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음. => 비자조건에 명시된 노동권리나 교육기관의 접근, 취업 기회 등이 있으나 청년수당이나 등록금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이용자격은 없음. ■ 외국국적 임시 비자로 부모와 함께 호주에 입국한 16-18세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 - 학교기반 견습 및 연수생 제도: 학교 교육과 유급노동, 직업훈련을 결합한 제도로,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실용적인 기술과 자격을 습득. -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실용적 직업교육과 훈련 실시. - 정부지원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지역사회 이민자 자원센터: 구직지원, 이력서 작성 워크숍, 교육 및 훈련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 민간기관: 언어향상, 기술습득, 교육훈련, 자문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19-34세 이주배경청년 - Jobactive: 이민배경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지원

주제	국가	내용
		- Youth Jobs PaTH(준비-시험-고용): 청년들의 고용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지원 - Skilling Australia Fund: 이민자를 포함한 젊은이들이 노동력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젊은 이민자를 포함한 기업가에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및 재정 지원 제공 -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재정지원 - 다양성 및 포용 프로그램: 기업과 산업분야의 보다 포용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 문화 및 언어 다양성 프로그램: 이민배경 청년의 직장 내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극복 지원 - 멘토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구직시장 탐색에 대한 안내, 진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 연결 프로그램 - 지역사회 및 이민자 서비스: 이력서 작성 워크숍, 인터뷰 준비, 구직 지원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 전환지원 서비스: 15-25세 사이의 청소년 난민 및 기타 취약한 청소년 이민자로 최근 5년간 호주에 도착한 이후의 영주권자(인도주의 입국자, 영어실력이 낮은 가족 범주의 이민자, 영어실력이 낮은 지역의 숙련된 이민자의 부양가족), 고용, 교육, 직업훈련, 스포츠 활동 등 지원 ■ 호주에서 성장하여 대학생이 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 -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이상의 학생들이 받는 정부지원의 고등교육대출프로그램은 이용하지 못함.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대학생: 고등교육 대출프로그램, 영연방 지원 장소, 장학금과 보조금, 청소년수당 및 청년수당 등 지원받음

4. 요약 및 소결

이번 장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정책으로서는 다문화가족기본계획, 다문화학생 지원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국가기본계획들을 분석하였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활성화방안,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그리고 청년정책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내의 정책들에서 이제 막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향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파악은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개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배경특성별로 진로, 노동, 자립지원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응과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영역별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청년기 이후의 삶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이며, 새로운 이민자를 수용하기에 앞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해외의 다섯 개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체류자격과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의 5개국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이민의 훨씬 전에 경험하였고, 이민정책이 발달한 국가로 볼 수 있다. 물론 국가별로 매우 포용적 체류 및 지원정책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본 장에서는 한국에 비하여 보다 포용적 제도를 소지한 국가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체류정책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와 함께 이주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외국인의 경우 16세가 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5년 동안 거주허가를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부모가 독일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부모 중 한명에게서 태어난 경우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학생비자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시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졸업 이후의 일정기간 체류를 보장해준다. 또한, 캐나다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이수하거나 노동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체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호주의 경우도 호주에서 대학을 마친 후에는 임시졸업비자를 발급하여 임시적으로 호주에 머물면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거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호주의 지역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특화비자와 유사한데, 호주의 일부 특정 지역에 정착을 장려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외국국적 청년들에게 독립적 거주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다. 독일, 캐나다, 호주의 경우 적극적으로 우수 인재를 정착시켜서 본국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사회도 동포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수용하여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사회에 함의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랑스나 독일 등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지원정책 보다는 선주민과 동일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차별없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언어가 부족한 집단을 대상으로 언어나 사회문화적응교육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민자를 위한 직업오리엔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민자를 대상으로 26주간 사회 및 교육지원과 더불어 희망하는 훈련 직종에 필요한 전문용어와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볼만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레인보우스쿨의 경우 한국어, 사회문화적응교육, 진로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어 매우 유사한데, 이와 더불어 희망하는 훈련 직종에 대한 전문용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현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한국어, 직업한국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웨덴의 경우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매우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16세부터 19세까지 학업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운전면허취득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도 해주고 있으며,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전문대학이나 직업학교 진학 시 학자금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물론 이는 장기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에 한하고 있다.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자국민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이며, 거주 허가증을 지닌 경우도 일부 면제를 해주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유무에 상관없이 취업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청소년 고용 및 기술 전략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장벽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취업교육, 기술 및 훈련제공, 취업 후 일자리 지속을 위한 경력관리 취업연계 등을 해주고, 고용주가 참여하여 훈련받은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난민이나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지역의 대학교와 난민센터가 협업하여 대학입학을 허가하고 학비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정책 방향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로 외국국적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특정 기간 동안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제공하여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국적의 임시비자로 부모와 함께 호주에 입국한 16-18세의 청소년들에게는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정부지원의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는 임시로 기술부족비자 또는 기술취업 지역비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취업 비자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해외의 우리보다 먼저 이민사회를 경험한 서구의 이민 국가들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서구 이민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포용적이고 발전적인 이민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민정책의 방향 및 원칙, 이민자에 대한 태도 등은 이론적으로 볼 때 매우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은 주로 기술교육이나 그 사회에서 주류집단이 하지 않는, 노동력이 부족한 영역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민정책이 그 사회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이민자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다는 측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도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에서 주류집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부족한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의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 이외에 그러한 정책의 방향이 초래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이주배경집단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한국 사회는 특정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하지 않고, 한 계층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포함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들도 특정한 기술이나 직업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과 관심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제5장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 3. 요약 및 소결

1. 조사 개요¹²⁹⁾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성 수립과 과제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조사설계¹³⁰⁾

(1) 모집단 및 표본추출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3년 7월 기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의 일반국민으로, 전체 집계구 중 현실적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섬지역이나 기숙시설(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 특수사회시설(양로원, 고아원, 특수병원 등), 외국인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집계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조사의 표본 크기는 1,5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였다. 표본추출 틀은 통계청의 2021년 기준 집계구로, 집계구란 기초 단위구를 결합하여 ‘인구규모(최적 500명), 사회경제적 동질성(주택유형, 자가), 집계구 형상을 고려하여 구축한 최소 통계 집계구역’이며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1개 집계구는 평균 200여 가구로 구성된다. 표본추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 층화를 하였다.

129) 5장의 1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130) 본 조사는 한국갤럽의 옴니버스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함. 따라서 한국갤럽 옴니버스조사의 조사설계(2023)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 하여 제시함.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는 1979년 12월부터 연간 6회 출수달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본 연구는 2023년 7월 조사에 포함되어 수행됨.

표 V-1. 총화기준 및 결과

총화단계	내용		
1차	• 총 21개 권역으로 나눔 • 16개 시/도를 기본으로 활용,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인구수, 특성을 고려 각각 4개/3개 권역으로 구분		
	지역	권역	해당 지역
	서울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북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중부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시흥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2차	• 동부, 읍면부		
3차	• 동부의 아파트, 일반(집계구 유형) - 집계구 유형은 집계구 내 아파트 가구가 60% 이상인 경우 아파트 집계구로 정의 - 특별(시/자치시) · 광역시에서 읍면 지역은 도시 지역과 유사 생활권으로 판단하여 동부로 분류		

표본 추출은 1차로 집계구 내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집계구를 추출하고, 2차로 가구추출을 하며, 3차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추출을 하였다.

- 1차 추출단위 : 집계구 → 집계구 내 가구수 기준, 확률비례계통추출법 적용
- 2차 추출단위 : 가구 → 계통추출
- 3차 추출단위 : 개인 → 할당 추출(성별, 연령대별 고려)

층별 모집단 집계구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V-2>와 같다.

표 V-2. 층별 모집단 집계구 현황

지역		동부		읍면부 집계구 수	집계구 합계
		아파트 집계구 수	일반 집계구 수		
전국		51,614	33,086	18,124	102,824
서울	북서	1,337	1,870	－	3,207
	북동	2,858	2,933	－	5,791
	남서	2,675	2,955	－	5,630
	남동	2,364	1,622	－	3,986
부산		4,021	2,684	－	6,705
대구		2,988	1,885	－	4,873
인천		3,499	2,417	－	5,916
광주		2,128	894	－	3,022
대전		1,807	1,203	－	3,010
울산		1,440	832	－	2,272
세종		600	157	－	757
경기	북부	4,003	1,510	2,097	7,610
	중부	5,181	3,199	374	8,754
	남부	5,667	2,692	1,830	10,189
강원		1,211	694	1,290	3,195
충북		1,215	695	1,353	3,263
충남		1,404	662	2,400	4,466
전북		1,715	917	1,059	3,691
전남		1,061	550	2,613	4,224
경북		1,650	1,165	2,531	5,346
경남		2,790	1,550	2,577	6,917

* 주: 2021년 기준, 통계청

위에 제시한 층별 모집단 집계구를 기준으로 1개 집계구 당 10가구를 배분하고, 1개 가구당 1명을 조사하면, 총 150개의 집계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시도별로 2개 집계구를 우선할당한 후 비례배분 하였고, 권역, 동부/읍면부, 동부의 아파트/일반을 비례배분 하였다. 층별 표본배분 결과를 제시하면 <표 V-3>과 같다.

표 V-3. 층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동부		읍면부 집계구 수	집계구 합계	기대 가구원 표본크기
	아파트	일반			
전국	69	54	27	150	1,500
서울	북서	4	-	6	60
	북동	4	-	8	80
	남서	5	-	9	90
	남동	3	-	6	60
부산	5	4	-	9	90
대구	4	3	-	7	70
인천	4	4	-	8	80
광주	3	2	-	5	50
대전	3	2	-	5	50
울산	2	2	-	4	40
세종	2	1	-	3	30
경기	북부	2	3	10	100
	중부	4	1	11	110
	남부	4	2	12	120
강원	2	1	2	5	50
충북	2	1	3	6	60
충남	2	1	4	7	70
전북	3	1	2	6	60
전남	2	1	3	6	60
경북	2	2	4	8	80
경남	3	3	3	9	90

*주: 2021년 기준, 통계청

(2) 가중치 산출 및 모수추정

조사 결과는 설계 가중, 무응답 조정, 1인 가구 보정(2021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1인/2인/3인/4인 이상 가구), 적격 가구원 추출률, 사후층화(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3년 6월 기준, 지역/성/연령대별)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였고, 원가중치를 조사 완료된 표본크기로 표준화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는 층화, 집락의 설계효과를 반영하여 복합표본추출에 적합한 모수추정식을 적용하였으며, 본 조사의 통계수치는 「주

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2023년 6월 기준)의 만 19세 ~ 79세 인구수로 모수 추정한 결과로 해석한다.

3) 조사방법

본 조사는 2023년 7월 10일 ~ 8월 4일 사이에 태블릿 PC에 내장된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전문조사원이 1:1 대면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실사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 V-1]과 같다.

절 차	내용
실사지도원 교육	조사 및 조사원 교육 전에 1차로 실사지도원(supervisor)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함. 사전교육의 내용은 조사 개요, 조사 목적, 조사 내용 등임.
조사원 선발	소속 조사원 중 적격자 선발
조사원 교육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부의 연습면접을 실시 하여 조사방법과 조사표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여 실사과정이 표준화(standardization) 될 수 있도록 교육함. 또한,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
조사원 통제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supervisor)가 매일 조사된 결과에 대해 조사원 앞에서 검토하여 그 즉시 조사원 교육을 행하는 통제시스템(quality control system)으로 실사를 통제 및 관리함으로써 조사원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함
검증 조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조사 결과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함. 본 연구소 검증원이 전화로 면접 자료를 검증함. 이 과정에서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조사한 조사표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 실시

* 출처: 한국갤럽 (2023: 4) 옴니버스 조사 조사설계서

그림 V-1. 조사 실사 절차 및 내용

4) 조사문항 내용 및 문항구성 절차

본 조사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중 특히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인식을 비교적 어린 연령층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하나는 국내 거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 집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19세에서 24세 청년기 집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각각 구분하였고, 또한 합법적 체류자와 비합법체류자를 구분하여 2×2의 네 집단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문항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차로 연구진이 설문을 구성하였고, 1차로 구성된 설문지 초안을 대상으로 국내 이주 및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12명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다.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IRB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NYPI-202306-HR-고유-043-01). 국민인식조사의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V-4. 국민인식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인식	긍정적 영향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김아선 외(2022) 문항 수정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고재권(2015) 문항 수정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재권(2015) 문항 수정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 작성
	부정적 영향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재권(2015) 및 김아선 외(2019) 문항 수정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김아선 외(2019) 문항 수정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고재권(2015) 문항 수정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우리 사회는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2022)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 발체 및 수정
	체류자격	한국국적이 없더라도 19세에서 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연구진 작성
		한국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세에서 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연구진 작성
지원의 필요성	• 기초생활지원(생계비지원) • 기초생활지원(의료지원) • 심리·상담지원 •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교육 •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 진로교육 • 직업훈련·교육 • 취업지원		양계민 외(2021)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 모든 문항에 대하여 ①지원해야 한다 또는 ②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중 응답
배경특성	국적 경험	귀하 본인이나 부모 중 누구라도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김이선 외(2022) 문항을 수정 및 보완
	외국인 접촉 경험	귀하는 평소 외국 출신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접하십니까?	김이선 외(2022) 문항 수정
	생활 만족도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2022) 「사회통합실태조사」
	주관적 삶의 지위	귀하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2022)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 발체 및 수정
옴니버스조사 기본문항	성별, 최종학력, 거주지규모, 지역, 혼인상태, 주관적 계층, 직업, 월평균 소득수준		

2. 조사 결과¹³¹⁾

1)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대국민 인식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배경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49.6%, ‘여자’는 50.4%로 거의 반반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5.5%, ‘30대’가 15.1%, ‘40대’가 18.3%, ‘50대’가 19.7%, ‘60세 이상’이 31.5%였다. 최종학력은 ‘고졸’ 44.3%, ‘대졸’ 44.1%, ‘중졸 이하’가 9.9%, ‘대학원 이상’이 1.7%로, 대부분은 고졸 또는 대졸이었다. 거주지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가 44.0%, ‘중소도시’ 거주자가 50.1%로 대부분 중소도시 이상 규모에 거주하고 있었고, ‘읍/면’ 지역 거주자는 6.0%로 소수였다. 거주지역은 ‘경기/인천/강원’이 35.3%였고, ‘서울’ 19.0%, ‘부산/울산/경남’ 15.2%, ‘대전/세종/충청’ 10.8%, ‘광주/전라/제주’와 ‘대구/경북’은 각각 9.8%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사무기술직’이 2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업주부’ 21.5%, ‘판매, 서비스업’ 15.3%, ‘자영업’ 13.4%, ‘기능, 숙련공’ 8.2%, ‘학생’ 4.9%, ‘무직/은퇴’ 4.9%, ‘일반 작업직’이 4.1%, ‘전문직’이 3.0%, ‘농업, 수산업, 축산업’이 1.9%, ‘기타’는 0.1%였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65.5%며, ‘미혼’이 26.3%, ‘이혼/별거/사별’이 8.1%였으며, 스스로 자신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9%, ‘중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37%였으며, ‘중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 ‘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5.3%,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였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였으며, ‘중간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2%,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였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43.5%,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32.9%, ‘300만원 미만’은 20.9%, ‘1,000만원 이상’은 2.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들 중 본인 또는 부모의 외국국적 경험여부를 파악하여, 이주배경자 비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99.4%가 순수 한국인이었고, 이주배경자의 비율은 0.6%였다. 또한 평소 외국출신자들을 접하는 정도도 살펴보았는데,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5.9%로 나타났고, ‘접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4.1%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131) 5장의 2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함.

삶의 만족도에 따른 이주배경집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5%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5.5%로 대부분은 만족하는 편이었다.

표 V-5.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단위: 명(%)

변인	내용	빈도(%)	변인	내용	빈도(%)
성별	남자	762(49.6)	직업	농업, 수산업, 축산업	28(1.9)
	여자	775(50.4)		자영업	206(13.4)
연령대	20대 이하	238(15.5)		판매, 서비스업	235(15.3)
	30대	232(15.1)		기능, 숙련공	126(8.2)
	40대	281(18.3)		일반 작업직	63(4.1)
	50대	303(19.7)		사무기술직	349(22.7)
	60세 이상	484(31.5)		경영관리직	1(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2(9.9)		전문직	46(3.0)
	고졸	681(44.3)		전업주부	330(21.5)
	대졸	677(44.1)		학생	75(4.9)
	대학원 이상	27(1.7)		무직/은퇴	76(4.9)
거주지 규모	대도시	676(44.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기타	2(0.1)
	중소도시	769(50.1)		매우 낮다	65(4.2)
	읍/면	92(6.0)		약간 낮다	509(33.2)
지역	서울	293(19.0)	월평균 소득수준	중간이다	894(58.2)
	경기/인천/강원	543(35.3)		약간 높다	67(4.4)
	대전/세종/충청	166(10.8)		매우 높다	2(.1)
	광주/전라	151(9.8)	외국인 접촉수준	300만원 미만	321(20.9)
	대구/경북	151(9.8)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6(32.9)
	부산/울산/경남	233(15.2)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668(43.5)
혼인 상태	미혼	405(26.3)	삶의 만족도	1,000만원 이상	42(2.7)
	기혼	1,007(65.5)		전혀 접하지 않는다	152(9.9)
	이혼/별거/사별	125(8.1)		별로 접하지 않는다	1,015(66.1)
주관적 계층	상	2(0.1)	삶의 만족도	자주 접한다	347(22.6)
	중상	87(5.6)		매우 자주 접한다	23(1.5)
	중	798(51.9)		매우 불만족한다	27(1.8)
	중하	569(37.0)		약간 불만족한다	364(23.7)
	하	81(5.3)		약간 만족한다	1,084(70.5)
외국국적 경험	있다	9(0.6)	전체	매우 만족한다	62(4.0)
	없다	1,528(99.4)		1,537(100.0)	

2)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1)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수용에 대한 찬성 비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0개 문항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여부를 4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10개의 문항 중 4개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네 개 문항에 대하여 거의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었다. 긍정적 영향을 문항은 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인구절벽 및 노동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문항으로, 이 문항에 동의한 비율이 74%나 되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65.5%,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66.4%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비용부담과 사회갈등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염려가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 중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찬성율은 49.7%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이 찬성을 하였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자격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두 가지 문항에 대하여 찬성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69.3%가 찬성을 하였다. 이는 한국의 장기거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거주 체류권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허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7.5%가 동의를 하였는데, 장기거주 이주배경청소년의 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동의 비율인 69.3%보다는 낮지만, 비동의 비율 42.5% 비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식은 긍정적인 쪽에 가까움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국민인식이 사회적 효용성, 즉,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노동력 부족,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 국제적 가교역할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나 사회적 갈등의 문제, 내국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로는 체류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데 대한 국민감정이 긍정적인 편이며, 향후 체류자격 기준 변경에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국민들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집단을, 비록 다소 수단적으로 접근 및 조건적 수용의 경향성이 보이고 이들이 가져올 사회적 부담에 대하여 염려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거의 70%가 동의하고 있고,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경우 한국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수용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요인	문항	비동의(%)	동의(%)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5.0	75.0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18.5	81.5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6.3	73.7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1.3	68.7

요인	문항	비동의(%)	동의(%)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0.3	49.7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25.8	74.2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34.5	65.5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33.6	66.4
체류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30.7	69.3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42.5	57.5

(2) 배경특성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의 차이

본 절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의 배경특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체류자격에 대한 태도와 배경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V-7>과 같이 성별, 연령, 최종학력, 외국출신자 접촉정도 및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크기와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낮고, 부정적 영향을 높게 인식하며 체류자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덜 수용적임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류자격에 대하여 보다 포용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긍정적 영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과 배경특성의 상관관계

배경특성 \ 요인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체류자격
성별	.02	.04	.02
연령별	.01	-.03	.02
최종학력	.02	.04	-.03
지역크기	-.06*	.08**	-.10***
외국출신자 접촉정도	.03	-.02	-.02
삶의 만족도	.03	-.02	.06*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0***	-.02	.03
월평균소득수준	.04	.03	-.01

* $p < .05$, ** $p < .01$, *** $p < .001$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별로 배경특성에 따라 어떤 인식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표 V-7>의 배경특성요인에 따라 각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의 내용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F = -2.03$, $p < .05$). 여자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이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에서의 성별 차이는 앞의 상관관계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없지만,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로 인한 내국인 취업에 대한 나쁜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여자들이 남성들보다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성별 차이

(단위: 평균)

	문항	남자	여자	t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82	2.82	-.26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3.00	3.02	-.60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8	2.89	-.21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75	2.79	-1.25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6	2.53	-2.03*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2.92	2.92	.18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2.72	2.77	-1.29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72	2.76	-1.07
체류 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73	2.75	-.74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56	2.59	-.86

* p<.05

② 연령별 차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의 연령별 차이는 아래의 <표 V-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V-9.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연령별 차이

(단위: 평균)

요인	문항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F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80	2.81	2.80	2.83	2.84	.37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3.04	2.99	3.04	2.99	3.01	.45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93	2.81	2.85	2.92	2.91	1.43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81	2.75	2.78	2.79	2.76	.33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7	2.50	2.42	2.50	2.50	1.42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2.96	2.87	2.92	2.91	2.93	.53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2.76	2.77	2.77	2.76	2.70	.71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78	2.76	2.71	2.73	2.74	.39
체류 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75	2.74	2.72	2.75	2.74	.12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 자격을 주어야 한다	2.59	2.50	2.57	2.54	2.62	1.90

③ 학력수준별 차이

학력수준별 차이는 전체 문항 중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라는 문항 하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F=2.97$, $p<.05$). 최종학력 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의 사회적 갈등과 불안에 대한 염려가 가장 높고, 중졸 이하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학력수준별 차이

(단위: 평균)

요인	문항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F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77	2.85	2.80	2.77	1.23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2.91	3.04	3.02	2.99	1.65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78	2.91	2.90	2.72	2.14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70	2.78	2.78	2.68	.81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0	2.51	2.47	2.86	2.47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2.88	2.94	2.91	3.09	.77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2.60 ^b	2.73 ^{ab}	2.78 ^{ab}	2.84 ^a	2.97*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63	2.77	2.74	2.71	1.55
체류 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77	2.73	2.75	2.56	.86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65	2.58	2.55	2.47	1.24

* $p<.05$, Duncan: a)^b

④ 거주지 규모별 차이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는 앞의 상관관계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른 변인에 비하여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이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부정적이고 덜 수용적이며, 반대로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긍정적이고 더 수용적이었는데, 우선 긍정적 영향요인 내 중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항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평균값이 높았다. 반대로 부정적 영향요인에서는 모든 문항, 즉,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네 개 문항에서 읍면지역의 평균값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체류자격과 관련해서는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도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평균값이 높은 경향성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태도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이 긍정적인데, 이는 읍면지역의 경우 이주배경집단의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 이주배경집단이 대도시와 달라 지역사회 주민으로 거주할 가능성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V-11.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거주지 규모별 차이

(단위: 평균)

요인	문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77 ^b	2.84 ^b	2.98 ^a	6.34**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3.02	3.01	3.03	.079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4 ^b	2.91 ^{ab}	3.03 ^a	4.25*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76	2.79	2.77	.28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4 ^a	2.47 ^{ab}	2.38 ^b	3.06*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2.98	2.88	2.84	4.37*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2.72 ^a	2.79 ^a	2.53 ^b	6.36**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79 ^a	2.73 ^a	2.46 ^b	8.26***
체류 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66 ^c	2.79 ^b	2.91 ^a	11.47***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54	2.59	2.69	2.86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b)c

⑤ 외국출신자 접촉 수준별 차이

외국출신 사람들을 접하는 수준별 차이에 따른 차이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는 문항과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두 개의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는 문항의 경우 전혀 접하지 않는 경우 가장 평균값이 낮았고, ‘외국 국적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문항의 경우는 자주 접할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는 오히려 전혀 접한 적이 없는 경우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경향성을 보여서 접촉이 모든 영역에서의 긍정적 태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표 V-12.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외국출신자 접촉수준별 차이

(단위: 평균)

요인	문항	전혀 접하지 않는다	별로 접하지 않는다	자주 접한다	매우 자주 접한다	F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75	2.82	2.86	2.70	1.61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2.84	3.03	3.06	2.90	4.23**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4	2.88	2.93	2.83	.86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81	2.79	2.72	2.74	.87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5 ^a	2.51 ^{ab}	2.39 ^b	2.51 ^{a_b}	4.89**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2.82	2.92	2.97	2.77	1.89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2.73	2.74	2.76	2.54	.77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78	2.74	2.76	2.48	1.15
체류 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87	2.73	2.70	2.76	2.61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57	2.56	2.60	2.66	.46

** $p < .001$, Duncan: a)b

⑥ 삶의 만족도 수준에 따른 차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삶의 만족도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가장 평균값이 낮았으며,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의 모든 문항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삶의 만족은 영향을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V-13.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삶의 만족도별 차이

(단위: 평균)

요인	문항	매우 불만족한다	약간 불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F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60 ^b	2.80 ^b	2.82 ^a	2.97 ^a	3.01*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2.99	2.99	3.02	3.07	.30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79	2.88	2.88	3.06	1.45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82	2.78	2.77	2.71	.25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1	2.43	2.53	2.46	1.86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2.84	2.94	2.92	2.91	.22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2.79 ^a	2.80 ^a	2.73 ^{ab}	2.53 ^b	2.86*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80	2.78	2.73	2.68	.60

(단위: 평균)

요인	문항	매우 불만족한다	약간 불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F
체류 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67	2.76	2.74	2.71	.26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29 ^c	2.50 ^b	2.59 ^{ab}	2.79 ^a	6.43***

* $p < .05$, *** $p < .001$ Duncan: a)b)c

⑦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차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차이의 경우는 아래의 <표 V-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긍정적 영향요인의 문항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총 4개 문항에서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영향 요인 중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문항에서는 반대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평균값이 낮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평균값이 나머지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전반적으로 이주배경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표 V-14.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차이

(단위: 평균)

요인	문항	낮다	중간이다	높다	F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75 ^b	2.85 ^b	2.98 ^a	8.87***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2.96	3.04	3.09	3.24*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3 ^b	2.90 ^b	3.16 ^a	7.65***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74 ^b	2.77 ^b	3.03 ^a	5.40**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9	2.50	2.48	.05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2.99	2.88	2.86	4.88**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2.74	2.73	2.85	.86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78	2.71	2.85	2.17
체류 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71	2.75	2.84	1.40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55	2.59	2.51	1.14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b

⑧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차이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서만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그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 태도: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차이

(단위: 평균)

요인	문항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F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2.78	2.83	2.84	2.67	1.94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 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2.97	2.99	3.05	3.03	1.42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 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2 ^{ab}	2.87 ^{ab}	2.95 ^a	2.71 ^b	3.78*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75	2.80	2.78	2.51	2.46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 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 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9	2.48	2.49	2.78	2.10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 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2.92	2.86	2.96	3.03	1.93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2.67	2.74	2.77	2.88	1.96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 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78	2.77	2.70	2.84	1.49
체류 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 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70	2.72	2.77	2.65	1.49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 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2.60	2.60	2.55	2.41	1.74

* $p < .05$, Duncan: a)b

3)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에 대한 태도

(1)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을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와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을 미성년과 청년기, 합법과 미등록으로 나누어 ‘19세 미만(미성년) 합법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19세 미만(미성년) 미등록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19세~24세(청년기) 합법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19세~24세(청년기) 미등록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지원 범주는 기초생활지원(생계비 지원, 의료 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훈련·교육, 취업지원 등 총 10개 항목을 설정하여 ‘지원해야 한다’와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그림 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류의 합법성 및 연령집단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이거나 상관없이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이 높았고,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동일한 체류자격 집단 내에서는 19세 미만자의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 체류집단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모든 집단에서 초·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고,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지원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각 집단 내에서 볼 때 높은 편이었으나 대학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비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특히 19세에서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기초생활지원 중 의료지원에 대한 필요성의 경우 19세 미만 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자는 60.2%였던 것에 비하여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생활지원 중 의료지원은

27.8%만 찬성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지원의 경우도 19세 미만의 합법자에 대한 지원은 68.8%가 찬성한 반면,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 지원은 30.7%만이 찬성을 하였다.

한편, 19세에서 24세 의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에서 가장 높은 내용은 직업훈련 및 교육과 취업에 대한 지원비율로 각각 44.0%와 41.0%였는데, 이러한 응답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이 다소 도구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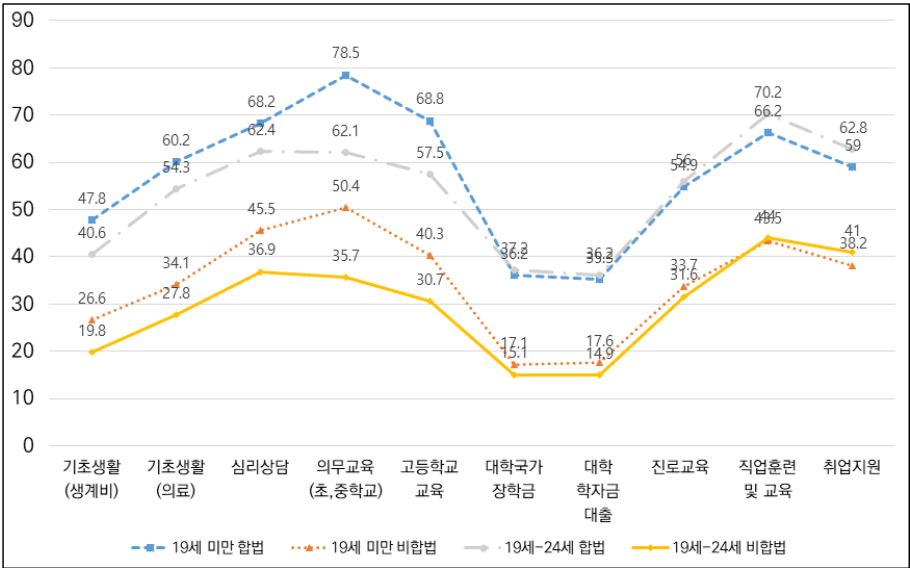


그림 V-2.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대상별 찬성비율

표 V-16.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대상별 찬성비율

(단위: %)

대상 \ 지원영역		기초생활 (생계비)	기초생활 (의료)	심리· 상담	의무교육 (초·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대학 학자금 대출	진로 교육	직업훈련· 교육	취업
19세 미만	합법	47.8	60.2	68.2	78.5	68.8	36.2	35.3	54.9	66.2	59.0
	비합법	26.6	34.1	45.5	50.4	40.3	17.1	17.6	33.7	43.5	38.2
19-24세	합법	40.6	54.3	62.4	62.1	57.5	37.2	36.2	56.7	70.2	62.8
	비합법	19.8	27.8	36.9	35.7	30.7	15.1	14.9	31.6	44.0	41.0

(2) 배경특성에 따른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연령 및 체류자격에 따른 지원별 찬성 비율

다음으로 각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을 성별, 연령, 권역, 지역크기,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외출출신자 접촉정도,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 배경특성에 따라 비교하였다.

① 성별 차이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의 내용에 따라 찬성의 비율은 달랐는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남성들이 여성에 비하여 매우 근소한 차이로 높은 찬성의 경향성은 있으나 사실상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7.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성별 차이

(단위: %)

대상		성별	기초생활 지원 (생계비)	기초생활 지원 (의료)	심리·상담 지원	의무교육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훈련· 교육	취업 지원
19세 미만	합법	남성	47.9	60.6	67.1	79.1	70.2	37.3	36.2	56.1	66.3	60.1
		여성	47.7	59.9	69.3	77.8	67.4	35.1	34.4	53.8	66.1	58.0
	비합법	남성	27.3	34.0	45.5	52.0	42.0	16.9	17.9	33.7	43.3	38.6
		여성	25.9	34.2	45.4	48.8	38.7	17.2	17.4	33.7	43.7	37.8
19- 24세	합법	남성	41.5	55.9	62.8	62.1	56.9	37.3	36.4	57.0	71.0	63.1
		여성	39.6	52.7	62.0	62.1	58.1	37.1	36.1	56.3	69.4	62.5
	비합법	남성	19.6	27.8	36.7	35.3	30.6	13.6	13.9	31.0	44.8	41.3
		여성	20.0	27.7	37.1	36.2	30.9	16.7	15.8	32.2	43.1	40.8

② 연령별 차이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연령별 찬성율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몇 가지 특징을 기술하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20대 이하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연령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지원(생계비, 의료)에 대한 찬성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장 찬성율이 낮은 대학국가장학금이나 대학학자금 대출지원의 경우 50대와 60대의 찬성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60세 이상 집단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비합법 체류자들의 진로교육,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지원 등에 대한 찬성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대와 50대의 경우 19세에서 24세 청년층의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기초생활지원(생계비, 의료)에 대한 찬성율이 가장 높은 두 집단이고, 20대의 경우 19세에서 24세 청년층의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40.5%로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았고, 초등·중등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지원 찬성비율 역시 20대 이하 집단이 가장 높았다.

표 V-18.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연령별 차이

(단위: %)

대상		연령	기초생활 지원 (생계비)	기초생활 지원 (의료)	심리·상담 지원	의무교육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훈련· 교육	취업 지원
19세 미만	합법	20대 이하	48.8	63.8	68.6	78.7	68.9	38.4	39.0	57.3	66.6	57.4
		30대	46.7	58.7	64.4	77.3	68.9	29.6	28.4	46.9	59.3	55.5
		40대	49.9	62.8	69.5	79.2	68.1	35.7	35.4	56.8	67.5	59.9
		50대	51.2	60.6	67.8	76.2	67.4	40.6	37.6	55.5	68.3	59.0
		60세 이상	44.5	57.5	69.3	79.9	70.0	35.7	35.2	56.1	67.3	61.1
	비합법	20대 이하	28.1	36.5	48.2	54.3	41.7	16.5	17.6	31.9	45.9	40.4
		30대	29.8	35.2	43.2	46.5	37.8	16.0	15.0	28.1	36.7	33.2
		40대	22.2	33.8	44.9	47.5	40.8	13.4	14.0	30.6	40.8	35.9
		50대	29.2	34.5	42.2	48.3	41.1	19.1	18.2	33.4	42.1	36.7
		60세 이상	25.2	32.2	47.6	53.3	40.2	18.8	20.6	39.3	48.1	41.8
19- 24세	합법	20대 이하	41.8	55.7	62.9	63.6	58.9	39.3	37.6	54.7	72.7	64.7
		30대	41.8	53.5	60.5	57.2	51.4	35.2	36.4	53.9	64.2	56.3
		40대	39.0	52.4	60.4	60.5	55.5	31.4	33.7	51.9	68.7	62.0
		50대	41.1	52.9	61.2	65.7	63.2	37.8	36.8	59.8	69.3	63.0
		60세 이상	39.9	56.1	65.0	62.4	57.3	40.1	36.6	59.8	73.3	65.4
	비합법	20대 이하	21.2	31.4	40.5	40.7	34.4	15.8	17.8	31.8	43.7	41.3
		30대	18.4	27.4	33.2	29.8	25.7	13.4	10.4	27.3	39.0	35.8
		40대	17.1	27.7	38.5	33.9	29.2	11.7	11.3	30.9	44.9	42.2
		50대	23.7	30.0	36.3	37.9	34.3	16.7	15.1	31.1	43.4	40.1
		60세 이상	18.8	24.8	36.3	35.8	30.0	16.6	17.5	34.3	46.3	43.2

③ 거주지역별 차이

지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세 미만 합법체류자에 대한 19세 미만 합법체류자의 기초생활지원(생계비)에 대한 찬성비율을 보면,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찬성비율은 60.7%로 가장 높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거주자의 찬성비율은 26.7%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지원 중 의료의 경우 역시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찬성비율이 73.6%로 가장 높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거주자의 찬성비율은 49.5%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리상담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은 대전, 세종, 충청지역과 광주, 전라지역이 각각 73.2%와 73.7%로 가장 높고, 서울지역이 61.0%로 가장 낮으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는 66.1%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교육(초등·중학교)에 대한 지원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찬성비율이 83.4%, 광주, 전라지역의 찬성비율이 83.6%로 가장 높고, 서울지역이 71.4%,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72.5%로 가장 낮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대학국가 장학금지원에 대한 찬성비율도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찬성비율이 45.4%, 광주 전라지역 찬성비율이 43.5%로 가장 높고, 서울 및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찬성비율이 33.2%로 가장 낮았다. 대학학자금 대출지원의 경우는 대구, 경북지역의 찬성비율이 45.4%로 가장 높고, 다음이 광주, 전라지역이 42.4%로 높았으며, 서울지역의 찬성비율은 28.9%로 가장 낮았다. 진로 교육 지원에 대하여 찬성비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55% 내외로 지역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구 경북지역의 찬성비율이 45.5%로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 직업훈련 및 교육도 다른 지역의 경우 65% 이상 찬성하였으나 대구, 경북지역의 찬성비율이 45.5%로 나머지 지역에 비하여 낮았다. 취업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은 대전, 세종, 충청지역 거주자들의 찬성비율이 68.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으로 62.9%였으며, 경기, 인천, 강원지역(55.2%)과 대구, 경북지역(55.5%)의 찬성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둘째로, 19세 미만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은 전반적으로 합법 체류자에 대한 찬성비율에 비해 월등히 낮으나 전반적인 경향성은 일관되었다. 각 지원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지원 중 생계비에 대한 지원의 경우 대구, 경북지역의 찬성비율이 44.6%,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찬성비율이 44.1%로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찬성비율은 11.9%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기초생활지원 중 의료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은 대전, 세종, 충청지역이 54.1%, 대구경북지역이 51.1%로 역시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27.3%, 서울지역은 그보다 더 낮은 25.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심리상담지원의 경우 대구, 경북지역의 찬성비율이 57.8%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찬성비율은 38.8%로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다. 의무교육지원에 대한 찬성의 경우는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들의 찬성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고,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찬성비율은 56.5%로 두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하여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자들의 의무교육지원 찬성비율은 43.3%로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낮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고등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교교육지원에 대한 대구, 경북지역의 찬성비율이 49.7%로 거의 50%에 달하는 것에 비하여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자들의 찬성비율은 28.2%로 매우 낮았다. 대학 국가장학금지원과 대학 학자금 대출지원 역시 대전, 세종, 충청지역과 대구, 경북지역의 찬성비율이 높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찬성비율이 낮은 것이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진로교육과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의 경우 대전, 세종, 충청지역 거주자들의 찬성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광주 전라지역 거주자들의 찬성비율이 낮았다.

셋째로, 19세에서 24세의 합법체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찬성비율의 경우 대전, 세종, 충청지역 거주자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비율을 보이는 경향성은 위의 19세 미만 합법 및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찬성비율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지원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지원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의 경우 대전, 세종, 충청지역이 58.9%로 가장 높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19.4%로 매우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기초생활지원 중 의료지원의 경우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찬성비율이 71.4%인 것에 비하여 서울지역이 47.7%로 가장 낮고 대구, 경북 지역이 49.9%,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50%로 낮은 편이었다. 심리상담지원의 경우도 대전, 세종 충청지역이 가장 높고(73.1%), 서울지역이 가장 낮음(56.7%)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교육(초등·중학교)과 고등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찬성비율은 광주, 전라지역이 각각 75.4%와 75.5%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었으며, 대학 국가장학금지원과 대학학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도 광주, 전라지역의 찬성비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교육의 경우는 경기, 인천, 강원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각각 61.1%와 61.6%로 가장 높고, 대구 경북지역이 4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및 교육의 경우는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찬성비율이 74.1%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지역의 찬성비율이 59.6%로 가장 낮았으며, 취업지원의 경우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찬성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지역이 53.1%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 체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지원에 대한 대전, 세종, 충청지역 거주자들의 찬성비율이 높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찬성비율이 낮은 경향성은 동일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광주, 전라지역의 경우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찬성율이 대부분의 지원에서 낮다는 것이었다. 특히 대학교 국가장학금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은 9.6%로 모든 지원의 종류 중 가장 낮았다.

표 V-19.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지역 차이

(단위: %)

대상	지역	기초생활 지원 (생계비)	기초생활 지원 (의료)	심리·상담 지원	의무교육 (초·중·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훈련 교육	취업 지원	
19세 미만	합법	서울	45.3	52.8	61.0	71.4	63.6	33.2	28.9	55.7	65.5	59.2
		경기/인천/강원	50.4	62.7	70.0	81.2	70.7	33.2	34.8	58.5	67.9	55.2
		대전/세종/충청	60.7	73.6	73.2	83.4	68.9	45.4	37.3	53.3	69.5	68.1
		광주/전라	54.3	64.8	73.7	83.6	78.9	43.5	42.4	50.8	65.2	60.2
		대구/경북	55.1	62.8	67.7	80.6	67.2	37.1	45.4	45.5	58.2	55.5
		부산/울산/경남	26.7	49.5	66.1	72.5	65.2	34.9	31.8	55.5	66.6	62.9
	비합법	서울	24.7	25.3	42.8	47.3	37.7	12.6	12.1	31.8	46.8	45.8
		경기/인천/강원	24.6	30.3	47.6	51.0	42.8	16.4	17.4	36.8	44.5	34.4
		대전/세종/충청	44.1	54.1	50.3	56.5	44.0	26.4	25.5	41.8	51.9	50.6
		광주/전라	22.8	36.0	35.9	50.6	41.9	17.6	19.2	25.6	30.8	27.7
		대구/경북	44.6	51.1	57.8	58.3	49.7	25.7	29.6	30.5	39.9	28.6
		부산/울산/경남	11.9	27.3	38.8	43.3	28.2	11.7	10.7	30.3	41.7	41.9
19~ 24세	합법	서울	37.9	47.7	56.7	57.3	50.7	37.4	36.3	57.3	73.0	66.3
		경기/인천/강원	41.4	54.1	62.4	57.9	53.4	34.7	35.7	61.1	74.1	60.1
		대전/세종/충청	58.9	71.4	73.1	70.6	62.2	38.9	34.8	50.5	70.5	70.7
		광주/전라	48.6	60.4	65.1	75.4	75.5	44.4	41.4	51.9	64.5	61.2
		대구/경북	47.2	49.9	64.9	67.4	60.7	34.5	40.7	43.5	59.6	53.1
		부산/울산/경남	19.4	50.0	58.7	59.9	58.3	38.8	32.2	61.6	68.0	66.5
	비합법	서울	20.3	22.3	33.7	33.8	32.8	15.8	13.1	30.2	50.9	50.4
		경기/인천/강원	16.1	22.8	34.7	31.1	29.5	12.3	13.7	35.4	47.6	39.2
		대전/세종/충청	33.9	43.5	50.2	46.3	35.9	23.6	19.7	42.0	48.7	50.0
		광주/전라	18.8	32.0	28.3	37.8	29.3	9.6	12.9	19.5	26.1	23.8
		대구/경북	30.6	36.6	49.9	48.6	38.3	21.3	26.9	26.7	37.3	34.1
		부산/울산/경남	11.2	26.4	33.5	31.7	23.2	14.5	10.1	28.0	39.4	42.7

④ 거주지 규모별 차이

다음으로,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19세 미만 합법체류자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읍면지역 거주자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고, 대도시 거주자들의 찬성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19세 미만 비합법 체류자 지원에 대한 찬성도에서도 심리상담지원과 진로교육,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지원을 제외하고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찬성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는데, 진로교육,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지원에 대한 읍면지역 거주자의 찬성비율은 오히려 가장 낮았다. 셋째, 19세에서 24세 연령의 합법거주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기초생활지원 중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무교육(초등, 중등학교)에 대한 지원, 대학학자금 대출지원, 취업지원의 경우 읍면지역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지원인 생계비와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학국가장학금이나 대학학자금 대출지원, 진로교육, 직업훈련교육, 취업지원에 대한 지원 찬성 비율은 낮았는데,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은 대도시 거주자들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20.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거주지 규모별 차이

(단위: %)

대상		거주지 규모	기초생활 지원 (생계비)	기초생활 지원 (의료)	심리·상담 지원	의무교육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훈련· 교육	취업 지원
19세 미만	합법	대도시	41.9	55.1	63.0	74.1	66.6	32.9	31.7	52.8	63.0	58.4
		중소도시	52.0	64.0	72.1	81.2	70.4	37.5	37.1	56.9	68.7	58.0
		읍/면	55.8	66.7	73.6	87.3	71.4	49.4	45.9	54.2	69.8	72.5
	비합법	대도시	23.0	31.4	44.6	48.1	38.8	14.6	14.3	31.3	42.7	43.0
		중소도시	28.7	35.4	47.8	51.7	42.0	18.8	20.0	36.5	45.5	34.7
		읍/면	34.7	42.5	33.1	56.5	37.6	20.4	21.8	27.4	33.3	32.4
19- 24세	합법	대도시	37.5	50.6	60.6	58.8	53.9	35.2	34.8	53.5	68.6	63.9
		중소도시	42.9	56.7	63.7	64.3	59.5	38.8	36.8	59.9	72.3	61.4
		읍/면	43.3	61.6	65.4	68.4	66.7	38.7	42.1	53.2	64.7	67.0
	비합법	대도시	18.4	27.4	37.9	36.1	31.7	16.8	14.1	30.3	45.0	45.4
		중소도시	20.0	27.2	37.5	35.4	30.2	13.8	15.7	33.4	44.8	37.7
		읍/면	28.6	34.8	24.3	35.5	28.1	13.9	13.5	25.5	29.0	35.8

⑤ 교육수준별 차이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세 미만의 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을 보면, 기초생활지원의 생계비와 의료지원의 경우는 대졸자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고, 심리상담지원의 경우는 대학원이상 집단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으며, 의무교육(초등·중등학교) 지원에 대한 비율은 대졸자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은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대학원 이상 집단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경향성을 보인 반면, 대학 국가장학금지원에 대한 찬성율은 대학원 이상 집단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진로교육이나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지원에 대한 찬성율도 대학원 이상 집단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두 번째로 19세 미만의 비합법체류자의 찬성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지원의 생계비와 의료지원의 경우 대졸자 찬성비율이 가장 높고, 심리·상담지원, 의무교육(초등·중학교)에 대한 찬성비율 역시 대졸자가 가장 높았다. 그에 비하여 19세 미만의 비합법체류자의 대학국가장학금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중졸이하의 집단이었고, 대학학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은 대학원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다. 진로교육의 경우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들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찬성비율이 높았고, 취업지원 역시 대학원 이상 집단의 찬성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19세에서 24세의 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지원의 생계비와 의료지원의 경우 대졸자들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고, 심리·상담지원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으며, 의무교육(초·중등학교)과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지원, 대학학자금 대출지원 등에 대한 찬성비율은 대학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찬성비율은 중졸이하 집단이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찬성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의 경우는 대학원 이상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낮은 찬성비율을 보였으며, 취업지원의 경우는 반대로 대학원 이상 졸업집단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을 보면 기초생활지원 중 생계비와 의료비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생계비지원에 대해서는 대졸집단의 22.4%, 대학원 이상 집단의 11.9%이 찬성을 하였는데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비율이었다. 그에 비해 의료관련 기초생활지원의 경우 대졸자의 찬성비율이 31.8%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고졸(27.3%), 중졸 이하(14.9%)의 순이었고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10.9%만이 찬성을 하였다. 심리·상담지원의 경우는 대학원 이상 집단의 찬성비율이

27.3%로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낮은 찬성비율을 나타내었고, 의무교육(초중학교)과 고등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지원 찬성율도 대학원 이상 교육수준의 집단이 각각17.1%와 15.4%만이 찬성을 하여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낮은 찬성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학국가 장학금지원과 대학 학자금 대출지원에서도 동일하여 대학원 이상 교육수준의 집단이 모두 10.2%만 찬성하여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여주었으며, 진로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찬성율 역시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에 비하여 19세 이상 24세 이상의 비합법 체류자의 취업지원에 대한 찬성율은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교육수준별 차이는 일관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다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표 V-21.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교육수준별 차이

(단위: %)

대상		교육수준	기초생활 지원 (생계비)	기초생활 지원 (의료)	심리·상담 지원	의무교육 (초· 중· 고교)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훈련· 교육	취업 지원
19세 미만	합법	중졸 이하	46.6	53.1	68.3	76.7	70.8	32.7	31.5	50.9	66.3	61.8
		고졸	45.5	59.7	67.6	76.7	68.9	36.7	36.7	56.7	66.8	58.8
		대졸	50.5	62.5	68.5	80.7	68.6	36.1	34.5	53.8	65.7	58.4
		대학원 이상	44.8	56.0	75.2	75.6	61.1	45.6	39.5	61.6	66.1	64.8
	비합법	중졸 이하	21.9	25.3	44.8	51.3	42.5	24.6	20.1	39.6	50.4	42.7
		고졸	24.7	32.9	44.1	49.5	39.6	15.1	17.0	32.3	43.3	37.3
		대졸	30.1	37.9	47.0	51.6	41.1	17.5	17.5	33.4	42.1	37.5
		대학원 이상	12.8	15.1	44.7	37.6	29.4	15.4	23.0	44.0	47.1	53.4
19- 24세	합법	중졸 이하	36.3	47.5	62.1	61.7	58.7	42.3	40.5	64.0	70.5	62.3
		고졸	39.2	54.9	61.9	63.1	58.5	36.3	35.6	56.0	70.1	62.4
		대졸	43.1	55.5	62.7	61.2	56.0	36.2	35.5	55.8	70.4	63.2
		대학원 이상	35.8	49.6	72.1	63.6	60.8	56.4	47.5	54.4	65.7	65.3
	비합법	중졸 이하	16.0	14.9	33.8	32.4	27.7	17.0	16.4	34.3	46.3	41.7
		고졸	18.3	27.3	34.5	36.3	31.6	14.2	14.8	30.7	43.1	39.4
		대졸	22.4	31.8	40.4	36.7	31.2	15.8	14.8	32.0	44.5	42.2
		대학원 이상	11.9	10.9	27.3	17.1	15.4	10.2	10.2	27.6	39.8	47.5

⑥ 월평균 소득수준별 차이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별 찬성비율을 살펴보면, 첫째로 19세 미만의 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에서 심리상담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의 차이에서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찬성비율이 77.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300만원 미만인 집단으로 73.1%이었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찬성율이 64.0%로 가장 낮았다. 직업훈련 및 교육과 취업지원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집단의 찬성비율이 거의 90%인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둘째로, 19세 미만 미성년자 중 비합법자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 역시 심리상담지원과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지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 가지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역시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찬성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셋째로, 19세에서 24세의 합법체류자의 경우 생계비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에서 1,000만원 이상 집단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고, 심리상담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은 가장 높았으며,

표 V-22.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월평균 소득수준별 차이

(단위: %)

대상		월평균소득수준	기초 생활 지원 (생계비)	기초 생활 지원 (의료)	심리· 상담 지원	의무 교육 (초등, 중학교)	고등 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 훈련· 교육	취업 지원
19세 미만	합법	300만원 미만	52.6	64.4	73.1	78.8	71.6	37.2	35.8	54.8	66.7	61.3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7.5	58.7	64.0	77.5	67.1	32.1	32.1	55.8	64.4	56.9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6.5	59.0	68.5	79.2	69.2	38.1	36.6	53.9	65.9	57.8
		1,000만원 이상	33.8	66.9	77.1	73.9	61.6	46.9	48.8	63.1	89.3	89.3
	비합법	300만원 미만	28.7	35.9	50.8	49.5	41.4	17.8	17.4	38.3	49.5	40.8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6.6	32.9	43.5	51.4	39.6	16.7	16.5	34.4	41.2	37.5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5.7	33.5	43.4	50.7	41.1	17.2	18.6	31.4	41.6	36.0
		1,000만원 이상	24.2	42.4	61.2	39.5	28.3	12.9	17.8	27.0	56.7	64.6
19- 24세	합법	300만원 미만	42.8	57.2	69.2	65.4	57.6	41.9	36.8	63.2	74.5	67.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4.3	54.7	58.4	59.9	57.1	33.5	33.5	53.3	66.6	60.5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7.1	52.1	61.8	62.2	58.1	36.9	37.1	55.8	70.0	61.6
		1,000만원 이상	32.9	62.3	68.0	62.4	52.5	51.2	53.7	59.7	83.6	77.9
	비합법	300만원 미만	17.4	25.9	38.3	37.5	31.9	17.5	17.4	37.1	48.6	43.9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9.4	26.6	35.2	35.1	29.6	14.4	14.0	31.8	41.0	39.3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1.0	29.1	36.0	35.8	31.5	14.6	14.3	29.4	43.4	39.5
		1,000만원 이상	24.2	35.5	60.5	28.7	21.4	14.9	17.5	21.6	53.5	64.1

대학 국가장학금지원에 대한 찬성비율과 대학학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직업훈련·교육, 취업지원에 대한 찬성비율 역시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드러진 특징은 심리상담지원 및 취업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1,0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⑦ 외국출신자 접촉수준별 차이

다음으로 외국출신자와 접촉의 수준을 ‘접하지 않는다’와 ‘접한다’의 두 개 범주로 구분하고 두 집단에 따라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별 찬성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반드시 ‘접한다’거나 ‘접하지 않는다’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고, 지원의 종류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우선 19세 미만 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의무교육(초등·중학교)과 고등학교교육에 대한 찬성율은 접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오히려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이 더 높았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역시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율이 더 높았다.

두 번째로 19세 미만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경우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경우가 직업훈련 및 교육 그리고 취업지원으로, 외국출신자를 접한 집단의 찬성율이 더 높았다.

세 번째로, 19세에서 24세의 합법체류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두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율이 높았고, 취업지원의 경우 ‘접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마지막으로 19세에서 24세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초생활지원 중 생계비의 경우는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율이 높았으나 기초생활지원 중 의료지원에 대한 찬성율은 ‘접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비율이 더 높고, 대학국가장학금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지원, 진로교육, 직업훈련·교육,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접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접촉 수준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찬성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3.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외국출신자 접촉정도별 차이

(단위: %)

대상		외국 출신자 접촉 수준	기초생활 지원 (생계비)	기초생활 지원(의료)	심리·상담 지원	의무교육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훈련· 교육	취업 지원
19세 미만	합법	접하지 않는다	48.4	61.5	67.9	80.0	72.6	37.8	36.4	55.6	66.6	59.1
		접한다	46.0	56.3	69.1	73.6	56.7	31.2	31.8	52.8	65.0	58.9
	비합법	접하지 않는다	26.8	33.8	45.0	50.7	41.2	17.1	17.9	33.5	41.5	35.8
		접한다	25.8	34.9	47.1	49.4	37.6	16.9	16.9	34.3	49.9	46.0
19- 24세	합법	접하지 않는다	42.1	56.4	63.9	65.6	61.5	38.7	37.5	56.8	70.7	62.4
		접한다	35.7	47.8	57.7	51.1	44.7	32.4	32.3	56.3	68.8	64.2
	비합법	접하지 않는다	20.3	26.5	36.7	36.6	31.6	14.5	13.8	29.8	41.4	38.3
		접한다	18.3	31.9	37.3	33.1	28.0	17.2	18.2	37.3	51.9	49.5

⑧ 삶의 만족도 수준별 차이

삶의 만족도의 수준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한 내용을 불만족과 만족으로 양분하여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삶의 지원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19세 미만의 비합법체류자의 직업훈련 및 교육과 취업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찬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19세에서 24세 합법체류자의 기초생활지원의 생계비와 의료지원에 대한 찬성도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 체류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초등학교)과 고등학교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지원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찬성비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4.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삶의 만족도 수준별 차이

(단위: %)

대상		삶의 만족도	기초생활 지원 (생계비)	기초생활 지원(의료)	심리·상담 지원	의무교육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훈련· 교육	취업 지원
19세 미만	합법	불만족	45.4	58.7	68.8	78.1	70.8	37.1	36.2	55.6	64.9	59.4
		만족	48.6	60.8	68.0	78.6	68.1	35.9	35.0	54.7	66.7	58.9
	비합법	불만족	24.0	33.1	44.6	50.1	40.9	16.6	14.7	30.1	39.3	32.4
		만족	27.5	34.4	45.8	50.5	40.2	17.2	18.6	34.9	45.0	40.2
19- 24세	합법	불만족	38.1	49.3	63.5	62.5	57.3	35.0	34.7	58.0	70.2	61.0
		만족	41.4	56.0	62.0	62.0	57.5	38.0	36.8	56.2	70.2	63.4
	비합법	불만족	17.8	27.2	34.4	31.0	27.1	12.8	12.7	29.5	39.4	35.4
		만족	20.4	28.0	37.7	37.4	32.0	15.9	15.6	32.3	45.5	42.9

⑨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차이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첫째로, 19세 미만 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지원 중 의료지원에서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율이 가장 높고,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대학국가 장학금지원과 대학학자금 대출의 경우도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율이 가장 낮았다.

둘째, 19세 미만 비합법체류자의 경우 기초생활지원의 생계비지원과 의료지원에서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고, 대학국가장학금과 대학 학자금 대출지원의 경우 역시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비율이 매우 낮았다.

셋째, 19세에서 24세의 합법체류자 집단에 대한 지원 태도의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지원 중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이었고, 대학 국가장학금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찬성비율 역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19세에서 24세의 비합법 체류자 집단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을 보면, 기초생활지원의 생계비와 의료지원, 대학 국가장학금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지원에서 모두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별 찬성 비율: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차이

(단위: %)

대상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기초생활 지원 (생계비)	기초생활 지원 (의료)	심리·상담 지원	의무교육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진로 교육	직업훈련· 교육	취업 지원
19세 미만	합법	낮다	45.4	56.1	66.9	81.0	69.3	31.4	30.9	56.0	68.5	61.2
		중간이다	49.5	62.8	68.4	76.6	68.3	39.0	37.6	54.0	64.6	57.5
		높다	45.4	61.1	76.5	80.6	70.6	39.3	41.8	57.7	68.4	61.1
	비합법	낮다	20.0	29.0	43.1	48.6	36.5	12.1	12.9	33.9	46.3	38.2
		중간이다	30.6	37.2	46.7	52.2	42.6	20.5	20.0	33.5	41.9	38.5
		높다	28.6	35.6	49.2	42.6	42.9	14.0	26.2	34.2	41.2	34.8
19- 24세	합법	낮다	35.3	49.6	63.5	63.6	57.6	33.7	34.1	60.2	74.9	65.3
		중간이다	44.3	57.3	61.8	61.2	56.9	39.1	37.1	55.0	67.5	61.3
		높다	35.5	55.1	61.2	62.8	63.9	42.7	42.5	49.3	66.1	62.0
	비합법	낮다	12.4	20.9	35.1	33.7	27.4	10.7	11.2	31.2	45.5	39.4
		중간이다	24.1	31.5	37.9	37.5	32.8	17.6	16.9	31.2	43.0	41.8
		높다	25.5	36.0	38.3	29.5	31.9	19.7	19.7	40.0	44.5	44.5

3. 요약 및 소결¹³²⁾

본 조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성 수립과 과제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81.5%가 동의를 하였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75%, 저출산 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73.7%가 찬성을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어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가 처한 인구감소 및 그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가 처한 인구감소 및 그로 인한

132) 5장의 3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노동력 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에 74.2%가 동의하였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문항에도 65.5%가 동의를 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66.4%가 동의를 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긍정적 영향이 모든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선택적으로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수용을 하고자 하는 제한적 수용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체류에 대해서 비교적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한국국적이 없더라도 19세에서 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거주를 했다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69.3%가 동의를 하였는데, 거의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하여 매우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하여 한국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세에서 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7.5%가 동의를 하여, 이 역시 비교적 높은 동의비율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교육수준 요인에 따른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인식과 수용적 태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보이고 있었는데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하여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교육 등 정책을 추진할 경우 거주지역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별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세분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연

령과 체류자격이 어떤지에 따라 큰 차별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체류자격이 합법이나 비합법이나에 따라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매우 달랐는데, 연령과 상관없이 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높고,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다음으로 동일한 합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연령이 19세 미만인 집단에 대하여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고, 19세에서 24세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에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합법 체류라는 것을 좀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불법체류’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관적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정책대상을 합법적 체류자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것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태도로 보인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 역시 미성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권이나 발달권 등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일 수 있으나 이주배경을 지닌 청년연령층의 경우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공론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청년문제 등과 맞물려서 더욱 소극적 태도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단계를 벗어나 성인기에 진입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원의 근거를 찾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우리나라 국민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각 집단별로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 및 교육, 심리상담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그에 비하여 대학국가장학금이나 대학학자금대출, 기초생활 중 생계비지원 등에 대한 찬성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교육 또는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이상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외국 국적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결국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대상이 아닌 본국으로 돌아갈 집단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를 계획하고 있고, 외국국적이어도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대학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태도가 연령에 따라 다르고, 교육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긍정적 태도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월평균소득 수준 자체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만족도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다른 것은 향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국민 인식개선 문제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수용성 또는 인식개선사업의 목표 및 기준을 지역별로 설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결론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기획 및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민감정을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기획 및 추진하는 경우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일부 집단의 태도가 전체 국민의 태도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 비록 일부 국민들이 염려하는 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한국사회 장기거주를 위한 체류자격 또는 나아가 취업에 대한 허용정도도 높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 추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및 정책 집행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상태와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실태에 대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19세에서 24세의 후기청소년이냐에 따라 지원에 대한 태도가 달랐고, 합법체류이나 비합법체류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청소년, 특히 19세 이상의 이주배경청소년, 그 중 합법적 체류가 어려운 집단의 경우 왜 그러한 상태에 놓이는지, 지속적 한국거주의사가 있는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 내 장기 체류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정책차원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이주배경청소

년들의 한국사회 삶과 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사업이 한 단계 더 고도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인식개선의 내용과 방식 두 가지에서의 발전적 전략이 필요한데, 우선 내용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세금이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고 있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도 합법체류나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르고 연령이 어린 집단과 후기청소년기 집단에 대해서도 차별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잠시 거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장기거주를 하려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도 외국인의 장기거주를 염두에 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알리고, 연령이 낮은 집단에게만 정책적 지원에 제공되고, 19세 이상 후기청소년들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합법체류자와 비합법체류자가 사실상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인식 등 현실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설명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국의 지역별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이 달랐던 것에 착안하여, 지역적으로 다른 인식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인식개선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 제6장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 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 도출 절차
- 2.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 도출 절차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총 12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우선 1단계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부부처의 관련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와 관련정책을 파악하였다. 2단계로는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사례로 대만과 프랑스의 이주배경청소년정책에 대한 콜로키움을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단계에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의 후기청소년 관련부서의 담당자들과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함으로써 각 부처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주요 관심영역과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정책과제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정책기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지는 4단계에서는 학계 및 현장전문들 대상 전문가 자문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연구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한국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방향성과 과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영역과 함께 본 연구의 설문조사지와 면접조사지에 대한 검토영역에서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5단계에서는 기존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6단계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단계에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관련 주요 현황 및 실태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

133) 6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소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8단계에서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책제안대회를 실시하였다. 정책제안대회를 통하여 보다 현장성 있는 정책과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수집된 아이디어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의 정책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안된 과제 아이디어를 정책제안 자료집으로 별도 구성하여 발간함으로써 중앙정부부처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를 기획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9단계에서는 국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 및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위치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 개발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정책은 국가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되는 국가 기본계획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해외사례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이민의 역사가 오래 된 5개 국가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1단계부터 9단계까지는 정책과제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어지는 10단계에서 12단계까지는 본격적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단계로,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절차를 정리하여 10단계에서 정책과제 1차안을 도출한 후, 도출된 과제(안)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당사자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모니터링을 거치는 11단계를 통해 정책과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청년모니터링을 거친 이유는 기존의 이주배경청소년정책과제들이 정부관계자나 학계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전달하여 추진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이미 성장을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만큼,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 12단계에서는 청년모니터링단의 검토를 마친 과제(안)를 대상으로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의 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문가들의 검토에서는 정책의 타당성, 구체성, 현실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자립에 관련한 최종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림 VI-1]과 같다.



* 출처: 양계민 외 (2022: 268) 그림 VII-1 수정

그림 VI-1. 본 연구의 정책과제 도출 절차

2.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주요 결과	■ 유형과 상관없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진로정보부족과 진로장벽인식의 어려움을 겪음. ■ 진로정보는 주로 인터넷이나 부모님, 지인, 커뮤니티 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낮은 학력과 문화차이, 정보부재 등은 단순노동이나 불법적 근로를 반복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중언어 등 이주배경의 장점을 활용하는 경우 진로 및 취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 ■ 국외출생자 중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집단은 불안정한 생활을 하며 진로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고, 취업에 제약이 있어 안정적 삶의 영위하지 못함. ■ 국외출생자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한국생활 적응, 취업, 향후 정착계획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진학에 대한 포부와 열망이 매우 높으나, 부모의 관심부족, 남한 문화이해의 부족과 편견과 차별, 직업과 관련된 지식의 부족, 직무관련 한국어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음. ■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은 언어 및 사회적응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며, 불안정한 노동 및 고용형태에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고, 본국으로의 귀국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음.
시사점	■ 진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정보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 한국어가 부족한 집단(또는 외국인가정 또는 외국출생자)의 고급 한국어, 또는 전문 한국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 이주배경청소년의 장점을 활용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불리한 여건을 방치할 경우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이 사회적 으로 낮은 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자립 가능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외국국적자의 체류안정성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임.
정책적 함의	■ 체계적 진로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전문한국어, 직업한국어 교육지원 방안 필요. ■ 이주배경의 장점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모색 필요. ■ 국내성장 외국국적자들의 체류안정성 확보방안 모색 필요.

2. 2차자료 분석

주요 결과	■ 이주배경집단의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수준이 전국의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낮음. ■ 진로의식 수준에서 일반집단청소년들에 비하여 이주배경집단이 낮음.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일상생활의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1%에 불과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는 6%만이 차별경험이 있다고 나타남. 이는 국내출생, 한국어 기능여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차별경험자는 외국출신자일 것으로 추론됨. ■ 한국에서의 직업훈련경험은 별로 없음. ■ 일경험자 중 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그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음.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 월평균 소득수준은 외국배경자(107.9만원)에 비하여 북한배경청소년(143.9만원)들이 높은 편이나 2021년 통계청의 20~24세 평균소득수준(180만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구직활동 경험은 높지 않음.
시사점	■ 희망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향후 이주배경집단의 진로 및 사회진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임. ■ 이주배경집단의 진로의식이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 역시 향후 한국사회에서 이주배경집단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줌.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이주배경집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전국 기준에 비하여 낮음. 이주배경 집단과 선주민 집단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은 이주배경집단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차별은 외국출신자, 한국어 능력 부족한 사람 등이 주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교육이 필요함.
정책적 함의	■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군의 양성방안 필요.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안정적 취업 및 노동을 위한 기반조성 필요.

3. 면접조사

주요 결과	■ 가정환경과 부모특성에 따라 삶의 경로가 달라짐. ■ 정보접근성의 격차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의 결정 뿐 아니라 진로와 취업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정착이나 귀화에 대한 의지도 높아짐 ■ 의사소통 수준이 되어도 대학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실전 한국어 역량에 대한 요구도가 크나, 역량을 키우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이주배경을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 경우, 취업 및 한국사회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음. ■ 국외출생이주배경청소년들은 불안한 체류자격과 비자 및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움으로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와 취업 선택을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함. ■ 고등학교, 대학교시기에 비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어렵고, 비자 연장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인생을 사용하게 되는 일이 다수 발생함.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 유형별, 진로특성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양하고 외국배경자와 북한배경자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선호함. 특히 북한배경자의 경우 별도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선호가 강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보를 총괄하는 원스톱전문센터가 필요함. 출입국 문제, 체류자격 및 비자 문제, 지원기관, 교육정보, 진로 및 취업정보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 가정환경이 긍정적이지 못한 집단에 대한 진로 등 지원이 필요함.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수준별 한국어 학습시스템이 필요함. ■ 진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성인이 있는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성인의 멘토링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함. ■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일부 비자에만 적용되는 점수제를 확대하여 자격증, 취업 분야, 검정고시 등과 같은 체류자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해주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주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책적 함의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총괄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필요. ■ 진로지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요. ■ 수준별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활용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국내성장 외국국적자들의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4.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 대한 국민 전반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남. ■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함.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높음. ■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인식도 동시에 존재함. ■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가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불안감도 존재함.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에 대하여 비교적 수용적임. - 한국국적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장기 거주한 19~24세의 청소년에게 정착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약 70%가 찬성함. - 한국국적이 없고 취업자격이 없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를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57.5%가 찬성함.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상태와 연령에 따라 인식이 다름. - 합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찬성비율이 높은 반면,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찬성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19세 미만의 아동연령에 대한 찬성비율에 비하여 19세에서 24세의 후기청소년기 연령집단에 대한 지원의 찬성비율은 낮음. ■ 지원의 종류에 따라 찬성비율이 다름. - 초·중등 의무교육 지원, 고등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교육,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찬성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대학교육 이상에 대한 지원의 찬성율은 낮은 편임. ■ 응답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음. ■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음. ■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이주배경집단에 대한 지원의 찬성도가 달라짐.
시사점	■ 국민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이주배경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국내 장기거주 외국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수용적임. ■ 아동연령에 비하여 후기청소년기 집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음. ■ 전반적으로 한국국적이 없이 국내에서 장기거주한 청소년들의 한국 거주 및 취업에 대하여 수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
정책적 함의	■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국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조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외국국적 국내성장자들에 대한 체류자격조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5. 국내정책분석

주요 결과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연령 증가에 따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보호나 관리, 지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는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이고 본격적 고려까지는 아니고, 매우 협소한 영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일반국민 대상 정책에서는 다소간의 구색 맞추기 수준의 기존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국가 기본계획에서 포괄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음. ■ 국내 정책의 대상자들은 외국국적자라 할지라도 동포와 그들의 가족이 대상이고, 그 이외에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음. ■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나 안정적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진학 이외에 장기체류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시사점	■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추진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법의 지원대상 범위를 넘어서 외국국적자를 고려한 정책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임. ■ 국내에서 장기거주를 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합법적 체류가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도 학업이 끝나고 기준에 충족하는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 국내에서 성장하고 성인기에 이른 외국국적자들을 한국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보임.
정책적 함의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하여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단계별 기본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성장 외국국적 소지자들에 대한 체류자격 조건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음.

6. 해외정책 분석

주요 결과	(체류자격) - 독일의 경우 부모와 함께 이주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외국인이 16세가 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함. 또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독일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 획득이 가능함. - 캐나다는 학생비자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일정기간 임시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 또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이수하거나 노동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착을 유도함. - 호주도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임시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거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지원정책) - 독일은 이민자를 위한 직업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제공. 희망하는 훈련 직종에 대한 전문용어와 지식을 함께 제공함. - 스웨덴은 16-19세 이주배경청소년(장기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학업보조금을 제공하고, 운전면허취득이나 가전제품 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고,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전문대학이나 직업학교 진학 시 학자금을 대출해줌. - 캐나다는 청소년 고용 및 기술전략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교육, 기술 및 훈련제공, 취업 후 일자리 지속을 위한 경력관리 및 취업연계 등을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제공함. 고용주도 참여하여 훈련받은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국가가 급여를 보조해주고 있음. 특히 난민이나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경우도 지역의 대학교와 난민센터 등이 협업하여 대학입학을 허가하고 학비와 재정을 지원해주기도 함. - 호주도 외국국적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임시비자를 제공하여 전공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 외국국적의 임시비자로 부모와 함께 동반입국한 16-18세 청소년들에게는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정부지원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함.
시사점	- 해외의 경우 대학졸업 인력에 대해서는 임시 거주 및 취업가능 비자를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의 경우도 대학입학을 유도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은 국내에서도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국내에서 성장했거나 부모와 동반입국한 미성년 자녀 중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적극적 방안은 고려해볼 필요 있음.
정책적 함의	- 고졸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체류자격 완화 방안 모색 필요. -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안정적 체류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직종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직종별 전문용어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방안 필요.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방향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고, 객관적 실태에 근거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중 2023년 연구의 목적은 특히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이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 유형별로 공통된 특성도 있으나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다. 이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은 국내에서 성장했으나 외국국적을 여전히 지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으며, 안정적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로, 이들은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진로를 계획할 수 없고, 안정된 취업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역량과 관심과는 상관없는 체류를 위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성인연령이 되면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한 본국으로 나가야 하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성장하고 가족도 모두 한국에 있으며, 생활기반이 한국이기 때문에 본국이 오히려 더 낫설고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므로 체류자격이 불안정하더라도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을 강제로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보다는 한국에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은 자립역량 강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염려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인지 새로운 노동인구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집단이 될 것인지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모국과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문제를 사회적 효용가치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주민’ 이전에 ‘청소년’이라는 보호받아야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존재로서 배려하는 가운데, 이주배경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조금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지원방식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즉,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차원의 기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을 할 수 있는 영역 뿐 아니라 보다 전문적 영역의 직종에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하여 향후 사회통합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지원과 집단별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북한배경청소년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 당사자들은 북한배경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배경자들에게 특화된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북한배경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외국배경 이주배경청소년들과는 다른 특성이 강한 것이 사실이고, 기존의 전달체계로 통일부의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수요자 자신에게 더 편안하고 접근성이 높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통합적으로 추진하되, 기존의 외국배경자들을 위한 전달체계와 북한배경자들을 위한 전달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연계,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과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와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에 근거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지원체계 구축, 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I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기반 조성의 총 세 가지 핵심과제와 각 핵심과제별 2-3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과제의 정책 체계도는 아래의 [그림 V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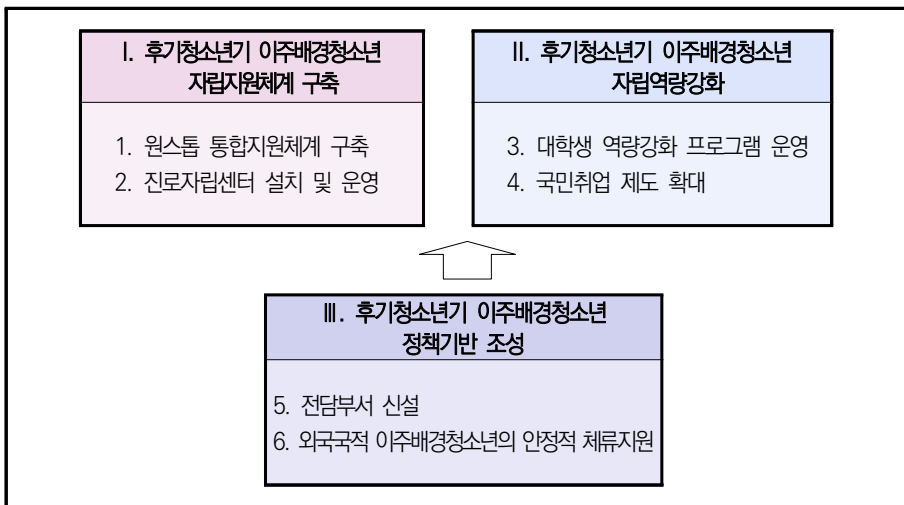


그림 VI-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체계도

본 연구의 핵심과제별 추진과제는 총 6개이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는 ‘1. 원스톱 통합지원체계구축’과 ‘2. 진로자립센터설치 및 운영’이고, 두 번째 핵심과제인 ‘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전문성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추진과제는 ‘3. 대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4. 국민취업제도 확대’의 두 가지이며, 세 번째 핵심과제인 ‘I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는 ‘5. 전담부서 신설’과 ‘6.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체류지원을 과제로 선정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추진과제별 간략한 사업개요는 <표 VI-1>과 같다.

표 VI-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과제의 개요

핵심과제	추진과제	사업개요	관련부처
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자립지원체계 구축	1.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합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청소년기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서비스 자원, 정보 취합 및 공유 •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의 기관 및 중앙부처의 담당부서를 연계할 수 있는 중앙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구인·구직 미스매칭 한계 극복을 위한 전국 이주배경청소년 자원플랫폼 구축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2. 진로자립센터 설치 및 운영	• 전국 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내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자립센터 설치 및 운영 • 취업한국어, 각종 기술교육, 취업연계 및 현장 슈퍼바이징을 통한 추수지도까지 연계	교육부 고용노동부
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자립역량강화	3. 대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학과 학습활동 및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멘토링 활동 • 각 대학 외국인대학생 관리부서 연계한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진로프로그램(기업설명회, 기업 취업교육 및 인턴십 등) 운영	교육부
	4. 국민취업제도 확대	• 국민취업제도의 자원 대상 중 제 II유형에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	노동부 법무부
I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기반 조성	5. 전담부서신설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전담 부서 신설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여성가족부
	6. 외국국적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체류지원	•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안정적 체류 및 활동 가능한 자격 부여	법무부

각 과제별로 i)제안배경 및 근거, ii)추진방향, iii)추진내용, iv)선결과제, v)추진 로드맵, vi)부처별 업무, vii)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과제	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지원체계 구축
추진과제	1.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¹³⁴⁾
제안배경 및 근거 (연구결과)	1) 면접조사에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원스톱 통합 지원시스템에 대한 요구도가 나타남. 2) 선행연구분석, 면접조사 등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이주배경청소년 들의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모든 정보들을 모아 원스톱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추진방향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의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책사업 및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추진내용	1) 사업방향 : 한국사회 정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 기관 및 중앙부처의 담당부서를 연계하는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이주배경청소년들 대상 서비스를 연계 하는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함. 2) 사업대상: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9-34세) 3) 연계대상: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사업체, 지역 대학, 교육청 및 일반 학교, 상담복지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지원센터, 전국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기관, 한국어교육기관 등 3) 사업내용 (1) 중앙 및 권역별 거점센터, 지자체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pre> graph TD A[여성가족부(안)] --> B[중앙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B --> C[서울] B --> D[경기] B --> E[충청] B --> F[경상] B --> G[전라·제주] C --> C1[거점센터] C --> C2[지역센터 1, 2] D --> D1[거점센터] D --> D2[지역센터 1, 2] E --> E1[거점센터] E --> E2[지역센터 1, 2] F --> F1[거점센터] F --> F2[지역센터 1, 2] G --> G1[거점센터] G --> G2[지역센터 1, 2] </pre> 〈이주배경청소년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체계도〉 ① 권역별 거점센터 및 지자체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기존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센터, 전문기관, 가족센터, 이주노동자복지센터 등이 될 수 있음. ② 센터 수탁자 선정, 운영방법 등은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 적용

	③ 역할 (중앙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총괄 및 중앙부처 차원의 연계 협력,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매뉴얼개발, 운영컨설팅, 모델개발연구, 조사사업 (거점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서비스 총괄,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인력 양성 및 연수, 실무자교육,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업(한국어, 진로, 진학, 취업, 문화적응 등) (지역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직접지원 사업(한국어교육, 진로 및 취업지도, 취업연계, 상담, 정보제공 등) (2) 지자체별 민관산학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① 지자체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 구성 ② 지자체별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 및 취업지원을 위한 과제 개발 및 추진 ③ 지자체별 민관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사업주들과 연계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 취업연계 (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플랫폼 구축 ① 앱기반 온라인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12개국 언어로 번역) ② i)건강정보, ii)교육정보, iii)진로정보, iv)취업정보, v)한국어교육, vi) 체류 및 비자 정보, vii) 법률지원, viii)질문 및 상담, ix) 비밀게시판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축 ③ 영역별로 필요한 정보와 주제별 관련 전문기관 정보 제공																							
선결과제	-																							
추진 로드맵	<table><tr><td>2024</td><td>2025</td><td>2026</td></tr><tr><td> - 사업계획수립 - 앱개발 TF구성, 플랫폼 콘텐츠 내용 구성 (12개국어 번역) </td><td> - 거점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 및 사업운영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업 홍보 - 지자체 민관산학 지원 체계 구축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td><td> - 거점센터 및 지역센터 사업운영 - 사업평가 결과 반영 수정운영모델 개발 </td></tr></table>			2024	2025	2026	- 사업계획수립 - 앱개발 TF구성, 플랫폼 콘텐츠 내용 구성 (12개국어 번역)	- 거점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 및 사업운영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업 홍보 - 지자체 민관산학 지원 체계 구축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 거점센터 및 지역센터 사업운영 - 사업평가 결과 반영 수정운영모델 개발															
2024	2025	2026																						
- 사업계획수립 - 앱개발 TF구성, 플랫폼 콘텐츠 내용 구성 (12개국어 번역)	- 거점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 및 사업운영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업 홍보 - 지자체 민관산학 지원 체계 구축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 거점센터 및 지역센터 사업운영 - 사업평가 결과 반영 수정운영모델 개발																						
부처별 업무	<table><tr><td>여성가족부</td><td colspan="2">사업관리 및 총괄, 거점 및 지자체별 센터 운영모델 개발 / 앱 개발</td></tr><tr><td>교육부</td><td colspan="2">지역 내 대학 및 학교 연계</td></tr><tr><td>행정안전부</td><td colspan="2">지자체 거점센터 지정 및 관리</td></tr><tr><td>통일부</td><td colspan="2">북한배경청소년 전문 기관 연계</td></tr><tr><td>법무부</td><td colspan="2">체류 및 비자정보 제공</td></tr><tr><td>고용노동부</td><td colspan="2">진로, 취업 정보 공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td></tr><tr><td>중소벤처기업부</td><td colspan="2">지역별 취업처 정보 공유</td></tr></table>			여성가족부	사업관리 및 총괄, 거점 및 지자체별 센터 운영모델 개발 / 앱 개발		교육부	지역 내 대학 및 학교 연계		행정안전부	지자체 거점센터 지정 및 관리		통일부	북한배경청소년 전문 기관 연계		법무부	체류 및 비자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진로, 취업 정보 공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별 취업처 정보 공유	
여성가족부	사업관리 및 총괄, 거점 및 지자체별 센터 운영모델 개발 / 앱 개발																							
교육부	지역 내 대학 및 학교 연계																							
행정안전부	지자체 거점센터 지정 및 관리																							
통일부	북한배경청소년 전문 기관 연계																							
법무부	체류 및 비자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진로, 취업 정보 공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별 취업처 정보 공유																							
기대효과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하나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동도를 높임으로써 자립역량을 강화함.																							

134) 본 과제는 2023 정책제안대회의 장려상 수상작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사회통합 지원체계 구축(기영학, 이정설, 김철욱)’의 제안서와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및 마이리지 제도 구축(도윤제)’의 제안서를 토대로 수정·보완함.

핵심과제	1.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지원체계 구축
추진과제	2. 진로자립센터 설치 및 운영 ¹³⁵⁾
제안배경 및 근거 (연구결과)	1) 선행연구, 면접조사, 2차 자료 분석 결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정보접근성에 제고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면접조사 결과 이주배경청소년의 장점을 활용한 진로개발 시 만족도가 높고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이 매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 줄 전문적 인력에 대한 요구도가 있음. 3) 선행연구 결과 전문한국어, 직업한국어 교육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2차 자료 분석 결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월평균 급여수준이 일반청년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따라서 진로 및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5) 해외사례 분석 결과 해외의 경우도 고졸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추진방향	■ 전국 대학 및 한국폴리텍 대학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자립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
추진내용	1) 대상: 19세~3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외국국적자의 경우 18세까지 국내에서 합법적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 거주 5년 이상자 또는 국내 고교 졸업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는 한국어 토픽 5급 이상 소지자 2) 주요 내용 (1) 기간: 1년(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장소 및 주체: 전국의 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3) 운영: 주 5일 수업제 (4) 각 대학이 자체교육이 가능한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전공의 경우는 지역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가능함. (5) 예비과정과 전문과정을 구성하여 예비과정에서는 다양한 전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기초경험을 제공하고, 이후 전공 선택 또는 취업 및 자격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교육과정(전문과정) (1)기초: 취업한국어(외국국적자), 전공한국어(외국국적자), 직업생활교육, 진로교육, 금융교육, 진로상담 (2)전공: 건축, 금형, 기계, 설비, 디자인, 미디어, 자동차, 정보통신, 관광안내, 의료통역 무역실무 등 : 요구도 조사 후 지역 대학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3) 인턴 및 현장체험 (4) 전공별 현직자 초청강의 (5) 취업연계: 지역별 해당 전공 관련 사업주들과 사전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지자체-대학-산업체)하고 인턴십, 현장체험 및 취업으로 연계함. (6) 취업 후 관리 및 모니터링: 취업 후 적응도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갈등 등에 대한 중재, 상담 등 관리

	4) 추진절차 (1) 1단계: 거점센터 시범운영: 수도권 2개소(대학 1개소, 한국폴리텍대학 1개소) (2) 2단계: 지역별 센터 설치 및 운영: 전국 거점지역 대학 선정. 특성화 대학 선정 (※ 기관 선정기준: 기술교육 전문성,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전문성 고려) 5) 학비: 한국폴리텍 비학위과정으로 할 경우 전액 국비(외국국적자 포함)																			
선결과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																			
추진 로드맵	<table><tr><th>2024</th><th>2025</th><th>2026</th></tr><tr><td> - 사업계획 - 지역별 전공요구도 조사 - 사업설명회 - 지역별 협의체 구성(지자체-대학-사업체) </td><td> - 시범운영을 위한 거점센터 지정 및 진로교육과정 운영 (대학 1개소, 한국폴리텍대학 1개소) - 정책홍보 - 대학 및 교강사 대상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 사업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td><td> - 지역별 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td></tr></table>			2024	2025	2026	- 사업계획 - 지역별 전공요구도 조사 - 사업설명회 - 지역별 협의체 구성(지자체-대학-사업체)	- 시범운영을 위한 거점센터 지정 및 진로교육과정 운영 (대학 1개소, 한국폴리텍대학 1개소) - 정책홍보 - 대학 및 교강사 대상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 사업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 지역별 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2024	2025	2026																		
- 사업계획 - 지역별 전공요구도 조사 - 사업설명회 - 지역별 협의체 구성(지자체-대학-사업체)	- 시범운영을 위한 거점센터 지정 및 진로교육과정 운영 (대학 1개소, 한국폴리텍대학 1개소) - 정책홍보 - 대학 및 교강사 대상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 사업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 지역별 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부처별 업무	<table><tr><td>고용노동부</td><td>한국폴리텍대학</td><td rowspan="2">진로자립센터 운영 1) 거점별 센터 시범운영, 2) 지역별 센터 설치,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로상담, 직업교육 지역대학 연계, 지역 기업참여 유도</td></tr><tr><td>교육부</td><td>희망대학</td></tr><tr><td>법무부</td><td>출입국외국인사무소</td><td>안정적 체류관련 법적 지원, 외국국적 후기 청소년 대상 취업가능비자 발급</td></tr><tr><td>여성가족부</td><td>가족센터</td><td>정책홍보 및 통역지원, 한국어교육지원, 지역 내 대상자 파악 및 연계</td></tr><tr><td>행정안전부</td><td>지자체</td><td>정책홍보 및 대상자 파악, 지역예산 지원</td></tr><tr><td>통일부</td><td>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td><td>정책홍보</td></tr></table>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진로자립센터 운영 1) 거점별 센터 시범운영, 2) 지역별 센터 설치,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로상담, 직업교육 지역대학 연계, 지역 기업참여 유도	교육부	희망대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정적 체류관련 법적 지원, 외국국적 후기 청소년 대상 취업가능비자 발급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정책홍보 및 통역지원, 한국어교육지원, 지역 내 대상자 파악 및 연계	행정안전부	지자체	정책홍보 및 대상자 파악, 지역예산 지원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정책홍보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진로자립센터 운영 1) 거점별 센터 시범운영, 2) 지역별 센터 설치,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로상담, 직업교육 지역대학 연계, 지역 기업참여 유도																		
교육부	희망대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정적 체류관련 법적 지원, 외국국적 후기 청소년 대상 취업가능비자 발급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정책홍보 및 통역지원, 한국어교육지원, 지역 내 대상자 파악 및 연계																		
행정안전부	지자체	정책홍보 및 대상자 파악, 지역예산 지원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정책홍보																		
기대효과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전문적 직업역량을 키워줌으로써 자립능력을 제고함.																			

135) 본 과제는 2023 정책제안대회의 대상 수상작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자립센터)운영(변경환)'의 제안서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내용임

핵심과제	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자립역량강화
추진과제	3. 대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¹³⁶⁾
제안배경 및 근거 (연구결과)	1) 면접조사 결과 이주배경청소년 중 한국어가 서툰 경우,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2) 선행연구 결과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진학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다양한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음 3) 2차 자료 분석 결과 이주배경집단이 전국의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의 희망하는 비율이 많이 낮음. 4) 이주배경집단의 대학입학 및 대학생활 적응력 제고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함.
추진방향	■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능력을 제고하고 학교적응을 도움으로써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함.
추진내용	1) 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외국배경, 북한배경) 2) 주체: 각 대학 학생생활상담소 또는 진로상담센터, 대학 내 외국인학생 관리부서 등 대학별 적합한 기관 3) 사전 준비 (1) 대학선정(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수인 대학 중심) (2) 대학생 멘토 및 멘티 대상 사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배포 (3)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구성 및 배포 (4) 대학 내 정보공유앱(에브리타임) 등에 홍보 및 각종 정보 공유 4) 프로그램 (1) 사전교육: 사전교육시 이주배경자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태도, 멘토링의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한 교육, 멘토와 멘티의 요구도 파악 (2) 전체모임: 멘토와 멘티 1:1 또는 1:그룹 매칭,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소개 (3) 본 프로그램 ① 대학생활 설명회: 입학예정자 대상으로 장학제도, 동아리, 학습활동 등에 대한 설명, 대학의 학생생활상담소 또는 진로상담센터 등이 참여하여 서비스 내용 소개(신입생의 경우만 해당) ② 학습 및 언어(전공, 한국어, 영어 등)멘토링을 기초로 하고 그 외 학과정보, 진로정보 접근방법 등에 대한 멘토링 5) 운영방안 (1) 이주배경대학생의 학과선배 또는 이주배경자 선배 참여 유도 (2) 동일한 대학의 멘토 선발. 멘토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상의 학생이고, 활동 중 휴학 불가함(학기 초에 공고). 멘토는 내외국인 모두 가능함 (3) 월 2회 이상 멘토링, 월 1회 활동보고서 제출 (4) 멘토에게 학기당 50만원 장학금 제공 (5) 멘티 대상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질관리 (6) 중간에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프로그램, 기업설명회, 기업의 취업교육 및 인턴십 등을 연계하고, 멘토도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선결과제	-										
추진 로드맵	<table><tr><td>2024</td><td rowspan="2">➡</td><td>2025</td><td rowspan="2">➡</td><td>2026</td></tr><tr><td> • 사업계획(안)수립 • 대학별 수요조사 • 운영매뉴얼 개발 </td><td> • 사업공고 및 선발 • 프로그램 운영 • 사업평가 </td><td> • 전년도 사업 평가기반 개선방안 도출 • 개선(안) 반영 사업 추진 </td></tr></table>			2024	➡	2025	➡	2026	• 사업계획(안)수립 • 대학별 수요조사 • 운영매뉴얼 개발	• 사업공고 및 선발 • 프로그램 운영 • 사업평가	• 전년도 사업 평가기반 개선방안 도출 • 개선(안) 반영 사업 추진
2024	➡	2025	➡	2026							
• 사업계획(안)수립 • 대학별 수요조사 • 운영매뉴얼 개발		• 사업공고 및 선발 • 프로그램 운영 • 사업평가		• 전년도 사업 평가기반 개선방안 도출 • 개선(안) 반영 사업 추진							
부처별 업무	<table><tr><td>교육부</td><td>사업 총괄, 사업 추진, 대학 선발, 예산 지원</td></tr><tr><td>여성가족부</td><td>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 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배포</td></tr><tr><td>통일부</td><td>북한배경청소년 이해교육, 홍보</td></tr></table>				교육부	사업 총괄, 사업 추진, 대학 선발, 예산 지원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 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배포	통일부	북한배경청소년 이해교육, 홍보	
교육부	사업 총괄, 사업 추진, 대학 선발, 예산 지원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 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배포										
통일부	북한배경청소년 이해교육, 홍보										
기대효과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자립역량을 갖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36) 본 과제는 2023 정책제안대회의 최우수상 수상작인 '레인보우케어(RAINBOW CARE(정운서, 서정호)'의 제언서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내용임

핵심과제	II.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자립역량강화								
추진과제	4. 국민취업제도 확대								
제안배경 및 근거 (연구결과)	1) 선행연구 결과 낮은 학력과 문화차이, 정부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단순 노동이나 불법적 근로를 하게 됨. 2) 선행연구 결과 국외출생자들의 경우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며 취업에서 제약이 있고, 가정형편상 구직활동보다는 단순 업무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경우 다수 있음. 또한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더욱 불안정한 노동 및 고용형태에 있어 안정적 삶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3) 2차 자료 분석결과,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기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이러한 상태를 방지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추진방향	■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중 II유형에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중 제 II유형에 정주가능성이 높은 외국국적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함.								
추진내용	※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함. 국민취업제도 중 II 유형의 05번 유형은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가 대상임. 1) 대상: 18~34세 외국국적자로 18세까지 국내에서 합법적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 거주 5년 이상자 또는 국내 고교 졸업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 한국어 토픽 5급 이상 2) 주요내용: 국민취업제도 중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있는데, II 유형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포함됨. 청년의 경우 18세에서 34세 구직자가 포함됨.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가 아니어도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민취업제도의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함. 3) 국민취업제도 확대 후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기관에 홍보								
선결과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								
추진 로드맵	<table><tr><td>2024</td><td>2025</td><td>2026</td></tr><tr><td>• 이주배경청소년 체류 자격 부여 기준 마련 • 제도개선(안)마련</td><td>• 제도개선 및 추진 • 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td><td>• 모니터링 결과 반영 제도 수정사안 검토 및 개선(안) 재반영</td></tr></table>			2024	2025	2026	• 이주배경청소년 체류 자격 부여 기준 마련 • 제도개선(안)마련	• 제도개선 및 추진 • 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반영 제도 수정사안 검토 및 개선(안) 재반영
2024	2025	2026							
• 이주배경청소년 체류 자격 부여 기준 마련 • 제도개선(안)마련	• 제도개선 및 추진 • 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반영 제도 수정사안 검토 및 개선(안) 재반영							
부처별 업무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법무부	체류자격 부여 기준 마련 및 법률안 개정작업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에 정보제공, 홍보 및 활용지원							
기대효과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및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핵심과제	Ⅲ.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기반 조성								
추진과제	5. 이주배경청소년 전담부서 신설 ¹³⁷⁾								
제안배경 및 근거 (연구결과)	1) 본 연구 결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취업 및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해야 할 영역이 진로, 한국어, 정보제공, 직업교육 등 매우 다양하고, 체류자격의 안정화 등 총체적이고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2) 국내 정책분석 결과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책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전담하는 부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 향후 정책추진의 동력을 가지기 어려움. 따라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함								
추진방향	■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을 총괄 및 전담하는 중앙부처의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전문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함. ■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분야를 19세 미만의 연령과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 연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함.								
추진내용	1)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범주의 부처별 협의 및 공유 2)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사업의 전담부서로의 이관 3) 담당부서의 역할과 기능 -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 진로, 노동, 보건, 복지 등 관련 기능 총괄조정 - 이주배경청소년(18세 이전)과 청년(19세 이상)전담 담당자를 구분하여 맞춤형 정책개발 -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의 유형별 통계생산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시스템 구축 - 이주배경청소년사업 전달체계 구축 및 기존 시스템(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자지체 등) 업무 재구조화								
선결과제	부처별 협의(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추진 로드맵	<table><tr><td>2024</td><td>2025</td><td>2026</td></tr><tr><td>● 이주배경청소년과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td><td>●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신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인구통계 및 실태조사</td><td>●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td></tr></table>			2024	2025	2026	● 이주배경청소년과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신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인구통계 및 실태조사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
2024	2025	2026							
● 이주배경청소년과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신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인구통계 및 실태조사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							
부처별 업무	<table><tr><td>여성가족부(안)</td><td colspan="2">이주배경청소년정책과 신설 추진</td></tr></table>			여성가족부(안)	이주배경청소년정책과 신설 추진				
여성가족부(안)	이주배경청소년정책과 신설 추진								
기대효과	■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업무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 정책추진이 가능함.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을 생애주기에 따라 장기적 조망으로 설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								

137) 본 과제는 2022 정책제안대회의 최우수상 수상작인 ‘중앙부처 차원의 이주배경청소년 담당부처 신설(하승연)’의 제안서를 토대로 2022년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에 제시된 내용(양계민 외, 2022: 276)을 수정 보완함.

핵심과제	Ⅲ.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기반 조성								
추진과제	6.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체류지원								
제안배경 및 근거 (연구결과)	1) 현재 체류자격 체계 내에서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이 재외동포(F-4)나 영주(F-5) 체류자격을 갖지 않는 한 성년이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임. 따라서 고졸 이후 성인이 된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비자를 받는 것이 거의 유일함. 2) 본 연구의 선행연구 분석과 면접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안정적 체류상태는 진로 및 취업 등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3) 해외사례연구 결과 미성년기에 부모동반 입국한 합법적 체류자들에게 장기거주비자를 부여함으로써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4) 본 연구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국내에서 장기 거주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와 취업허용에 대하여 수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추진방향	■ 국내에서 미성년 시기의 일정 기간 거주하고,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합법적 체류자를 대상으로 거주비자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안정적 합법적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개인적 성장 및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함.								
추진내용	1) 대상: 19~24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중 외국국적자로 18세까지 국내에서 합법적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 거주 5년 이상자 또는 국내 고교 졸업자 2) 거주(F-2) 또는 영주(F-5)의 체류자격을 부여함 3) 학업, 취업, 창업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함.								
선결과제	-								
추진 로드맵	<table><tr><td>2024</td><td>2025</td><td>2026</td></tr><tr><td> • 해당연령 대상자 통계추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td><td> • 시행령 개정 - 입안(법무부) - 입법예고 - 법제처 접수 - 심사 </td><td> • 시행령 발의 - 공포 및 시행 </td></tr></table>			2024	2025	2026	• 해당연령 대상자 통계추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 시행령 개정 - 입안(법무부) - 입법예고 - 법제처 접수 - 심사	• 시행령 발의 - 공포 및 시행
2024	2025	2026							
• 해당연령 대상자 통계추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 시행령 개정 - 입안(법무부) - 입법예고 - 법제처 접수 - 심사	• 시행령 발의 - 공포 및 시행							
부처별 업무	법무부	체류자격 부여 기준 마련 및 법률안 개정작업							
기대효과	■ 국내에서 성장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안정적 체류자격을 제공하고 학업, 취업, 창업 등의 활동을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과 교육, 활동 등에 참여가 가능하게 됨. ■ 국내성장 외국국적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 진로를 설계하고 안정적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주현 (2011). 이민 이슈에 대한 정당의 전략적 대응과 이민정책의 변화: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 비교분석. **사회과학논집**, 42(2), 25-50.
- 관계부처합동 (2021).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 관계부처합동 (202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 관계부처합동 (2023a).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 관계부처합동 (2023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021-2025).
- 고재권 (2015).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교육부 (2023a).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 (2023b). **진로교육 활성화방안(2023-2027)**.
- 권경득, 임동진, 이광원, 이종익. (2019). 호주 이민정책(프로그램)의 실태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민자, 난민 및 불법체류자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3(2), 35-65.
- 권경득, 이광원, 임동진, 임정빈, 오정은, 장익현, 진종순, 하정봉, 허준영, 홍희정 (2021). **이민자 분야의 다문화 정책수단 연구**.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 권형진 (2014). 통일 이후 독일의 이민정책의 변화. **통일인문학**, 57, 125-160.
- 김강남 (2019).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미 (2020). **북한이탈 대학생의 학업 중단과 지속 경험에 대한 탐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근 (2018). **사회통합지수와 지역간 차이와 지역별 사회통합 증진방안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8-20.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소라 (2020).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 인식의 차이 연구.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20(10), 470-487.

- 김영순, 조영철, 김정희, 정지현, 박봉수, 오영훈, 손영화, 박종도, 이미정, 정경희, 박미숙. (2019).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성남: 북코리아.
- 김이선, 최윤정, 윤지소, 이재경, 문희영, 이명진, 양계민 (2019).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이선, 최윤정, 정연주, 장희영, 이명진, 양계민 (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진희, 김경애, 한효정, 김태준, 공석기, 권진희, 김자영, 이로미 (2020).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20-19.
- 김하영 (2022).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숙 (2021). MIPEX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연구: MIPEX 2020을 중심으로. **한국이민 정책학보**, 4(1), 2765-3706.
- 남북하나재단 (2021).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남북하나재단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강은정, 전지현, 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과제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승인 (2018).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및 개선 방향 - 중도입국한 후기청소년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비교법학**, 29, 48-65.
- 노은희, 오인수 (2016).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 청년의 취업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235-264.
- 류성창, 김성기, 김재우 (2015).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세종: 교육부.
- 문영석. (2005).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14(1), 79-108.
- 문희정 (2018). **탈북 후기청소년의 대학적응**.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명선 (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2), 271-303.
- 박봉수, 오선영, 임지혜 (2022). 인천 연수구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중앙 아시아 및 아랍중동국가 출신자를 중심으로-. **재외한인학연구**, 59, 111-134.
- 박서연 (2008). **북한이주청년들의 진로 모색 과정을 통해 본 생애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선민 (2011).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방진희 (2017). **근로탈북청소년의 남한에서의 근로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백석인 (2008). 스웨덴의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및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스칸디나비아연구**, 9, 35-6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공청회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비자네이게이터**.

변기용 (2020). **근거이론적 방법**. 서울: 학지사.

변숙영, 한상근, 유진영, 이정민, 김호진, 최영렬, 이수경 (2022).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방안(2022): 다문화청소년**.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2022-18).

서덕희, 김은석 (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MYF15-07-연.

서덕희, 조은혜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성향과 그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217-247.

설동훈, 강기정, 이병하 (201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신정완 (2013). 외국인 노동시장 실태: 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 요인과 해결방안. **산업노동연구**, 19(1), 261-293.

신지원, 육주원, 김철효, 신예진, 박동혁, 레베카 윌리엄슨, 엘사 콜레스 (2011). **이민정책 해외사례 연구: 다문화 정책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경기: IOM 이민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지연, 장윤선, 김사강, 김동진, 이택진, 김주영, 변수정, 조성호, 김은정, 이주연, 조혜영, 김성식, 김이선, 최운정, 이명진, 동제연, 이민영, 장인숙, 김학령, 김유연 (2020).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6-01.

양계민, 정윤미, 장윤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MY F21-19-개.

- 양계민, 이정민, 정윤미, 엄진섭, 장운선, 전경숙 (2022).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2-일반03.
- 엄한진 (2021). 이민 2세대 개념을 통해서 본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 **지역사회학**, 22(2), 47-74.
- 여성가족부 (2010).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0~2012).
- 여성가족부 (201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3~2017).
- 여성가족부 (2018.0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 여성가족부 (2023.04).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
- 유숙란 (2010). 독일의 이민정책 결정과정 분석: 2004년 이민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2), 213-235.
- 유진이, 소학섭 (2019).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계획 경험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4(1), 67-105.
- 이규용, 김기선, 정기선, 최서리, 최홍엽 (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구 (2017). **북한이탈청년, 남한사회에서 성장하기: 사회 적응과 문화변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2017). **한국 내 후기 이주청소년의 진로 지원 정책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 (2020).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 입국 경험과 진로 준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1(2), 113-149.
- 이창원, 허설화, 조하영 (2020). **청년층 중국동포 한국사회 편입과정과 정책과제**. 서울: 이민정책연구원.
- 임동진. (2018). 호주 이민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지향 분석: 단속평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2(1), 57-87.
- 임선일, 이용민, 한경은, 김기영 (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진로지원 방안: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 2020-03.
-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 정동재 (2019).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연구**. 서울: 행정연구원.
- 정수정, 최순중 (2015).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청소년연구**, 26(3), 77-101.
- 정해식 (2014). 국민통합의 개념과 필요성. **보건복지포럼**, 2014(12), 6-17.
- 채소린 (2021). 중국 출신 이주청소년들이 경험한 초국적 불안정성 -학력 중단 이후 교육 및 진로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3), 177-211.
- 최귀옥 (2012). **북한출신 대학생의 직업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 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서리 (2014). 외국인력정책에서 노동시장 테스트 논의. 최근 캐나다 정책변화와 한국에 의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4.(2), 1-11.
- 최윤정, 전기택,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양계민, 최영미, 황정미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최현숙 (2020). **사회통합을 위한 탈북청년 사회교육 사례연구: [해솔직업사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지 (2017).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간 비교: 이민국가 레짐을 기초로. **한국사회정책**, 24(2), 217-244.
- 한경구, 설동훈, 이철우, 이충훈, 이해경, 정기선, 한건수 (2012). **해외 각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서울: 법무부 용역보고서.
- 한국갤럽(2023) **옴니버스조사 조사설계서**(내부문서).
-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현순안 (2016). 남한 거주 탈북 후기 청소년의 삶과 진로에 대한 내러티브. **글로벌청소년학연구**, 6(2), 3-28.
- 홍세영 (2017). 스칸디나비아 다문화 법적 체계 및 통합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법연구**, 33, 141-188.
- 홍희정, 홍성현 (2019). **스웨덴에서 한국의 미래를 꿈꾸다**. 파주: 이담.
- 황복선 (2019).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rmagnague-Roucher, M., & Rigoni, I. (2016). Conduire une recherche sur lascolarisation d'élèves primo-migrants. Quelques enjeux et défissocio-

- institutionnels. *La nouvelle revue de l'adaptation et de la scolarisation*, 75(3), 337-349.
- Åslund, O. & Skans, O. N. (2010). Will I see you at work? Ethnic workplace segregation in Sweden, 1985-2002. *ILR Review*, 63(3), 471-493.
- Bauer, K., Lofstrom, M., & Zimmermann, F. (2000). Immigration Policy, Assimilation of Immigrants and Natives' Sentiments Towards Immigrants: Evidence from 12 OECD-Countries.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7, 11-35.
- Bernardot, M. (2008a). Camps d'étrangers, foyers de travailleurs, centres d'expulsion : les lieux communs de l'immigré décolonisé. *Cultures et Conflits*, 69, 55-79.
- Bernardot, M. (2008b). *Loger les immigrés: La Sonacotra 1956-2006*. TERRA.
- Berque, J. (1985). *Éduquer les enfants de l'immigration. Rapport préliminaire au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Paris: CNDP/La Documentation française.
- Bither, J., & Ziebarth, A. (2016). *In it for the long run: Integration lessons from a changing Germany*. Washington, D.C.: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 Castles, S., de Hass, H., & Miller, M. J. (2014).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uch, J., Liddy, N., & McDougall, J. (2021). 'Our Voices Aren't in Lockdown'—Refugee Young People, Challenges, and Innovation During COVID-19. *JAYS*, 4, 239-259.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J. W. Creswell, Ed.),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_____ (2018).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J. D. Creswell, Ed.) (5th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Cronin, K. (1993). *A Culture of Control: An Overview of Immigration Policy-Making*. In Jupp, J. & Kabala, M. (eds). *The Politics of Australian Immigration*.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 Cully, M. (2011). *Skilled Migration Selection Policies: Recent Australian Reforms*. Migration Policy Practice, 1(1) 4-7.
- Cummins, J. (1980). The Cross-Lingual Dimensions of Language Proficiency: Implications for Bilingual Education and the Optimal Age Issue. *TESOL Quarterly*, 14(2), 175-187.
- DESE (2018). *Youth Jobs PaTH Evaluation Report*.
- De Smet, N., & Rasson, N. (1993). *À l'école de l'interculturel. Pratiques pédagogiques endébat*. Bruxelles: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enseignants.
- EU (2004).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2020). *Review of Financial Literacy Research in Canada: An Environmental Scan & Gap Analysis*.
-
- (2021). *Make Change that Count: 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 2021-2026*.
- FOMR. (2007). *Integration in Germany: support networking dialogue*.
- Gestalten, Z. (2001). *Integration Fördern: Bericht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Zuwanderung*. Berlin: Bundesminister des Innern.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ondon: Polity Press.
- Heyeres, M., Perera, N., Udah, H., Attakey, A., Whiteside, M., & Tsey, K. (2021). Interventions Targeting the Wellbeing of Migrant Youth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AGE Open*, 11(3). <https://doi.org/10.1177/21582440211046942>.
- Holgersson, L. (2000). *Socialpolitik och socialt arbete, historia och ideer*. Stockholm: Norstedts Juridik AB.
- Hugo, G. (2014). Skilled Migration in Australia: Policy and Practice.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3(4), 375-396.
- Jederlund, L. (1999). In Transition: From Immigration Policy to Integration Policy in Sweden. *Scandinavian Review*, 87(1), 30-39.
- Kerzil, J. (2002). L'éducation interculturelle en France: un ensemble de

- pratiques évolutives au service d'enjeux complexes. *Carrefours de l'éducation*, 14, 120-159.
- Larsen, G. (2013). *Family Migration to Australia*. Parliament of Australia Research Paper.
- Laurens, S. (2008). Les agents de l'État face à leur propre pouvoir: Éléments pour une micro-analyse des mots griffonnés en marge des décisions officielles. *Genèses*, 72, 26-41.
- Lemaire, É. (2013). La place des mineurs étrangers isolés dans l'espace scolaire français: Quelles conséquences sur le rapport à l'apprentissage?. *Journal du droit des jeunes*, 328(8), 28-33.
- Lockwood, D. (1964).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244, 53-57.
- Martin, D., Miller, A. P., Quesnel-Vallée, A., Caron, N. R., Vissandjée, B., Marchildon, G. P.. (2018). Canada's universal health-care system: achieving its potential. *Lancet*, 391, 1718-1735.
- Mendonça, D. C., & Rigoni, I. (2020). L'accompagnement solidaire des mineurs non accompagnés francophones sans solution scolaire. *Migrations Société*, 181, 53-69.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 B. Merriam,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MYAN (2018). *Youth Settlement Trends in Australia: A Report on the Data 2016-2017*.
- Noiriel, G. (2010). Une histoire du modèle français d'immigration. *Regards croisés sur l'économie*, 8(2), 32-38.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 OECD(2015).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Settling In.*, Paris: OECD Publishing.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M.

- Q. Patton, Ed.) (3rd ed.). Sage Publications.
- Phillips, J., Klapdor, M., & Simon-Davis, J. (2010). *Migration to Australia since Federation: a Guide to the Statistics*. Australian Department of Parliamentary Services.
- Ponty, J. (1988). *Polonais méconnus. Histoire des travailleurs immigrés dans l'entre-deux-guerres*.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 Riniolo, V. (2016). *Sweden: a Country of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for Migrant Integration*. Milano: ISMU Foundation.
- Rodrik, D. (1998). Globalization, social conflict and economic growth. *The World Economy*, 21(2), 143-158.
- Schleicher, A. (2019). *PISA 2018: Insights and interpretations*. OECD Publishing.
- Schor, R. (1993). *Crises et dictatures dans l'Europe de l'entre-deux-guerres: 1919-1939*. Paris: Nathan.
- Seifert, H. (2013).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 비정규직 고용 및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11(2), 15-25.
- Spinks, H. (2021). *Australia's Permanent Migration Program: a Quick Guide. Research Paper Series, 2020-21*. Parliament of Australia.
- Swedish Parliament. (1995). *The Constitution of Sweden*.
- Teicher, J., Shah, C., & Griffin, G. (2000). *Australian Immigration: Triumph of Economic Over Prejudice*, Centre for Economics of Education & Training. Clayton: Monash University.
- Thomson, L. (2014). *Migrant Employment Patterns in Australia: Post Second World War to the present*. Canberra: AMES Research and Policy Unit.
- Van Mol, C., & de Valk, H. (2016). *Migration and Immigrants in Europe: A Historical and Demographic Perspective*. In: Garcés-Mascareñas, B., Penninx, R. (eds) *Integration Processes and Policies in Europe*. IMISCOE Research Series. Springer, Cham. https://doi.org/10.1007/978-3-319-21674-4_3
- Will, A. K. (2019). The German statistical category “migration background”: Historical roots, revisions and shortcomings. *Ethnicities*, 19(3), 535-557.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인터넷 자료]

교육부 (2012). 2012 다문화교육선진화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6067>에서 2023년 2월 13일 인출

교육부 (2022.08.30.).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52&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9&uppCd1=010109&uppCd2=010109&flag=A 에서 2023년 2월 13일 인출

스웨덴 교육청 <https://www.skolverket.se> 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스웨덴 이민청 <http://www.migrationsverket.se> 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스웨덴 청소년 및 시민사회 기관 <https://www.mucf.se> 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스웨덴 학생 재정위원회 <https://www.csn.se> 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0.03.).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육기회 넓혀 미래인재로 키운다.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행정안전부 (2012.08.09.).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p4xcJm+O9QW75JwoX8DArame.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35593

행정안전부 (2018).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73857 에서 2023년 10월 1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2.10.3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 에서 2023년 9월 27일 인출

e-나라지표,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에서 2023년 10월 1일 인출

Academie de Paris (2023).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https://www.ac-paris.fr/scolarisation-des-nouveaux-arrivants-et-des-enfants-du-voyage-122833>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Académie de Strasbourg (2021). Parcours des élèves entrants dans undispositif allophone dans l'académiede Strasbourg, <https://www.ac-strasbourg.fr/media/18157/download>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Austrailia Visa Bureau (2017.04.18.). Skilled Occupation List (SOL) Australia, <http://www.visabureau.com/australia/skilled-occupation-list.aspx>에서 2023년 9월 3일 인출

Aziz, N. (2020.04.18). Growth for Sault Ste. Marie's Future: A Review of the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Sault Online. <https://saultonline.com/2020/04/growth-for-sault-ste-maries-future-a-review-of-the-rural-and-northern-immigration-pilot/>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BAMF (2023). Permanent settlement permit for children (aged over 16),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4863/en/> 에서 2023년 8월 30일 인출

Blanchard, E. (2013.05.29). Les "indésirables". Passé et présent d'une catégorie d'action publique. <https://hal.science/hal-00826717> 에서 2023년 9월 10일 인출

BMAS (2023.03.23). Employment Promotion, <https://www.bmas.de/EN/Labour/Employment-promotion/employment-promotion.html> 에서 2023년 8월 29일 인출

____ (2023.04.14.). Fragen und Antworten zum Bürgergeld, <https://www.bmas.de/DE/Arbeit/Grundsicherung-Buergergeld/Buergergeld/Fragen-und-Antworten-zum-Buergergeld/fragen-und-antworten-zum-buergergeld.html#doc9ba7f09b-c66c-402d-b1f5-d1d185ba86e6bodyText1> 에서 2023년 8월 29일 인출

BMFSFJ (2020.12.23.). Familie heute. Daten. Fakten. Trends,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publikationen/familie-heute-daten-fakten-trends-163110> 에서 2023년 9월 3일 인출

BMI (2023). Migration, <https://www.bmi.bund.de/EN/topics/migration/immigration/immigration-node.html;jsessionid=DFDB4FDB4B95A7768A103FBE80AA20C>

0.2_cid340 에서 2023년 9월 4일 인출

BOURGUIGNON Brigitte (2018).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renforcer l'accompagnement des jeunes majeurs vulnérables vers l'autonomi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rapports/cion-soc/l15b1150_rapport-fond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Brun, L. (2023). 77435 élèves allophones nouvellement arrivés scolarisés en 2021-2022: neuf sur dix bénéficient d'un soutien linguistique ou d'une scolarité dans un dispositif spécifique. <https://www.education.gouv.fr/77-435-eleves-allophones-nouvellement-arrive-scolarises-en-2021-2022-neuf-sur-dix-beneficient-d-un-378338>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n.d.). Berufliche Orientierung für Zugewanderte, https://www.berufsorientierungsprogramm.de/bop/de/angebot-fuer-zugewanderte/berufliche-orientierung-fuer-zugewanderte-bof/berufliche-orientierung-fuer-zugewanderte-bof_node.html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Bundesagentur für Arbeit (n.d.). Berufsausbildungsbeihilfe, <https://www.arbeitsagentur.de/en/vocational-training>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_____ (n.d.).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 <https://www.arbeitsagentur.de/bildung/ausbildung/berufsvorbereitende-bildungsmaassnahme>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_____ (n.d.). Einstiegsqualifizierung, <https://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ausbilden/einstiegsqualifizierung-arbeitgeber>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_____ (n.d.). Jugendberufsagenturen: Arbeitsbündnis für bessere Integration Jugendlicher, <https://www.arbeitsagentur.de/institutionen/jugendberufsagenturen>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Bundesregierung. (2012). The Federal Government Germany National Action Plan on Integration, <https://polen.diplo.de/blob/485830/b3bada7b7614c18b>

b869326b0bef63aa/integration-nap-eng-data.pdf 에서 2023년 9월 4일 인출
 _____ (2020). Making integration easier for migrants,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archive/aktionsplan-integration-1772728#:~:text=The%20National%20Action%20Plan%20on,school%20or%20find%20a%20job> 에서 2023년 9월 4일 인출
 _____ (2021). The opportunities of diversity - opportunities for our country,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archive/13th-integration-summit-1875236>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Campus France (2022). LE COÛT DES ÉTUDES SUPÉRIEURES EN FRANCE, <http://www.campusfrance.org/fr/cout-etudes-superieures-france-frais-inscription>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Canada Statistics (2019). A Portrait of Canadian Youth: March 2019 Updates,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31-x/11-631-x2019003-eng.htm> 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_____ (2022a). Canada at Glance, 2022, <https://www150.statcan.gc.ca/n1/pub/12-581-x/2022001/sec2-eng.htm>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_____ (2022b). Immigrants make up the largest share of the population in over 150 years and continue to shape who we are as Canadians.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221026/dq221026a-eng.htm>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_____ (2023.02.10). Census Profile, 2021 Census of Population. <https://www12.statcan.gc.ca/census-recensement/2021/dp-pd/prof/details/page.cfm?LANG=E&GENDERlist=1,2,3&STATISTIClist=1,4&DGUIDlist=2021A000011124&HEADERlist=31,30&SearchText=Canada> 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_____ (2023.06.27). A Portrait of non-permanent residents in Canada.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27-m/11-627-m2023039-eng.htm> 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CIC NEWS. (2023.08.07). Canada's work permit pathways for dependent children of age, <https://www.cicnews.com/2023/08/canadas-work-permit-pathw>

ays-for-dependent-children-of-age-0836444.html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CISION (2022.06.13). Government of Canada marks World Youth Skills Day
with major investments in skills and innovation projects.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government-of-canada-marks-world-youth-skills-day-with-major-investments-in-skills-and-innovation-projects-832279351.html>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CMY (2020). Young People on Special Category (444) Visas, <https://www.cmy.net.au/wp-content/uploads/2020/03/Fact-Sheet-Young-People-on-Special-Category-444-Visas.pdf>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CSN (n.d.). Bidrag och lan for studier, <https://www.csn.se>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Destatis (2022.01.31.).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20,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Publikationen/Downloads-Migration/migrationshintergrund-endergebnisse-2010220207004.pdf?__blob=publicationFile 에서 2023년 8월 24일 인출

_____ (2023.04.20.). 23.4% of the population had a history of immigration in 2022,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4/PE23_158_125.html 에서 2023년 9월 4일 인출

_____ (2023.04.27.). Migration and Integration, https://www.destatis.de/EN/Themes/Society-Environment/Population/Migration-Integration/_node.html 에서 2023년 8월 21일 인출

DHA (2021a). 2020-21 Migration Program Report, <https://www.homeaffairs.gov.au/research-and-stats/files/report-migration-program-2020-21.pdf>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_____ (2021b). Australia's Migration Trends 2020-2021.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https://www.homeaffairs.gov.au/>)

_____ (2023.02.14.). Getting a visa: Visa list,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 에서 2023년 9월 19일 인출

- ____ (2023.06.30). Become an Australian Citizen, <https://immi.homeaffairs.gov.au/citizenship/become-a-citizen>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22.12.20.). Age Breakdown of Children Over the Age of Majority, https://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2003_4/longdesc5.html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 Die Bundesregierung (2011). Report of the German Lander on the National Action Plan on Integration Together for greater integration(<https://polen.diplo.de/blob/485830/b3bada7b7614c18bb869326b0bef63aa/integration-national-eng-data.pdf>)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 ____ (n.d.). Niederlassungserlaubnis, <https://www.make-it-in-germany.com/en/visa-residence/living-permanently/settlement-permit>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 Diversity Institute (2023.03.). Labour Market Implications for Racialized Youth, <https://www.torontomu.ca/diversity/reports/labour-market-implications-for-racialized-youth/> 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 DOE (2023).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https://www.education.gov.au/higher-education-loan-program>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 DRESS (2018). Structure par âge de la population -Effectifs par classe d'âge au 1er janvier 2018 - Ensemble,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sites/default/files/panorama/panorama2018/tableau/structuragep/structuragep.asp-prov=AC-depar=AE.htm#top> 2023년 9월 14일 인출
- DRESS (2020). Les dispositifs de l'aide sociale 24 à l'enfance,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sites/default/files/2021-01/Fiche%2024%20-%20Les%20dispositifs%20de%20l%E2%80%99aide%20sociale%20%C3%A0%20l%E2%80%99enfance.pdf>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 DSS (2016). The National Settlement Framework, <https://immi.homeaffairs.gov.au/settlement-services-subsite/files/the-national-settlement-framework.pdf> 에서 2023년 9월 1일 인출
- ____ (2019). Historical Settlement Reports (Permanent Settlers (All Streams))

in all States/Territories with a Date of Settlement* between 1 October 2018 and 31 December 2018 as of 04/05/2019 by Age Band, Gender, English Proficiency, LGA, Country of Birth, Ethnicity, Religion and Language), <https://www.data.gov.au/dataset/ds-dga-8d1b90a9-a4d7-4b10-ad6a8273722c8628/distribution/dist-dga-27adc111-5296-4dc4-884f-3cfbc33b02f3/details?q=에서> 2023년 9월 1일 인출

FOMR (2023.11.18.) Settling in Germany, <https://www.bamf.de/EN/Themen/MigrationAufenthalt/ZuwandererDrittstaaten/Migrathek/Niederlassen/niederlassen-node.html>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6.03.13.). Interview: Schäuble: 'Der Islam ist keine Bedrohung für uns', <http://www.faz.net/aktuell/politik/inland/interview-schaeuble-der-islam-ist-keine-bedrohung-fuer-uns-1302682-p2.html> 에서 2023년 8월 23일 인출

Government of Canada (2017.09.13.).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refugees/help-within-canada/health-care/interim-federal-health-program.html>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2018.07.16.). Temporary resident visa versus temporary resident statu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visitors/status.html>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2023.07.31.) Mental Health Promotion Innovation Fund,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funding-opportunities/mental-health-promotion-innovation-fund.html> 에서 2023년 9월 19일 인출

(2023.08.23.). TEER categories and examples of job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find-national-occupation-code.html>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2023.10.25.) What is the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

m?, <https://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272&top=33>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____ (2023.12.19.).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 <http://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prepare/designated-learning-institutions-list.html>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Graveleau E. (2020). LYCEE GENERAL OU PROFESSIONNEL: UNE ORIENTATION SUBIE PAR LES ALLOPHONES?, <https://upe2a.hypotheses.org/1429>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KDE HUB (n.d.) MHP-IF Projects, <https://kdehub.ca/projects/mhp-if/> 에서 2023년 9월 7일 인출

IEFA (n.d.). International Student Loans Canada, <https://www.iefac.org/international-student-loan-canada>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Immigration Law (2005). German History Intersections, <https://germanhistory-intersections.org/en/migration/ghis:document-98> 에서 2023년 9월 3일 인출

IRCC (2020.05.27). Dependent children.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permanent-residence/non-economic-classes/dependent-children.html>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____ (2021.07.27). Temporary residents: Eligibility for extending temporary resident statu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visitors/eligibility-extending-status.html> 에서 2023년 9월 3일 인출

____ (2021.11.08.). Temporary public policies: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 - About the program,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tr-pr-pathway.html>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____ (2023.01.17).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post-graduation-work-permit-program.html>

- 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study-permits/post-graduation-work-permit-program.html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 ____ (2023.04.11.). Youth Employment and Skills Program: Contact information, <https://agriculture.canada.ca/en/programs/youth-employment-and-skills/contact-information>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 ____ (2023.06.02.). About the Skills for Success Program,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literacy-essential-skills.html>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 ____ (2023.06.02.). Funding: Skills for Success - Overview,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unding/literacy-skills.html>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 ____ (2023.11.22.). Canada Summer Jobs applicant guide: Screening for eligibility,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unding/canada-summer-jobs/screening-eligibility.html>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 ____ (2023.11.22.). The 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y,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youth-employment-strategy.html>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 INSEE (2021.06.30). Étrangers - Immigrés en 2018,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397751?sommaire=5397790&geo=FE-1>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 ____ (2022.04.25.). Convertisseur franc-euro, <https://www.insee.fr/fr/information/2417794#:~:text=En%20plus%20de%20l'inflation,quelle%20que%20soit%20la%20date>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 ____ (2023.03.30). Immigrés et descendants d'immigrés,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793314?sommaire=6793391>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 ____ (2023.05.07). Pays de naissance des immigrants vivants en France en 2022, https://www.insee.fr/fr/outil-interactif/5367857/details/20_DEM/25_ETR/25C_Figure3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 _____. (2023.05.07). Population immigrée et étrangère en France. https://www.insee.fr/fr/outil-interactif/5367857/details/20_DEM/25_ETR/25B_Figure2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 _____. (2023). Étrangers - Immigrés, https://www.insee.fr/fr/outil-interactif/5367857/tableau/20_DEM/25_ETR#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759#tableau-figure1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 Jugend Migrations Dienste (n.d.). JUGENDMIGRATIONSDIENSTE, <https://www.jugendmigrationsdienste.de/en/> 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 Légifrance (2022.02.07.).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rticle L221-1,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5136891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 Liddy, N. (2016). Supporting young people from refugee and migrant backgrounds: The National Youth Settlement Framework. 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https://aifs.gov.au/resources/short-articles/supporting-young-people-refugee-and-migrant-backgrounds-national-youth> 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 Mackey, W., Coates, B., & Sherrell, H. (2020). *Migrants in the Australian Workforce: A Guidebook for Policy Maker*. Grattan Institute, <https://grattan.edu.au/wp-content/uploads/2022/05/Migrants-in-the-Australian-workforce.pdf>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 MCA (2017.04). The Economic Impact of Migration, <https://migrationcouncil.org.au/wp-content/uploads/2021/04/The-Economic-Impact-of-Migration.pdf>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Prévention (n.d.). Protection de l'enfance, <https://sante.gouv.fr/archives/archives-affaires-sociales/familles-enfance/protection-de-l-enfance-10740/#:~:text=La%20protection%20de%20l'enfance%20viser%20%C3%A0%20garantir%20la%20prise,sa%20moralit%C3%A9%20et%20son%20%C3%A9ducation>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12.02.10.). Circulaire

n° 2012-141 du 2-10-2012, <https://www.education.gouv.fr/bo/12/Hebdo37/MENE1234231C.htm>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2012). Document d'aide a l'evaluation des eleves allophonesnouvellement arrives, https://cache.media.eduscol.education.fr/file/College/12/3/Document_evaluation_121009_c_228902_356123.pdf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2022.09). Se former par l'apprentissage, [https://www.education.gouv.fr/se-former-par-l-apprentissage-2216#:~:text=Dur%C3%A9e%20de%20formation%20en%20CFA&text=CAP%20%3A%20800%20heures%20\(2%20ans,ou%20400%20heures%20\(1%20an\)](https://www.education.gouv.fr/se-former-par-l-apprentissage-2216#:~:text=Dur%C3%A9e%20de%20formation%20en%20CFA&text=CAP%20%3A%20800%20heures%20(2%20ans,ou%20400%20heures%20(1%20an))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2023.06). Le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CAP), <https://eduscol.education.fr/1923/le-certificat-d-aptitude-professionnelle-cap#summary-item-11>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2023.09.08). Les rapports d'activite de la mission mineurs non accompagnes, <https://www.justice.gouv.fr/rapports-dactivite-mission-mineurs-non-accompagnes>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s Outre-mer (2014.03.22). Les documents de circulation délivrés aux étrangers mineurs,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Immigration/L-immigration-familiale/Le-sejour-des-mineurs-etranagers/Les-documents-de-circulation-delivres-aux-etranagers-mineurs>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2021.03.22.). La délivrance d'un titre de séjour aux jeunes majeurs, entrés mineurs en France,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Immigration/L-immigration-familiale/Le-sejour-des-mineurs-etranagers/La-delivrance-d-un-titre-de-sejour-aux-jeunes-majeurs-entres-mineurs-en-France>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MIPEX 2020 (n.d.). Anti-discrimination. <https://www.mipex.eu/anti-discrimination> 에서 2023년 10월 27일 인출

_____ <https://www.mipex.eu/> 에서 2023년 3월 9일 인출
OECD & European Commission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23: Settling In. OECD, <https://doi.org/10.1787/1d5020a6-en>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ONPE (2017). Douzième RAPPORT DE L'ONPEAU GOUVERNEMENT AU PARLEMENT Année 2017, https://www.onpe.gouv.fr/system/files/publication/ragp_2017_web_complet.pdf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Régnier, L. (2016.11.23.). L'immersion des élèves allophones au sein du système scolaire français: le cas des élèves arrivant en fin de cursus au collège, <https://dumas.ccsd.cnrs.fr/dumas-01401809/document>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Reimann, A. (2010.07.07). Regierungsbericht zu Migranten: Deutsches Märchen Integration, <https://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regierungsbericht-zu-migranten-deutsches-maerchen-integration-a-704914.html> 에서 2023년 9월 3일 인출

SCB Statistikdatabasen (2023.02.22.). Folkmand,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_____ (2023.03.22.). Utländsk/svensk bakgrund,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_____ (2023.02.22.). Utrikes födda,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 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Service Public (2022.02.11.). Un étudiant peut-il toucher une aide au logement (APL, ALS, ALF)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63>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_____ (2023.05.01.). Allocations familiales (famille de 2 enfants ou plu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3>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_____ (2023.09.07.). Etudiant: bourse sur criteres sociaux,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214>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Sénat (2023). LA SCOLARISATION DES ÉLÈVES ALLOPHONES, <https://www.senat.fr/rap/r22-427/r22-427-annexe.pdf> 에서 2023년 9월 13일 인출

_____ (2023). Scolariser les allophones, une politique encore fragile et insuffisamment évaluée, https://www.senat.fr/rap/r22-427/r22-427_mono.html 에서 2023년 9월 15일 인출

Sozialgesetz (2022.12.20.), § 3 SGB I Bildungs- und Arbeitsförderung, <https://www.sozialgesetzbuch-sgb.de/sgeb/3.html>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StatCan (2022.09.28.). Number of people immigrating to Canada in 2022, by age [Graph],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43305/international-migrants-in-canada-2014/> 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_____ (2022.10.18.). Classification of admission category of immigrant, <https://www23.statcan.gc.ca/imdb/p3VD.pl?Function=getVD&TVD=323293> 에서 2023년 9월 3일 인출

_____ (2023.12.20.). Immigrant status of person, <https://www23.statcan.gc.ca/imdb/p3Var.pl?Function=DEC&Id=103339> 에서 2023년 12월 23일 인출

Synergistiq (2019). Services Final Evaluation, <https://immi.homeaffairs.gov.au/settlement-services-subsite/files/yts-final-evaluation-report.pdf> 에서 2023년 9월 1일 인출

The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2021.05.18.). SRDC releases major report on Canada's new Skills for Success model, <https://srdc.org/srdc-media-center/srdc-news/srdc-releases-major-report-on-canadas-new-skills-for-success-model> 에서 2023년 9월 6일 인출

UNHCR (1951).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ttps://www.unhcr.org/en-au/1951-refugee-convention.html> 에서 2023년 9월 3일 인출

VSG (2023). School Based Apprenticeships and Traineeships.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 State Government,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school-based-apprenticeships-and-traineeships/resources> 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Volker, W. (2023.05.31.). Germany Citizenship: Record number of naturalizations, Deutsch Welle, <https://www.dw.com/en/german-citizenship-record-number-of-naturalizations/a-65785122> 에서 2023년 8월 30일 인출

War Child (n.d.). PROJEKT I SVERIGE, <https://www.warchild.se/projekt-i-sverige/> 에서 2023년 9월 17일 인출

[데이터 원자료]

남북하나재단 (2022). 202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원자료.

여성가족부 (2021a).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https://www.data.go.kr/data/15048450/fileData.do> 에서 2023년 4월 20일 인출

_____ (2021). 202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https://www.data.go.kr/data/15055031/fileData.do> 에서 2023년 4월 20일 인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b).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원자료.



부 록

부록

1. 일반국민 대상 설문지

0316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7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70 Sajik-ro Jongno-gu Seoul 03167, South Korea

T_02 3702 2100
F_02 3702 2121

H_www.gallup.co.kr

2023년 7월
CAPI
Omnibus 2023-004-006

2023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유기중/정희은/강종하/
조반석/장덕현/정지연
실사연구원 이보람
전화 02-3702-2537

■ 지점번호:

☐☐☐

CAPi 지점번호에 따라 지역, 지역크기, 자동, 일력

■ 지역:

☐☐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세종 0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 지역크기:

1. 대도시 2. 중소 도시 3. 읍 4. 면

■ 성별:

1. 남성 2. 여성

SQ 1) 귀하의 2023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조사 중단
2. 없다

SQ 2) 실례지만 올해 6월 말일 기준 귀하의 나이(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원

- 2023년 6월 28일부터 출생일 기준 0세, 이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조사 기간이 길면 같은 생일자라도 진행 초반과 후반 만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작 전월 말일 기준 만 나이를 묻습니다.
- 응답자가 답하는 만 나이를 기록하되, 혹시 헛갈려하거나 기준 한국식 나이를 답하는 경우 생일이 위 기준일 전이면 -1, 기준일 뒤라면 -2로 계산해 입력해 주세요.

만 세 → 만 12세 이하는 조사 중단

SQ 3) 조사원 다음은 묻지 말고 SQ 2)에 따라 체크하십시오.
연령대

1. 만 19~29세
2. 만 30~39세
3. 만 40~49세
4. 만 50~59세
5. 만 60세 이상

6. 만 13~15세 (부스터)
7. 만 16~18세 (부스터)

SQ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 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직원 9인 이하 업소 주인 또는 가족 종사자, 약국 운영, 개인택시운전사 등)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전자기기·가전제품 A/S 기술자, 공장비트릭 기사,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도목 관계의 헌정 직업, 청소, 수위, 육체 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유치원 초중고 교사, 회사 소속 디자이너·프로그래머·개발자, 기술직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 고위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 직위 등)
8. 전문직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회계사, 종교인, 언론인, 예술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9. 전업주부
10.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1. 무직
12. 은퇴
13.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이 질문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응답 내용 확인과 연락드릴 때 필요한 귀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줍니다.
수집한 정보는 조사 종료 후 6개월 후 폐기합니다.
귀하에게는 동의할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 함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2023년 7월 옴니버스 조사 | 1

다음은 국내 거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41) (설명 제시)

※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국경을 넘어 이주한 경향이 있는 9세에서 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탈북가정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노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주장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중에서 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㉓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1	2	3	4
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1	2	3	4
㉕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㉖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㉗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2	3	4
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1	2	3	4
㉙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1	2	3	4
㉚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	2	3	4
㉛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1	2	3	4
㉜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1	2	3	4

문 42) 귀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어느 범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와 외국인 등록 여부 에 따른
네 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문 42-1) 19세 미만(미성년) 합법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해야 한다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㉓ 기초생활지원(생계비지원)	1	2
㉔ 기초생활지원(의료지원)	1	2
㉕ 심리·상담지원	1	2
㉖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1	2
㉗ 고등학교교육	1	2
㉘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1	2
㉙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1	2
㉚ 진로교육	1	2
㉛ 직업훈련·교육	1	2
㉜ 취업지원	1	2

문 42-2) 19세 미만(미성년) 미등록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 **미등록 외국 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중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등록이 만료되어 비합법 체류상태(불법체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원해야 한다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㉓ 기초생활지원(생계비지원)	1	2
㉔ 기초생활지원(의료지원)	1	2
㉕ 심리·상담지원	1	2
㉖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1	2
㉗ 고등학교교육	1	2
㉘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1	2
㉙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1	2
㉚ 진로교육	1	2
㉛ 직업훈련·교육	1	2
㉜ 취업지원	1	2

문 42-3) 19~24세(청년기) 합법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해야 한다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㉓ 기초생활지원(생계비지원)	1	2
㉔ 기초생활지원(의료지원)	1	2
㉕ 심리·상담지원	1	2
㉖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1	2
㉗ 고등학교교육	1	2
㉘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1	2
㉙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1	2
㉚ 진로교육	1	2
㉛ 직업훈련·교육	1	2
㉜ 취업지원	1	2

문 42-4) 19~24세(청년기) 미등록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

* 미등록 외국 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중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등록이 만료되어 비합법 체류상태(불법체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원해야 한다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㉓ 기초생활지원(생계비지원)	1	2
㉔ 기초생활지원(의료지원)	1	2
㉕ 심리·상담지원	1	2
㉖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1	2
㉗ 고등학교교육	1	2
㉘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1	2
㉙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1	2
㉚ 진로교육	1	2
㉛ 직업훈련·교육	1	2
㉜ 취업지원	1	2

다음은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43) 귀하 본인이나 부모 중 누구라도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문 44) 귀하는 평소 외국 출신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접하십니까?

- 전혀 접하지 않는다
- 별로 접하지 않는다
- 자주 접한다
- 매우 자주 접한다

문 45)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 불만족한다
- 약간 불만족한다
- 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문 46) 귀하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다
- 약간 낮다
- 중간이다
- 약간 높다
- 매우 높다

자료 분류용 질문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CAPI 13~18세는 모두 미혼 처리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가? (보기 제시)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CAPI - SQ 4에서 직업이 '학생'이면 학력 보기 4~7만 제시
- 학생이 아니면 1~5만 제시

D 2) 실례지만,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중학교 재학
2. 중학교 졸업 7. 고등학교 재학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 졸업 또는 재학
5.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

D 3)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조사원 숫자로 기록
총 명 (이 중 만 19세 이상은 명)

D 4) 현재 귀댁의 세대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1세대 - 1인
2. 1세대 - 형제자매 등 친족 동거
3. 1세대 - 부부
4. 2세대 - 부모+미취학 자녀(막내 기준)
5. 2세대 - 부모+초/중/고 자녀(막내 기준)
6. 2세대 - 부모+비혼 성인 자녀(막내 기준)
7. 2세대 - 부부+조부모(부부의 부모)
8. 2세대 - 조부모+손자녀
9. 3세대 - 부모+조부모+손자녀
10. 비친족 동거
11.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D 5)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 등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D 6)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임대소득,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답해 주십시오.
1. 월 49만원 이하 9. 월 400 ~ 499만원
2. 월 50 ~ 99만원 10. 월 500 ~ 599만원
3. 월 100 ~ 149만원 11. 월 600 ~ 699만원
4. 월 150 ~ 199만원 12. 월 700 ~ 799만원
5. 월 200 ~ 249만원 13. 월 800 ~ 899만원
6. 월 250 ~ 299만원 14. 월 900 ~ 999만원
7. 월 300 ~ 349만원 15. 월 1,000만원 이상
8. 월 350 ~ 399만원 16. 소득 없음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조사 일자

시작/종료시간
(24시간제 기준)

진행 방식

집계구 여부

1. 집전화 () - () - ()
지역번호 () - () - ()
번호 ()

____월 ____일 CAPI 오늘 날짜 안내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____분간) CAPI 인터뷰 시간 자동 계산

1. 태블릿 실시간 입력 2. 종이 기록 후 입력

1 집계구 내 2. 집계구 외 3. 기타

조사원
끝으로, 시스템상 면접 성공까지 방문/접촉 기록을 남겨주세요.
1. 가구원 부재/접촉 불응, 2. 조사대상 아님, 3. 할당초과
4. 최초거절, 5. 중간거절, 6. 기타 불가, 7. 면접성공
- 종이질문지는 반드시 수피바이저에게 반납해 주십시오.

국문초록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5가지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 지원의 근거 마련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전문가자문회의,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노동 및 자립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국내 및 해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노동 및 자립실태 관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결과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은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특히 진로정보 부족과 진로장벽인식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국외출생자 중 안정적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취업의 제약으로 안정적 삶의 영위와 진로설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국내성장 후기청소년들의 체류안정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2차자료 분석에서는 이주배경집단이 전국의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집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2021년 통계청 기준 20-24세 평균소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 및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면접조사 결과, 가정환경과 부모의 특성, 정보접근성, 한국어능력 등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소가 되며,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국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매우 협소한 영역에서 일부 다루는 수준이거나 구색 맞추기 수준의 기존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다. 해외의 정책 분석결과 독일,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한국보다 이주민을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대부분 합법적 체류자 및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장기 정착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3개 핵심과제와 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A b s t r a c t

ABSTRAC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imed at assisting youth of immigrant origin, aged between 19 and 24.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was conducted in four areas : 1) document analyses, advisory panel meetings, surveys, and interviews to establish the grounds for the stance, objectives, and provision of funding for policy on immigrant-origin youths ; 2) analysis of the status of immigrant-origin youths' career paths, employment, and financial independence; 3) analysis of existing immigrant-origin youths-related polici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4) proposal of a directionality and agenda items for policies on the career paths, employment, and financial independence of immigrant-origin youths. The study produced the following outcomes. First, an analysis of prior literature revealed that the vast majority of immigrant-origin youths, regardless of type, are concerned about their career path and experiencing difficulty due to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a lack of relevant information. Immigrant-origin youths born outside of Korea are particularly disadvantaged because, due to the precariousness of their sojourn status, their employment options are limited, resulting in the inability to consider a stable, long-term career path. This suggests that obtaining secure legal status for immigrant-origin youths who were born overseas but spent their formative years in Korea is an urgent priority. Second, an analysis of secondary sources revealed

that immigrant-origin youths' desire to graduate from a four-year university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ir Korean counterparts. The analysis also revealed that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immigrant-origin youths is (as of 2021, reported by Statistics Korea)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for individuals between the ages of 20 and 24 and that the factor most heavily influencing such youths' careers/employment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s a lack of fluency in Korean. Third, interviews revealed that home environment, parents' characteristics,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ficiency in Korean a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immigrant-origin youths' career prospects. For foreign-born immigrant-origin youths,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the prior literature review, precarious sojourn status was the biggest impediment to establishing a long-term career in Korea. Fourth, the results of a national perception survey revealed a high proportion of answers in favor of immigrant-origin youths addressing the needs produced by Korea's rapid aging and plummeting birth rates (e.g., having a positive influence on Korean society, serving as vital workers in industries experiencing a labor shortage). However, some respondents held a pessimistic view of immigrant-origin youths, believing that an increase in such youths could generate social conflict/chaos and increas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Fifth, an analysis of policies for immigrant-origin youths revealed that, although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central government's basic plan, it is only sporadically in a minimal number of areas and/or in existing initiatives for the purpose of appearances. An analysis of foreign policies revealed that most countries that began to allow immigration much earlier than Korea (e.g., Germany, Canada, Sweden, and Australia) actively encourage immigrants to settle down by granting long-term stays to those in the country legally or with

advanced academic degre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outcomes, this study suggests three primary initiatives, each encompassing a total of six specific tasks.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
김성아·박광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욱·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 크 쉑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 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강 혜 정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 다 솔 (파리8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임 동 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 영 미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홍 희 정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 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인 쇄 2023년 12월 23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03-6 93330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03-6